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를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ory Reform Committee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를

Regulatory Reform Book 2010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ory Reform Committee

2010년 한 해 동안 정부의 규제개혁 활동을 정리하여 보존하기 위해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서를 통해 규제개혁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투자 활성화와 서민생활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농산어촌과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 공공기관의 학력차별 해소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 ·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규제 합리화 등 아직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들을 발굴 · 정비하였습니다.

이밖에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신설 · 강화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그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규제정보포털로 개편하고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규제정보와 그 개혁 과정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지수」에서 183개국 중 16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개혁 성과만족도도 전년대비 2.7%p 상승한 41.6%를 기록하였습니다.

정부는 2011년도에도 투자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 개혁에 힘쓰겠습니다. 고용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서민 등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진입규제와 실질적으로 차별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하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여 공정사회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일류국가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 디딤돌입니다.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낸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세계 중심에 서는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국 무 총 리
규제개혁위원장 김황식



2010년 한 해 동안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행정 규제개혁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습니다.

미증유의 세계적 금융위기가 일어났지만 주요 국가들의 재정투입 등 국제적 공조로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조기회복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발빠른 재정투입과 기업친화형 규제개혁의 적극적 추진으로 2010년에는 OECD 국가 가운데서 고성장 국가군에 속하는 6.2%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11월에는 신흥국가로서는 처음으로 G20의장국으로서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창출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2010년 동안 규제개혁위원회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행정부처가 신설 · 강화하는 규제들을 내실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들에게 새로운 의무나 비용을 수반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억제하여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자율과 창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관련된 규제는 그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작년 한 해 총 1,054건에 이르는 신설 · 강화 규제들을 심사하였으며 이 가운데에서 325건을 중요규제로 분류하였고, 이중 다시 48.3%에 해당하는 157건의 행정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중요규제를 심사할 때는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 검토를 통해 규제영향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내용을 심사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 동안 규제개혁위원회는 「농산어촌 현장애로 및 규제개선방안」('10.6월), 「학력차별 규제개선방안」('10.7월), 「외국인 차별불편 해소방안」('10.7월) 등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규제개혁분야의 전략과제를 적극 발굴 ·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 농산어촌 등 생산현장의 투자 장애요인을 크게 제거하였고 정부 · 공공기관의 채용 · 승진에서 학력차별을 철폐하였으며, 외국인과 국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 ·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고시, 훈령, 규칙, 예규 등의 형태로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었던 각 부처의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 927건을 정비하였으며, 법령상 미등록규제 2,300여건도 발굴해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일정 주기로 규제내용을 재검토하는 규제일몰제를 확대 도입하여 규제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규제일몰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생긴 '98년부터 도입 · 운영되었으나, 기존에는 일몰시한 경과시 자동폐지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위주로만 운영되어 그 실적이 미진했습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일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몰주기 도래시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하여 지난 2년에 걸쳐 1,602건(전체규제의 23.3%)에 대해 일몰을 설정하였습니다. 현재의 일몰 시스템이 잘 정착되면 앞으로 기존 규제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가 가능해져 규제의 현실 적합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일몰대상 규제는 규제정보포털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밖에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과거 정부에서는 손대지 못했던 수도권 규제완화, 출총제 폐지, 각종 입지규제 완화 등 핵심 정책성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완화되었는데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노력과 함께 시너지 작용을 하여 전체적인 규제개혁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한시적 규제유예방안」을 도입하여 많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처음 도입된 사례로써 OECD 등 여러 선진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진입제한으로 경제의 자율경쟁과 활력을 저해해 오던 인 · 허가규제에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점 역시 선진 규제개혁제도를 향한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OECD로부터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바꾼 국가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2010년 9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OECD총괄기구 연차총회에서 많은 OECD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 역량강화에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법률 ·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에 대한 지속적 정비,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 규제정보화시스템과 규제정보포털의 구축,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등 규제개혁시스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은 앞으로 미래대비를 위해 필요한 신기술 개발촉진이나 교육, 관광 · 레저, 방송통신 등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한 분야의 Zero-Base검토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진입규제 정비 등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OECD의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규제개혁은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고 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구조를 선진화시키는 촉매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합리적 규제개혁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에 근접시키기 위하여 시장원리, 민간주도, 그리고 국제적 모범관행에 수렴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선진화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

저희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 여러분들과의 효율적인 소통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진행과정과 그 내용을 국민들이 신속하고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규제정보포털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라며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제안과 뜨거운 성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안충영



규제개혁은 미래 신성장의 밑거름입니다

규제개혁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만듭니다.
규제선진화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반입니다.









흔들림없는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규제개혁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선진화의 수레바퀴입니다.

1 1
2

1 국무총리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
2 규제개혁위원회 사회분과
3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선진일류국가, 따뜻한 사회
규제개혁으로 이루어가겠습니다

투자를 이끌어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의 불편을 없애고 서민의 부담을 줄입니다.

1 2 3 4 5 6

1 경부고속철도2단계 개통식
2 F1 코리아 그랑프리 참관
3 노인복지시설 방문 및 오찬 영등포노인복지관
4 F1 코리아 그랑프리 참관
5 영산강 송촌보 공사현장 방문
6 중계본동 공부방 방문















2010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ory Reform Committee

CONTENTS

2010 규제개혁백서
REGULATORY REFORM BOOK

제1장 규제개혁 추진 개요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방향 24
1. 규제개혁의 의의 24
2. 2010년 규제개혁 추진 25

제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28
1. 추진체계 개요 28
2.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30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4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36

제3절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38
1. 규제 등록제도 개요 38
2. 등록대상 규제사무 38
3. 규제사무의 등록 현황 39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제1절 각 부처 규제개혁 과제 발굴 · 개선 44
1. 개요 44
2. 규제정비 주요 내용 45

제2절 사업자 등 법정교육제도 합리화 47
1. 추진개요 47
2. 검토기준 47
3. 과제별 주요 개선내용 48

제3절 중소기업 애로해소 추진 52
1. 추진배경 52
2. 과제별 주요 개선내용 53

제4절 농산어촌 현장애로 및 규제개선 57
1. 추진개요 57
2. 세부 개선과제 58

제5절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 63
1. 추진개요 63
2. 세부 개선과제 64

제6절 외국인 차별 ·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규제 합리화 66
1. 추진배경 66
2. 과제선정 기준 및 방법 67
3. 세부 추진과제 68
4. 향후 추진계획 74

제7절 국민생활불편 · 사업환경 개선 77
1. 추진배경 77
2. 과제선정 기준 및 방법 78
3. 세부 추진과제 79
4. 향후 추진계획 86

제8절 식품산업규제 합리화 89
1. 추진개요 89
2. 과제별 주요 개선내용 90

제9절 식 · 의약품 분야 선진화 97
1. 추진개요 97
2. 주요 개선과제 97
3. 추진계획 108

제10절 전기자전거 등 기술관련 규제 합리화 109
1. 추진배경 109
2. 주요과제 109

제11절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렴 개선 114
1. 개요 114
2. 규제건의 처리상황 115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개요 120

제2절 재정 · 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122
1. 기획재정부 122
2. 금융위원회 127
3. 공정거래위원회 172
4. 관세청 195
5. 금융감독원 197

제3절 산업 · 에너지 분야 201
1. 지식경제부 201
2. 중소기업청 227
3. 특허청 229

제4절 국토 · 해양 분야 231
1. 국토해양부 231
2. 해양경찰청 305

제5절 농림 · 수산 분야 307
1. 농림수산식품부 307
2. 산림청 357

제6절 방송통신 분야 363
1. 방송통신위원회 363

제7절 노동 · 환경 분야 386
1. 고용노동부 386
2. 환경부 404

제8절 교육 · 과학 및 문화 분야 446
1. 교육과학기술부 446
2. 문화체육관광부 455
3. 문화재청 461

제9절 보건복지 · 여성 분야 474
1. 보건복지부 474
2. 식품의약품안전청 522
3. 여성가족부 539

제10절 통일 · 외교 및 국방 분야 544
1. 통일부 544
2. 외교통상부 547
3. 국가보훈처 549
4. 국방부 554

CONTENTS

제11절 일반행정 분야 556
1. 행정안전부 556
2. 소방방재청 564
3. 경찰청 578
4. 법무부 585
5. 국무총리실 589

제4장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제1절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 594
1. 규제일몰제 개요 594
2. 기존 규제일몰제 운영의 문제점 595
3. 규제일몰제 도입 확대 595

제2절 미등록규제 정비 598
1. 개요 598
2. 법령상 미등록규제 정비 599
3.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 정비 599
4. 결론 601

제3절 규제정보화 추진 602
1. 추진배경 및 경과 602
2. 규제정보화 사업 내용 603
3. 향후 추진계획 604

제4절 행정조사 제도 운영 605
1. 행정조사 운영계획 수립 605
2. 행정조사 정비 추진 606
3. 행정조사 정비내용('10년도 정비사례) 607

제5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609
1. 개관 609
2. OECD 국제회의 참석 610
3. APEC 국제회의 참석 614
4. 규제개혁 경험전수 : 개도국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교육 615

제6절 규제개혁과제 성과점검 616
1. 추진배경 및 개요 616
2. 성과점검 총평 617
3. 세부 점검결과 617
4. 향후 추진계획 621

제5장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10년 규제개혁 평가 624
1. 규제개혁평가 개요 624
2. 2010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625
3. 단계별 평가결과 626

CONTENTS

2010 규제개혁백서
REGULATORY REFORM BOOK

제2절 외부전문가 평가 628
1. 서론 628
2. 규제개혁 평가방법에 대한 일 고찰 629
3. 규제개혁의 투입측면 630
4. 규제개혁의 산출 및 결과측면 634
5. 시사점 645

제3절 2011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647
1. 규제개혁 추진여건 및 방향 647
2.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648

특별기고

제1절 명품 규제론 652
1. 왜 명품 규제여야 하는가? 652
2. 규제의 품질관리와 명품 규제 653
3. 명품 규제를 위한 십계명 654

제2절 미래 규제개혁 방향 : 균형과 시스템 관점 657
1. 경제 규제의 양면성과 복잡성 657
2. 사회 및 행정규제의 중요성과 애로 662
3. 규제개혁의 전략 666

부 록

제1절 규제개혁 관련 법령 등 672
가. 행정규제기본법 672
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683
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692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696
가. 규제개혁위원회 696
나. 경제분과위원회 701
다. 행정사회분과위원회 706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를

제1장

규제개혁 추진 개요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방향

제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제3절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제 1 절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방향

* 집필자 : 양지연 사무관(Tel. 2100-2275, yang2105@pmo.go.kr)

1. 규제개혁의 의의

규제개혁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 또는 사회 · 경제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정부와 민간이 서로 더욱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당위적인 사회현상이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확립된 이해관계 질서를 재편성하는 속성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득권자의 저항과 반발을 야기하므로 쾌도난마와 같은 해결보다는 갈등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1)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들의 과감한 개혁은 필수이다.

(2) 민간자율과 창의성의 극대화

다양성과 창의성이 높이 인정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투명한 규제제도의 확립을 통해 공정한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불합리한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보건, 환경, 안전 등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규제들을 신설 ·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4) 부정부패 추방

모호한 규제, 과다한 재량을 인정해주는 불확실한 규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5) 규제제도의 국제화

선진국들의 새로운 규제기법들과 규제개혁기법들을 벤치마킹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2. 2010년 규제개혁 추진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을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는 국정최고의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가 잘 할 수 있고 꼭 해야하는 일에 집중하고 민간과 시장이 자유롭게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8년말부터 시작된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맞아 경기침체와 국민고통이 가중되면서, 2009년 정부는 재정투입과 더불어 규제개혁차원에서도 한시적 규제유예,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기 조기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이러한 경기회복 기조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등에 이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규제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방식을 도입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1) 기존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

2010년도는 기존규제에 대한 「개별적 · 부분적 접근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규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방식」을 도입,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그간 추진이 미흡했던 분야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Zero-Base 규제개혁을 통해 핵심규제에 대한 정비를 시도하였다. 연도별 규제개혁 지침에 따라 각 부처에서 발굴 · 추진하는 규제개혁과제의 경우 2010년에는 1,409개 과제를 발굴하였고, 그중 1,037건의 규제를 정비하였다.

(2)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경기회복 기조가 서민생활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활성화, 서민지원을 위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농산어촌 등 현장의 투자장애요인 제거와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에서 총리주재 규제개혁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정부 · 공공기관 등의 채용 · 승진상의 학력규제를 발굴 ·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학력차별 규제를 정비하고, 영세상인 · 일반서민 등 국민생활과 외국인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규정)를 발굴 · 정비 추진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3) 미등록규제 정비 등 선진 규제개혁기반 구축

전 부처 「미등록 규제」를 일제 조사 · 등록하고 불필요한 미등록 규제는 정비하였다. 또 '효력상실형 일몰' 외에 일정주기(원칙 3년)로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규제내용을 재검토 · 재설계하는 '재검토형 일몰'을 신설 · 운용하여 규제의 현실적합성과 유연성을 높였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다양한 규제정보를 알기쉽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규개위 홈페이지를 규제정보포털로 개편하였다.

(4) 규제개혁 성과 점검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강화

2010년에는 정부 출범 2년반을 맞이하여 그간의 각종 규제개혁 성과와 현장 이행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향후 규제개혁의 추진방향 및 동력을 확보하였다. 규제개혁 전략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이해관계인의 폭 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일반국민과 경제단체 규제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토를 강화하였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인 ·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에 대한 이행실태 현장점검도 추진하였다.

2010년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 11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2.7% 상승하였고,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지수(Doing Business 2011)에서도 그 전해에 비해 3계단 상승한 16위로 평가받았다.

제 2 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 집필자 : 양지연 사무관(Tel. 2100-2275, yang2105@pmo.go.kr)
이병호 사무관(Tel. 2100-2276, bhlee@pmo.go.kr)

1. 추진체계 개요

(1) 추진체계의 변화

참여정부에서 덩어리 규제개혁을 담당하던 국무총리 소속 규제개혁기획단과 규제 관련 각종 민원을 처리하던 규제신고센터는 2008년 2월 폐지되었다. 대신,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에 높은 국정우선순위를 두고, 국가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였다('08.3월).

(2) 업무 추진체계

①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실과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 · 강화 규제의 심사, 각 부처가 추진하는 규제개혁과제의 관리 및 평가, 규제 관련 제도의 운영을 담당한다.

②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 설립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기존 규제개혁 중 파급효과가 큰 핵심 정책성 규제나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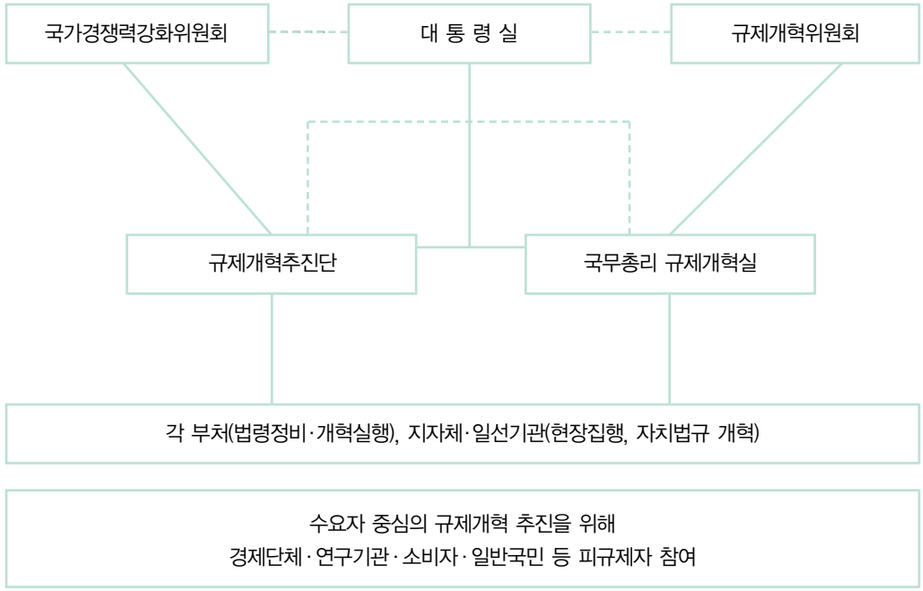
③ 중앙행정기관별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의 신설 · 강화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사를 하며,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개혁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조례 · 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 및 조례 · 규칙 제 · 개정시 사전심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규제개혁 추진체계도]



2.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 구성 및 기능

(가)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및 발전

○ 규제의 신설 · 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 규제의 등록 · 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 평가 등

(다) 구성

국무총리(당연직 위원장), 민간공동위원장, 민간위원 17인, 정부위원 6인 등 총2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명단]

(2010년 12월 기준)

구 분	성 명	현 직
위 원 장	김 황 식	국무총리
	안 충 영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정부위원 (6)	윤 증 현	기획재정부 장관
	맹 형 규	행정안전부 장관
	최 경 환	지식경제부 장관
	임 채 민	국무총리실장
	정 호 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 선 태	법제처장
민간위원 (17)	심 영 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 은 희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강 정 애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 세 형	매일경제 논설실장
	박 덕 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병 진	경상대학교 초빙교수
	이 주 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
	정 진 용	삼성경제연구소 상임고문
	홍 기 택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권 훈 정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 태 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 재 근	서울산업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서 범 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왕 상 한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
	원 명 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이 태 억	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공학부 교수
	정 우 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과 교수

(2) 회의운영

(가) 소집

위원장은 회의일시 ·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매주 개최한다.

(나)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 회의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마) 조정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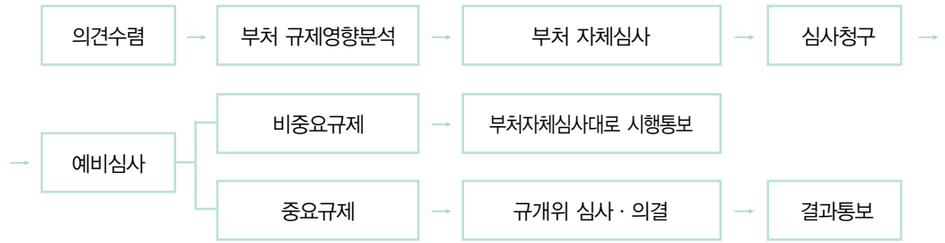
(3) 신설 · 강화규제 심사

① 일반적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 · 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중요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중요규제인 경우에는 심사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기한의 연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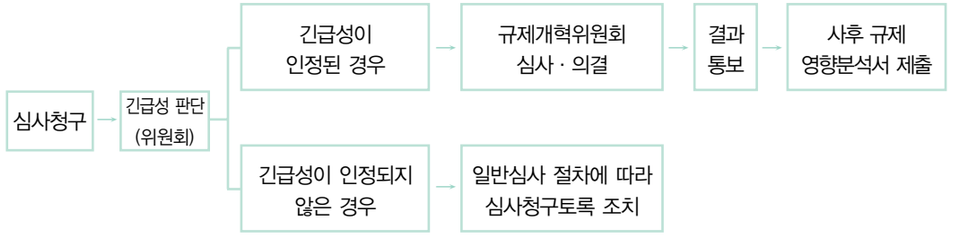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② 긴급한 규제의 경우

긴급한 규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수렴,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평가를 생략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긴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분과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반적인 경우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구성 및 기능

(가)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기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 조정,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 · 연구 및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동안 경제 1 · 2분과위, 행정사회분과위로 3개 분과위로 운영하다가 2008년 정부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08. 4월부터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 등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 운영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8~9인, 정부위원 4인 등 12~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

(2010년 12월 기준)

구분		분과위원	소관부처
경제	민간위원	심 영 섭(위원장) 강 정 애 김 세 형 박 덕 제 이 병 진 이 주 선 정 진 용 홍 기 택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농촌진흥청, 행복도시건설청, 산림청, 해양경찰청(17개 부처)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행정사회	민간위원	홍 은 희(위원장) 권 훈 정 김 태 윤 배 재 근 서 범 정 왕 상 한 원 명 순 이 태 억 정 우 진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23개 부처)
	정부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2) 회의 운영

(가) 회의 소집

분과위원회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나) 의결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회의공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회의 출석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마) 위원회 의결로 의제되는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1)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가) 규제심사위원회

① 기능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규제심사위원회는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의 신설 · 강화 등에 관한 사항 및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구성

규제심사위원회는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0인~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도록 하고 있다.

(나) 규제개혁 총괄부서

① 기능

규제개혁 총괄부서에서는 규제개혁업무 총괄조정,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 평가, 정부내

규제개혁관련 부처간 협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② 구성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이 담당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가) 기능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개혁 추진기구에서는 조례 · 규칙에 근거한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를 수립 · 시행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에 기초하여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다.

(나) 구성

시 · 도, 시 · 군 · 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규제심사위원회는 10~20인 내외의 민간인,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절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집필자 : 이병호 사무관(T. 2100-2276, bhlee@pmo.go.kr)

1. 규제 등록제도 개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등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사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공표하여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사무의 등록 · 공표에 더하여 1999년 이후 등록규제를 전산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rrc.go.kr)를 통해 국민에게 상시 공개하고 있다.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등과 함께 부처별 · 유형별 · 성격별로 분류된 규제통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규제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업종별, 규제활동별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 등록대상 규제사무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동 법령에 근거하는 고시 등(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말한다. 규제의 등록단위는 규제사무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이나 규정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규제사무를 세분하지 않고 단순히 내용이나 절차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상위법령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제의 근거규정이 다른 경우는 유사 · 동일 규제라도 별개의 등록단위로 하고, 동일법령상의 규제조항을 복수의 부처에서 각각 처리하면서(1개기관 허가, 1개기관 협의 등) 국민에게 별도의 신청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규제로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에는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규제들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등록 했던 기존의 기준을 바꿔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로 분리해 등록토록 해, 규제등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들에게 더욱 정확한 등록규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3. 규제사무의 등록 현황

이와 같은 규제사무 등록기준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제사무를 등록토록 하였는 바, 등록규제 수는 규제등록 초년도인 '98.8월 총 10,717건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규제개혁 작업으로 2008년말에는 총 5,186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2009년 규제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의 법령상 미등록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통해 2,276건의 미등록규제를 발굴 · 등록한 결과, 2010년말 기준 7,055건(주규제 기준)이 등록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등록규제수]

(2010.12.31 기준)

부처명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경찰청	122	97	97
고용노동부	321	304	221
공정거래위원회	161	115	116
관세청	32	30	36
교육과학기술부	494	488	247
국가보훈처	52	24	16
국무총리실	4	0	0
국민권익위원회	1	1	2
국방부	22	22	9
국세청	9	9	9

부처명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국토해양부	1,574	1,634	929
금융위원회	708	707	759
기상청	16	16	8
기획재정부	124	124	113
농림수산식품부	675	641	416
농촌진흥청	10	10	5
문화재청	49	50	33
문화체육관광부	222	238	160
방송통신위원회	195	133	138
법무부	116	69	72
병무청	3	3	6
보건복지부	536	535	616
산림청	76	76	67
소방방재청	133	110	108
식품의약품안전청	110	99	86
여성가족부	62	59	17
외교통상부	19	20	20
중소기업청	88	86	35
지식경제부	424	407	295
통계청	5	5	3
통일부	18	16	20
특허청	30	29	17
해양경찰청	41	41	37
행정안전부	208	153	146
환경부	395	389	327
전체	**7,055**	**6,740**	**5,186**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를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개혁 과제 발굴 · 개선)

제1절 각 부처 규제개혁 과제 발굴 · 개선

제2절 사업자 등 법정교육제도 합리화

제3절 중소기업 애로해소 추진

제4절 농산어촌 현장애로 및 규제개선

제5절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

제6절 외국인 차별 ·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규제 합리화

제7절 국민생활불편 · 사업환경 개선

제8절 식품산업규제 합리화

제9절 식 · 의약품 분야 선진화

제10절 전기자전거 등 기술관련 규제 합리화

제11절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렴 개선

제 1 절

각 부처 규제개혁 과제 발굴 · 개선

* 집필자 : 양지연 사무관(Tel. 2100-2275, yang2105@pmo.go.kr)

1. 개요

2010년 규제개혁방향은 경제회복 기조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활성화, 서민지원, 미래산업 대비 등을 위한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이러한 방향을 담은 2010년 규제개혁 추진지침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09.12.14)하여 각 부처에 시달하였으며, 동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규제개혁과제는 당초 연초에 발굴한 1,071개 과제에서 경제단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누적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말까지 발굴된 규제개혁과제는 1,409개에 달했다.

과제발굴은 현장점검, 전경련 건의과제, 경제 5단체 건의과제 등 수요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루어졌다. 경제활성화 및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 발굴토록 하였으며, 규제의 건수 보다는 규제 준수비용 절감, 시장친화적 규제대안 및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두어 규제를 발굴하였다.

개선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기업과 국민입장에서 부담을 주는 핵심적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파악된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토록 하였는 바, 존치필요성이 낮은 과제는 폐지하되 부작용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존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규제 품질을 개선토록 하였다. 또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규제개혁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규제개혁 수혜자 단체와의 협조, 효과적인 교육 · 홍보 등을 추진토록 하였다.

2. 규제정비 주요 내용

(1) 일자리 창출 및 미래동력 확충

○ 스포츠경기장에 문화 · 수익시설 등의 복합적 설치를 허용하여 스포츠산업 민간투자를 활성화('10.3,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에 필요한 제도정비 마무리로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 기반 마련('10.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 IPTV사업자허가 · 승인 심사비용 부담 폐지('10.8, 고시 개정), 호텔 등급결정 신청의무의 예외 인정(가족호텔 · 호스텔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0.8) 등으로 사업자 부담완화로 민간투자 촉진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충전시 전기요금 반영방안 마련(약관 개정, '10.8), 도로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도로법 시행령, '10.9) 등 성장기반 확충

* 도로 유휴지를 이용하여 도로(총 연장 10.4만km)관리상 소요되는 전력 생산 가능

(2) 서민 ·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불편 해소

○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완화로 취약계층 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10.2,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수혜대상이 34천명 증가(78천명 → 112천명)

○ 온라인 사증신청제도 도입('10.2, 지침 개정), 공인인증서를 통한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10.2, 병무훈령 개정) 등으로 민원편의 제고

○ 이동식 자동차 검사제도* 시행으로 국민부담 경감('10.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이동식 자동차 검사제도로 벽 · 오지 주민 등 연간 5,000여명 수혜기대

○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마련(주택법 시행령, '10.7),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기관을 시 · 도에서 시 · 군 · 구로 확대(시스템 개선, '10.7)하여 민원인 편의 제고

(3) 중소기업 부담경감 및 전통주산업 활성화

○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국민연금법 시행령, '10.8), 저소득층 임신부 진료비 지급금액 확대(월 20→30만원, 고시, '10.9) 등 취약계층 복지 강화

* 적용제외 시간제 근로자 기준 : 월 80시간 미만 → 월 60시간 미만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한규정을 완화하고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우대지원 ('10.2, 중소기업융자사업추진지침 개정)

○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분쟁 등 조정 범위 확대(종합공사 70억이상 → 30억이상, 지방계약법 시행령, '10.7)로 영세 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

○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를 허용하고 전통주 제조장 직매장 시설기준을 폐지하여 전통주산업을 육성('10.3,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 기존 우체국 통신판매를 허용해 왔으나, 이는 전체 판매량의 7% 수준 불과

제 2 절

사업자 등 법정교육제도 합리화

* 집필자 : 이정연 사무관(Tel. 2100-2316, koreaeco@pmo.go.kr)

1. 추진개요

'09년 기준 1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 법령에 따라 각종 영업자 ·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93건의 법정교육 제도를 운영중임

영업 · 종사자 교육은 대국민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 ·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한 면이 있으나, 일부 교육은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교육주기 · 대상 등이 과도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 · 안전 및 전문성 확보' 범위내에서 의무교육을 대폭 정비, 교육내용 ·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 제고

2. 검토기준

가. 교육의 필요성 : 원칙적으로 국민의 건강, 안전확보를 위한 교육은 인정하되, 대상자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는 교육은 불인정

나. 교육방식의 적절성 : 법령 · 이론 및 정신교육 위주 교육은 지양하거나 대체수단 활용하고, 교육시간과 집합교육을 최소화하고 인터넷 교육 등을 활용

다. 교육기관의 경쟁성 : 독 · 과점적 지정 · 운영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되, 경쟁기관 필요성 및 실효성을 고려

3. 과제별 주요 개선내용

가.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의무교육 폐지

○ 민원다발교육으로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대상 교육명(부처명)	대상인원(명)	개선안	조치사항
① 운수종사자 보수교육(국토부)	200,000	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담을 완화 또는 면제하되, 법규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자체 여건에 맞게 교육대상을 한정(법규 미위반자에 대한 정기교육 폐지효과)	교육지침 시달
② 노래연습장업자 교육(문화부)	17,077	신규 및 정기 의무교육 폐지 (불참과태료 폐지, 시군구가 필요시에만 실시)	법률 개정

○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나, 별도의 품질관리인을 두어 필요성이 크지 않은 교육

대상 교육명(부처명)	대상인원(명)	개선안	조치사항
③ 동물판매 · 장묘업 종사자 보수교육(농림부)	800	폐지	법률 개정
④ 정수기 제조업자 교육(환경부)	50		시행규칙 개정

나. 교육주기 완화 또는 교육시간 단축

○ 잦은 교육주기(연 1회 등)를 완화

대상 교육명(부처명)	대상인원(명)	개선안	조치사항
① 제과점영업자 교육(복지부)	12,243	1년 1회 → 2년 1회	법률 개정
② 유흥주점영업자 교육(복지부)	29,000		
③ 유흥주점종사자 교육(복지부)	22,500		
④ 단란주점영업자 교육(복지부)	13,000		
⑤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행안부)	30,000	1년 1회 → 3년 1회	시행규칙 개정
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품질관리인 보수 교육(식약청)	70	1년 1회 → 2년 1회	시행규칙 개정
⑦ 정수기제조업 품질관리인 교육 (환경부)	50	1년이내 1회 → 2년이내 1회	시행규칙 개정

○ 교육시간 단축

대상 교육명(부처명)	대상인원(명)	개선안	조치사항
⑧ 공중위생영업자 교육(복지부)	153,000	년 4시간 → 3시간	시행규칙 개정
⑨ 소독업무 종사자 교육(복지부)	1,900	3년에 16시간 → 8시간	시행규칙 개정
⑩ 중소기업 지도사 교육(중기청)	170	신규교육시 120시간 → 100시간	시행령 개정

다. 온라인 교육방식 확대

○ 집합교육 위주의 교육방법 대신, 교육내용에 따라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거나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을 병행 운영

대상 교육명(부처명)	대상인원(명)	개선안	조치사항
① LPG차 운전자 교육(지경부)	170,000	온라인교육으로 전환 또는 병행 (실습교육은 제외)	시스템 도입
② 소음 · 진동, 대기, 수질환경관리인 교육(환경부)	30,000		시스템 도입
③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행안부)	16,000		시스템 도입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노동부)	4,000		고시 개정
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노동부)	2,200		고시 개정
⑥ 저수조청소업 종사자 교육(환경부)	6,000		시행령 개정
⑦ 하수도기본관리자 교육(환경부)	5,000		시스템 도입
⑧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소지자 교육(교과부)	500		고시 개정
⑨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방사능 방재교육(교과부)	350		시스템 도입
⑩ 비파괴검사 종사자 자격재교육(교과부)	300		시스템 도입

라. 우수영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기타 개선

○ 평가 · 점검 등을 통해 우수영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교육면제 등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 교육의 실효성 제고

대상 교육명(부처명)	대상인원(명)	개선안		조치사항
① 산업안전보건교육(노동부)	400만 추정 (최소20만 수혜예상)	우수영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무재해업체에 대해 정기교육시간 50%경감 (년12~24시간 → 6~12시간)	고시 개정
② 식품위생 HACCP 교육(식약청)	4,000		보수교육 1회 면제	고시 개정
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교육 (행안부)	1,000		보수교육 1회 면제	시행규칙 개정

○ 대면 집합교육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집합교육의 시기를 조정

대상 교육명(부처명)	대상인원(명)	개선안	조치사항
④ 온천종사자 보수교육(행안부)	400	집합교육의 시기를 온천협회총회 또는 이사회에 맞추어 집합교육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고시 개정

○ 특정 협회 · 단체 등에서 독점하고 있는 교육의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타 기관이 교육 실시를 희망할 경우 복수화 허용

대상 교육명(부처명)	대상인원(명)	개선안	조치사항
⑤ 수질환경관리인 교육(환경부)	12,000	교육기관 복수화 근거마련	시행규칙 개정

제3절

중소기업 애로해소 추진

* 집필자 : 신재광 사무관(Tel. 2100-2283, shinjk@pmo.go.kr)

1. 추진배경

○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경제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관련 규제 선진화 및 애로해소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주재하에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 개최

○ 중소기업 애로호소가 집중되고 제도개선시 투자 및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3개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개선 추진

① IT 기술변화와 선진국 수준에 못미치는 규제로 인해 중소업체의 신규사업 진출기회 제약 등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진입 제한적 규제

②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우수한 제품의 유통 및 판로 개척 등 전반적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관련된 분야

③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정부지원에 있어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신고기준, 업종분류 조정 등 기업부담 완화 과제

2. 과제별 주요 개선내용

가. 신규사업 허용,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1) 스마트폰 등 전자금융거래시 다양한 인증기술 허용

○ (현황)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으로 인해 중소 쇼핑몰, 벤처기업의 국내외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비지니스 제약

– 국내 쇼핑몰은 공인인증서 사용으로 인해 결제불편 등 외국 경쟁 쇼핑몰에 비해 경쟁여건 불리 등 애로

– 중소 쇼핑몰 등은 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용 전자결제 S/W 개발부담 등으로 모바일 사업 진출 제약

○ (개선) 금융기관 등이 거래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인인증서 뿐 아니라 다양한 인증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2) 소규모 맥주업의 제조시설 규모 제한 폐지

○ (현황) 미국, 유럽 등 외국은 소규모 맥주제조자를 생산량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시설 상한선(5kℓ~25kℓ)으로 제한

– 타 주류와 달리 맥주만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시설 상한선을 명시하여 중견 맥주 제조사의 출현과 산업 다양화를 저해

○ (개선) 소규모 맥주제조사의 제조시설 상한선 제한 폐지 추진, 진입장벽을 낮춰 중소 맥주제조기업의 창업과 신규진입을 촉진

(3) 지역 중소업체의 관급 도로공사에 진출 확대

○ (현황) 한국도로공사는 대형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5인으로 제한, 지역 중소업체의 공사 참여기회 제한

○ (개선) 고속도로공사 사업 입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를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

(4) 엔지니어링사업 신고 기준완화 및 사업비 현실화

○ (현황) 엔지니어링사업 신고기준은 15개 기술부문과 93개 전문분야의 인력보유 의무화,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부담 및 공공입찰 제약

–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은 사업대가 기준을 실비대비 80%이하의 금액으로 책정, 중소기업 등의 재무구조 악화

○ (개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엔지니어링사업 신고기준 통합(61개), 실비정액 기준 적용 추진

나. 투자 촉진 및 유통 지원 등 경영환경 개선 과제

(1) 중소기업을 위한 APT형 공장의 토지거래허가 예외 인정

○ (현황)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는 중소기업은 4년간 처분(매매 · 임대)제한 등 이용의무 발생

–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에 따라 이전, 임대, 확장 등이 자주 발생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나, 매매 · 임대 곤란으로 기업활동에 큰 제약

○ (개선)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는 중소기업 등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예외를 인정, 임대 · 매매 등 처분제한 의무 완화

(2) 그린벨트 해제지역내 중소유통업체 물류센터 건립 지원

○ (현황) 중소유통업자들은 도심 내 지역에 고비용 물류센터를 운영, 경쟁력 저하, 영세 소매점 가격경쟁력 동반 저하

– 특히 경인지역의 경우 지가 등 유통단지 조성 비용이 높아 중소유통업체 물류센터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공영개발 계획 수립시, 토지 우선 할당, 도시관리계획 신속 심의 등 지원

(3) 중소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배정규모 확대

○ (현황) 중소 제조업종 기업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나 외국인 근로자 배정비율이 낮아, 인력수급상 어려움 호소

○ (개선) 기존 외국인 배정 쿼터 내에서 일반, 제조업 분야 배정비율 증대

(4) 중소기업의 성능인증 배관자재 공공구매 촉진

○ (현황) 중소기업 성능인증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화에도 불구, 공공기관의 소극적 구매관행 등으로 구매 활성화 미흡

– 성능인증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인증제도이나, 공공기관의 소극적 구매관행 등으로 우선구매 효과 저조

○ (개선) 공공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성능인증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배관자재 성능인증 제품을 시방서나 설계지침에 반영 추진

다. 영세사업자 부담경감을 위한 맞춤형 규제 정비

(1)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 (현황) 영업정지 등의 과징금 산정기준은 연간 매출액 하한선은 3천만원(일 8만원 부과)이나, 매출액 2천만이하 소상공인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자에게 불합리

○ (개선) '매출액 2천만원 이하(일 5만원)' 구간 신설

(2) 선박용 구난식량 등에 대한 식품검사 면제

○ (현황) 형식승인을 받은 구난식량 또는 구난식수 수입시, 수입식품검사를 추가적으로 받도록 의무화

– 구난식량의 경우 시중에 유통가능성이 낮고, 형식승인의 안전성 검사를 받음에도, 재차 검사를 받도록 하여 시간 및 비용 소요 과중

○ (개선)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 구난식량의 수입식품검사 면제

(3) 가맹사업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한 연장

○ (현황)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이 사업연도 종료(12. 31일)후 10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법인결산일(3.31기한)과 중첩

– 가맹사업자는 변경등록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변경 위탁하는 등 비용부담 및 불편

○ (개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한을 120일로 연장토록 규정 개정

(4)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산정기준 합리화

○ (현황) 산재보험료율 산정기준은 업종변화, 작업 위험도 등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고 있어 업종별 보험료 부담에 불합리

○ (개선) 산재보험료율 업종분류를 표준산업분류에 부합하도록 개선

제 4 절

농산어촌 현장애로 및 규제개선

* 집필자 : 옥선경 사무관(Tel. 2100-2296, skjade@pmo.go.kr)
김기영 사무관(Tel. 2100-2298, kky21@pmo.go.kr)

1. 추진개요

가. 추진배경

○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FTA 등으로 우리 농 · 림 · 어업 / 농 · 산 · 어촌은 근본적 변화에 직면한 상황이며, 더욱이 '이상기후에 따른 냉해 등 농작물 피해', '구제역 발생', '쌀값 하락' 등으로 3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저탄소 녹색시대에 우리 농림어업은 체질전환 및 녹색산업화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이 필요하며, 이에 농림어업 관련 제도 및 규제 측면에서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농림어업인 불편해소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코자 함

나. 과제 선정기준

○ 농림어업의 발전을 옥죄던 규제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①농업 · 농촌 ②수산 · 어촌 ③식품 ④산림 분야로 세분하여
– 농산어촌 현장의 농림어업인 · 업계 등의 애로개선 과제
– 농림어업 및 식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관련 과제
–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 관련 과제
– 농지 · 산지 및 수산자원의 효율적 활용 관련 과제에 집중

○ 특히 그간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아 간과되기 쉬웠던 농산어촌 현장의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 발굴에 주력

2. 세부 개선과제

가. 농업 · 농촌

(1)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

○ 경작이 어려운 농지(영농여건 불리지역)의 경우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농지전용절차도 허가에서 신고로 간소화

○ 2011년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을 확대하여 시군별 1개의 매입 품종을 2개 품종으로 확대

○ 개발제한구역 내 주말농원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쉼터(원두막)의 설치면적을 2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신고사항으로 허용

(2) 농산물 생산 · 유통비용 절감 등 관련 제도 합리화

○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견본거래*를 위한 보관 · 저장시설의 위치제한 폐지(도매시장 개설자의 개설구역내 규정 폐지) 및 보관 ·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면적기준 완화(330제곱미터 → 165제곱미터), 도매시장 사용료 인하(거래액의 0.5% → 0.3%)

* 견본거래 : 도매시장에 반입하지 않고, 견본만을 반입하여 거래하는 제도로 '09.6부터 실시

○ 버섯재배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①버섯재배 원료 수입시 신고절차 간소화(재활용 신고 면제, 폐기물 수집 · 운반 차량 이용 의무 면제 등), ②양송이 재배용 복토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③팽이와 양송이버섯의 표준등급규격 기준 완화(4단계 → 3단계)

○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작목별 온도설정기준을 현실화(고추 · 가지 15℃ → 16℃)하고, 신규로 설정(망고, 아보카도 등)할 필요가 있는 작물을 조사하여 추가 반영

(3) 축산물 생산 · 유통비용 절감 등 관련제도 합리화

○ 낙농가 희망시 목장형 소규모 유가공공장의 자가 원유사용을 허용

○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지원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양돈분야 사육농가에 대한 배점기준(40점)을 5,000두에서 3,000두로 완화 및 수혜대상 확대로 양돈산업 발전 기대

○ 일정규모 및 시설 등을 갖출 경우 축협 외 지역단위 생산자단체에도 가축시장 개설 허용

○ 닭, 오리 등에도 법정전염병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폐사피해를 보상하는 피해구제 보험 상품 개발

(4) 농자재(농기계, 농약, 종자 등) 관련 제도 및 규제 합리화

○ 농용로더(사료운반용 기계) 구입시 농기계구입 융자지원대상을 현행 2톤에서 4톤미만까지 확대

○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를 확대(현재 150개소, '12년까지 시군별 2~3개, 총 220개소 목표)

○ 농약 수입업자의 등록요건 중 화학농약 보관창고 면적기준을 완화(165제곱미터 → 99제곱미터)

○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 승인대상을 국가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으로 한정하여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 승인제도 개선

(5) 기타 농산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복지 · 생활여건 개선

○ 감귤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를 현실화 및 재난복구비 지원대상에 키위(참다래) 품목을 추가

○ 농촌출신 대학신입생의 등록금 납부시기에 맞춰 학자금을 대출하도록 신청시기를 앞당겨(2월→1월) 등록금 납부 전에 융자되도록 추진

○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어업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100% 출자가 가능하도록 출자규모 제한 폐지

나. 수산 · 어촌

(1) 수산업 종사 관련 규제 합리화

○ 어선등록 전산망과 주민등록 전산망을 연계하여 별도의 주소지 변경 신청 없이 변경등록 처리

○ 어선 공간 확대를 위해 어선 선미부, 상부 구조물 연장증설 부분(물받이)에 대해 어선검사 인정 허용범위를 설정

○ 5톤 미만 해녀운송어선의 최대승선정원을 상향 조정(10인→약 25명)

(2) 양식업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규제완화

○ 미역과 다시마의 복합양식어장의 시설비율을 어장면적대비 15~20%까지 확대

○ 복합양식어업면허 양식물의 종류를 추가하여 '전복+해삼', '어류+전복'을 허용

○ 멍게, 피조개, 홍합의 신규어장 개발을 허용하는 등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품종을 완화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선박계류시설, 해양레저시설 설치를 허용

다. 식품

(1)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규제완화

○ 식육가공품 판매장에서 돼지 뒷다리 분할판매를 허용

○ 건강기능식품의 전면위탁생산을 허용

○ 수산물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산물 가공업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전환

(2) 식품의 위생 및 안전 검사 관련 규제완화

○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1월마다 1회 이상'에서 '6월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

○ 축산물 HACCP* 지정업체에 대한 작업장 정기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수수료 징수 없이 연1회 이상 HACCP 적용 작업장에 출입하여 준수여부 등을 조사 · 평가

* HACCP(Hazard Ana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 매년 정기검사를 통해 인증업체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 관리가 가능하므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유효기간(1년) 설정제도를 폐지

○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및 축산물 HACCP 평가항목 중 유사항목에 대하여는 One-Stop 심사토록 유사항목 통합

(3) 식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체계 합리화

○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주류를 학술연구 목적으로 시험제조하는 경우 제조면허 대상에서 제외

○ 과실주, 약주 외에 탁주, 청주를 주류 품질인증 실시제품으로 확대

○ 100제곱미터 이하 음식점에도 쌀 · 김치류 등의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고 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실시

○ 밀가루와 같이 입자크기에 따라 쌀가루를 제조할 수 있도록 입도(grain size) 조절형 쌀가루 기술개발 추진

※ 밀가루 등급 :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용도에 따른 분류)

라. 산림

(1) 산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

○ 양안 5km 이내에 분수령(分水嶺)이 있는 경우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분수령 밖의 지역은 제외(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대상 축소)

○ 산림 벌채시 최대 벌채면적을 상향(30㏊ → 50㏊)하고, 수림대 존치의무 대신 ㏊당 일정본수(50본) 이상 남기는 것으로 변경

(2) 산림 보존 · 이용 관련 경제적 부담완화

○ 농림어업인,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주택, 농기계창고, 집하장 등의 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수수료 면제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시기를 사업 착수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고, 규모가 1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3년 이내 분할 납부토록 개선

○ 국유림 사용료를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증가상한액을 9%로 규정

○ 도로 신설로 토석채취 제한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도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채취하는 것을 허용

제 5 절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

* 집필자 : 고지숙 사무관(Tel. 2100-2312, jiko12@pmo.go.kr

1. 추진개요

가. 추진배경

○ 학력차별 완화를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된 학력지상주의를 해소하고, 과열 사교육 같은 여러 교육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능력중심사회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추진

나. 추진경과

○ 학력규제사례 1차 현황 조사('10.3~4월)를 통해 정부부처 · 공공기관의 채용 · 승진 · 보수 등에서 학력에 의한 진입 · 차별규제 294건 발굴

○ 현황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학력규제 유형별 개선의 기본방향을 제시('10.4월,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안)

○ 학력규제사례 2차 현황 조사('10.5월)를 통해 정부부처 · 공공기관의 학력에 의한 진입 · 차별규제 최종 316건 발굴하고 개별국가자격 응시요건 중 학력규제 58건 발굴

○ 사례별 세부 학력규제 개선방안 및 학력차별 완화에 도움이 되는 관련 제도적 규제개선 사항을 마련('10.7월,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

2. 세부 개선과제

가. 공공부문 인사운용 관련 학력규제 개선

○ 정부 · 공공기관의 채용과 관련하여 학력에 따른 전문성이 필요 없는 경우 학력규제를 폐지(104건)하고, 승진 · 보수 산정에서의 학력가점을 폐지(92건)

○ 학력에 따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는 학력규제를 허용하되, 필요최소학력을 전문학사 이상으로 하향완화(91건) 하고, 관련 자격증 · 경력 등을 병행하도록 조치

○ 공공부문내에 남아있던 채용 · 승진 등에 관한 학력규제사례 316건중 196건(62%)이 폐지되고, 91건(28.8%)이 전문학사 이상으로 완화

나. 자격증 관련 학력규제 개선

○ 자격증이 학력과 구분된 사회진출의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응시요건상의 학력요건을 개선

○ 기술 · 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자격요건에서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한 학력우대조치를 우선 폐지하고, 서비스분야(24개 자격)에 학력규제가 남아있던 9개 자격중에서 자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2개 자격(임상심리사 1,2급)을 제외한 7개 자격의 학력규제를 폐지

○ 개별국가자격(132건)중 학력규제 보유자격(58건)의 경우 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미 학력규제가 많이 완화된 상태로 3건을 폐지, 1건을 완화

다.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제도적 규제 개선

○ 전문계고 졸업자중 취업자에 대해 2012년부터 기업규모 및 업종 구분 없이 입영연기제도 확대

○ 일부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 명목으로 가정환경조사서에 부모학력기재란을 그대로 사용하여 학력차별의 원인이 되므로 가정환경조사서에 부모의 학력을 묻는 일이 없도록 교과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일선학교에 시달('10.7)

○ 정부부문에 한하여, 전문계 고교 또는 전문대 졸업자중 성적우수자를 학교장 추천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시행

○ 전문계 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2011년 부터 국립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확대시행토록 유인을 제공하고, 특별전형 비율을 현재 정원 외 2%에서 2013년부터 4%로 확대

제6절

외국인 차별 ·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규제 합리화

* 집필자 : 이종성 사무관(Tel. 2100-2320, ljss1@pmo.go.kr)

1. 추진배경

○ 2009년말 현재 체류 외국인수는 약 117만명(주민등록인구 대비 2.35%)으로 우리나라도 다인종 · 다문화 사회로 전환 추세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추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체류 외국인(천명)	747,467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인구대비(%)	1.53%	1.86%	2.16%	2.34%	2.35%

○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비례하여 생활환경 만족도도 상승하고 있으나, 의료 · 신용카드 · 여가/문화 · 교육 · 주거 등 영역에서는 여전히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KOTRA)]

▶ 생활환경 전반적 만족도('09) : 만족(69.7%), 보통(27.0%), 불만족(3.3%)
('07) : 만족(26.5%), 보통(46.2%), 불만족(27.3%)

▶ 불만족도 높은 분야('09) : 의료(59.3%), 신용카드(54%), 여가/문화(52.3%), 교육(51.3%), 주거(51.3%)

○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해 외국인의 입장에서 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발굴, 합리화하는 노력 필요

⇒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차별이나 불편을 느끼는 일상생활의 규제를 합리화하여,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환경 조성과 국가품격 제고 도모

2. 과제선정 기준 및 방법

가. 과제선정 기준

○ 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 · 지위 · 생활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과제를 중심으로 대상과제 선정

※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고충, 민원 해결은 인베스트 코리아(지경부)에서 처리

○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도 대상에 포함

나. 과제선정 방법

○ 외국인의 입장이 반영된 과제 발굴

– 외국인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발굴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AMCHAM, EUCCK 등으로부터 제안 접수

–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가족 ·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과제 발굴

– 기타 정부부처 · 지자체의 건의과제 접수

○ 100여건의 발굴 과제 중, 소관부처 검토를 거쳐 12건 최종 선정

– 출입국 절차 · 지위 개선 과제 : 6건

– 생활환경 개선 과제 : 6건

3. 세부 추진과제

가. 출입국 절차 · 지위 개선 과제

(1) 국적 취득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반납기간 연장

○ 등록 외국인이 국민이 된 때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 과태료 : 10~100만원

–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경우, 통상 14일 후에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어 외국인등록증 반납기간을 경과, 과태료 납부 등 불편 발생

※ '09년 과태료 처분 213명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1호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때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 배우자 · 부모 또는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외국인등록증에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반납기간을 주민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10년 하반기, 법무부)

(2) 정신지체 장애인 귀화 필기시험 면제

○ 신체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구분에 따라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현실적으로 곤란

– 귀화 필기시험 면제 대상은 미성년자와 60세 이상의 자 등이나,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면제규정은 없어 장애인 인권보호 소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미흡이라는 문제 제기

⇒ 지능지수가 70이하인 자 등의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근거 신설

☞ 국적업무처리지침 개정('10년 하반기, 법무부)

(3) A3(협정) 비자 소지자 희망시 외국인등록

○ A3(협정) 비자 소지자는 외국인등록 면제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본인 확인 곤란으로 국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가입, 온라인 쇼핑 등 활동에 제약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이나,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자와 그의 가족은 외국인등록 면제

⇒ A3 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외국인등록을 받아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 '10년 3월 현재 A3(협정) 비자 소지자 47,374명(미군 · 미군속 등) 체류

☞ 출입국관리법 개정('10년 하반기 관계부처 의견조회 후 '11년까지, 법무부)

(4) E2(회화지도) 비자 소지자 계약기간과 비자기간 일치

○ 회화지도(E2)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강의 준비 등을 위해 미리 입국할 경우, 입국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체류기간이 먼저 종료

–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하기 위해 별도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 발생

⇒ E2 비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시 계약기간 만료일 익월까지 체류기간 부여

■ 사증발급인정서 제도
사증의 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해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국내에 있는 초청인 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사무 소장이 사증 발급 대상자에 대해 사전 심사를 한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 재외 공관장이 그 인정서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제도

※ '09년 E2 비자 소지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10,967건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에 근거하여 개선조치('10년 상반기, 법무부)

(5) E2(회화지도) 비자 소지자 직장이동 시 반복적 서류제출 지양

○ 회화지도(E2) 사증 소지자가 근무처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기존 제출 서류와 관계없이 모든 서류를 제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허비

– 특히,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는 최초 제출 이후 계속 한국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다시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

■ E2 비자 발급신청 첨부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 초 · 중등학교 회화지도 종사 예정자 : 학위증 또는 재학증명서, 시 · 도교육감 등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 초청장 또는 고용추천서
– 그 밖의 기관 · 단체 회화지도 종사 예정자 : 학위증 사본, 자국 또는 거주국의 범죄경력증명서, 건강확인서, 고용계약서, 학원 또는 단체 설립 관련 서류, 신원보증서, 성적증명서

⇒ E2 비자 소지자가 근무처를 옮기기 위해 동일한 비자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 이미 검증된 서류(범죄경력증명서, 학위증 및 성적증명서, 건강확인서)는 제출 생략 가능
단, 출국 후 1개월 이내 입국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 '09년 E2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13,384건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개정('10년 상반기, 법무부)

(6) F5(영주) 비자 발급 시 한국어 검정 개선

○ F5(영주) 비자 발급 시 3등급(전체 6등급)의 한국어 검정서가 필요한데, 기본적 의사소통 지식이 있는 장기체류 사업가에게도 필기시험이 어렵고, 체류기간에 대한 배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

⇒ 5년 이상 체류자 영주자격 신청 시, 법 위반 사실이 없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어 능력(3급 → 2급) · 최저소득기준(1인당 GNI 3배 → 2배, '08년 기준 4,240만원) 완화, 10년 이상 체류자는 인터뷰 심사로 대체

※ '09년 F5(영주자격) 소지자 22,446명

☞ 영주자격 부여대상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10년 하반기, 법무부)

나. 생활환경 개선 과제

(1) 인터넷 상에서의 각종 사이트 가입 불편 개선

○ 현재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본인확인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으나, 본인확인서비스의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영세 인터넷 기업들은 외국인 가입에 제한

※ 외국인 본인 확인 사이트별로 연 50만원의 수수료 부과

⇒ 외국인등록번호 · 여권번호로 온라인 가입이 가능토록 외국인 본인확인 서비스 무료 제공, 외국인 대상 홍보 강화

☞ 외국인 인터넷 본인확인서비스 무료제공 시범 서비스 실시 및 홍보물 제작 · 배포('10년 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

(2) 케이블 TV 가입 불편 개선

○ 외국인의 케이블 TV 가입은 실명 확인(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제출) 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가입이 가능 하나, 소규모 케이블 TV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의 가입을 제한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연계, 실태조사를 통해 가입절차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 현재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케이블TV(34개사)에서 모든 케이블 TV사업자(96개사)로 확대

☞ 외국인 케이블 TV 가입절차 가이드라인 마련('10년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3) 외국인 성명 기입 관련 행정서식 개선

○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공기관 서식의 성명 기재 공간을 한국인 성명(3~4자) 기준으로 할애하여, 이름이 긴 외국인의 경우 성명을 온전하게 기재하기 어려운 불편 존재

⇒ 외국인 전용 또는 공용 서식의 '성명' 란에 성명을 온전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영문 30자 이상 기입 공간 확보

☞ 사무관리규정 제73조 개정('10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4) 한국어학당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당한 대우 개선

○ 한국어학당에 대한 지도 · 감독 규정 미비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비, 기숙사 이용료 반환과 관련된 유학생 불만 사례 증가

■ 사례
- ○○ 공업대학 : 입학 6개월 이후에 타 대학 한국어 어학원으로 전학 가능, 전학 시 등록금은 최대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환불, 기숙사비는 1년 기준으로 환불 없음
- ○○ 여자대학 : 한국어 연수 중 대학진학 시 학비 100% 반환, 연수기관 중도 이동 시 반환 없음, 기숙사비는 개강 전 100% 반환, 개강 후 반환 없음

⇒ 한국어교육기관 설치 및 지도 · 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후, 국내외 대학 어학원 사례조사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작성

※ 140여개 대학에서 한국어교육기관(과정) 운영 중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 작성('10년 하반기, 교육과학기술부)

(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 외국인 선정기준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는 난민(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근거)으로 인정된 자거나 대한 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 한정

–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포함되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2
-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임신 중인 자,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포함

※ 연간 1,000여명 보호대상에 추가 포함 추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10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6) 감리회사 외국인 임원 · 감리원 등록 간소화

○ 감리회사 등록신고시 임원 및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국가정부 등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에 대해 우리나라 영사 확인을 거쳐 제출하도록 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3호
- 법인의 임원 또는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 또는 법 제 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외국공문서에 대한 재외공관의 인증요구를 폐지하는 국가간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우리나라 영사 확인 서류를 갈음하도록 근거 마련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0년 상반기, 국토해양부)

4. 향후 추진계획

가. 추진일정

○ 시행령 · 시행규칙 · 지침 개정사항은 예정된 일정대로 완료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조속히 국회 제출

○ 기타 실태조사 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 중 완료

나.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활용, 과제 추진상황 관리 및 공개

○ 모든 과제에 대해 과제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 과제담당 부처는 과제별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 · 공개

다. 추진상황 점검

○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혁평가에 반영

[과제 개요 및 조치사항]

연번	과제 개요	조치사항	소관부처
출입국 절차 · 지위 개선 과제			
1	○ 국적 취득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반납기간 연장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반납,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외국인등록증 반납기간을 주민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2	○ 정신지체 장애인 귀화 필기시험 면제 귀화 필기시험 면제는 미성년자와 60세 이상의 자 등이나,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면제규정이 없어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문제 제기 ⇒ 지능지수 70이하인 자 등의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 근거 신설	국적업무처리 지침 개정	법무부
3	○ A3(협정) 비자 소지자 희망 시 외국인등록 A3 비자 소지자는 외국인등록 면제로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인터넷 사이트 가입, 온라인 쇼핑 등에 제약 ⇒ A3 비자 소지자라도 본인 희망 시 외국인등록 허용	출입국관리법 개정	법무부
4	○ E2(회화지도) 비자 소지자 계약기간과 비자기간 일치 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강의 준비 등을 위해 미리 입국할 경우 계약기간보다 체류기간이 먼저 종료,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 발생 ⇒ E2 비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시 계약기간과 일치하도록 체류기간 부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에 근거, 개선조치	법무부
5	○ E2 비자 소지자 직장이동시 반복적 서류제출 지양 E2 비자 소지자가 근무처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기존 제출한 서류와 관계없이 모든 서류 제출 ⇒ 국내에 체류하면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제출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개정	법무부
6	○ F5(영주) 비자 발급시 한국어검정 개선 F5 비자 발급시 3등급의 한국어 검정서가 필요하나, 필기 시험이 어렵고 체류기간에 대한 배려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 5년 이상 체류자 한국어능력(3급→2급) · 최저소득기준(1인당 GNI 3배→2배) 완화, 10년이상 체류자 인터뷰 심사로 대체	영주자격 부여 대상 및 체류 관리 업무처리 지침 개정	법무부

연번	과제 개요	조치사항	소관부처
생활환경 개선 과제			
1	○ 인터넷 상에서의 각종 사이트 가입 불편 개선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본인확인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으나, 본인 확인 서비스의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영세 인터넷 기업은 외국인 가입에 제한 ⇒ 외국인 본인확인서비스 무료 제공, 외국인 대상 홍보 강화	시범서비스 실시 및 홍보물 제작 · 배포	방송통신위원회
2	○ 케이블TV 가입 불편 개선 외국인의 케이블TV 가입은 실명확인 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가능하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가입 제한 ⇒ 실태조사를 통해 가입절차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3	○ 외국인 성명 기입 관련 행정서식 개선 공공기관 서식의 성명란이 한국인 성명기준으로 할애되어 이름이 긴 외국인 성명 기재 곤란 ⇒ 외국인 전용 또는 공용 서식의 성명란에 성명을 온전히 기입할 수 있도록 기입공간 확보	사무관리규정 개정	행정안전부
4	○ 한국어학당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당한 대우 개선 한국어학당의 지도 · 감독규정 미비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비, 기숙사비 반환 관련 불만 발생 ⇒ 법적 근거 마련 및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작성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 외국인 선정기준 확대 현재 수급권자 범위는 난민으로 인정된 자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 한정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임신 중인 자,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도 포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
6	○ 감리회사 외국인 임원 · 감리원 등록 간소화 감리회사 등록 시 임원 및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 관련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 영사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 관련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우리나라 영사 확인 서류를 갈음하도록 근거 마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해양부

제 7 절

국민생활불편 · 사업환경 개선

* 집필자 : 이종성 사무관(Tel. 2100-2320, ljss1@pmo.go.kr)

1. 추진배경

○ 규제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상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떨어지고 정부의 여러 노력도 저평가

– 그동안의 규제개혁 노력이 주로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경제적 영역에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의 효과 미흡

○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생활 불편 해소는 민원 감소 효과로 연결

○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가로막는다고 느끼는 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발굴,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국민들의 불편 해소와 우리 사회의 선진화에 도움이 될 생활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

2. 과제선정 기준 및 방법

가. 과제선정 기준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관련된 과제를 중심으로 대상과제 선정

○ 선진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된 과제도 대상에 포함

–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과제 선정

나. 과제선정 방법

○ 국민들이 체감하는 과제 발굴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규제개혁 국민공모'를 통해 제안 접수

– 정부부처 · 지자체의 건의과제 접수

– 교통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과제 발굴

○ 700여건의 과제 발굴, 소관부처 검토를 거쳐 20건 최종 선정

– 국민생활 불편 해소 과제 : 17건

– 선진 생활환경 조성 관련 과제 : 3건

3. 세부 추진과제

가. 국민 생활불편 해소 과제

(1) 이 · 미용사 면허 발급관리 개선

○ 현행 규정상 주소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학교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이 · 미용사 면허* 발급 가능

※ 고등기술학교 이수자, 전문대 및 대학 등에서 관련학과 졸업자 등이 해당

⇒ 전국에서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09년 미용사 면허 발급 21,953건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0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2) 저소득 서민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방법 개선

○ 공동주택이 인접한 단지와 공동관리를 할 경우 1,500세대 이하, 3개 단지 이하로 제한

– 소규모 서민 임대주택은 재개발 등으로 인근에 산재한 경우가 많으므로, 단지 수에 관계없이 공동관리가 가능토록 하여 관리비 부담 경감 효과

⇒ 적정관리범위(1,500세대) 내 단지 수 제한 폐지

☞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10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의무 면제

○ 주택재개발사업 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면제되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층수제한을 받는 경우는 미해당

■ 임대주택 건설의무 배제(국토부 고시)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자연경관 · 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항공법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고도제한에 따라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동 법에 따라 4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받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의무에서 제외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 고시('10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4) 주민등록증 발급시 사진 관련 규제 개선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에 대해 6개월 이내 촬영제한이 있으나, 사실상 이행되기 어렵고, 6개월 내에 외모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필요

⇒성형의 유행에 따라 용모의 변화가 심한 경우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준은 설정하되, 주민등록증 발급시 본인 여부를 식별하기 용이한 경우는 6개월이 지난 사진도 허용토록 개선

※ 최근 3년간 연평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277만명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10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5)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표시 호칭 통일

○ 주민등록제도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여성배우자는 '처' 남성 배우자는 '남편' 자녀는 성별구분 없이 '자'로 되어있으나, 가족관계등록제도상에는 각각 '배우자'와 '자녀'로 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양성평등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

⇒현재 주민등록제도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할 때에 사용하는 호칭을 '배우자'와 '자녀'로 통일

☞ 주민등록시스템 업무처리지침 개정('10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6)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하

○ 종전 호적등본(통당 600원)이 가족관계등록제도 변경 후 5가지 증명서(기본 · 가족관계 · 혼인관계 · 입양관계 ·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로 변경, 발급 수수료(통당 1,000원) 부담이 과중

⇒무인발급기를 통한 증명서 발급시 수수료를 현행 창구 발급 수수료보다 낮게 책정

※ '09년 가족부 증명서 등 5종 2,700만통 발급, 주민등록등 · 초본 발급현황 고려시 향후 무인발급비율 약 10% 예상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10년 상반기, 법원행정처)

(7) 등기부등본 무인 발급 확대

○ 토지대장 등 많은 민원서류가 24시간 발급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을 통해 정해진 시간(월~금요일 07:00~23:00, 토 · 일 · 공휴일 09:00~21:00)외에는 발급이 제한적

⇒근무시간 외에도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인터넷 발급시간 범위 내에서 발급될 수 있도록 개선

※ '09년 근무시간 내 무인등본발급 : 약 305만 건

☞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10년 하반기, 법원행정처)

(8) 의료급여증 매년 재사용 확인 폐지

○ 의료급여증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초 시 · 군 · 구를 방문하여 재사용 확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

⇒ 의료급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수급권자의 신분증명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하므로,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수급권자의 불편 해소

※ '09년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 세대 : 103만 세대

☞ 의료급여법 개정('10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9)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관리 일원화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 및 재산조사는 기존의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 · 군 · 구에서 담당하고, 대상자 결정 및 지원은 보험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어, 사업관리 이원화에 따른 불편과 비효율 존재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업무체계 일원화, 합리적 대상자 관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26만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0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10) 어선 소유자 주소변경시 변경등록 신청 폐지

○ 어선 소유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주소 변경도 이에 해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어선등록 전산망과 주민등록 전산망을 연계, 주소 이전에 따른 별도 변경신청 없이 처리

※ 연간 주소지 변경 신청 4,500여건

☞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10년 하반기, 농림수산식품부)

(11) 보육시설 변경인가 구비서류 간소화

○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시 '소방용 기계 · 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제출 의무

– 보육시설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시 방염대상 물품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방염대상 물품의 변동이 없는 경우, 소방관서의 방염확인점검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로 대체

※ 연간 대표자 변경인가 750여건에 대해 방염성능검사 수수료 (2만원) 절감, 처리기간 단축 (방염성능검사성적서 7일 → 소방관서 확인서 2일) 효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0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12) 징병검사 결과 통보서 재발급 기간제한 폐지

○ 징병검사 수검일 1년 경과자는 '징병검사 결과 통보서' 재발급이 불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시에만 발급 가능

⇒ 재발급 기간제한 폐지로 민원인 편익 증대

※ 징병신체검사 1년 경과자 재발급 예상 인원 : 연 330여명

☞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재발급 처리지침 개정('10년 하반기, 병무청)

(13) 철도시설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로 공중위생영업을 위한 건축물대장등본 확인 갈음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 면허증 원본을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도록 규정

– 철도산업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상 시설은 건축물대장 생성에서 제외되어 영업신고 수리 불가

⇒ 철도운영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철도시설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로 건축물대장등본 확인 갈음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0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14) 영화상영업자 변경등록 요건 명확화

○ 영화상영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 하나, 변경신고 요건이 불명확하여 불편 발생

⇒ 기 교부받은 영화업 신고증 상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하도록 규정 개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0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

(15) 세탁소 용제 회수건조기 안전기준 제정

○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용제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도록 규정(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되어 있으나, 회수건조기의 정의, 성능 · 안전기준, 규격화된 모델, 관리기준 등 미비

⇒ 용제 회수건조기의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지침 마련

※ 전체 세탁업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대기 방출 :
10,742,295kg(연간 보고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70%)

☞ 유기용제 회수기 안전관리 및 검사기준(가칭) 마련('10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16) 호스릴 소화설비 완공검사 시 현장확인 제외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마치고 완공검사를 받을 때 완제품으로 생산 · 판매되는 호스릴 가스계 소화설비까지 현장 확인 대상에 포함

⇒ 호스릴 소화설비는 완제품으로 생산되어 설치가 단순 · 용이하므로 현장확인 대상에서 제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10년 하반기, 소방방재청)

(17) 측량 · 수로조사 신분증표 및 허가증 일원화

○ 측량 · 수로조사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 · 건물 · 공유수면 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경우 증표와 허가증의 이중 발급 및 소지의 번거로움

⇒ 증표간소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신분증표 및 허가증 일원화

※ 발급건수 50% 감소 효과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11년 상반기 국토해양부)

나. 선진 생활환경 조성 과제

(1) 주유취급소 내 Drive-In 휴게음식점 허용

○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휴게음식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침상 자동차를 타고 구매하는 형태(Drive-In)는 제외

⇒ 주유취급소 내 휴게음식점에 Drive-In 형태의 판매대 설치 허용

※ 주유취급소 운영자의 결정사항으로 정확한 예측이 불가하나, 약 100개소 설치 예상

☞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외 범위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10년 상반기, 소방방재청)

(2) 부유식 해(수)상구조물 상부구조에 건축법 일부조항 준용

○ 수변이용 활성화로 한강 등에 호텔, 여객시설, 공연장 등 목적의 수상구조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선박과 건축물의 혼합형식에 따른 관련 규정 적용 곤란

– 부유식 해(수)상구조물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부유식 해상 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이나, 상부 구조물이 건축물 형태여서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

⇒ 선박안전법과 건축법 규정을 원용, 수상구조물에 적합한 안전규정 마련

※ 수상호텔, 수상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 확보로 한강 등 수변 이용 활성화

☞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10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3) 도시철도 역무시설 범위 확대

○ 철도건설법상 역 시설은 물류시설, 환승시설 외에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 숙박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도시철도법상 역무시설은 물류시설 · 환승시설 · 편의시설에 한정

– 도시철도의 역사,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 시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 숙박시설 등 설치 불가로 도시철도 사업자에게 불이익

⇒ 역세권개발 활성화를 위해 역무시설 개념 재정립

☞ 도시철도법 개정('10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4. 향후 추진계획

가. 추진일정

○ 시행령 · 시행규칙 · 지침개정사항은 예정된 일정대로 완료하고, 법률개정사항은 조속히 국회 제출

○ 기타 실태조사 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 중 완료

나. 국무총리실에서 구축한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활용, 과제 추진상황 관리 및 공개

○ 모든 과제에 대해 과제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 과제담당 부처는 과제별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 · 공개

다. 추진상황 점검

○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혁평가에 반영

[과제 개요 및 조치사항]

연번	과제 개요	조치사항	소관부처
선진 생활환경 조성 과제			
1	○ 주유취급소 내 Drive-In 휴게음식점 허용 주유취급소 내 휴게음식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지침 상 Drive-In 형태는 제외 ⇒ 주유취급소 내 휴게음식점에 Drive-In 형태의 판매대 설치 허용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 외 범위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	소방방재청
2	○ 부유식 해(수)상구조물 구조 및 설비 관련 규제 개선 부유식 해(수)상 구조물은 선박과 건축물의 혼합 형식으로 인해 관련 규정 적용 곤란 ⇒ 선박안전법과 건축법 규정을 원용하여 해(수)상구조물에 적합한 안전규정 마련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국토해양부
3	○ 도시철도 역무시설 범위 확대 도시철도법상 역무시설은 물류 · 환승 · 편의시설에 한정,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시 사업자에게 불이익 ⇒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판매 · 업무 · 근린생활 · 숙박시설 등을 포함하는 역무시설 개념 재정립	도시철도법 개정	국토해양부

연번	과제 개요	조치사항	소관부처
국민 생활불편 해소 과제			
1	○ 이 · 미용사 면허 발급관리 개선 주소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학교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이 · 미용사 면허 발급 가능 ⇒ 전국에서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
2	○ 저소득 서민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방법 개선 인접한 단지와 공동관리를 할 경우 1,500세대 이하, 3개 단지 이하로 제한 ⇒ 적정관리범위(1,500세대) 내 단지 수 제한 폐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해양부
3	○ 제1종 주거지역 층수제한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의무 면제 주택 재개발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면제되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을 받는 경우는 미해당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4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받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의무 면제	국토부 고시 개정	국토해양부
4	○ 주민등록증 발급시 사진 관련 규제 개선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의 6개월 이내 촬영 제한은 이행이 어렵고 용모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필요 ⇒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 본인 여부를 식별하기 용이한 경우는 6개월이 지난 사진도 허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5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표시 호칭 통일 주민등록제도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호칭과 가족관계 등록제도상 호칭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 야기 ⇒ 주민등록제도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호칭을 '배우자'와 '자녀'로 통일	주민등록시스템 업무처리지침 개정	행정안전부
6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하 종전 호적등본(1통 수수료 600원)이 5가지 증명서로 변경, 발급 수수료(통당 1,000원) 부담이 과중 ⇒ 무인발급기를 통한 증명발급과 더불어 무인발급기 수수료를 낮게 책정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개정	법원행정처

제8절

식품산업규제 합리화

* 집필자 : 손은주 사무관 (Tel. 2100-2308, ejsohn@pmo.go.kr)
유경호 사무관 (Tel. 2100-2345, khyoo@pmo.go.kr)

1. 추진개요

가. 추진배경

○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반도체 산업의 약 15배인 4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식품산업은 수출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내 식품산업은 '80년 이후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경제성장, 소득향상과 더불어 외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여 국내 식품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 수준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품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전통식품 재발견 및 산업화 등을 통한 한식 세계화 및 브랜드화 추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동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나. 중점 추진분야

○ 식품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식품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4대 분야에 중점을 주고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① 한식세계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이 필요한 분야
② 영세 소상공인의 애로해소를 위해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한 분야
③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관련 기준 합리화가 요구되는 분야
④ 농업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창업 및 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2. 과제별 주요 개선내용

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1) 토판(土版) 천일염의 기준 규격 완화

○ (현행) 국산 천일염은 생산방식에 따라 '장판염'과 '토판염'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불용분에 대한 성분규격은 이에 대한 구분없이 단일하게 규정(0.15% 이하)되어 있어 토판염 생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천일염 규격중 불용분(0.15% 이하) 요건은 토판염에서 실제 충족시키기 매우 어렵고, 외국 사례(프랑스 게랑드염의 경우 1% 이하)에 비추어도 기준이 매우 엄격함

○ (개선) 토판염에 대한 불용분 기준을 장판염과 분리하여 정하되 현장조사 및 해외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 (식약청)

(2) 천일염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등급화 제도 도입

○ (현행) 국내산 천일염은 성분 · 효능 등에서 우수성을 지니고 있으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수입산 및 공업용 소금이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 · 판매되는 사례 발생

○ (개선) 천일염에 대한 품질 등급제를 도입하여 그동안 저평가 되었던 국산 천일염의 국제경쟁력 향상 촉진

* 국내산 천일염은 다른나라 소금에 비해 비만의 원인이 되는 염화나트륨의 성분이 낮고 혈압상승에 효과가 있는 칼륨 성분이 많음('07, 전남보건환경연구원)
  • 염화나트륨 함량 : 국내산 82.5% < 중국산 88.47% < 게랑드(프랑스)산 89.89%
  • 칼륨 함량 : 국내산 3.1g/kg > 게랑드산 1.1g/kg > 중국산 1.0g/kg

☞「염관리법」(가칭「소금산업법」) 개정으로 천일염 등급화제도 근거 마련(농식품부)

(3) 막걸리 전용 벼 품종 개발

○ (현행) 막걸리 수출 증가에 따라 막걸리 제조시 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벼 품종(총 209종) 중 막걸리 전용 품종이 없어 고품질의 막걸리 제조에 한계

○ (개선) 고품질의 막걸리 생산 및 수출 확대를 위해 고급 막걸리 가공에 적합한 벼 품종 개발 및 보급

☞ 막걸리 전용 벼 품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농진청)
막걸리 전용 벼 품종 개발 및 보급 (농식품부)

(4) 가축의 초유(初乳) 납유금지 완화

○ (현행)「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분만 후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축에서 분비되는 젖(초유)의 납유(納乳)는 금지되어 있어 잉여 초유는 송아지에게만 급여 가능하고 남은 전량은 폐기되는 상황

– 초유 납유가 금지됨에 따라 초유를 활용한 가공식품 및 건강식품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06년 기준 1,800억원)

○ (개선) 초유를 기능성식품 또는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할 목적인 경우 활용이 가능하도록 납유 금지의 예외조항 신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 (농식품부)

나. 식품산업 영업규제 완화

(1) 식품운반업의 차고지 시설기준 완화

○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 미만 소유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모든 영업자로 하여금 차고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세업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개선) 2.5톤 미만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영세업자가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식약청)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신청서류 간소화

○ (현행)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시 요구되는 서류분량이 300페이지 정도로 과다하여 영업자의 부담 가중

○ (개선) HACCP 관리기준서 및 1개월 이상의 운영실적 자료 등 현행제출 의무서류(300페이지 분량)를 HACCP 관리계획서(30페이지 분량)로 간소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식약청)

(3) 수산물 품질인증절차 간소화

○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 (2년 유효)시, 인증 유효기간 중 반기별로 받는 조사 · 점검항목과 인증 연장 심사항목이 중복되어 영업자 부담 및 행정절차 가중

○ (개선) 수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 중 반기별 조사 · 점검을 받은 경우는 인증연장시 현장조사를 면제하고 서류심사만 받도록 절차 간소화

☞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 개정 후 하위법령 개정 (농식품부)

(4)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화

○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위반행위별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해 정도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분하는 등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감안하지 않은 기준 일부 존재

○ (개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 및 합리화하고, 위해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기준 완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식약청)

[위해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에 대한 개선안]

처분 기준	내용(예시)	개선안(예시)
위해의 정도	산가* · 과산화물가** · 대장균 기준 위반시, 품목제조정지 15일 ■ 산가 · 과산화물가는 대장균에 비해 위해의 정도가 낮으므로 처분기준 개선 필요	품목제조정지 15일 → 5일

* 산가(acid value) : 산성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

** 과산화물가(peroxide value) : 산패(酸敗)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다. 식품관련 기준 합리화

(1) 천연감미료(스테비아) 사용범위 확대

○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청 고시)에서는 1984년부터 스테비아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정하면서, 식빵 · 캔디류 · 유가공품 등 일부 식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

– 고감미 효과를 갖는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아 감미료의 사용을 일부식품에 제한함으로써 국내 천연 감미료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

○ (개선)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식빵, 캔디류 및 유가공품(우유 · 버터 · 치즈 · 분유 등)에 스테비아 감미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 (식약청)

(2)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입국 농약잔류허용기준 마련

○ (현행) 단감 · 감귤 등 농식품 해외수출시 수출품목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수출대상국에 없는 경우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야 함

– 현재 수출대상국의 농약기준 설정을 위해 개별기업이 위해성 평가자료 제출 및 검토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각 수입국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상이하여 기업 활동에 애로

○ (개선) 국제식품규격(CODEX)에 부합하는 수출 농식품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농식품의 수출활성화 지원

☞ 농약잔류허용기준 마련 (식약청, 농진청)

(3) 수산물의 미생물(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완화

○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청 고시)에 따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ready-to-eat) 섭취하는 수산물(횟감류 등)은 '황색포도상구균' 검출이 음성이어야 함

– 황색포도상구균은 다른 균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100% 제어가 어렵고 외국의 경우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황색포도상구균을 정량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개선) 위해성 평가 및 외국의 사례를 종합 검토하여 황색포도상구균 검출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예 : 1g당 황색포도상구균 100마리 이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 (식약청)

(4) 느타리버섯 표준규격 개선

○ (현행) 느타리버섯의 등급규격(특급 · 상급 · 보통) 중 '갓의 크기 및 낱개의 고르기' 항목 기준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선별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농가소득에 손실 초래

○ (개선) 느타리버섯 '낱개의 고르기' 기준을 완화하여 특 · 상급 출하물량 증가로 농가소득 향상 기대

[느타리 버섯 갓의 크기 및 낱개의 고르기]

등급	갓의 크기	낱개의 고르기 범위	
		현행	개정
특등급	2~4cm	크기가 다른것 : 10% 이하	크기가 다른것 : 20% 이하
상등급	2~6cm	크기가 다른것 : 20% 이하	크기가 다른것 : 40% 이하

☞「농산물 표준규격(고시)」 개정 (농식품부)

라. 창업 및 투자 활성화

(1) 외식업에 대한 벤처투자 허용 및 창업지원 강화

○ (현행) '호텔업 및 음식점업'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창업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외식업체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 (개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대상 업종을 「관광진흥법」상 '호텔업'과 '음식점업'(유흥주점업 · 단란주점업 제외)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적용대상에도 포함하여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융자) 대상 확대

☞ 창투사 투자업종 대상 확대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중기청)
적용업종 기준 조정을 위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중기청)

(2) 외국의 식품관련 법규 · 제도 조사 및 DB 구축

○ (현행) 최근 식품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추세이나, 해당 국가의 식품관련 법규 · 규제 내용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하여 가공식품의 수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

○ (개선)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 품목별로 관련 법규, 제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 식품통계정보시스템(fis.foodinkorea.co.kr) 및 식품나라(foodnara.go.kr)에 DB 구축 (농식품부, 식약청)

(3) 소규모 식품제조 · 가공업의 창업 활성화

○ (현행) 농어업인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 · 가공하는 경우 지자체가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상 특례조항이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가 없어서 식품제조 농어업인의 창업에 애로

○ (개선) 농가형 소규모 또는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별도 시설기준을 지자체가 참고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농어업인을 위한 창업매뉴얼을 제작 · 보급

☞ 농어업인 식품제조 · 가공업 시설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농식품부)
소규모 식품제조 · 가공업 창업매뉴얼 제작 (농식품부)

(4) 외국인 한식교육 연수생 비자발급규정 완화

○ (현행) 현재 '일반연수(D-4)' 사증 발급대상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연수를 받는 자' 등으로 한정하여 외식(한식)업체에서 한식조리를 연수받고자 하는 외국인의 원활한 입국이 어려움

○ (개선) '일반연수(D-4)' 사증 발급대상에 외식업체가 포함되도록 「사증발급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되, 연수를 위장한 불법취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증 발급대상 외식업체의 범위는 농식품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결정

☞ 「사증발급 업무처리지침」 개정 (법무부)

제9절

식 · 의약품 분야 선진화

* 집필자 : 원영호 사무관(02-2100-2317, key71315@pmo.go.kr)

1. 추진개요

○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이 주로 과제별로 개별적 접근이 이루어진 면이 있어, 앞으로 기술수준의 향상 등 규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분야별로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적인 규제개혁 추진

○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품 · 의약품분야를 대상으로, 국민건강상의 위해예방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자율을 확대하는 전면적인 규제개혁작업 추진

2. 주요 개선과제

가. 식품 분야

(1) 업종별 시설기준 개편 등을 통한 식품관련 영업부담 완화

(가) 현 황

○ 업종 별로 과도한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이 잔존하고 있어 식품 영업의 진입과 유지에 장애

* 예) 식품제조업종 – 창고바닥에 양탄자 사용금지 등

○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가진 소비계층의 등장과 더불어 영업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현 시설기준으로는 진입이 곤란한 경우 발생

* 예) 음식점과 다른 업종과의 융합 – 서점내 카페테리아

(나) 세부과제(2건)

○ 영업자 시설기준의 합리적 개선

○ 영업자 준수사항 완화

(다) 기대 효과

○ 시설기준 단순화, 안전과 관련이 없는 시설기준 삭제로 시장진입비용 감소

○ 현실을 고려한 시설기준 정비로 영업의 새로운 이윤 창출 기대

○ 안전 중심의 보다 합리적 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2) 어린이 식품 규제 합리화로 국민불편 해소

(가) 현 황

○ 어린이 기호식품에 어린이가 섭취하지 않는 숙취해소음료 등이 포함되고, 우유 · 소시지류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이 제외되어 있음

○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가 그린푸드존(학교 및 해당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안)에만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수판매업소의 활성화 미흡

○ HACCP* 지정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시 또다시 현장심사를 하고 있어 지나친 중복규제로 작용

*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는 사전 위생관리시스템

(나) 세부과제(3건)

○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 및 개선

○ 어린이 건강식품을 더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우수판매업소 설치 활성화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활성화

(다) 기대 효과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의 토대인 '어린이기호식품' 범위를 실생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정책 효과성 제고 및 불필요한 비용 감축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와 품질인증식품을 활성화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의 보다 활발한 유통에 기여

(3) 민간자율 확대 등을 통한 식품안전관리 편의성 제고

(가) 현 황

○ HACCP지정제품과 즉석제조판매식품도 주기적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거나 검사 의무가 중복

○ 연 매출이 1억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시설과 비용 투자의 여력이 없는 매우 영세한 식품제조업체도 HACCP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음

○ 유통단계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부처간 검사 중복 및 과잉규제 존재

(나) 세부과제(6건)

○ HACCP 적용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자가품질검사제 개선

○ 영세업체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 자율화 및 관리기준 완화

○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 지원 확대

※ 이하 과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간 협의하여 개선여부 재검토 예정

○ 유통단계 농산물 안전성 중복조사 개선

○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일관성 있는 관리 및 중복규제 완화

○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신속한 설정

– 동물용 의약품 및 농약의 잔류기준 설정시 필요한 자료 협조 의무화

(다) 기대 효과

○ 실효성이 없거나, 중복된 규제의 개선을 통해 영업자의 자율을 확대

○ 적합한 관리체계를 도입함으로서 영업자의 자율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위해요소 관리를 할 수 있게 함

나. 의약품 분야

(1) 신개발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

(가) 현 황

○ 전 세계적으로 제약산업 R&D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신약개발을 위한 기간(10~17년), 비용(1품목당 1조원 가량), 위험부담(성공률 10% 미만) 등이 상존하고 있어 성공건수는 저조

○ 국내 제약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기임상시험제도 도입 등 신약개발 가능

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 요구가 높음

(나) 세부과제(6건)

○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제도 개선

○ 신개발 희귀의약품 허가 간소화

○ 소아용 의약품 글로벌 개발지원 시스템 구축

○ 주사제 등 비경구용 무균제제의 제품성분 공개

○ 난치성 항암제의 신속한 허가를 위한 자료 간소화

○ 표준제조기준 적용대상 일반의약품의 범위 확대

(다) 기대 효과

○ 신약보다 개발비용이 저렴하고 시장진입 기간이 짧은 개량신약, 복제의약품 산업에 필요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시간과 비용 절감

○ 일반의약품 표준화 처방 확대로 기업이 보다 쉽게 다양한 의약품을 제품화 할 수 있음

(2) 의약품 수출 전략적 지원

(가) 현 황

○ 최근 FTA 체결 등으로 내수 중심 국내 제약기업은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가 시급

○ 의약품 수출지원에 있어 민 · 관의 지원기능 분산으로 비효율화 초래

– 의약품수출입협회(시장개척단 지원), KOTRA(중소기업 해외지사지원사업), 보건산업진흥원(해외정보 제공) 등에 각 수출지원기능이 분산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식약청 등 정부 지원기능도 협력 부족

(나) 세부과제(4건)

○ 수출용 의약품에 대한 허가기간 단축 (70일 → 25일)

○ 의약품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민관 통합 「의약품 수출지원 협력시스템」 구축

– 해외 의약품 등록(허가) 절차, 시장 상황 등 종합정보 제공

– 의약품 해외진출 성공모델 발굴하여 시장 개척에서 등록, 수출의 전과정을 맞춤식 지원

(다) 기대 효과

○ 수출경험이 부족한 수출추진 기업에 대해 해외정보 제공, 교육 및 투자확충으로 수출성공 모델 조기발굴에 기여

○ 국산 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 지원방안과 이를 추진할 민관협력 지원체계 확립 추진

(3)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

(가) 현 황

○ 최근 환자, 의료계, 산업계 등의 세포치료에 대한 관심과 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수요 증대

○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개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조대상이 되는 의약품 정보의 제공과 안전성 등 평가기준의 명확화 요구가 큰 반면, 신속한 제품화에 필요한 규격 및 품질 평가 상세 가이드라인 부재

(나) 세부과제(4건)

○ 세포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제도 정비(허가, 심사, 임상절차 등)

○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허가 · 심사 지원

– 동등생물의약품 개발가능성이 큰 의약품(대조약) 규격정보 제공

– 동등생물의약품 제품별 안전성 ·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항체의약품 규격 및 품질 평가 기준 마련

(다) 기대 효과

○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개발과 허가 절차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공개 및 명확화로 개발 촉진

○ 허가 · 심사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허가에 이르는 비용과 시간이 단축되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

(4) 한약 품질의 대국민 신뢰회복을 통한 산업화 지원

(가) 현 황

○ 한약재의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한약재(규격품) 제조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선택과 집중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필요

* 세계 전통의약 시장은 187조원 규모('08년 기준)이며, 국제보건기구에서는 15년 후에는 42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국내 한방관련 시장 규모는 60,772억원 규모(복지부 추산, '09년 기준)
– 한약제재 · 한방의료 · 한방화장품 · 한약재배유통시장 등

○ 외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생약제제가 국내 사용례가 없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재심사를 하는 등 비합리적 운영

(나) 세부과제(4건)

○ 한약재(규격품) GMP* 제도 단계적 도입으로 한약재 품질 제고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우수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한약재 생산실적 보고기관을 한국한약제약협회로 변경

* 현재 보고기관 : 한국제약협회(생산실적),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수입실적)

○ 생약 · 한약제제 특성에 맞는 허가 · 심사 규정 마련

○ 외국 의약품집에 등재되어 있는 일반의약품의 재심사 면제

(다) 기대 효과

○ 한약재(규격품) 제조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으로 유통 한약재의 품질 보증과 공정 거래에 기여

○ 일반의약품 분류기준 및 재심사 면제 기준(가이드라인)을 통해 생약 제제의 허가가 투명하고 간소하게 되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

(5) 화장품 산업 활성화 및 수출 지원

(가) 현 황

○ 화장품 소비자층이 다양화 및 세분화되고 있으나 '99년 화장품법 제정 이후 기능성화장품 범위가 현실과 맞지 않아 다양한 화장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재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제 3가지로 한정

○ 제모제 등은 국제적(미국 · 유럽)으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나,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어 상대적으로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음

(나) 세부과제(4건)

○ 화장품 범위확대를 통한 화장품 시장 활성화

- 화장품 기능성 제한 전면 정비

- 일부 의약외품(제모제 등)을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

○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화 지원

- 국제 표준화된 ISO-GMP 도입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 ISO-GMP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국제표준화기구 제조품질 관리기준)

- 업계 주도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다) 기대 효과

○ 기능성화장품 표시범위 등 합리적 조정으로 화장품 산업의 성장 도모

○ 선진국에서 화장품으로 관리되는 물품의 국제기준과 조화로 통상 분쟁을 사전 방지하고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

(6) 기타 행정절차규제 개선을 통한 의약품산업 경쟁력 확보

(가) 현 황

○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평가, 허가신청 수수료 및 자료 등 절차규제에 있어서 영업자에 부담이 되는 사항들 존재

(나) 세부과제(6건)

○ 희귀의약품 · 항암제 등의 사전GMP 평가 자료제출 경감

○ 의약품 제조소 이전시 GMP평가 합리적 완화

○ 전공정 위탁제조 의약품의 심사 수수료 인하 및 기간 단축

○ 품목별 사전 GMP 및 제조소 이전시 실시되는 GMP의 실태조사 절차와 제출서류의 통일화 · 간소화

○ 신약 등의 재심사시 조사대상자수 조정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 의약품 용기분류(밀폐, 기밀, 밀봉)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다) 기대효과

○ 안전과 무관한 허가 절차를 간소하고 불필요한 단계를 개선함으로써 관련 영업자의 허가 비용과 시간이 줄고 시장진입을 쉽게 함

다. 의료기기 분야

(1) 의료기기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가) 현 황

○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온열기 등은 일반 공산품과 작동원리가 비슷하나 병원용 전문 의료기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까다롭게 허가 · 관리

– 별도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영업자 불편초래

○ 모든 의료기기에 GMP 심사 등 진입 · 변경절차의 차이가 없어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기기의 경우 과도한 규제비용 발생

○ 식약청으로부터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이 타부처 인증 및 검정 대상으로 지정되어 이중규제에 따른 업계 피해 발생

(나) 세부과제(6건)

○ 공산품과 유사한 가정용 의료기기의 허가절차 등 간소화

○ 위해도가 낮은 국민다소비 의료기기의 판매업 신고 면제

○ 저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관리 완화

○ 의료기기 변경허가 기준 제시 및 변경허가 면제대상 범위 확대

○ 전기용품 · 계량용품 등의 의료기기에 대한 이중규제 철폐

○ 품질부적합 의료기기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및 위해도별 처분기준 완화

(다) 기대 효과

○ 인체위해성과 안전 관리 필요성에 비례하여 허가 심사 및 유통 관리를 하고 중복 규제가 정비되어 민간의 자율과 책임, 행정청 개입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 획기적으로 효율성 제고

(2) 미래수요 대비 첨단 의료기기 맞춤형 지원

(가) 현 황

○ 과학기술의 발달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결합된 복합 제품* 개발이 증가되고 있어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약품 제조판매자나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의약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으나, 약사법상 이를 허용하지 않아** 제품 개발에 어려움

* 예 : 항균 골시멘트, 보존제가 포함된 혈액저장용기, 항응고제가 코팅된 카테터 등

** 의약품 제조판매자 · 도매상은 약국개설자 · 다른 도매상 등에게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

○ IT 기술 발달에 따라 관련 의료기기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유헬스케어 등 신기술

제품에 대한 별도의 품목분류 체계가 미비

* 유헬스케어 시장규모는 2010년 3조원에서 2020년 11조원으로 연평균 12.5% 급성장 전망

(나) 세부과제(2건)

○ 의약품이 복합 구성된 의료기기 제조업자에게 의약품판매 허용

○ 의료기기 품목분류에 'u-Healthcare용 의료기기' 항목 추가

(다) 기대 효과

○ 의약품 · 의료기기복합제품에 대한 국산 상품화로 수입대체효과 기대 및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력 향상 도모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기반 구축에 따른 체계적 관리 및 보험수가 적용으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 및 제품화 촉진

3. 추진계획

○ 국무총리주재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식의약 분야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10. 12. 8 보고

○ 총리실 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제별 대안 마련('10.12 ~ '11.12) 후 과제별로 순차적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 발표

제10절

전기자전거 등 기술관련 규제 합리화

* 집필자 : 이정연 사무관(Tel. 2100-2316, koreaeco@pmo.go.kr)

1. 추진배경

○ 기술과 산업은 빠른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기존 법령과 제도가 신기술과 신산업을 가로막고 시장창출에 장애가 되는 경우 존재. 이는 사회의 빠른 변화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결정을 위한 내부절차, 법령 제개정을 위한 입법절차 등에서 기인

○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정부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고충이 상존. 이에 따라 사업자단체, 연구기관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에 뒤처지는 규제 5건을 우선 발굴하여 개선안 마련

2. 주요과제

(1)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전거' 규제 합리화 방안

(가) 검토배경

○ 자전거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의 핵심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 한국의 자전거 교통수송분담률 및 자전거보급률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임

○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 자전거 이용에 힘이 부족한 고령자 · 여성 및 출퇴근자 중에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경사를 오를 수 있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체계 개선을 추진

(나) 전기자전거 현황 및 문제점

○ 선진국에서는 전기자전거를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일반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용이 활성화

– '90년대 중국을 시작으로 유럽 · 일본 · 북미지역으로 이용 확산 추세에 있음. 중국 · 네덜란드의 경우 전체자전거의 10%이상이 전기자전거이며 일본의 경우 매년 30만대 이상이 판매되는 등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에 해당

○ 따라서, 운전면허 취득을 해야 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등 각종규제를 받아 이용 기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실제로 전기자전거 사용자는 면허취득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으며

– 자전거도로 이용시 불법 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상의 많은 문제가 발생

(다) 개선방안

○ 전기자전거의 법적 지위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자전거'로 변경

– 국내생산현황 및 수요를 고려하여 두 가지 방식(PAS 및 Throttle방식)의 전기자전거 모두를 '자전거'로 인정하여, 면허취득의무를 폐지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 자전거의 정의를 개정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자전거를 제외('10.12, 행정안전부 · 경찰청)

○ 동시에,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 강화

–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기준을 현행 30km/h에서 25km/h로 하향조정하고 중량기준을 40kg으로 신설

⇒「이륜자전거 자율안전확인기준」에서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을 강화('10.12, 지식경제부)

(2) 내열유리제 식기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유리의 내열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열팽창계수(α)를 낮추거나 압축응력(σf)을 높이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열(열충격강도)산출공식]

$$\Delta T_f = \frac{\sigma f\,(1-\mu)}{E\alpha}$$

(σf : 압축응력, E : 영률, α : 열팽창 계수, μ : 포아송 비, ΔTf : 내열(열충격강도))

– 현재 한국산업표준(KS)은 붕규산염 등 열팽창계수가 일정수준 이하인 재질의 유리로 제조된 식기만을 내열유리제 식기로 정의하여

– 압축응력을 높여 내열성을 갖추는 방식인 신소재(소다라임 등) 기술을 활용한 내열유리제 식기는 KS표시인증이 불가능

(나) 개선방안

○ 신소재 기술을 반영하여 KS기준 개정 추진

⇒ 자료수집 및 기술동향 파악, 업계의견수렴 등을 통해 관련요업기술심의회 심의 및 KS개정고시('10.12월, 지식경제부)

(3) 수경(水耕)재배 인삼 활용확대를 위한 식품기준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흙과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물과 수용성 영양분을 이용하여 인삼을 키우는 '수경(水耕)재배' 방식이 세계최초로 개발되었으나, 인삼에 관한 식품기준은 기존의 노지(露地)재배 인삼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수경재배방식을 통해 생산된 인삼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인삼 · 홍삼음료의 원료는 '3년근 이상 수삼'으로 제한되고 있어 주로 2년근으로 출하되는 수경재배 인삼은 활용 불가

– 수경재배 인삼은 줄기에 기능성분이 많아 식품으로 활용가치가 높으나, 인삼의 줄기는 식품원료로 불인정

(나) 개선방안

○ 수경재배 방식을 통해 생산된 인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삼 · 홍삼음료의 원료요건 중 '3년근 이상' 년수요건을 폐지(단, 원형그대로 넣는 수삼근에 한하여는 3년근 이상으로 제한)하고, 수경재배 방식을 통해 생산된 인삼의 줄기를 식품원료로 인정

⇒ 식품공전 개정 및 유권해석('10.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

(4) 태양광집열판 인증시 '시리즈인증제도'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 태양광집열판 인증시 제품의 구성부품이 동일하더라도 출력별(1w단위)로 인증신청을 해야함

– 인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

(나) 개선방안

- 국내현황 : 기본모델(200w) 인증신청 시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신청하는 모델(201w, 202w 등)에 대해 출력별로 시험을 실시한 후 인증서 발급
- 해외사례 : 기본모델(200w) 인증신청 시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기본모델 정격출력의 ±10%범위 내에서 최소출력(180w) 및 최대출력(220w)모델에 대한 시험 후 180W~220w 범위에 대한 인증서 발급

○ 기본모델 인증시 일정한 출력범위(예: ±10%)내에 있는 제품의 최소 및 최대출력에 해당하는 모델에 대한 추가 시험 후 그 범위내 모든 모델에 대해 인증해주는 '시리즈 인증' 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업무 운영규정」 개정('10.12월, 지식경제부)

(5) 소방로봇 검정기준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 사람의 진입이 어렵거나 위험한 곳에 소방관 대신 불을 끄고 화재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소방로봇이 개발되었으나, 이에 대한 성능 · 품질 등에 대한 검정기준이 없어 공신력 확보 미흡

– 또한, 소방관서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는 장비에 소방로봇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판로개척이 어려움

(나) 개선방안

○ 소방로봇에 대한 검정기준을 마련(단, 소방관서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는 소방장비에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

⇒「소방로봇 검정기준」 마련('11.12월, 소방방재청)

제11절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렴 개선

* 집필자 : 신재광 사무관 (Tel. 2100-2283, shinjk@pmo.go.kr)

1. 개요

정부는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 출범과 함께 규제개혁과제의 선정과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이나 기업들로부터 인터넷 · 전화건의 · 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 관련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왔다.

그러나,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규제신고센터를 폐지('08.2.29)하고 규제개혁 관련 건의를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행정규제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제출방법]

- 우 편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18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 전 화 : 02-2100-2283
- FAX : 02-2100-2289, 인터넷 : http://www.rr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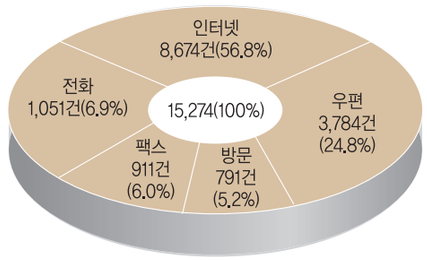
2. 규제건의 처리상황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건의센터, 기업애로해소센터 등 건의수렴 창구를 통하여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총 15,274건의 규제개혁제안을 접수하였다.

그중 인터넷접수가 8,674건(5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우편 3,784건(24.8%), 전화 1,051건(6.9%), 팩스 911건(6.0%), 방문접수 791건(5.2%) 순이었다.

2010년의 경우에는 전체 319건 중 우편접수가 167건(52.4%) 인터넷접수가 84건(26.3%) 접수되어 우편접수와 인터넷접수가 주된 건의 방법으로 나타났다.

[접수방법별 규제개혁 제안현황]



2010년도에 접수된 규제개혁 관련 건의사항은 319건으로서 2010년 접수된 모든 건의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하였다. 처리완료된 319건 중 145건은 해소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규제개혁 의제로 채택하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제도로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174건은 정책참고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다.

[규제건의 처리실적('10.1~12월)]

접수건수	완 료			추진중	해소율
	계	해소	정책참고		
319	319	145	174	-	45.5

규제건의 사항을 소관 부처별로 보면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이 약 64.6%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국민의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규제건의사항의 소관 부처별 분포('10.1~12월)]

구 분	합 계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기 타
건 수	319	86	77	43	16	12	85
비 율	100%	27.0%	24.1%	13.5%	5.0%	3.8%	26.6%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를

제3장

신설 · 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개요

제2절 재정 · 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1. 기획재정부 2. 금융위원회 3. 공정거래위원회 4. 관세청 5. 금융감독원

제3절 산업 · 에너지 분야
1. 지식경제부 2. 중소기업청 3. 특허청

제4절 국토 · 해양 분야
1. 국토해양부 2. 해양경찰청

제5절 농림 · 수산 분야
1. 농림수산식품부 2. 산림청

제6절 방송통신 분야
1. 방송통신위원회

제7절 노동 · 환경 분야
1. 고용노동부 2. 환경부

제8절 교육 · 과학 및 문화 분야
1. 교육과학기술부 2. 문화체육관광부 3. 문화재청

제9절 보건복지 · 여성 분야
1. 보건복지부 2. 식품의약품안전청 3. 여성가족부

제10절 통일 · 외교 및 국방 분야
1. 통일부 2. 외교통상부 3. 국가보훈처 4. 국방부

제11절 일반행정 분야
1. 행정안전부 2. 소방방재청 3. 경찰청 4. 법무부 5. 국무총리실

제1절

개요

* 집필자 : 신재광 사무관(T.2100-2283 shinjk@pmo.go.kr)

1. 개요

규제개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경제분과 및 행정사회분과) 및 본위원회를 거쳐 2010년도에 각 부처가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 총 1,039건 (비중요 규제 포함)을 심사하여 이중 158건에 대해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각 부처는 철회 또는 개선권고된 대상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법령에서 삭제 또는 개선하는 등 규개위의 권고를 이행하였다.

['10년 부처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결과]

부처	법령수	심사규제수	2010년도 규제심사결과			
			비중요	철회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기획재정부	6	6	4	–	–	6
금융위원회	31	114	65	10	6	98
공정거래위원회	14	46	38	–	4	42
관세청	2	4	2	–	–	4
금융감독원	2	4	–	1	2	1
지식경제부	35	69	57	2	5	62
중소기업청	2	3	3	–	–	3

부처	법령수	심사규제수	2010년도 규제심사결과			
			비중요	철회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특허청	2	2	2	–	–	2
국토해양부	90	174	121	9	13	152
해양경찰청	1	4	1	–	2	2
농림수산식품부	39	94	82	1	5	88
산림청	8	12	11	1	–	11
방송통신위원회	14	37	16	1	8	28
고용노동부	15	31	24	1	3	27
환경부	36	99	77	2	12	85
교육과학기술부	11	18	11	1	2	15
문화체육관광부	10	12	7	1	2	9
문화재청	6	33	26	1	5	27
보건복지부	48	119	68	12	19	88
식품의약품안전청	33	51	38	1	2	48
여성가족부	6	10	7	–	1	9
통일부	3	3	2	–	–	3
외교통상부	2	2	–	1	–	1
국가보훈처	7	10	10	–	–	10
국방부	2	2	2	–	–	2
행정안전부	12	23	15	2	5	16
소방방재청	9	32	22	3	4	25
경찰청	10	13	4	1	2	10
법무부	7	8	3	2	1	5
국무총리실	1	4	1	–	2	2
계	464	1,039	714	53	105	881

제 2 절

재정 · 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1. 기획재정부

* 집필자 : 최태호 사무관(Tel. 2100-2292, choith@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5건, 강화 1건 등 총 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획재정부의 2010년도 총 신설규제는 5건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113차 예비심사 (2010.03.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제237차 본회의 (2010.07.01)	부대권고 1	강화 1 *중요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제156차 예비심사 (2010.09.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제166차 예비심사 (2010.10.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개정안	제166차 예비심사 (2010.10.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17차 경제분과 (2010.12.09)	부대권고 1	신설 1 *중요 1
계	–	원안의결 4 부대권고 2	신설 5 강화 1 *중요 2, 비중요 4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설 1)

■ 심사내용

○ 조달청은 민간사업자에게 원자재 등 비축물자 저장시설을 제공하고 그 사용료와 관리비를 감면하며, 동 사업자는 전쟁이나 원자재 파동시 조달청에 비축물자를 우선매각함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 체결(신설)

– 민간사업자가 협약(비축물자 우선매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축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 승인취소 후 6개월간 민관공동비축사업 참여를 제한

☞ 민간사업자가 정부와의 협약(비축물자의 우선매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비상상황 발생 시 정부의 비축물자 확보 및 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규제자 범위 및 규제로 인한 비용이 제한적이고 규제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2) 외국환거래규정(강화 1)

■ 심사내용

○ 외국환은행에 대해 선물환포지션의 한도를 정하여 시행하되, 국내은행은 전월말 자기

자본의 50% 이내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전월말 자기자본의 250% 이내로 설정함(신설)

– 다만,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에서 정한 한도의 1/2 범위내에서 이를 가감하여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동 규제는 선물환시장에서 촉발된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실물부문과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거시경제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
다만, (1)선물환 규제시행 1년후 정책효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것, (2)기획재정부장관은 가감한도 결정시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결정할 것, (3)가감한도 결정시 외은지점 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반영할 것, (4)민간부문의 외환리스크를 축소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부대권고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신설 1)

■ 심사내용

○ 복권판매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에 의해 복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현금 구매가 곤란한 복권 등 복권위원회가 고시하는 복권은 예외(신설)

☞ 복권은 일정한 사행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무분별한 복권구매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내 카지노, 경마 등 타 유사업종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거래가 금지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대부분 신용카드를 통한 복권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

(4) 외국환거래규정(신설 1)

■ 심사내용

○ 이란 소재 금융기관과 신규로 환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신설)

☞ 동 인가제도는 상위법인「외국환거래법」제8조에 위임근거가 있으며, 주요 선진국(EU, 일본 등)에서도 이란과의 환거래 계약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

(5)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신설 1)

■ 심사내용

○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및 이란소재 기관(금융기관 포함)과의 일정금액 이상 지급 및 영수시 한국은행으로부터 사전허가 등을 받도록 함(신설)

– 건당 4만유로 이상 또는 12개월간 합산하여 4만유로 이상의 지급 및 영수시 한국은행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1만유로 이상의 지급 및 영수시 한국은행에 사전신고

– 다만, 의료장비, 의료서비스, 식료품, 인도적 목적의 1만유로 이상 지급 · 영수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에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신고의무를 갈음

☞ 동 허가제도는 상위법인 「외국환거래법」 제15조에 위임근거가 있는 바, 현재 사실상 모든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는 규제 신설이나 실질적으로는 이란과의 원유 수입 등 정상 거래에 대해서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보증해주는 취지임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신설 1)

■ 심사내용

○ 부정당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를 허용(신설)

– 과징금 부과유형에 따라 위법성 정도의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과징금 상한액을 차별적으로 규정
• 위반행위자의 책임이 경미한 행위 : 계약금액의 30%

• 위반행위자의 책임은 중대하나 공익 등을 감안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액의 100%

☞ 부정당업자 제재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고자 하는 과징금부과제도 도입을 허용하되, 과징금 상한액에 차등을 두어 위반행위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는 계약금액의 10%로, 위반행위자의 책임은 중대하나 공익 등을 감안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금액의 30%로서 각각 하향 조정하고, 위반행위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도록 부대권고

2. 금융위원회

* 집필자 : 김 철 전문위원(Tel. 2100-2324, hanul@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예금자보호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31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03건, 강화 11건 등 총 11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4건 중 9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6건은 개선 권고, 10건은 철회 권고하였음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2.11)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3.0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제395차 경제분과 (2010.03.18)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3.23)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3.3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제397차 경제분과 (2010.04.08)	원안의결 5	신설 4, 강화 1 *중요 1, 비중요 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	제233차 본회의 (2010.05.20)	철회권고 5 원안의결 4	신설 9 *중요 5, 비중요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제401차 경제분과 (2010.05.27)	원안의결 9	신설 9 *중요 3, 비중요 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제401차 경제분과 (2010.05.27)	원안의결 7	신설 6, 강화 1 *중요 3, 비중요 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	제235차 본회의 (2010.06.10)	원안의결 5	신설 5 *중요 5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236차 본회의 (2010.06.17)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제237차 본회의 (2010.07.01)	원안의결 2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7.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제406차 경제분과 (2010.07.15)	원안의결 3	신설 3 *중요 1,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제239차 본회의 (2010.07.22)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 2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제408차 경제분과 (2010.08.12)	원안의결 4	신설 4 *중요 2, 비중요 2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제409차 경제분과 (2010.08.26)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공중등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법률 개정안	제409차 경제분과 (2010.08.26)	개선권고 2	강화 2 *중요 2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제409차 경제분과 (2010.08.2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중요 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8.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제410차 경제분과 (2010.09.02)	개선권고 2 원안의결 6	신설 8 *중요 4, 비중요 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제411차 경제분과 (2010.09.09)	철회권고 5 원안의결 4	신설 9 *중요 8, 비중요 1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26)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제414차 경제분과 (2010.10.28)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제414차 경제분과 (2010.10.2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중요 1, 비중요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0.11.24)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16)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22)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제418차 경제분과 (2010.12.23)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418차 경제분과 (2010.12.23)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신설 3 *중요 1, 비중요 2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제250차 본회의 (2010.12.23)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계	–	철회권고 10 개선권고 6 원안의결 98	신설 103 강화 111 *중요 49, 비중요 65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업무위탁시 보고의무(신설)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고객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탁계약 7일전에 금융감독당국(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토록 규정

☞ 업무위탁은 고객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당국은 사전에 업무위탁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본 규정은 승인사항이 아닌 단순 신고사항으로 금융지주회사의 보고를 금융감독당국이 거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규제의 적절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임원의 겸직 세부 기준(강화)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간 임직원 겸직을 허용
  • 개별 금융법상 내부겸영이 불허되거나 임원겸직이 금지되는 경우
  • 위탁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 겸직이 불가능한 경우를 개별 금융법 등에서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규제 강화가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내부통제기준 마련 대상 업무 확대(신설)

– 다음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업무위탁시
  • 완전자회사 등에 대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 면제시
  • 금융지주회사 등의 공동광고 또는 시설 공동사용시

☞ 내부통제기준을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3가지로 명확하고, 이들 업무들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신설 1)

■ 심사내용

○ 금융기관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기준금액 변경

– 자금세탁 의심거래의 보고기준을 현행 2천만원(외국통화는 미화 1만불) 이상에서 1천만원(외국통화는 미화 5천불) 이상으로 하향(강화)

☞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정회원으로 가입('09.10월)함에 따라 국내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국제수준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금융기관의 부담 및 국내 실정 등을 감안하여 보고기준금액이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규정 근거 마련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고객확인조치, 내부 보고체제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금융회사가 실무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지침 형식의 '가이드라인'을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금융회사에게 새로운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3)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기준(신설)

–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는 외환파생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 · 운영할 필요

* 통화선도, 통화옵션 등 외환파생상품거래 체결시 그 거래가 위험회피 목적인지 확인,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기체결된 거래실적 확인을 의무화하고, 개별 기업의 거래 한도에서 차감

☞ 기존에 규제가 도입된 은행권과의 형평성과 파생금융상품의 특성(전염성, 신속성 등)을 고려할 때 사후적 규제보다는 사전적 규제가 바람직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

(4)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신설 7)

■ 심사내용

○ 비계량적 위반사항의 과징금 부과기준(신설)

– 비계량적 위반사항에 대한 중요도 판단요소는 기본적으로 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성 및 위반금액 비율(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항)을 같이 고려

– 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는 공시위반사항별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각 공시서류별 판단요소를 추가

☞ 규제 목적이 상위규정인 자본시장법시행령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상습적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신설)

– 최저부과액 적용기준을 조치횟수에서 위반행위 횟수(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3회이상 발생)로 변경

☞ 규제 목적이 상위규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회계처리기준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의 일원화(신설)

– 위법사항이 회계분식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외감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 회계분식이라는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말보고서 위반과 분반기보고서 위반에 따라 조치기준이 달리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재 기말보고서상 회계분식은 "외감법" 위반으로 외감법상 양정기준이 적용되고, 분반기보고서상 분식회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자본시장법상 양정기준이 적용

○ 개정 외감양정기준의 반영(신설)

– 외감기준 개정 사항을 과징금기준에 반영하여 양 기준이 일치되도록 함

☞ 동 규제는 「과징금 부과기준상 계량상 위반사항 중요도 판단기준(이하 "과징금기준")」과 「외감 양정기준상 중요성 판단기준비율(이하 "외감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과징금 기준과 외감기준 모두 회계분식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 기준을 동일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별도의 중요도 기준 근거 마련(신설)

– 공인회계사가 고의적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계량적 위반비율을 회사와 동일하게 적용(공인회계사의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계량적 위반비율을 현재 1차 책임자인 회사의 50%에서 100%로 변경)

☞ 규제 목적이 회사측과 공모하는 등 단순히 2차 책임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반 정도가 가볍게 처리되는 현행 규정의 불합리성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과징금 기본부과율 조정시 중복 적용기준의 명확화(신설)

– 각 단계별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 거듭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1단계와 2단계 사유가 중첩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

* 현재는 조정가능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각 단계별 복수의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유로 보아 1 내지 2단계만 조정하고, 1단계 사유와 2단계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합산하여 조정하지 않고 있음

☞ 규제 목적이 과징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목적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과징금 납부유예 기준(신설)

– 납부의무자가 납부유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 마련
  • 〈현행〉 : 세부적 판단기준 없이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유예를 허용
  • 〈개정〉 : 담보는 원칙적으로 징구하지 않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거 금융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징구

☞ 본 규제는 납부유예 신청 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기간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규제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점, 담보는 과거 연체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징구하도록 최소화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5)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신설 2)

○ 대부업 등록시 고정사업장 요건 설정(신설)

– 고정사업장을 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건물(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 숙박시설은 제외)에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대부업자 등이 3월이상 계속적으로 주재하여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정

☞ 소재불명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고정사업장의 구체적 요건도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은 물론 주택도 포함되어 있는 점, 고정사업장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고정사업장의 면적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 규제 강도가 매우 미약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영업정지 및 과태료 기준 정비(신설)

– 범죄단체 구성원 고용 대부업자 및 제3자 담보제공여부 미확인 대부업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규제 강도 측면에서도 여타 위반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어 그 적절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채무관계서류 미교부 등 타 영업정지 사유와 유사하게 2회 위반시 3월, 3회 위반시 6월 영업정지

** 채무관계서류 미교부 등 타 위반사례와 유사하게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250만원, 3회 위반시 500만원 부과

(6)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신설 4, 강화 1)

■ 심사내용

○ 무해약환급금 상품의 개발 제한(신설)

– 무해약환급 상품의 개발을 허용하되, 대상 상품을 제한*하고, 판매시 준수사항**을 신설

* 순수보장성, 보험기간 20년이하, 전기납(全期納)

**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필 서명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

☞ 무해약환급금 상품 개발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만큼 그 목적성이 인정되고,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상상품 제한과 판매시 준수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보증준비금 적립의무(신설)

– 보증준비금*에 대한 적립근거 및 적립방법 신설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증하는 보험계약(변액보험)에 대하여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현재는 공통된 적립기준이 없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적립

☞ 최근 우리나라에서 변액보험의 판매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금보증리스크 확대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보험회사별로 적립금 산출 및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상품별로 차이가 발생하여 보증리스크의 합리적 평가 및 회사별 비교가 곤란한 점을 고려할 때 통일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보험상품의 공시제도 정비(신설)

– 보험료 수준 및 사업비 수준을 감독규정으로 이관하고 구체적 공시방법*을 규정

* 공시항목 산출기준 :

① 보험료지수 : (영업보험료 ÷ 표준순보험료) × 100

② 연간보험료 : 보장위험별 총영업보험료 ÷ 보험기간

③ 모집수수료율 : (모집수수료÷보험료) × 100

☞ 본 규제는 현금흐름방식(Cash Flow Pricing)에 의한 보험료 산출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상품 공시제도를 현행 예정기초율 공시 방식에서 지수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지수방식의 공시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해당사자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일시납 상품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 정비(신설)

– 일시납 상품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의 적용 근거 마련

* 연납순보험료의 5%×해약공제계수+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

☞ 동 규제는 판매수수료 후취방식의 보험상품 개발이 허용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제가 없을 경우 과도한 해약공제가 발생하여 계약자의 피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표준해약공제액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비일시납 상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의 목적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내부통제기준 적용 및 범위 확대(강화)

– 보험료 산출 및 결산자료 작성을 규제하지 않되, 내부통제기준에 동 사항을 포함시킴*

* 내부통제기준에서 상품개발, 최적기초율 산출, 계약자배당, 실제사업비 배분 등 보험계리 업무관련 기준을 신설

☞ 현행 내부통제기준에 주요 위험요인을 감시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험계리항목을 추가하더라도 보험사의 실질적 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계리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보험료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원안 동의

(7)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정안(신설 9)

■ 심사내용

○ 고객확인 이행 불가시 거래거절 의무화(신설)

–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고객과의 모든 거래를 거절하도록 의무화

☞ 고객 확인의무는 상위법(법 제5조의2)에 근거규정이 있으나, 고객이 불응시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신원확인 불가를 이유로 신규외에 기존의 모든 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은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위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철회 권고

○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자가평가(신설)

– 금융기관등은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함

☞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방지 제도 이행을 스스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자기평가 의무를 실행하는 것이 금융기관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본인확인시 14일거래 금액 합산(신설)

–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본인확인은 2천만원(미화 1만불) 이상의 단일거래뿐만

아니라, 적어도 14일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일회성 거래를 합산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

☞ 전반적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 초과하였고, 금융회사의 부담은 물론 일반 국민의 사생활 침해 등을 감안하여 철회 권고

○ 전신송금시 송금자의 성명 등 확인 의무화(신설)

– 금융기관등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전신송금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취인의 계좌번호 등을 확인해야 함

☞ 금융기관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전신송금에 대해 송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취인의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현재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에 의해 100만원 초과 송금의 경우 반드시 실명을 확인하고 있어 추가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자금세탁 고위험 고객분류(신설)

– 금융기관등은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개인자산관리 수단인 신탁(법인 또는 법률관계)과 명의주주(nominee shareholder)나 무기명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고위험고객으로 고려해야 함

☞ 법 제5조의2 제2항에 고객 및 금융거래유형별로 분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고위험고객의 정의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철회 권고

○ 보험 상품의 자금세탁 저위험 범위(신설)

– 금융기관 등은 연간보험료 300만원 또는 일시보험료 500만원 이하 상품, 연금보험(해약과 저당용 사용 불가), 퇴직보험(급여공제, 他人양도불가) 등을 자금세탁 저위험 상품/서비스로 취급 가능

☞ 자금세탁의 위험이 낮은 상품 및 서비스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저위험 상품의

설정하는 목적이 금융기관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설정 내용도 국제기준(연간 보험료 미화 1,000달러 이하, 일시보험료 미화 2,500달러 이하)보다 완화되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고객확인제도에 관한 고객공지 의무화(신설)

– 금융기관 등은 고객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창구마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고객에게 사전에 공지해야 함

☞ 금융기관이 고객확인제도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고객에게 공지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확인 과정에서 고객 등으로부터 오해 또는 비협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에 거래고객에게 고객확인제도에 관해 내용을 공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법인고객의 소유주/지배구조 파악 의무화(신설)

– 금융기관등은 법인고객의 소유주와 지배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전반적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였고, 금융회사의 부담은 물론 일반국민의 사생활 침해 등을 감안하여 철회 권고

○ 고위험고객에 대한 추가확인 범위(신설)

– 금융기관 등은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다고 평가된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의 목적 등 추가정보를 확인해야 함

☞ 전반적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였고, 금융회사의 부담은 물론 일반국민의 사생활 침해 등을 감안하여 철회 권고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신설 9)

■ 심사내용

○ 변경인가 · 등록시 업자 본인요건(신설)

–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 등록시 경영건전성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최근 3년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 및 최근 1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사회적 신용요건 규정

☞ 금투업자의 변경인가 · 등록시 업자 본인에 대한 심사요건(재무상태 및 사회적신용요건)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무상태 요건"은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경영건전성(자기자본비율, 자산건전성, 유동성 비율)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사회적 요건"은 현재의 신규진입시 대주주 요건*에 비해 규제강도가 크게 완화되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신규진입시 대주주 요건 : 기관경고(최근 3년), 벌금형(최근 5년) 이상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적립

○ 비등기임원의 자격요건(신설)

– 비등기임원의 범위를 상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집행임원"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여 구체화

☞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관계법 위반으로 그 직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비등기임원으로 재고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비등기임원의 범위가 전무, 상무 등 호칭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이사회로부터 업무감독을 받으면서 ①업무집행권한을 갖는 자, ②정관 · 이사회 결의로 위임받아 업무집행권한을 갖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규제대상이 최소화되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영업,자산양수도 신고기준 명확화(신설)

– 양수, 양도하려는 영업부문 또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실제거래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판단하도록 함

☞ 본 규정은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양도시 신고기준이 되는 신고액을 현행 "자산액"

기준에서 "장부가액과 거래금액중 큰 금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 이행에 별 부담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풋백옵션계약 공시(신설)

– 자산양수, 양도를 권리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계약 체결 등도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 양수도에 포함

☞ 본 규정은 풋백옵션계약*을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풋백옵션 행사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규제 이행시 큰 부담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실물 또는 금융자산의 매입자가 일정조건이 충족될 경우 매입한 실물 또는 금융자산을 매각자에게 다시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

○ 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 대상(신설)

–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등에 관한 정보가 증권시장 등에서 충분히 제공되는 경우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협회 사전심의의 실익이 없는 경우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다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은 제외)

*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금투협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제166조의2제1항제6호)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위험성인 높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사전심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사전심의 제외대상을 위와 같이 규정하는 것에 대해 원안 동의

○ 소규모펀드 등록유지제도(신설)

– 집합투자업자가 임의해지할 수 있는 펀드 요건을 현행 1개월간 계속해서 원본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서 ①공모추가형 펀드중 설립후 1년 경과시점에서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②1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1개월간 계속해서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

☞ 현재보다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 측면이 있고, 펀드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펀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안 동의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조건(신설)

– 중견 · 중소기업의 회생지원을 위한 "공모형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

구 분	내 용
자산 운용대상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중소 · 중견기업(상장 여부 무관) 투자
중소 · 중견기업 범위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투자대상 증권 종류	신규발행(신주 또는 사채 발행 등) 증권 금융위가 고시하는 금융회사가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증권으로 취득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
투자회사 존속 기한	3년 이상

☞ 유동성 부족에 빠진 중견, 중소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도입 취지에 비추어 설정 조건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조건(신설)

–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의 범위는, i)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ii)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으로 규정

☞ 투자대상 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약정을 체결한 기업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자산운용(신설)

–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 회사재산을 다음과 같이 운용해야 함
ⅰ)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재무구조 개선 기업과 관련된 자산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함
ⅱ)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권투자, 파생상품 거래 등의 방법으로 운용 가능

☞ 자산운용 대상 제한은 동 제도의 도입 목적 및 유사 제도의 규제 수준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신설 6, 강화 1)

■ 심사내용

○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신설)

–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정하는 금융상품, ②예 · 적금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정하는 금융상품, ③「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등을 제외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결제대상은 "물품의 구입 및 용역대가"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 결제금지대상은 없음

☞ 금융위가 정한 상품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 금지하는 것은 예방적이고 선제적 규제로 문제가 있으나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상품권깡으로 인한 가계 경제의 부실화 등 문제 등을 감안하여 원안 동의

○ 신용카드회원 모집자 조사방법, 절차(강화)

– 개정 여전법(6.13일 시행)에서 카드회원 불법 모집자에 대한 진술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조사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 불법 모집자에 대한 조사방법 · 절차 등을 규정

☞ 동 규제는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큰 부담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신설)

– 신용카드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중소가맹점을 ①소상공인, ②연간 매출액이 9,600만원**미만, ③연간 카드(신용 · 직불 · 선불카드 포함) 거래액이 9,6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계약하기 위해 설립
** 「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선정기준 금액의 200%

☞ 본 시행령의 근거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의 2에 대한 부처협의 후 이를 전제로 동 시행령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건부 원안 동의

○ 과징금 부과기준(신설)

–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여전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규제 위반시 과징금을 신용공여 위반가액에 비례하여 산정,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 대주주 신용공여 규제 위반시 부과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음

☞ 과징금이 신용공여 위반가액에 비례하도록 산정되어 있어 여타 금융업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금서비스금리 비교공시 제도 개선(신설)

– 서민들의 현금서비스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카드사간 실질적인 금리 인하 경쟁 유도를 위하여 금리 구간별 신용카드회원 분포 현황 비교 공시 근거를 마련*
* 현재 여신금융협회 비교공시사이트를 통해 카드사별 회원의 내부 신용등급별 분포, 현금서비스 금리의 평균값 및 전체 범위 등을 매분기 공시하고 있으나, 카드사간 실질적인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에는 한계

☞ 본 규정은 신용카드사에게 금리 구간별 신용카드회원 분포현황을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용카드사 입장에서 규제를 이행하는데 큰 부담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할부상품 거래조건 비교공시제도 법적근거 마련(신설)

– 할부금융업자에게 할부이용자의 신용등급과 각종 요율(이자율, 취급수수료율 및 연체이자율 등)을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 할부금융회사간 금리 인하 경쟁을 장기적으로 담보하고, 규제의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제를 이행하는데 큰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안 동의

○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제도 법적 근거 마련(신설)

– 현재 신용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여신금융협회 내규)*"에 근거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의무를 법제화

* 교육시간 : 신규모집인 등록전 1개월내 10시간, 경력직모집인 등록전후 1개월내 10시간
교육방법 : 여신금융협회의 표준강의 교재를 활용

☞ 본 규정은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모집인에 대한 교육시간과 교육방법 등이 현재와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되어 규제를 이행하는데 큰 부담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0)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신설 5)

■ 심사내용

○ 고객확인 정보제공 거부시 신규거래 거절(신설)

– 금융기관이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신규 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원안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 신규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 거부시 거래 거절 여부는 현행도 금융기관의 자율권에 속한 사항이며, 단순히 이를 명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안 의결

○ 무통장 송금 등 일회성 금융거래 합산기준일 7일(신설)

– 현재 거래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고객의 주소, 연락처를 확인(고객확인)하도록 하고 있음(법§5의2①제1호). 이때 2천만원 미만 분할거래를 이용한 고객확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7일) 동안의 일회성거래 금액을 합산하여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고객의 주소, 연락처를 확인(원안의 14일을 7일로 변경)

☞ 원안에 비해 합산기간을 단축한 점은 개선한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

○ 고액자산가, 신탁 등을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고객으로 분류(신설)

– 금융회사는 특정한 금융기간 등으로부터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금융기관 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개인자산 관리용 신탁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 명의주주나 무기명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자금세탁의 우려가 높은 고객으로 고려하여, 신규 계좌개설시 통상적인 고객확인(성명,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이외에 추가로 실제 당사자, 거래목적 등을 확인(원안의 "고액자산가", "신탁"의 범위를 한정하고, "비영리단체"는 삭제)

☞ 고액 자산가의 범위를 금융기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신탁과 관련하여 부동산신탁 회사에 맡기는 부동산, 은행 신탁 계정에 맡긴 예금 등 대부분의 신탁재산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신탁재산으로 법인을 만드는 경우에만 규제하려는 것으로 완화되었으므로 원안 의결

○ 법인고객의 계좌개설시 법인의 실제당사자 여부 파악의무(신설)

– 금융기관은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법인고객의 신규 계좌개설시 실제당사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금융기관이 확인해야 하는 대상이 법인의 금융거래 중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 범위가 한정되었고, 조사항목도 상위법에서 위임한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 파악으로 수정되었으므로 원안 의결

○ 고위험고객에 대한 추가확인 범위(신설)

– 금융기관 등은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다고 평가된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의 목적

등 추가정보를 확인해야 함

☞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정보의 범위가 입법 목적 범위내로 축소되었고, 순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직장, 재산현황 등)는 선택사항으로 수정되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원안 의결

(1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이자율 등의 제한(강화)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적용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현행 연 49%에서 연 44%로 5%P 인하

* 최고이자율 : 대부업법상 연 50%(대부업상 2013년말까지 한시적용) 시행령상 연 49% (미등록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30% 적용)

☞ 최고이자율을 연 5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모법에서 위임하는 근거가 있고, 서민층 이자부담 축소*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최고이자율을 5%P 인하하더라도 대출 축소, 대부거래 음성화 등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 동의

* 현재 대부업계가 수취하는 금리는 연 41.2%('09.12말)로 시장금리 하락으로 대부업체의 조달비용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09.3말(연 38.4%) 대비 2.8%P 상승

(1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자기자본 산출기준 변경(신설)

– 자기자본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하고 자기주식 등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을 공제(즉, BIS기준에 따른 자기자본 = ① + ② – ③)*

* 개정 상호저축은행법(7.1일 시행)에서 국제적 정합성에 맞춰 자기자본을 회계상 자본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에서 국제결재은행(BIS)기준 자기자본(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으로 규정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시행령 등에 구체화하는 것임

① 기본자본 : 자본금 · 내부유보금 등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② 보완자본 : 후순위채권 등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전

③ 공제항목 :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항목 및 저축은행의 건전성,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 자기자본의 구성체계를 기본적으로 은행 · 종금사와 동일하게 구성

☞ 'BIS기준 자기자본'의 구성항목인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구체적 범위가 여타 금융권(은행 · 종금)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상호저축은행에 특별히 불리하게 적용된 점이 없고, BIS기준 자기자본으로 변경될 경우 대부분의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이 증가하고, 따라서 각종 영업한도가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규제완화로 작용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동성 기준(비율) 세부사항 규정(강화)

– 유동성비율*을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추가

$$\text{* 유동성비율} = \frac{\text{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자산}}{\text{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부채}} \geq 100\%$$

☞ 유동성비율을 준수하려면 장기대출을 줄이고 단기 여유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대출인 소액신용대출 및 주택담보 사업자금대출 등 서민 금융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나, 상호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고 적용 유예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는 등 규제준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원안 동의

(13)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선물환포지션 한도(신설)

–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 및 매도초과포지션을 각각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제한

– 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자기자본의 50%(외은지점 250%)로 설정됨에 따라, 증권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부과

☞ 은행과 증권사 간에 규제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27개 외국환업무취급 증권사 중 선물포지션 비율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증권사*는 없어 실질적으로 규제 부담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27개 증권사 : 평균 자기자본의 6.5%('10.3말)〈증권사별 포지션 : 0.0%~24.6%〉

(14)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신설)

– 국내은행에 적용하는 중장기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을 중장기외화자금관리 비율로 변경하고, 규제비율도 현행 90%에서 100%로 인상

- 〈현행〉 : 중장기외화대출 재원조달비율 = 1년초과 중장기 외화차입금 / 1년이상 중 장기 외화대출 ≥ 90%
- 〈개정〉 : 중장기외화자금 관리비율 = 1년초과 중장기 외화차입금 / (1년이상 중장기 외화대출+외화만기보유증권) ≥100%

☞ 향후 경기회복이 본격화되어 단기외화자금의 급속히 유입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외화자금을 장기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내은행의 중장기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10.3말 현재)은 131%로 규제비율인 9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중장기외화자금관리비율 역시 128%로 규제예정비율인 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규제 부담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외화유동성 비율 보고 강화(신설)

– 국내은행이 외화유동성 비율*을 자율적으로 일별관리하되, 일별관리실적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현행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월말기준, 월1회 보고)

- 7일만기 불일치 비율 : (7일이내 외화자산–7일이내 외화부채) / 외화자산 ≥ △3%
- 1개월만기 불일치 비율 : (1개월이내 외화자산–1개월이내 외화부채) / 외화자산 ≥ △10%
-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 :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자산 /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부채) ≥ 85%

☞ 현재 매월 1회 관리하고 있는 외화유동성 비율을 자율적으로 일별관리 후 감독당국에 보고의무만 부과하는 것이므로 규제 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적용범위 확대(신설)

– 현재 국내은행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외은지점에 확대 적용

* ① 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 ② 양질의 유동자산 보유, ③ 자금조달 다변화, ④ 위기상황분석 및 비상조달계획의 내용을 은행별 특성에 맞춰 자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

– 다만 외은지점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서 제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①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만 적용

☞ 위험관리기준은 자체적으로 설정 · 운영하는 내부통제기준이므로 금융기관이 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마련 · 운영할 수 있고, 외은본점이 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가운데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만 적용받으므로 외은지점의 실제 부담은 크지 않으므로 원안 동의

(15)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원화예대율 제도 도입(신설)

– 원화예대율 기준을 은행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추가

$$\text{예대율} = \frac{\text{원화대출금}}{\text{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CD) 제외)}} \leq 100\%$$

* 원화대출금 및 원화예수금은 평잔 기준

– 적용대상 : 원화 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외은지점 포함) 및 농협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수협중앙회는 적용 제외
* 규제대상 외은지점 : HSBC만 해당

– 시행시기 : 2014. 1. 1일(2013년말까지 유예)

☞ '98. 11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것으로 규제 도입시 은행의 대출이 축소되어 담보력 및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 및 서민 대출이 더욱 위축되고 대출금리가 상승할 우려가 있으며, 규제에 대한 상위법 위임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있으나,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에 대해서 높은 예대율 비율을 지적하면서 외환차입 애로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적 측면을 감안하여 원안 동의

☞ 다만, 현재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BCBS)에서 마련중인 은행 유동성비율에 대한 국제기준(2012년말 시행 예정)과 중복 · 과잉 규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유동성 규제 방안이 확정되면 예대율 규제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여 규개위에 상정할 필요

○ 자회사 출자요건에 예대율 준수 추가(신설)

– 은행이 자회사 출자*시 준수해야 할 경영상태요건에 현행 경영실태평가(1~2등급), BIS 비율(8%이상), 원화유동성비율(100%이상) 이외에 원화예대율(100%이하)을 추가
* 은행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현행 규정상 자회사 출자요건은 경영지도비율 준수와 연동되어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동의

(16)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부동산PF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신설)

– 부동산PF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상향 조정*
* 정상 : 0.5% → 0.5%~3%, 요주의 : 2% → 7%, 고정 : 20% → 30%, 회수의문 : 종금 50%(증권 75%) → 75%

☞ 부동산PF대출의 연체율*, 건설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할 때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강화할 명분이 있고 동 적립률의 업권간 형평성도 인정되어 원안 동의

* 금투업자 연체율(%) : 13.9('08말) → 24.5('09.6말) → 30.3('09말) → 29.5('10.3말)
종금사 연체율(%) : 1.1('09.6말) → 3.1('09말) → 28.6('10.3말)

○ 종합금융회사 부동산PF대출 취급한도 설정(신설)

– 종금사의 부동산PF대출 취급한도를 총 대출채권의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

☞ 종금사 부동산PF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특정 업종에 대출이 집중되는 집중리스크(concentration risk)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 총량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동의

* 종금사 부동산PF대출 비중(%) : 46.4('07말) → 26.3('08말) → 25.2('09말) → 24.3 ('10.3말)

○ 채권전문 자기매매업자의 시장조성기능 강화(신설)

– 시장조성종목 : 회사채, 금융채 각 2종목 포함하여 9종목 이상으로 확대

– 장외시장 호가범위 : 국채 20bp 이내, 기타채권 40bp 이내로 축소

☞ 시장조성의 경우 채권딜러가 스스로 정한 종목과 투자자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규제부담이 크지 않으며, 호가범위 축소의 경우 현재 실제로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호가범위가 5bp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시장상황을 단순히 수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미니금선물 대량보유보고 제도 도입(신설)

– 거래단위 중량 100그램 미만의 미니금선물에 대해 대량보유보고 제도* 도입
* 보유보고 기준 : 300계약, 변동보고 기준 : 60계약

☞ 신규 개설예정인 미니금선물에 대한 효율적인 시장감시를 위해 대량보유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고에 따른 규제부담도 거의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7)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부동산PF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신설)

– 보험사의 부동산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을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
(정상 여신 : 0.5% → 0.9%, 요주의 여신 : 2% → 7%로 인상)

☞ 부동산PF대출의 연체율*, 건설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할 때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강화할 명분이 있고 동 적립률의 업권간 형평성도 인정되어 원안 동의

* 보험사 연체율(%) : 2.4('08말) → 4.1('09.6말) → 4.6('09말) → 7.6('10.3말)

(18)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2)

■ 심사내용

○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 관련자의 거래제한(강화)

– 공중협박자금조달자(테러리스트)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를 제한 하는 것 외에 모든 재산(동산 · 부동산, 채권 등) 거래까지 제한

☞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자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여지가 많고, 금융거래제한의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 적발이 용이하나, 부동산 거래 등의 경우 금융위에서 적발하기 어려워 집행 측면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거래제한 대상자와 거래를 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 등 기본권 침해 여지가 많은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들어 개선 권고

○ 공중협박(테러) 자금조달 관련자 처벌범위(강화)

– 공중협박행위를 위한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테러행위자 · 단체에게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 모집, 운반, 보관하는 것을 처벌

☞ 외국 법령과 비교하여 규제대상자 및 규제대상행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법적용이 남용될 우려가 있고, 범죄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연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선의의 제 3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경제적 지원이 테러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거나, 테러 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서 지원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개선 권고

(19)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강화 1, 신설 1)

■ 심사내용

○ 부동산PF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강화)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을 저축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
• 정상 여신은 0.5% → 0.5~3%, 요주의 여신은 1% → 7~10%, 고정 여신은 20% → 30%로 인상

☞ 부동산PF대출의 연체율*, 건설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할 때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강화할 명분이 있고 동

적립률의 업권간 형평성도 인정되어 원안 동의

* 여전사 연체율(%) : 5.6('08말) → 5.4('09.6말) → 3.4('09말) → 9.4('10.3말)

○ 부동산PF대출 취급한도 설정(신설)

– 여전사의 부동산PF대출 취급한도를 저축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여신성자산의 30%로 설정

– 한도초과 해소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 다만, 금융시장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이내에서 기간 연장

☞ 일부 여전사의 부동산PF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특정 업종에 대출이 집중되는 집중리스크(concentration risk)를 방지하기 위한 대출 총량규제가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동의

(20)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동일 · 동종 원인행위의 과징금 산정 방법 변경(신설)

– 동일 · 동종 위반*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법정 한도액을 고려한 최종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부과

* 동일 · 동종의 원인사실로 공시위반 행위가 수회 발생한 경우로, 이 경우 행위 전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과징금 부과

☞ 현행 규정상 동일 · 동종 위반시 과징금이 기본과징금을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했던 당초의 규정 취지와 달리, 동일 · 동종 위반자를 우대하게 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경우의 발생건수가 극히 적은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2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8)

■ 심사내용

○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한 지정콜론을 신용공여에 추가(신설)

–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한 저축은행간 콜론거래 중 상대 저축은행을 지정하는 거래는 신용공여로 보아 신용공여한도, 대주주신용공여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함

☞ 대주주를 위한 신용공여 및 계열 은행간의 과도한 신용공여로 인해 저축은행이 부실화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동일영업구역내 다른 행정구역으로의 점포이전 요건 신설(신설)

– 본점 : 행정구역별 법정 최소자본금의 차이*를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법정 최소자본금과 현행 자본금과의 차액을 증자

* 상호저축은행법 제5조 ① 특별시 : 120억원, 광역시 : 80억원, 시도 : 40억원

– 지점 등 : 현행 지점설치시 자기자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점 이전시와 같이 자본금과의 차액을 증자토록 함. 다만, 자기자본이 충분할 경우에는 지점 등 설치시 요구되는 금액에 대한 증자를 면제 또는 감액

☞ 이미 저축은행중앙회 사무편람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주식취득 승인 대상 확대(신설)

– 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 심사 대상에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대주주)의 최대주주, 대표자를 추가

☞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유사사례가 있고, 법인(대주주)의 최대주주, 대표자도 상위법 제10조의6에서 위임한 대주주의 범위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

○ 대주주 적격성 주기적 심사 시행기준 신설(신설)

– 심사대상 :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 2% 이상인 주주

– 심사주기 : 지배구조 및 자산규모 등을 감안, 금융위가 정하는 저축은행 1년, 기타 저축은행은 2년

– 심사요건 : 주식취득 승인시 적용되는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 보다 일부 완화

☞ 저축은행은 대부분 상장되어 있지 않고, 최대주주 및 소수의 특수이해관계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부적격 대주주로 판정을 받더라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 6에서 정하는 주식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준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현실적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융통성 있게 개선 권고

* 〈별표3〉의 1호 다목 부채비율 요건을 300% → 400%로 개선
시행령(안) 제7조의4 제5항 적격성 심사 주기에 대한 기준 명시
금융기관의 벌금 액수에 대한 통계 자료를 토대로 〈별표3〉의 라목 1호 벌금형에 대한 한도 설정 필요

○ 업무준수사항 신설(신설)

① 부동산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여신을 총여신의 50% 이내로 제한

② 대출채권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 매매가격 등에 관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③ 신용공여시 이자외에 신용공여의 목적되는 사업의 성과에 따른 보수를 사업수익의 10% 이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수취 금지

④ 부채성 자본조달(예 : 후순위채 발행)을 위해 신용공여하는 행위를 금지함

⑤ 해당 저축은행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담보로 신용공여 금지

⑥ 대주주와 부동산 양도 · 양수계약 체결시 금감원장 승인을 받도록 함

⑦ 대주주가 발행 · 배서한 상업어음을 제3자로부터 매입시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매입

※ ④는 기존 감독업무 시행세칙 규정사항을, ⑤ · ⑦은 기존 감독규정 사항을,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법적 근거 마련

☞ 저축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 규정에 대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동의

○ 동일계열저축은행의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신설(신설)

– 동일계열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다음과 같음
• 법인 : 80억원(8.8충족 저축은행은 초과 가능)
• 개인 : 5억원 → 7억원

– 동일계열저축은행*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5% 이내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저축은행 그룹
** 개별차주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를 말하며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함

☞ 동일계열저축은행이 각각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에게 신용공여가 집중될 경우 저축은행 그룹 전체차원에서 리스크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임원의 결격사유 범위 확대(신설)

– 임원의 결격사유에 적기시정조치에 직접책임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임원이 위반하여 처벌받지 말아야 할 금융관계법령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10개 → 36개)

☞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적기시정조치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를 추가하고, 위반 금지 법률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주식취득 승인요건 신설(신설)

–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경우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적용할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 신설
- 재무건전성기준 : 여전법상 조정자기자본 비율 7% 이상
- 부채비율 : 300% 이하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함
- 대부업법을 포함한 금융관계 법률(36개 법령) 등 위반사실 없을 것

☞ 부채비율을 300%로 요구하는 것은 일반 금융기관에 비하여 과도한 규제*이므로 400%로 완화하고 조정자기자본비율 기준은 부채비율 기준에 의해 사실상 사문화되는 규정이므로 동 기준을 삭제토록 개선 권고

* 시중은행의 평균 부채비율(부채/자본) : 1,329.8%
** 조정BIS 7% 이상 요구 ⇒ 부채비율 환산시 1300%까지 허용되는 효과

(2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신설 9)

■ 심사내용

○ 대주주 적격성 주기적 심사 시행기준 신설(신설)

– 개정 저축은행법에서 대주주의 적격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부적격 대주주를 퇴출하도록 하는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심사주기, 심사요건, 제출서류, 심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상위법 위임범위내에서 시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중요규제로 판단됨. 다만 심사관련 제출서류가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에 중복되게 명시되고 있어 이를 보다 통일되게 명시될 필요

○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등 신설(신설)

– 시행령에서 위임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에 대하여 규정(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에 대해서는 3년내 금감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소)
① 부동산PF대출 : 총여신의 20% 이내
② 11개 업종* : 각 업종별로 총여신의 30% 이내
* 〈제조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③ 부동산PF대출 / 건설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포괄여신 : 총여신의 50% 이내

☞ 그동안 부동산 분야로의 과도한 대출쏠림으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부동산경기 과열 등이 유발된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 PF대출(20%), 부동산관련 포괄여신(50%)관련 신용공여 한도는 원안 동의

☞ 그러나 11개 업종중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30%) 도입은 규제의 불가피성 · 시의성, 규제수준의 적정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회 권고

* 예컨대, 제조업의 경우 전자, 자동차, 화학 등 하위 소분류 세부업종이 23개에 달하여 자체적인 포트폴리오 분산효과(diversification effect)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타업종과 동일하게 30%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대출채권 매매기준 신설(신설)

– 대출채권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 매매가격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매매당사자가 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아닐 것, 지명채권양도방식에 의한 대항요건(채권자변경 통지 행위 등)을 갖출 것, 매도처는 금융기관, 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 대출채권 담보부동산의 이해관계자, 매입대상 대출채권이 금융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을 것 등

☞ 동 매매기준은 위임범위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

○ 신용공여시 과도한 성과보수 수취 제한(신설)

– 시행령에서 위임(10/100이내)한 신용공여시 이자외의 수취 가능한 성과보수 한도를 사업수익의 5/100 이내로 구체화

☞ 시행령에서 정한 성과보수 한도가 10%에 불과하여 그 범위내에서 한도를 더 제한한다고 하여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

○ 여유자금 운용기관에 우체국 추가(신설)

– 법에서 위임한 저축은행의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우체국을 추가하고, 30일이상 예치토록 규정

☞ 여유자금 유치대상에 우체국을 포함시키는 것은 원안 동의하되 최소예치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상위법 위임근거 위반에 대한 법제처 해석에 근거하여 원안 동의 또는 철회 권고

○ 종목별 유가증권 한도 추가(신설)

– 부동산 · 특별자산펀드 등과 관련된 수익증권(자기자본의 20% 이내)과 해외증권(자기자본의 10% 이내)에 대한 투자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동 한도를 초과한 투자한 유가증권은 6개월 이내에 일괄 처분토록 의무화

☞ 특정분야로의 과도한 투자 쏠림에 의해 새로운 부실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측면에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추가하는 것은 원안 동의. 다만 부동산 · 특별자산펀드 등 펀드 만기를 고려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일괄 처분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동 부분은 철회 권고

○ 자산운용특례 제도 개편(신설)

– 신용공여 한도 규제 등을 받는 자산운용특례의 대상을 확대

현행	개정안
투자자가 1인인 사모단독펀드, 특정금전신탁	다음 ①, ②에 해당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계약, 금전신탁 등 ① 투자자가 3인 이하이거나 저축은행 투자비중이 50% 이상 ② 상호저축은행이 운용지시권을 보유

☞ 상위법 위임 근거 위반*과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철회 권고

*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신용공여 한도 규제 적용을 허용하는 상위법이 부재

** 예컨대, 3인 초과이고 총자산중 저축은행의 투자비중이 50%미만인 경우 同 규제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

○ 영업구역외 지점설치 기준 강화(신설)

– 영업구역외 지점설치를 위한 경제적 부담금액*을 1개 지점당 12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상향 조정

* 최대주주가 주식양수를 위해 지급한 금액 +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금액

** 서울소재 저축은행의 평균 점포당 자기자본이 237억원(26,550억원/112개 지점)인 점을 반영

– 경제부담금이 600억원 이하인 경우 설치가능 지점 총수(5개)의 1/2을 초과하는 지점을 서울시내 설치 불가 ⇒ 지점 설치가능 지역은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되, 수도권에 1/2을 초과하는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자본금 하한을 1,200억원*으로 상향 조정

* 240억원 × 5개

☞ 경제적 부담금액 상향조정시,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어려워지고 지방 저축은행 등의 수도권 진입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은 있으나 부실 저축은행 인수시, 투입자금을 확대하라는 취지에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동의

○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 명시(신설)

–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하여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기보유분 + 신규취득분)은 2년내 매각*하되, 경매절차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에 한해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

* 〈현행〉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처분기간을 부여

☞ 상위법 위임근거 위반*과 규제의 과도성** 측면에서 철회 권고

*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리문제는 상위법의 위임사항 없이 감독규정에서 담을 사항이 아님

** 비업무용부동산의 자산대비 비중이 저축은행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각이 용이하지 않고 매각손실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처분기한(2년+1년)내에 모든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23)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이해관계인 부실책임조사 불응시 처벌 강화(신설)

– 부실책임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부실책임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인상(2백만원 이하 → 5백만원 이하)

☞ 부실책임 관련 이해관계인 조사 강화를 통해 보다 원활한 예보기금 회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행 보험료율 최고한도 유지(신설)

– 저축은행 계정적자 누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현재 보험료율 한도(0.5%)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일몰조항 부칙 조항*을 삭제

* 현행 보험료율 한도(0.5%) 규정의 적용 시한은 2011년 8월 31일까지로 관련 부칙 개정이 없을 경우 '98년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회귀

☞ 현행 최고한도내에서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실제 요율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보험료율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 유효기한 연장(신설)

– 저축은행 부실화 등으로 여전히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등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므로 금융거래정보제공 일괄조회권의 유효기한을 2016년 3월 23일까지 5년 연장

☞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특정점포마다 조회를 요청할 경우 조회과정에서 부실관련자가 조회사실을 인지하여 해당 금융재산을 타 점포 등으로 은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점포나 본점에 다시 조회를 의뢰해야 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량이 오히려 가중되는 측면에 존재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2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강화)

–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인 특수건물에 6개 업종(영화상영관, 목욕장, 휴게음식점업 · 노래연습장업 · PC방업 · 게임제공업 및 옥내사격장)을 추가

☞ 새롭게 추가된 6개 업종의 화재 발생빈도 및 사고발생시 사상자 규모와 동 규제 도입으로 인해 건물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평균 117만원(월 10만원))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 동의

(25)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지배구조내부규범 공시사항(신설)

– 법(제23조의4제2항)에서 위임한 지배구조내부규범 관련 세부 사항(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임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 상위법 위임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킨다는 취지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주채무계열 제도 등 여신관리 조항 정비(신설)

– 대기업 계열군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 리스크가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위한 지도기준에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에 대한 신용공여관리기준"을 추가로 포함시킴

– 아울러 현재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채무계열제도*에 대한 상위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비판에 따라 상위법규를 보완하려는 취지

* 금융위 · 금감원은 매년 신용공여 잔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계열기업군 및 소속 기업체(주채무 계열)를 선정하고, 주채무 계열사에 대해서는 주채권 은행이 기타 채권은행과 협력하여 여신을 통합관리해야 함

☞ 기업군은 계열기업간에 상호출자 및 보증 등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전체계열사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출실행여부 판단시 대기업 계열군 전체에 대한 리스크를 통합하여 평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동의

☞ 다만 동 시행령안이 제정되더라도 현행 주채무은행제도 관련 규정에 대한 위임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차후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동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6) 특정 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5)

■ 심사내용

○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 검사(강화)

– 금융회사 등의 법규위반 정도에 비례하여 영업정지, 기관주의, 기관경고, 대체과징금 등의 제재근거의 신설 및 임직원 제재규정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서 임직원 문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법안 11조 2항)는 기존 규정을 세분화하여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금융정보분석원장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 자료 요구내용 명확화(신설)

–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 감독 · 검사의 경우에도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기존 법률에 금융기관 등의 업무 검사권에 대한 근거조항(제11조1항)은 있으며, 다른

유사입법례에 비추어 검사권과 자료제공 요청은 함께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전신송금의 송금자정보 제공(신설)

– 전신송금시 송금금융회사가 수취금융회사에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FATF권고)

* 완전한 송금자 정보란 1) 성명, 2)계좌번호, 3)실명번호 또는 주소

☞ 현행 업무규정에 따라 송금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성명과 계좌번호로 한정되어 효과적으로 분산송금 등을 방지할 수 없어, 송금자의 주민등록번호(실명번호) 또는 주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내은행들이 이미 외국은행과의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제공하고 있어 본 규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금융정보의 비밀보장 의무 대상자에 정보시스템 관리자 등 추가(신설)

– 금융정보의 비밀보장 의무 대상자에 정보시스템 관리자, 용역수행자, 검사자를 추가하여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지장치를 마련

☞ 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관리자들은 실질적으로 분석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정보를 처리하므로 이들에게도 비밀보호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직무수행기준의 명확화(신설)

– 금융회사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당해 금융회사의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

☞ 현재 내부보고체제, 업무지침, 임직원 교육연수에 관한 내용은 법적 근거가 있으나 그 외의 직무수행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기 위한 근거가 없고, 하나하나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조문정리차원에서 포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가 있으며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유사 금융관계법에서도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비중규제로 판단

(27)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공인회계사의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 강화(신설)

– 공인회계사의 재등록 및 등록갱신시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를 의무화

☞ 미국 등 국외에서도 교육이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회계사협회의 연수과정에 따라 40시간을 온라인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연간 12만원(시간당 3천원), 집합교육의 경우 연간 28만원(시간당 7천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바 과도한 교육비가 지출되는 것도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공인회계사의 재등록 및 등록갱신에 대한 거부규정을 신설(신설)

– 공인회계사가 재등록 및 등록갱신을 신청할 경우 법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의무 연수를 받지 않는 경우 등록 · 등록갱신을 거부하도록 하는 제재적 조치로써, 공인회계사 의무 연수 제도(개정안 7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사유를 추가(신설)

– 등록갱신 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등록갱신 등을 하는 경우 등록취소의 사유로 추가

☞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9조)를 하는 경우 등록취소 사유를 시정하여 바로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기간 경과연수를 두어 회계사의 자격정지하는 효과가 없음. 따라서 본 규정 도입으로 등록 취소를 당한다하여도, 그로인한 회계사의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공인회계사 개업 등의 신고의무(신설)

– 공인회계사가 개업 및 휴업 등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

☞ 현재 공인회계사협회 회칙에 따라 개업 · 휴업에 대한 신고를 하고 있어, 본 규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없음. 아울러 타 전문자격사들(변호사 및 세무사 등)에 대해서도 개업 · 휴업 등에 대한 신고제도 입법례가 있어 회계사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28)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신설 5)

■ 심사내용

○ 카지노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자가평가(신설)

– 카지노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현행 카지노사업자들이 자금세탁방지 제도(고액현금거래보고, 의심스러운거래보고 등)을 수행하고 있어, 자기평가를 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카지노사업자의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을 건별로 함(신설)

– 카지노사업자가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를 금융거래 건별로 규정(기타 금융회사의 경우 1주일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됨)

☞ 카지노 금융거래(게임 칩으로 환전)의 특성상 건별(칩교환시) 금융거래액을 기준으로 고액거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일회성 금융거래를 7일 거래일 합산하는데 반해 카지노사업자에게는 완화되어 적용되어 왔고, 건별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보는 것에 대해서 카지노협회 및 사업자들도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카지노사업자의 자금세탁 고위험고객 분류(신설)

– 카지노사업자는 특별 서비스 고객중 일부, 환전상 등을 고위험고객으로 고려해야 함

☞ 카지노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카지노사업자의 고객 공지 의무(신설)

– 카지노사업자는 고객확인시 고객확인의 법적근거, 필요정보, 조치사항 등을 고객에게 공지해야 함

☞ 카지노사업자에게는 고객확인의무(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가 있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이에 대한 법적근거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보호를 위해 당연한 절차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카지노사업자의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정보 확인 의무(신설)

– 카지노사업자는 자금세탁등의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직업,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 추가정보를 확인해야 함

☞ 카지노의 현실상 고객의 추가정보 확인이 어렵지만, 상위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 제2항)에서 고객 유형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다 하여도 처벌되지 않고 규범적 의미의 조항으로 해석되어 카지노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29)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대상을 추가*하는 한편 설명의무 중요사항을 상품설명서에 반영하고, 중요사항별로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의무화

* 변액보험계약의 투자형태, 최저보증기능이 중도 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조건, 저축성 보험계약의 적용 이율 등

☞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금융분야가 보험이며, 특히 가입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가 주요 분쟁이슈임을 감안할 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同 규제는 상위법규 위임범위 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

(30)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부수업무 제한 및 시정명령(신설)

– 보험회사가 경영하고자 하는 부수업무를 신고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회사의 명칭, 신고일자, 업무내용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

– 부수업무에 대한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과 사유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제한 및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공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범위내에서 적정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신설)

– 보험업법 제95조의 2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토록 규정한 ①보험계약의 중요사항*, ②계약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과정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내용임

*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등

** 보험금 체결 단계(모집종사자 성명 및 연락처 등), 보험금 청구단계(담당자 및 예상심사기간 등), 보험금 심사단계(심사지연 사유 등), 보험금 지급 단계(지급일자 및 지급방식 등)

☞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금융분야가 보험인 점을 감안할 때 同 규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보완토록 개선 권고

①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소비자의 법적 구제방법을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 포함

② 설명의무가 보험관련 각 과정단계에서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가 아닌 유선 등을 통해 항목별 문답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소비자가 내용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신설)

–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포함 사항* 및 금지사항**을 정함

* 필수포함 사항 :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금지사항 : 지급사유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보험금을 단순합산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모두 지급될 보험금으로 광고하는 행위

☞ 보험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준수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31)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증권사 등의 투자자문사로부터의 자문범위를 제한(신설)

–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투자자문사로부터 '종목과 비중을 주기적으로 제공' 받아 이를 투자일임계좌, 집합투자계좌 등의 운용에 그대로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

☞ 투자자문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투자자문사가 제공하는 자문내용은 제한없이 허용하되,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동 투자자문을 기계적으로 투자결정을 적용하는 경우만을 규제토록 개선 권고*

* 즉 투자자문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투자결정을 하더라도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자본시장법상 선관의무 등을 준수했다면 규제대상이 아님

○ 맞춤형 서비스 요건의 도입(신설)

–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맞는 운용방식을 투자일임업자별로 구축토록 의무화

☞ 맞춤형 서비스 구축을 통해 계좌운용에 투자자의 특성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며 투자일임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다는 측면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랩 어카운트 유동성 문제의 규제(신설)

– 투자일임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면서 투자자와 수시 입출이 가능하다고 계약하는 것을 제한

☞ 거래일과 결제일이 다른 금융상품이 수시입출금식으로 운영됨에 따른 초래될 수 있는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랩 어카운트의 경우 위탁매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신설)

– 현행 제도상 투자일임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

* 투자일임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매매회전율을 높여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증권사 등의 이해상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3. 공정거래위원회

* 집필자 : 유경호 사무관(Tel. 2100-2345, khyoo@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등 14개의 법령안에 대하여 신설 5건, 강화 15건, 내용심사 26건 등 총 4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6건 중 4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4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0년도 총 신설규제는 5건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97차 경제분과 (2010.04.08)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00차 경제분과 (2010.05.20)	원안의결 5	강화 5 *중요 1, 비중요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403차 경제분과 (2010.06.10)	원안의결 6	강화 2 내용심사 4 *중요 1, 비중요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7.20)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7.27)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비중요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0.07.27)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408차 경제분과 (2010.08.12)	원안의결 11 개선권고 2	내용심사 13 *중요 2, 비중요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8.15)	원안의결 5	강화 3 내용심사 2 *비중요 5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417차 경제분과 (2010.12.09)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심사 1 *중요 1, 비중요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20)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18차 경제분과 (2010.12.23)	개선권고 2	신설 1, 강화 1 *중요 2
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0.12.2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4 원안의결 42	신설 5 강화 15 내용심사 26 *중요 8, 비중요 38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와 관련, 계열회사의 상장여부에 대한 구분을 폐지하여 상장사도 비상장사와 동일하게 동일인 · 친족 지분이 30%이상(현행은 50%)인 회사 등으로 규정(강화)

* 대규모내부거래 :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10 또는 100억원 이상인 자금 · 유가증권 · 자산 및 계열회사와의 상품 · 용역 거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함

☞ 기업집단 계열사간 부당지원에 대한 사전자율감시 강화를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상장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업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5)

■ 심사내용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맹본부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추가(강화)

☞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공정 가맹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해외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미국, 호주, 중국도 정보공개서에 법 위반사실 및 경영활동 지원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

○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에 포함(강화)

☞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서 법 적용대상을 일부만 확대하여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가맹본부의 부담증가를 최소화한 점 등 규제 정도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원안 의결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가맹희망자**와 동일하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금지의무 부과(강화)

* 가맹점사업자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

** 가맹희망자 :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

☞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의무로 명시되지 않았던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허위 · 과장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 의무로서 규제로 인한 추가비용도 거의 없다고 보여지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과징금 부과기준인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액과징금 부과 규정 추가(강화)

☞ 법적용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가맹본부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여타 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강화)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중요한 사항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었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여타 규정*과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와 가맹점사업자의 과거 수익상황 ·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가맹본부가 예상수익상황 등에 대한 산출근거자료 비치 및 가맹희망자 · 가맹점사업자의 자료 요구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가맹계약서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2, 내용심사 4)

■ 심사내용

○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과 관련하여 통지 · 회신의 방법과 통지할 주소를 구체화(내용심사)

– 통지와 회신의 방법으로 내용증명에 의한 방법 또는 그 밖에 내용과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한정

– 통지할 주소를 '법인등기부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주소'로 한정하고, 회신할 주소를 '법인등기부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주소 또는 통지시 적시한 주소'로 한정

☞ 구두계약으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제심사*시 이미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을 심사하였고, 그 방향대로 규정한 하위규정으로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제211차 본회의('09.7.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규제심사에서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을 규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몰제(2년)를 적용토록 하고, 일부 문구는 수정(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 회신을 발신하지 아니한 경우)하도록 개선 권고

○ 법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기술자료의 구체적 범위를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및 자료와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방법 등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및 자료로 규정(내용심사)

☞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술자료 정의**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 ·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 도입과 관련 명단공표 대상자 선정을 위한 벌점 기준을 4점으로 하고, 공표사항은 사업자명 · 주소 · 대표자로 하며,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은 1년으로 규정(내용심사)

☞ 상습법위반자 명단공표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로서 규제 정도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원안 의결. 다만, 제도시행 2~3년 경과 후 당초 취지대로의 효과가 있는지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권고

○ 서류보존 대상에 입찰내역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단, 현장설명서, 시방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 한함) 대금결정 관련 서류를 추가(강화)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대금결정 관련 서류가 보존되어 있어야 하므로 서류보존의무 대상에 대금결정 관련 서류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미 생산된 서류를 보존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크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술자료 제공 강요행위 금지 및 위반시 과징금 부과 근거가 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구체적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위반시 과징금 산정을 위한 유형별 부과점수를 60점으로 설정(내용심사)

☞ 과징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벌점 부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규정이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규정(과징금 산정기준 부과점수 60점)에서 파생된 점, 그리고 위반행위의 유형도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부과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여지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상생협약 이행평가 결과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벌점을 1~3점 경감하고,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에 따른 벌점 경감 규모는 각 20점에서 각 5점으로 축소(강화)

* 3대 가이드라인 :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 운용 가이드라인

☞ 상생협약 체결 및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협약 이행 평가결과에 따른 벌점경감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가이드라인 사용에 따른 벌점 경감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의 동시 확보를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절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내용심사)

–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며, 등기신청서에는 정관중요사항, 출자금 관련 사항, 설립인가연월일, 임원 관련사항을 기재하며, 설립인가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정관사본을 첨부

– 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총회결의가 있는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임에 따라 동 조합의 설립 · 변경 · 해산 등기의 형식적 · 절차적 요건을 정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제한적('08. 12월 기준 약 260개 추산)이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유사입법례* 및 해외입법례** 비교시 규제수준이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농업협동조합법(제90조 · 제93조 · 제97조), 산림조합법(제75조 · 제78조 · 제80조 · 제81조), 수산업협동조합법(제92조 · 제95조 · 제97조 · 제98조) 규정 내용이 거의 유사

** 일본 소비생활협동조합법 제74조~제80조에서도 조합의 설립 · 변경 · 해산등기에 관한 사항이 유사하게 규정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설정(내용심사)

– 연합회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개 이상의 설립동의조합으로 구성되며, 출자금납입총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되,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함

– 전국연합회의 경우 출자금 납입총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되,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이어야 함

☞ 법 개정으로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설립을 위한 실체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제한적*이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상위법률** 및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시 규제수준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피규제자 : 기존 민법상 법인 또는 임의단체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한살림, iCOOP생협연대 등 8개로 추산)

** 개정 생활협동조합법(제60조)에서 연합회의 발기인으로 5개 이상의 조합을 규정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명, 소재지, 등록번호, 자산, 부채, 선수금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내용심사)

☞ 법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제 및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었으며 유사입법례* 비교시 규제수준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사입법례 :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5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1. 일반정보 : 상호, 업종, 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요제품 및 그 변경사항
2. 재무정보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3. 투자관련정보
4. 보증 또는 대출관련정보
5. 벤처기업확인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소비자의 예치금 지급청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반환 청구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내용심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의 위임근거에 따라 선수금보전금액의 예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제한적*이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피규제자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약 310개 추산) 및 은행(17개), 보험사(36개), 우체국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의무

자에게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지급의무자가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내용심사)

☞ 법 개정으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 절차가 시행규칙으로 위임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제한적*이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한 조항으로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피규제자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약 310개 추산, 지급의무자 약 53개(은행 17개, 보험사 36개)
**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인정을 받은 서식 등도 사용가능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의 적용범위, 과태료 미부과사유,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내용심사)

구분	주요내용
적용대상	– 공시하지 아니한 자, 지연하여 공시한 자,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허위로 공시한 자
과태료 미부과사유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및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시대상 신규지정 후 30일 이내 위반인 경우 및 공시지연일수가 3일 이내 등 경미한 경우
기준금액 (A)	–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별표3에 규정된 표에 따름 –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 • 위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자산총액기준 10% 이상인 경우 100%, 8~10%인 경우 90%, 6~8%인 경우 80%, 4~6%인 경우 70%, 2~4%인 경우 60%, 2% 미만인 경우 50% 적용
임의적 조정금액 (B)	– 임의적 조정금액은 임의적 가중금액에서 감면금액을 차감하여 산정 • 가중조정 사유 및 비율 : ① 사업자별 최근 5년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10%, 7회 이상인 경우 20% 가중, ② 공시의무 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분할거래한 경우 50% 가중 • 감면조정 사유 및 비율 : ① 공시주체의 적극적 행위없이 이루어진 지율변동의 경우 20% 감면, ② 최초 위반 또는 최근 5년간 법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 감면, ③ 채무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공시내용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간만 자동연장된 경우 30% 감면, ④ 사업자의 자금사정(당기순이익 또는 자본잠식 등)에 따라 면제 또는 20~100% 감면

구분	주요내용
부과과태료 (C=A+B)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더하여 결정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대신 도입된 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령 제65조 및 별표3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공시제도로 인한 자율적인 시장감시기능 및 기업가치 제고효과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편익은 매우 큰 반면, 과태료 부과로 인한 개별 기업의 비용부담*은 과도하지 않고, 유사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비교시 규제수준도 적정하며, 피규제대상***도 많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평균 자산총액 1조 1,648억원의 0.00086%에 해당('10.4.1 기준)
** 유사사례로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위반이나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의 경우에도 시행령상 기본금액에 대해 기준금액, 임의적 조정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가중·감경하도록 규정
*** '10. 4월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수는 53개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3)

■ 심사내용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지배주주*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또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등으로 규정(내용 심사)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은 자가 지배주주인 회사는 일정기간 등록이 불가능함

☞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었으며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사입법례 :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1.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
   나.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라.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및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조 · 공급되는 목적물' 과 회계감사, 어음 및 채무증서는 제외대상에서 삭제하고, 부동산은 제외대상에 추가(내용심사)

☞ 타 법률 개정 및 신용카드 보편화에 따른 할부거래 패턴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법 적용 제외대상에서 삭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었으며, 그 외 규제수준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단기금융법상 채무증서는 그 근거법률이 폐지되었으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회계감사는 성질상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굳이 제외대상에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주문에 의한 맞춤형 재화는 최근 신용카드의 보편화로 맞춤형 교육 등에 대한 대금결제가 증가하는 등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법 적용이 필요하므로 제외대상에서 삭제

○ 소비자가 할부거래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연간 최고한도를 30%로 한정(내용심사)

☞ 소비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부거래시 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할부수수료의 한도를 정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였다는 점(24% → 30%), 실제 할부금융상품의 할부수수료율이 12% ~ 31%로 형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규제수준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청약철회 제한대상 재화에서 냉장고 및 세탁기를 제외(내용심사)

☞ 냉장고 · 세탁기의 사용이 일반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었으며 오븐, 전자렌지, 식기세척기 등 유사가전제품과 달리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도 없다고 보여지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06년 현재 냉장고 보유대수는 가구당 1.65대, 세탁기 보유대수는 0.98대

○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을 할부거래업자가 지연한 경우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를 연 24%로 규정(내용심사)

☞ 할부거래업자의 대금환급 지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이나, 은행대출금 연체이자율 및 최근 개정된 유사입법례에서의 지연이자율을 고려할 때 연 24%는 과도하므로 연 20%로 인하할 것을 개선 권고

○ 소비자가 청약철회시 재화 등을 일부 사용 또는 소비하고 반환한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청구 가능한 비용의 범위를 소모성 부품 사용시 당해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가분물의 일부 소비시 해당 가분물 공급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내용심사)

☞ 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재화 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었으며, 유사입법례* 비교시 규제수준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사입법례 :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4조(재화 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범위)

1. 재화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2.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과 관련, 등록사항 변경 및 지위승계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등록사항중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종료, 휴폐업 및 휴업 후 영업재개 신고는 사유발생 1개월 전에 신고하도록 규정(내용심사)

☞ 소비자 피해예방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으로 위임한 등록사항 변경, 휴폐업 및 지위승계시 신고기한 등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었으며, 방문판매법 시행령(§18) 등 유사입법례 비교시 규제수준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소비자의 추가부담사항, 판매조건 제한사항, 사전제공물품이 있을 경우 그 가격 등으로 명시(내용심사)

☞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게 계약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가능케 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었으며, 유사입법례* 비교시 규제수준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사입법례 :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0조(계약서의 기재사항)

1. 재화 등의 가격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2. 판매일시 · 판매지역 · 판매수량 ·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선수금 예치기관을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로 한정하고 선수금 보전비율을 선수금 합계액의 50%로 규정(내용심사)

– 또한 선불식 할부계약이나 영업을 양도할 경우 예치금의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법에서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 이외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를 지급사유로 추가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

☞ 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세부내용 등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률 부칙에서 기존 사업자에 대해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을 공포후 1년까지는 10%,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연차적으로 증가토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으며, 유사입법례* 및 해외입법례** 비교시 규제수준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예치기관 관련 유사 입법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 : 은행, 보험회사, 체신관서, 신탁업자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은행
3. 하천법 시행령 제30조 :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은행
4.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2 : 은행

**** 해외입법례 :** 일본 할부판매법 제18조의3에서는 선수금의 50%에 대해 매년 3월말 및 9월말에 공탁 또는 보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주에서 약정된 서비스 이행시까지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70~100%를 신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 감독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출자금은 200억원 이상으로 하고, 공제조합의 기관구성, 주무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사항, 정관기재사항 등을 규정(내용심사)

☞ 공제조합의 기관구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4호~제9호)은 상위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삭제하고, 정관기재사항중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 탈퇴에 관한 사항(제24조 제5호)은 상위법률 규정과 중복되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

☞ 또한 공제조합의 부실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의 거래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우편으로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송부하도록 규정(내용심사)

☞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거래기록 등을 쉽게 확인함으로써 잔여 대금 파악 및 계약의 중도해지 여부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사입법례 :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1조(계속거래업자 등의 거래기록 열람) 계속거래업자등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 ·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에 의하여 열람 요청을 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위반 기간 중 수령한 선수금의 30% 내에서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내용심사)

☞ 법 위반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 액수 등을 예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반영*하였으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영업정지 기준 등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기본과징금,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의 단계로 과징금 산정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는 등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확대하고, 위반행위 판단 기준시점을 "당초 처분일과 재차 위반행위를 한 날"로 명시하여 자의적 판단소지 제거(국민권익위원회)

** 유사입법례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서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규정하면서, 이에 갈음하여 1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과태료 부과대상의 법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금액 산정, 즉 1회 위반시 부과 상한의 20%, 2회 위반시 50%, 3회 위반시 100% 순으로 부과(내용심사)

☞ 상위법률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었으며, 유사입법례* 비교시 규제수준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사입법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법 위반 1회시 부과상한의 20%, 2회 위반시 50%, 3회 위반시 100% 순으로 부과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5)

■ 심사내용

○ 정보공개서 등록시 제출서류와 관련 매출액 확인서류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구체화하고 운영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가맹계약서, 현재 근무중인 임직원 수 확인서류, 기타 정보공개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추가(강화)

☞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제5조의2 제1항)상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목록의 미비점을 정비한 것으로 현행 등록제 도입의 취지상, 운영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가맹계약서 등은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에 필요한 서류로 판단되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현행 규정(매출액 확인서류)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한 것으로서, 해외사례* 등을 감안시 규제수준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미국, 캐나다(온타리오, 앨베르타 주), 브라질, 프랑스 등에서도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시 가맹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강화)

* 현행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설비 등의 설치와 유지 · 보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시 가맹점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권리 · 의무관계 등 미비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등록에 따른 예상비용(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비용)은 미미한 반면, 규제에 따른 편익(가맹점 폐점에 따른 비용의 감소(약 689억원 추정))이 매우 크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해외입법례* 고려시 규제수준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해외 입법 사례**

- 브라질 : 가맹당사자간의 권리 · 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
- 캐나다 : 가맹계약서는 사업수행과 강제사항에 대하여 공정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하여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제한(온타리오, 앨베르타주)
- 중국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을 열거(가맹금, 비밀조항, 상품 및 용역의 질 통제 및 책임, 영업표지 사용 및 지식재산권의 내용, 계약해지 등)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① 가맹점사업자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와 ②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위반행위를 하여 이를 시정하였으나 1년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강화)

☞ 현행 즉시해지 사유의 일부내용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분쟁발생 소지가 있어 이를 정비한 것으로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즉시해지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 및 자체규제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쟁점이 되는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해외입법례** 등과 비교시 규제수준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당초 입법예고안 제15조 제11호에 '가맹점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계약조건 또는 영업방침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즉시해지 사유로 신설되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사에서 가맹본부가 이를 남용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심사안에서는 관련 조문이 삭제되었음

** 해외입법례
– 캐나다(온타리오, 앨버르타 주), 중국 및 이탈리아의 경우 가맹관련 법령에 가맹본부의 해지권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중국은 일반적인 계약법에 따라,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시에, 이탈리아도 "실질적인 위반(substantial breach)"시 해지가 가능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가맹본부 홈페이지, 가맹사업 연혁, 목적별 광고판촉비용 부담비율 및 가맹점사업자 부담사항 내용중 영업표시 변경에 따른 비용 등을 추가하고, 가맹사업법령상 반드시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가맹본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도 기재하도록 규정(강화)

☞ 본 개정내용은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추가토록 한 것으로 규제에 따른 예상비용(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비용)은 미미한 반면, 규제에 따른 편익(가맹점 폐점에 따른 비용의 감소(약 689억원 추정))이 매우 크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었으며, 해외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해외입법례 :** 미국 프랜차이즈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사항 및 금지규정
– (표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주소 등을 기재
– (본문) 가맹본부(모회사, 양도인, 계열회사 등) 현황, 사업연혁, 소송, 파산, 가맹금 사항, 가맹점사업자 의무, 지식재산권, 영업지역 등 23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인 내용 기재

○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는 삭제하고 부과기준 및 경감 · 가중 근거를 신설하여 수익 관련 정보 서면 미제공, 근거자료 미비치, 가맹계약서 미보관 등 절차관련 법위반 행위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도록 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가중(1회 : 법정상한의 20%, 2회 : 50%, 3회이상 : 100%)하고, 경감 및 가중기준은 해당금액의 1/2 이내로 함(강화)

☞ 현행 가맹사업법 제43조에서는 과태료 상한선만 정해놓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없어, 이를 정비한 것으로 과태료 기준설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거의 없는 반면, 과태료 부과의 예측가능성 · 투명성 · 객관성을 확보하는 편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지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가중하고 있는 유사입법례를 고려시 규제수준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9)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다단계판매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금을 정보공개 항목으로 추가하여 매년 공개(강화)

☞ 동 개정고시안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재무상태(자산, 부채 및 자본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자본잠식 등 재무상태 부실로 인한 판매원, 소비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0년 11월 현재 피규제자 수(74개 업체)도 많지 않으며, 현행의 정보공개사항*에 비추어 추가 공개되는 내용의 수준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행 정보공개사항 :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번호, 등록일,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총매출액, 상위 5개 품목의 개별매출액, 후원수당 관련 정보, 회사연혁 및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 소비자 불만처리와 관련된 정보, 다단계판매원 수와 관련된 정보, 당기순이익 · 대손충당금 산정액, 신용평가 혹은 평가 · 인증과 관련된 정보 등

– 특히 동 개정고시안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등록취소와 같이 직접적인 규제를 신설하는 대신 자본금 현황을 시장에 공개하여 자율적 ·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됨

***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기관운영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10.5)**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등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다단계판매업자의 소유자본금과 신용평가 등급이 적정히 공개되도록 '다단계 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 정보공개의 세부내용을 규정(내용심사)

– (공개사항) 의결번호, 조치내용, 위반내용, 조치기관, 불복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

– (범위) 최근 3년간 공정위 · 지자체로부터 시정권고,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내용

☞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판매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다단계판매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로서 규제법정주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방문판매법 제13조 및 제38조를 근거로 심사대상 고시에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안 의결

※ 법제처 의견 : 동 개정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므로 이를 제재로서의 정보공개로 볼 수 없으며, 현행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법 제38조를 근거로 고시에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적용 제외 기준금액(소비자가 1회 결재하는 금액)을 현행 '10만원 미만'에서 '5만원 미만'으로 변경(강화)

☞ 동 규제는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적 요소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동 규제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09), 한국소비자원 정책건의('10.7월) 및 '10년도 국정감사에서 구매안전서비스 대상을 5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

○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를 링크하도록 의무화(신설)

☞ 동 규제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제공한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 비용부담은 미미한 반면, 사기사이트 소비자피해 예방 등 사회적 편익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적 요소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현행 임원정의 규정의 '이에 준하는 자'를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실상 이사로 특정(강화)

☞ 미등기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정의 규정상 임원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다른 조문에서 임원정의를 원용*하는 경우에도 효과가 미치는 등 예상치 못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원정의(제2조 제5호)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신 과징금부과(제55조의3 제1항) 참작사유에 미등기임원의 법위반행위 관여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근거를 명시하도록 개선 권고

*** '임원' 용어를 원용하고 있는 조문 예**

- 기업결합의 제한(법 제7조 제1항 2호) :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가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 외의 자)에 의한 타 회사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행위를 제한
-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법 제14조의2 제2항) : 공정위가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아닌 자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500만원 이하로 낮출 것을 개선 권고

(12) 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계속거래 해지시 위약금 · 대금환급에 관한 기준의 적용범위를 5개 업종(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통신교육업, 헬스 · 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으로 한정(신설)

☞ 국내결혼중개업 등 5개 업종은 소비자의 피해가 많은 업종*들로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계속거래 해지시 위약금 · 대금환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었으며 경쟁제한성도 없다고 보여지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소비자원 피해상담 상위품목('09)

구분	헬스 · 피트니스	피부체형	통신교육	결혼중개	학습지	합계
접수건수	5,594	2,720	2,731	1,790	1,547	14,382
(%)	(39%)	(19%)	(19%)	(12%)	(11%)	

* 피해상담 상위 5개 업종은 '09년 현재 소비자 상담건수가 14,382건에 달해 위약금 고시 제정이 시급한 상황

* 감사원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주요품목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 위약금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08.1)

○ 계속거래 계약 해지 · 해제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함(신설)

[기준(안)에서 정하고 있는 위약금 청구 기준]

업종	구분	위약금 기준
국내결혼중개업	서비스 개시 전	총 계약대금의 20%
	1회 이상 소개 후	총 계약대금의 20% × (잔여횟수/총횟수)
컴퓨터 통신교육업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그 외의 경우	총 계약대금의 10%
헬스 · 피트니스업	–	총 계약대금의 10%
미용업	재화등의 제공 개시 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그 외의 경우	총 계약대금의 10%
학습지업	–	계약 해지 · 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등의 단위대금의 10%

☞ 방문판매법 제30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임근거에 따라 계속거래 등의 계약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청구기준을 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은 현재 운영중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업계에서 합의한 표준약관과 동일한 수준으로서 규제수준도 적정하다고 보여지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성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감사원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 위약금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08.1)

○ 계속거래 계약 해지 · 해제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환급금의 기준을 정함(신설)

– 계약체결시 부가상품 가액 산정에 대하여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가상품 반환시 부가상품 가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

☞ 동 고시 규정안은 현행 방문판매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규정한 것이며 계약해지시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계약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수준도 적정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성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3)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기술자료 탈취 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과징금 감경사유에서 '현금결제비율 우수업체'는 삭제하고, '3대 가이드라인 사용'은 '가이드라인 도입 · 운용 여부'로 변경 및 감경비율 축소(각 20% → 각 5%)(강화)

☞ 동 고시 개정안은 '10년 국정감사* 및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10.9.29)**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대 · 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것임
상위법률인 하도급법 제25조의3(과징금)의 범위 내에서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진입제한, 경쟁능력제한 등 경쟁제한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규제강화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훨씬 크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10년 국정감사에서는 하도급 거래 위반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으며,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할 것을 주문
**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기술자료 탈취행위 금지 부분과 조정과징금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이미 경제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표명한 바 있음
*** 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부담액은 약 19억원으로 추산되는 반면, 수급사업자 보호 등에 따른 편익은 약 218억원으로 추산되어 순편익(약 199억원)은 매우 큼

4. 관세청

* 집필자 : 전예진 사무관(Tel. 2100-2307, yjchun@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 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등 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건, 강화 1건 등 총 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관세청의 2010년도 총 신설규제는 3건임

[관세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일	비고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 고시 제정안	제398회 경제분과 (2010.04.22)	원안의결 3	신설 3 *중요 2, 비중요 1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143회 예비심사 (2010.07.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중요 2, 비중요 2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 고시(신설 3)

■ 심사내용

○ 활어장치장의 시설과 장비요건 규정(수조 규격, CCTV의 배치와 관리, 폐사어 장치시설, 보세구역외 장치 요건 등)(신설)

☞ 활어의 신속 · 안전한 통관 및 관리를 확보하여 보관 · 유지비용과 활어의 중량감소 및 폐사어 발생을 줄이며, 불합격 활어의 불법유통을 막아 국민의 식품 안전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

○ 활어를 통관할 수 있는 세관을 지정하고, 활어 장치장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미통관 표식 · 폐사어의 관리 · 불합격품의 처리 등을 규정(신설)

☞ 활어 통관세의 탈루와 불합격 활어의 불법유통을 예방하고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

○ 활어 특례고시 규정 위반시 세관장이 경고, 물품반입정지, 과태료 부과 및 반송 · 폐기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의무사항에 대한 불이행을 예방하고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 처분, 과태료, 반송 또는 폐기 등을 명시한 것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2)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강화 1)

■ 심사내용

○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을 추가 규정(강화)

– 구기자(식품용), 당귀(식품용), 냉동송어, 곶감, 냉동조기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수입 · 양도한 자는 그 물품의 국내유통자료를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원산지 허위표시로부터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불법용도전용(식품용 → 의약품용)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비용이 크지 않으며 피규제자의 수가 제한적이고 경쟁제한성이 없으며, 관계부처(농림부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규제 강화에 대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5. 금융감독원

* 집필자 : 김 철 전문위원(Tel. 2100-2324, hanul@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건, 강화 1건 등 총 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 중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건은 개선 권고, 1건은 철회 권고하였음

[금융감독원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제411차 경제분과 (2010.09.09)	개선권고 2 철회권고 1	신설 3 *중요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제247차 본회의 (2010.11.25)	원안동의 1	강화 1 *중요 1
계	–	철회권고 1 개선권고 2 원안동의 1	신설 3 강화 1 *중요 4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PF대출 등 신용공여한도 위반 저축은행의 한도 해소기준 신설(신설)

– 감독규정 부칙에서 위임한 신용공여 한도초과분 해소기준을 규정

① 부동산 PF대출 초과

- 신규 PF사업에 대한 대출 금지(기존 부동산 PF에 대한 대출은 당해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으로 허용)
- 매월말 PF대출 잔액이 직전 분기말 잔액 이하로 유지
- 한도 초과비율에 따라 다음의 일정에 따라 감축

2010년9월말 PF대출 비율	2011년 6월말까지	2011년 12월말까지	2012년 12월말까지	2013년 9월 23일까지	2014년 6월말까지	2015년 6월말까지
60%초과	60%	55%	40%	30%	25%	20%
50%초과	50%	45%	30%	25%	20%	
40%초과	35%	30%	25%			
30%초과	30%	25%				

② 부동산 포괄 신용공여한도 초과

- 신규대출 및 신규 PF사업에 대한 대출 금지(기존 부동산 PF에 대한 대출은 당해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으로 허용)
- 매월말 잔액이 직전 분기말 잔액 이하로 유지
- 한도 초과비율에 따라 다음의 일정에 따라 감축

2010년9월말 신용공여비율	2011년말까지	2012년말까지	2013년말까지
70%초과	70%	60%	50%
60%초과	60%	55%	50%
50%초과	55%	50%	50%

③ 11개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초과

- 한도 초과비율 10%p 초과한 상호저축은행 : '11.6월말까지 한도 감축
- 한도초과비율 10%p 이하 상호저축은행은 시행일('11.1.1.) 전까지 한도 감축

☞ 부동산 PF 등에 대한 신규 대출금지는 원안 동의

☞ 감축일정과 관련해서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초과비율이 낮은 저축은행의 감축일정을 완화토록 개선 권고

* 초과비율이 높은 저축은행은 장기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초과비율이 낮은 저축은행은 단기의 유예기간을 부여

○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시 해소기준(신설)

– 상호저축은행은 각각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정 · 타당한 유가증권 투자한도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위법인 감독규정(30조)이 철회됨에 따라 자동 철회

○ 약관 제 · 개정에 대한 신고 등(신설)

– 법에서 위임한 개별 저축은행 약관의 제 · 개정 신고수리, 저축은행중앙회 표준약관의 제 · 개정 신고수리업무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
- 약관과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
- 약관 제 · 개정에 대한 신고 · 보고가 있는 경우 감독원장이 이를 신고수리하거나 변경명령하는 기간을 10영업일로 한정
- 약관 변경명령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동 명령에 따라 약관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 보고하여야 함
- 약관심사기준을 법률의 내용에 따라 명시*

  * 상호저축은행법령 위반 여부, 금융관련법령 위반 여부, 약관규제법 제6조에서 제14조까지 위반여부

☞ 시행령에서 위탁하지 않은 변경명령 '(세칙 제19조의5 제2항)' 등을 삭제하거나 시행령에 위임근거 마련토록 개선 권고

☞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합병비율 산정시 비상장법인의 자본환원율 합리화(강화)

– (현행)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할 경우, 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 산정시 적용되는 할인율(자본환원율)을 '4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저이율 단순평균치의 1.5배'로 하고 있음

*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를 평균하여 산정하며, 이중 수익가치는 비상장법인의 주당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정

$$\text{◈ 수익가치} = \frac{\text{주당 추정이익}}{\text{4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최저이율의 단순평가치의 1.5배}}$$

– (개정안) 자본환원율을 '해당 비상장법인의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의 1.5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인율' * 중에 높은 비율로 변경하여 자본환원율을 낮게 설정되어 수익가치가 과다 평가되는 문제를 해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이자율 (현행 10%)

$$\text{◈ 수익가치} = \frac{\text{주당 추정이익}}{\text{Max[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의 1.5배, 상증세법상 할인율]}}$$

☞ 원칙적으로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간 합병비율 산정은 양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되며, 자본환원율의 하한선으로 둔 "상속세 · 증여세법에서 고시한 이자율"이 현재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자본조달비용이 낮은 건실한 비상장기업의 가치를 과도하게 낮게 평가하는 문제점도 발생

☞ 다만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시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이 과대 평가되어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 동의하되 2년 후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여 동 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

제 3 절

산업 · 에너지 분야

1. 지식경제부

* 집필자 : 한레지나 사무관(Tel. 2100-2293, nebula27@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이러닝산업발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35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2건, 강화 26건, 내용심사 11건 등 총 6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9건 중 2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5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6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지식경제부의 2010년도 총 신설규제는 32건임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112회 예비심사 (2010.03.02)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99차 경제1분과 (2010.05.06)	원안의결 1	신설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제400차 경제1분과 (2010.05.20)	원안의결 1	강화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00차 경제1분과 (2010.05.20)	원안의결 4 철회권고 1	신설 2, 강화 3 *비중요 4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개정안	133회 예비심사 (2010.05.30)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134회 예비심사 (2010.06.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38회 예비심사 (2010.06.15)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138회 예비심사 (2010.06.1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39회 예비심사 (2010.06.20)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심사 1 *비중요 2
기술의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44회 예비심사 (2010.07.1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37차 본회의 (2010.07.01)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제406차 경제1분과 (2010.07.15)	개선권고 1 원안의결 5	신설 6 *비중요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제407차 경제1분과 (2010.07.22)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2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개정안	제409차 경제1분과 (2010.08.2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155회 예비심사 (2010.09.06)	원안의결 2	내용심사 1, 강화 1 *비중요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157회 예비심사 (2010.09.15)	원안의결 8	신설 4, 강화 4 *비중요 8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안	제242차 본회의 (2010.09.09)	철회권고 1	신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59회 예비심사 (2010.09.15)	원안의결 5	강화 5 *비중요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159회 예비심사 (2010.09.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160회 예비심사 (2010.09.23)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66회 예비심사 (2010.10.20)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166회 예비심사 (2010.10.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167회 예비심사 (2010.10.26)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245차 본회의 (2010.10.28)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신설 3 *비중요 2
수출입공고 개정안	제414차 경제1분과 (2010.10.28)	개선권고 1	강화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제415차 경제1분과 (2010.11.11)	원안의결 1	강화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가스라이터)의 안전기준 개정안	173회 예비심사 (2010.1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16차 경제1분과 (2010.11.25)	개선권고 1	신설 1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182회 예비심사 (2010.12.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어린이용 공산품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정안	182회 예비심사 (2010.12.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안전 · 품질표시기준 개정안	182회 예비심사 (2010.12.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제정안	184회 예비심사 (2010.12.22)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185회 예비심사 (2010.12.2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	철회권고 2 개선권고 5 원안의결 62	신설 32 강화 26 내용심사 11 *중요 12, 비중요 57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배상 책임보험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정지 처분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시정명령 미이행시 위반횟수별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내용심사)

☞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등 처분 근거가 법령에 기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적용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는 점, 피규제자의 이견이 없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용기 재검사주기를 완화*하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 보완대책으로서 노후 용기에 대한 사용연한제를 도입하여 26년 이상 노후용기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유통 및 사용을 금지(신설)

* 용기 재검사주기 완화 내용 : 현행 15년미만 3년, 20년미만 2년, 20년이상 1년 → 20년미만 5년, 20년이상 2년으로 완화

☞ LPG용기 재검사 주기를 연장하는 것은 LPG판매업자 등 피규제자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이며, 26년 이상 노후용기에 대해 사용연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한 안전성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서 소비자안전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

(3) 대외무역관리규정(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최근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물품(천연석재의 포석 · 연석 · 판석 등 13개 품목)을 중심으로 해당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강화)

☞ 국산 둔갑으로 국내 산업기반 약화 및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수입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에 이견이 없음, 다만 금번 지정요청 물품(13개) 선정시 동 물품에 대한 국내가 및 수입가에 대한 비교분석, 전체 국내 사용량에 대한 수입량 비중 등에 대한 자료제시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추후 관련자료를 마련, 서면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2, 강화 3)

■ 심사내용

○ 공장설립 완료를 전후로 토지등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비제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업개시의 신고 시점을 처분제한 기준과 관리권자 이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기존 규정에 따라 제한 가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가(강화)

☞ 비제조업인 지식서비스업을 자유무역지역내 입주허용 업종으로 추가함에 따라, 현재 제조업에 적용하고 있는 규제를 신규로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비제조업)에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법적용 일관성 차원에서 필요하고 비제조업을 제조업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는 점과 현재 적용되는 규정의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실상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공장설립을 완료한 자는 산집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지자체 또는 관리권자에게 하도록 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공장을 가동한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입주허가를 받은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하는 경우 관리권자에게 사업개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공장을 가동한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추가(신설)

☞ 현재 공장설립의 완료 신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자유무역지역내 공장설립의 경우(제조업)에도 적용되는 바 금번 개정안에 이를 법문상 반영한 것이고, 비제조업(지식서비스업 등)이 자유무역지역내 입주허용 업종으로 추가됨에 따라, 상기 제조업에 적용되는 현행 규제와 동일하게 비제조업자에 대해 사업개시 신고의무(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법적용의 일관성 차원에서 타당하고, 현행 규제에 대한 적용대상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현행 규정은 입주허가를 받은 업체가 자유무역지역내 토지등의 취득재산을 공장설립 완료 전에 양도하는 경우 관리권자에게 제한된 가격으로 양도하도록 규정(법 제25조)하고 있으나, 입주허가가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입주허가 취소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장설립 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이전에는 관리권자에게 양도하고 양도가격을 제한하도록 추가(강화)

☞ 입주허가가 취소된 업체라 하더라도 토지등의 처분제한 규정(법 제25조)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현행 규제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외국물품 등을 폐기한 후 남는 잔존물과 보수작업을 실시한 물품을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대상 물품에 신규로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 재고관리 물품에 외국물품 등을 폐기한 후에 남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 반입물품의 현상유지, 포장 등을 위해 필요한 보수작업을 실시한 물품을 추가(강화)

☞ 동 물품에 대한 기록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입주기업체가 물품을 기록관리하고 사후에 세관에서 확인하는 기존체제의 활용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입주기업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일정 면적(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신설)

☞ 토지 과소분할 제한 규정은 투기수요 방지, 자유무역지역의 원할한 단지기능 수행 등을 위해 타당하나, 토지 과소분할 제한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되어 철회 권고

(5)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별정우체국 직원(국장 포함)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를 준용토록 규정(내용심사)

☞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이들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 및 복무제도(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를 운영하고 있는 점과,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해 직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영리업무의 범위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도록 할 필요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6)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효율관리기자재의 대상을 현재 22개 품목에 1개 품목(가스온수기)을 추가하고, 6개 품목(전기냉장고, 공기청정기, 식기건조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백열전구)에 대해 에너지효율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규정 추가(강화)

☞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구입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 강화,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강화되는 규제로 인한 관련업계의 연간 소요비용이 100억원 미만인 점 등으로 추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상위 법률(산집법 제33조8항)의 위임범위에서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기부

제도를 구체화함(내용심사)

☞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우발적 이익의 일부를 공익적으로 환원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등 제도적 악용 소지를 예방하는 조치이며 타 법령의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으로 볼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 상위 법률(산집법 제33조8항)의 위임범위에서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를 구체화함(내용심사)

☞ 토지소유자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와 계약하여 사업 일부를 대행하는 것으로 재투자 제도는 계약조건에 가깝고 타 법령의 사례*에 비추어 법령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종전 도시가스충전사업을 규율하던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는 공급규정 제도가 없었으나,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2010.1.27)으로 도시가스충전사업에 관한 사항이 동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용하던 규정을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도 적용토록 함(강화)

☞ 도시가스충전사업자도 도시가스회사와 같은 배관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므로 도시가스회사의 도시가스 공급능력 등을 반영한 공급조건 등을 정하여 이행토록 함으로써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강화되는 규제로 인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 · 관리)에 의거, 현행 가스보일러를 시공한 후 시공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가스온수기 시공의 경우에도 시공표지판을 부착하도록 추가(강화)

☞ 동 개정안은 가스온수기의 시공실명제를 통한 부실시공의 방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온수기 시공표지판 부착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규제로 인한 피규제자의 연간 소요비용이 100억원 미만인 점 등으로 추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9)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1, 강화 1)

■ 심사내용

○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3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 등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 동안의 수출입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규정을 추가(다만, 조사개시 결정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 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수출입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위반행위별 과징금 한도금액을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 (강화)

☞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의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며, 또한 유사법률인 「대외무역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과 타 법률이 정하는 과징금 규모에 비추어 과도한 기준이 아닌 점 및 법률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상위 법률(불공정무역 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위임범위에서 원산지 표시 등 불공정 무역행위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구체화함(내용심사)

☞ 법률상 이행강제금의 일할 부과한도(0.5%) 보다 낮은 0.2%로 규정하는 등 과도한 부과가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1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상위 법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의 위임범위에서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정함(내용심사)

☞ 사업화 전문회사는 기술거래 · 평가기관에 비해 사업화에 관한 전문성 및 업무내용 수준이 높아 지정시 그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행 법령상 정부로부터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받지 않아도 관련 영업은 가능한 것이므로 행정규제로서의 성격은 약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상위 법률(신 ·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에서 위임된 공급의무자 대상, 의무공급량 및 균형있는 이용 · 보급이 필요한 신 · 재생에너지에 대한 별도의 할당량 등을 규정

○ 경제성이 매우 높아서 거래를 통한 수익창출 허용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대규모 발전이 가능한, 대수력, 기존 방조제 활용한 조력, IGCC, 부생가스 등에 대해서는 비거래인증서를 발급(내용심사)

☞ 공급의무자의 대상, 의무공급량중 태양광에너지 공급할당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가중치 규정에 대해서는 상위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정한 기술적 규정으로 원안 의결하나,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지경부의 시행령(안) '별표 1의3' 대로 하되, 시행령(안) '제16조의3 제1항' 에 매 3년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공급의무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할 것을 개선 권고하며, IGCC 및 부생가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충당한도 제한 규정은 모법에 의무공급량 충당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를 둘 근거가 없으므로 철회 권고

(12)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신설 6)

■ 심사내용

○ 인정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규정, 인정업무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추가(신설)

☞ 인증기관 난립 및 부실인증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 필요성이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품질경영의 확산을 위하여 인증기관(지사포함)과 품질경영인증체제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품질경영체제인증에 관한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관련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신설)

☞ 일부 인증기관에서 부실 인증(허위 인증서를 발급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법적으로 미비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여타 규정과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행한 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 추가(신설)

☞ 인증기관의 과다경쟁으로 인증서 허위 발급 등 부정행위가 빈번하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여타 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자율안전확인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 마련(신설)

☞ 최초 생산시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이후, 사정변경(안전기준 변경, 원자재 변경 등)이 반영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연간 6억 6천만원의 신고비용(업체별 평균 30만원)이 투입되지만, 불법 · 불량제품의 유통이 줄어들어 얻게 되는 소비자 안전 보장의 편익이 매우 크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 ·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 업무정지 요건 규정 마련(신설)

☞ 신의 성실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시험 · 검사를 하는 기관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의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본 규제로 인한 비용도 거의 없기 때문에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성결과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해당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확인하고 신고필증을 부여하는 위탁업무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신설)

☞ 자율안전확인 신고 수수료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동의하나, 신고필증이 아닌 안전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시험 · 감독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권을 부여하는 조항 추가하도록 개선 권고

(1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당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한 기관 · 기업 · 단체 또는 연구책임자, 소속임직원에 대하여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 추가(신설)

☞ 연구개발 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 출연금 회수 등의 조치로는 불법행위 예방에 미흡하며, 국가가 출연하는 연구개발사업 참여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를 통한 금전적 제재는 타당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기존 기술개발촉진법(신기술인증의 취소) 및 신제품인증 운영요령(신제품 인증의 취소)에 있던 인증취소 내용을 통합하는 규정 마련(신설)

☞ 이미 기술개발촉진법 및 신제품 운영요령 등에 규정된 내용을 통합하는 것으로 정부의 인증취소에 대한 규정은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한 필수적 규정인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의 환수 대상이 되는 사항을 확대 · 명시하여 제재대상을 명확화하는 규정 마련(강화)

☞ 허위보고서 작성, 부정한 사업참여 등의 제재대상 추가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조치로 필요성 인정되고, 그간 고시에서 부정행위 유형에 포함되어 있던 세부 항목들 중 일부를 상위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

(14)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국가기술자격보유자는 1구역 내에서 기기의 용량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검사대상 기기에 선임이 가능하던 것을, 검사대상 기기 중 보일러에 대하여 조종자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에 따라 용량 및 전열 면적을 차등화하여 선임하도록 개정(강화)

☞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술 등급에 따라 검사기기 조종자를 차등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일러기능장 등 고도의 기술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를 검사기기 중 2%에 해당하는 대규모 산업용 보일러 등으로 제한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검사기기 조종자로 선임된 자는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계속하여 선임될 수 있도록 하며 시행시기도 2013년으로 유예하고 있다는 점, 미국 · 일본 등도 이와 유사한 규제를 이미 도입 ·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의 유사 분야(전기 · 고압가스)도 차등 선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현재 난방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 기기 조종자에 대한 교육은 최초 등록 · 선임시 및 검사대상 기기의 구조 및 기종이 변경된 경우 6개월 이내 1회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그 후 3년마다 1회로 정기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 추가(강화)

☞ 국내 및 해외의 유사 규제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피규제자가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정례적 교육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

(15)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강화 1)

■ 심사내용

○ 계량기 검정후 조작방지를 위한 봉인을 실시함에 있어 봉인재료로 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 추가(내용심사)

☞ 납(Pb)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 및 환경오염 등을 고려할 때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봉인재료로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을 사용하면 납을 사용하는 것보다 계량기 1개당 약 30원(대량생산의 경우 약 20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나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실량포시상품의 허용오차 확인을 위해 채취한 3개 시료의 평균내용량이 표시량에 미달되거나 시료중 1개라도 허용오차를 넘을 경우, 다시 3개를 채취하여 평균내용량이 표시량에 미달되거나 1개 이상 허용오차를 넘는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넘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평균오차 규정 추가(강화)

☞ 허용오차 확인방법의 선진화, 일부 공산품(평균량원칙 적용)과의 형평성, 소비자 손실의 방지 등을 고려할 때 규제의 필요성 인정되며 실량상품사업자(피규제자)는 현재 12,000여개 업체로 대부분은 실량상품 내용량을 합격수준으로 충전하고 있으며, 설령 사업자가 표시량에 미달하는 내용량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원가에 반영되어야 할 비용이므로 규제영향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으며, 규제의 내용이 타당하고 그 수준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신설 4, 강화 4)

■ 심사내용

○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신설)

☞ 수입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와의 규제형평성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위탁운송업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 · 군 ·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의무를 규정(신설)

☞ 위탁운송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급과정 등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과 유사 입법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종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수사항을 위탁운송사업자에게도 부과하는 규정 마련(신설)

☞ 위탁운송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급과정 등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가스시설의 사용자가 직접 시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액화가스시설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건설업자만이 시공하도록 규정(강화)

☞ 위험시설인 가스시설을 사용자가 직접 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가스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개조된 중고 가스용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용품의 개조를 금지하는 규정 마련(강화)

☞ 가스용품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 용도변경 금지규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인터넷홈페이지나 신문 등)에 따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강화)

☞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위반업소를 근절을 위해 위반업소에 대한 공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국내 가스용품 제조자에게만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판매 등의 목적으로 가스용품을 수입하는 자와 액화석유가스시설 시공자에게도 보험 가입 의무 부과하는 규정 추가(강화)

☞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액화가스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추가(신설)

☞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적정화 도모와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규정의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17) 이러닝 산업 발전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이러닝사업자는 이러닝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 및 해지의 권리, 환불조건과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명시해야 하는 규정 마련(신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중복하여 기술한 것으로서, 위반시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등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철회 권고

(1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5)

■ 심사내용

○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용기 등을 제조하려는 자에게 특정설비 중 4종을 등록 의무 대상으로 추가하고 변경등록 사항을 확대(강화)

☞ 국내 제조업체들의 경우, 전품목에 대해 제조등록 및 등록검사를 하고 있어 외국 제조사와의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외국 제조업체에서 제조규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변경등록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중대 결함이 있는 용기 등에 대한 회수 등을 명할 경우, 이에 대한 회수 등의 계획 제출 및 결과 보고 대상에 지식경제부장관 추가하는 규정 마련(강화)

☞ 유통중인 용기 등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회수(Recall) 등 명령에 대한 회수 계획을 보고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개정된 법에 따라 지경부장관도 회수 등을 명할 수 있어 시행규칙에서 회수 계획 및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적절한 후속 조치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현행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완성검사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시설의 임의 변경에 따른 사고 예방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시공자자 작성한 도면을 완성검사신청서에 첨부하게 하는 규정 마련(강화)

☞ 완성 검사 신청시 시설의 위치도와 완공도면을 첨부해야, 해당 검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고, 시설의 임의 변경을 적발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설의 위치도와 도면은 본 검사를 위해 추가 작성되지 않고 기존 작성된 것을 첨부하는 것으로 충분하여,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고압가스 용기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고압가스 용기 충전시설에 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강화)

☞ 고압가스 용기 충전시설에서 과충전으로 인한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충전방지장치 설치가 필요하며 유사한 업종인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도 과충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과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사업 중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제시를 위하여 관련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을 마련

☞ 수소의 특성을 고려한 일부 기준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천연가스자동차(CNG)의 안전기준과 유사하게 마련했다는 점, '06.8월 이후 수소자동차 연구과정에 국내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참여하였고, 시범운영 중인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사례 연구를 통해 본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현행 5종의 용기에 대하여 신규 제조시 설계단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 8종을 추가하는 규정 마련(강화)

☞ 현재 전체 용기 13종 중 5종만 설계검사를 받고 있으나, 나머지 8종에서 사용중 파열되는 등 제품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8종에 대한 설계단계 검사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었으며, 해외에서도 용기에 대한 설계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외국에서 제조된 용기 등에서 인명 ·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토록 하기 위하여 용기 등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대상에 추가(강화)

☞ 국내제조자와의 규제형평성 차원에서도 수입업자에 대한 손해보험 의무가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예상 보험료 수준이 2만 5천원으로 수입업자의 보험가입 부담은 크지 않으면서, 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호 효과는 매우 높아 비중요규제로 분류

(20)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누구든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또는 처리할 수 없고, 지능형전력망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사업자 및 종사자는 업무상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마련(신설)

☞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되며, 여타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률에서의 규제와 유사한 수준이며 규제영향비용 및 피규제자 수가 제한적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하거나 지능형전력망 및 정보를 훼손 · 멸실 · 변경하거나 또는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 유포하거나, 지능형전력망의 장애가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신설)

☞ 지능형전력망은 국가 기간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운영상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영향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 공청회 등 관계자 협의시 이견이 없었던 점, 규제의 정도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 기기 · 제품 제조, 서비스제공 등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신설)

☞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등록요건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토록 되어 있어, 시행령 규제심사시 다루는 것이 타당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시 등록취소, 사업장폐쇄 처분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시설을 이용하여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는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요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내용심사)

☞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안)에 열거된 시설은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을 하기 위한 중요시설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불법 유사석유제품 유통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을 "최근 3년간"으로 개정하고 법 제39조 제1항의 금지행위 중 중요 금지행위(정량미달 석유제품 판매행위와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 마련(강화)

☞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규제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며 모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 부과액의 범위 안에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23)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품수거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여부 등을 통지해야 하며, 제품수거 등을 한 경우에는 수거 등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신설)

☞ 수거권고에 대해 수락여부를 통지하도록 한 것은 권고에 따라 사업자가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는 경우 조속히 수거명령 발령, 행정력에 의한 수거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며, 수거결과 보고를 하도록 한 것도 사업자가 권고에 따라 자진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 여부 및 실적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

○ 사업자가 위해제품에 대한 자진수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의 위해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품의 수거 등을 위한 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진수거한 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거 등의 내용과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함(신설)

☞ 위해정도가 높은 제품의 경우, 사업자가 자발적 리콜조치를 하더라도, 국민 ·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사전적 ·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사업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제품의 제조 · 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에 관한 자료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함(신설)

☞ 제품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범위와 제출기한을 정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이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미국 · 일본의 경우에도 제품결함에 따른 사고발생시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자료제출 기한(미국: 24시간이내, 일본 : 10일 이내)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외사례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제품사고 발생시 사고의 경위와 원인 조사방법과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요청에 관한 규정 마련(신설)

☞ 관계공무원 등이 제조공장 등 현장 출입 및 사고제품 무상수거는 제품사고 조사를 위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미국 · 일본의 경우에도 제품결함에 따른 사고발생시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개발사업 진행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등에는 지정취소 요건 규정을 마련(신설)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개발사업이 표류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제로서 필요성 인정되며 유사입법례와 비교해봤을 때 과도하다 볼 수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제자유구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 · 물류 · 시설용지의 일부를, 외투기업 전용용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면적 등은 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신설)

☞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측면이 있으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시 ①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부합 ②충분한 개발 수요,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 가능 ③필요 부지 확보와 개발 용이 ④기반시설 확보 가능 ⑤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 등 필수적인 요건을 정함(신설)

☞ 개정안 제5조 제2호 “충분한 기업입주수요와 쾌적한 외국인정주환경의 확보가 가능할 것”을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확보 및 외국인정주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5조 제6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그 밖에 인력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25) 수출입공고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폐지 수출량의 적정수준 유지 및 수출정보의 조기 파악을 통한 국내 폐지의 수급안정을 위해 수출제한제도 도입이 필요하여, 폐지를 수출제한(수출승인 또는 수출신고) 품목으로 지정(강화)

☞ 폐신문지, 폐골판지, 기타 혼합폐지에 대해 수출신고품목으로 지정하되, 이를 2011.12.31까지 적용한 후, 그 폐지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개선 권고

(2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서류에 사무소 보유증명서(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를 추가하는 규정 마련(강화)

☞ 규제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실효성 측면에서 일부 논란이 있으므로 본건에 대해 향후 2년 동안의 시행결과를 규개위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

(27) 안전인증대상공산품(가스라이터)의 안전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가스라이터의 탱크용적이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에게 장난감으로 취급될 수 있는 형상 및 장식을 가진 가스라이터 판매를 금지하고 일회용 가스라이터에도 연료의 적합성 요건 충족 및 압력시험을 적용하는 규정 마련(강화)

☞ 대형 가스라이터 및 장난감형 가스라이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폭발 · 화재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장난감형 가스라이터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미국 ·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유통 금지 등 규제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인수 · 합병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경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며, 지경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 인수 · 합병 등에 대하여 중지 · 금지 ·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신설)

☞ 개정안 제11조의2 제5항의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경우에 "동조 제2항의 조치에 따른 대상기관의 손해에 대한 심의"를 신설하고, 개정안 제11조의2 제4항 "부정한 방법으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로 수정하며, 개정안 제11조의2 제4항 "중지 · 금지 ·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중지 · 금지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 수정하도록 개선 권고

(29)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컬러풍선(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에 대한 안전요건 추가, 어린이용 장신구에 대한 명칭 구체화(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머리장식품) 및 유해원소 추가 등, 세정제의 종류에 곰팡이제거제, 얼룩제거제를 규정하여 종류를 명확화하고 섬유유연제에 유해기준치 설정 및 유해한 방부제(10종)에 대해 허용기준 설정 등, 유아제품의 작은 부품에 대한 부착강도 기준(50±2N의 힘을 가하고 10초 유지)을 마련하고 유모차에 사용된 섬유원단에 대한 섬유조성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신설)

☞ 동 규제는 모법에 위임근거가 있고, 지경부의 고시로 이미 지정된 공산품의 안전기준중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의 개정이며, 피규제 대상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과 EU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제를 유사한 기준으로 이미 도입 ·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30) 어린이용 공산품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 동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용 공산품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해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자석 및 자석부품 등 5종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다만, 어린이에게 닿을 수 없는 제품의 구성부분에는 적용하지 않음)하는 규정 마련(신설)

☞ 유사한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기준이 미제정된 신규 제품에 대한 잠정기준이 필요하며, 피규제 대상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 유예기간을 1년 설정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 EU 등 선진각국에서도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31) 안전 · 품질표시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상위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의 위임에 의해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화장지, 선글라스 · 안경테, 가정용섬유제품에 대한 안전 요건 등을 정하고 있음(신설)

☞ 동 규제는 모법에 위임근거가 있고, 지경부의 고시로 이미 지정된 공산품의 안전기준중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의 개정이며, 피규제 대상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 유예기간 설정하고 있는 점과 미국과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제를 유사한 기준으로(European Norm) 이미 도입 ·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32)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상위법률인 신 ·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제12조의5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 제12조의5 제2항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공급의무자별 태양에너지 발전 의무공급량을 정함(내용심사)

☞ 모법의 위임범위내에서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기술적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별도의 이견 없었다는 점과 RPS제도는 미국, 영국, 일본 등도 유사한 규제를 이미 도입 ·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 상위법률인 신 ·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제12조의7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9의 위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를 구체적으로 정함(내용심사)

☞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를 정하는 기술적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단가의 차이를 감안하여 가중치를 달리 부여한 것으로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됨, 또한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를 재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정여지도 있다는 점과 RPS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도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3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 준대규모점포를 등록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신설)

☞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진출코자 하는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자체가 판단하는 최소한의 필요 서류를 적정하게 정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준대규모점포로서 이미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영업을 하고 있는자는 지자체의 해당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 준대규모점포영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시 · 군 · 구에 제출

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신설)

☞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준대규모점포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적정하게 정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2. 중소기업청

* 집필자 : 이성태 사무관(Tel. 2100-2417, lst@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등 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7.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심사 (2010.11.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나. 2009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서민금융회사(농협 · 수협 ·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가 지역신보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회사별 출연 요율 등을 규정(신설)

☞ 이미 서민금융회사들이 신용보증재원을 출연하기로 협의한 사안을 입법화 한 것이며, 서민금융회사들은 서민대출에 대하여 타 금융기관들이 출연한 지역신보의 보증 혜택

으로 대출 리스크를 감소시켜왔으나 출연대상기관에서는 면제되어 대가없이 보증제도 이용 혜택만을 누려오고 있어 이미 출연하고 있는 일반은행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서민금융회사들을 출연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므로 원안 의결

(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설 2)

■ 심사내용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에 제출토록 규정(신설)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미 해당 기관에 자신이 중소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본 규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없어 원안 의결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에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내 유사입법례가 있으며, 입법례에 비추어 과태료 수준이 과도하지는 않으므로 원안 의결

3. 특허청

* 집필자 : 전예진 사무관(Tel. 2100-2307, yjchun@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건, 강화 1건 등 총 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특허청의 2010년도 총 신설규제는 1건임

[특허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상표법 개정안	제145회 예비심사 (2010.07.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52회 예비심사 (2010.08.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2	신설 1 *비중요 2, 강화 1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상표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양자간 조약에 따라 보호하는 외국의 지리적 표시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농식품 분야 지리적 표시(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와

동일 · 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 거절*(단, 해당 지리적 표시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한함) (강화)

* 한-EU FTA에 따른 개정으로서 협정발효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존 지리적 표시 상표 사용자는 계속 사용 가능

☞ 한-EU FTA 내용을 상표법에 반영하여 EU의 지리적 표시와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를 동일한 수준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하며, 경쟁제한성이 없고, 한-EU FTA 협상시 업계 의견을 수용하고, 관계부처(외교부, 농림부) 협의결과를 반영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FTA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아래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을 양도 · 인도 또는 이를 위해 전시하거나 수입 · 수출하는 행위 금지(신설)

-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

- 지리적 표시를 번역 · 음역하여 사용

-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사용

* 한-EU FTA에 따른 개정으로서 협정발효일이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존 지리적 표시 사용자는 계속 사용 가능

☞ 한-EU FTA 내용을 법에 반영하여 지리적 표시의 보호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하며, 경쟁제한성이 없고, 한-EU FTA 협상시 업계 의견을 수용하고, 관계부처(외교부) 협의결과를 반영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제 4 절

국토 • 해양 분야

1. 국토해양부

* 집필자 : 옥선경 사무관(Tel. 2100-2296, skjade@pmo.go.kr)
김기영 사무관(Tel. 2100-2298, kky21@pmo.go.kr)
김관진 사무관(Tel. 2100-2297, vega21@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지하수법 시행령 · 시행규칙 등 90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55건, 강화 60건, 내용심사 58건, 일몰연장 1건 등 총 17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74건 중 9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13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2건에 대해서는 부대권고하였으며, 15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비심사 (2010.01.06)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0.02.05)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2.1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건축물의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2.11)	원안의결 4	신설 1, 내용심사 2, 강화 1 *비중요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226회 본위원회 (2010.02.18)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	제393회 경제분과 (2010.02.25)	철회권고 1	강화 1 *중요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비심사 (2010.03.02)	원안의결 2	내용심사 1, 강화 1 *비중요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3.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94회 경제분과 (2010.03.11)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중요 2, 비중요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3.12)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10.03.19)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3.19)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96회 경제분과 (2010.03.25)	원안의결 4	강화 2, 내용심사 2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0.03.28)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비중요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원안의결 4 (2010.04.06)	신설 2, 강화 1, 내용심사 1 *비중요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제397회 경제분과 (2010.04.08)	철회권고 1	강화 1 *중요 1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4.1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4.18)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중요 1, 비중요 1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5.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5.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401회 경제분과 (2010.05.27)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중요 1, 비중요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401회 경제분과 (2010.05.27)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제401회 경제분과 (2010.05.27)	원안의결 6 철회권고 1	신설 6,강화 1 *중요 7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02회 경제분과 (2010.06.30)	원안의결 1 부대권고 1	신설 2 *중요 2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제402회 경제분과 (2010.06.30)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제402회 경제분과 (2010.06.30)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예비심사 (2010.06.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235회 본위원회 (2010.06.10)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안	제403회 경제분과 (2010.06.10)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6.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6.15)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236회 본위원회 (2010.06.17)	원안의결 4	내용심사 4 *중요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04회 경제분과 (2010.06.17)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6.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국토기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6.29)	원안의결 2	신설 1 *비중요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6.29)	원안의결 3	신설 1, 내용심사 2 *비중요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6.29)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제405회 경제분과 (2010.07.01)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복합형 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10.07.06)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7.11)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항만법 개정안	제406회 경제분과 (2010.07.15)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06회 경제분과 (2010.07.15)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중요 2, 비중요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406회 경제분과 (2010.07.15)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중요 1, 비중요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406회 경제분과 (2010.07.15)	원안의결 1 철회권고 2	강화 3 *중요 2, 비중요 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예비심사 (2010.07.2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제407회 경제분과 (2010.7.22)	원안의결 4	강화 4 *중요 1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제407회 경제분과 (2010.07.22)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7.27)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비중요 3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8.15)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8.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항공법 개정안	제409회 경제분과 (2010.08.26)	원안의결 5 개선권고 2	신설 5, 강화 2 *중요 2, 비중요 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8.2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중요 1, 비중요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0.08.3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8.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8.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8.3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8.2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0.08.3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8.29)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10회 경제분과 (2010.09.02)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0.09.06)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 품질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10.09.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411회 경제분과 (2010.09.09)	원안의결 6 개선권고 1	내용심사 7 *중요 1, 비중요 6
하천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9.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9.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출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예비심사 (2010.09.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해운법 개정안	제412회 경제분과 (2010.09.30)	원안의결 3 개선권고 2	신설 1, 강화 4 *중요 2, 비중요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07)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제413회 경제분과 (2010.10.14)	원안의결 4	내용심사 1, 강화 3 *중요 3, 비중요 1
교통기본법 제정안	제413회 경제분과 (2010.10.14)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도선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제414회 경제분과 (2010.10.28)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제414회 경제분과 (2010.10.28)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1, 강화 1 *중요 1, 비중요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	제246회 본위원회 (2010.11.11)	부대권고 1	신설 1 *중요 1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15회 경제분과 (2010.11.11)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도시철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11.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06)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20)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20)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사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22)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22)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18회 경제분과 (2010.12.23)	철회권고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3, 일몰연장 1 *중요 3, 비중요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250회 본위원회 (2010.12.23)	철회권고 1	강화 1 *중요 1
계	–	철회권고 9 개선권고 13 원안의결 150 부대권고 2	신설 55 강화 60 내용심사 58 일몰연장 1 *중요 53, 비중요 121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자동차관리법」 개정('09.2)으로 자동차제작자 등의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 공급기간을 정함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에 대해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판매한 날부터 3년(6만km), 기타장치는 판매한 날부터 2년(4만km)간 무상수리를 의무화하고,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판매일로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을 의무화 (내용심사)

☞ 소비자보호 강화 요구를 반영한 법 개정에 따라, 종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권고성격) 중 관련 내용을 의무화 한 것으로(개정안의 의무내용은 분쟁해결 기준과 동일한 수준) 현재 대부분 제작사가 상기 분쟁해결 기준보다 강화된 무상수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어 업계의 추가 부담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자동차관리법」 개정('09.2)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는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는 바,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토록 하고, 자동차제작자 등록신청시 사후관리 시설 및 인력 확보 내용 또는 계획을 제출토록 함 (내용심사)

☞ 무상수리 등 사후관리는 실질적으로 자동차정비와 유사하므로 자동차정비업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확보토록 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현재 대부분 제작사가 정비업 기준에 따른 A/S센터를 운영하여 추가적 부담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판단

(2)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토지, 하천시설,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 모래 · 자갈의 채취허가, 수목의 식재 · 벌채허가 및 관리 등에 하천점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현재 하천점용허가는 지자체 등의 허가기관 담당자가 하천법령상의 개괄적 기준 및 경험 등에 기반하여 재량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허가권자 입장에서 허가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소극적 행정(허가 불허)* 사례가 많고, 이에 대한 국민들(피허가자)의 불만이나 민원 등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국토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천법 시행규칙을 개정(제18조 제3항 신설, '09.11.24)하였고, 동 고시는 하천점용행위 유형별로 하천법령에 산재한 점용허가 관련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하천설계기준' **상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적극적 허가를 할 수 있게 유도하여 국민들이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입법예고시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불허사유가 '하천관리에 지장 초래' 등 불명확한 경우가 다수
(예시) 기존 시설 활용한 소수력발전(1,000kw이하) 시설의 점용허가가 하천관리 지장 등의 불명확한 이유로 불허 : 국무총리실에서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차원으로 개선 추진하여 동 고시에 반영

** 하천설계기준 :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에 의거, 하천과 하천에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일반적 설계기준을 공학적 근거하에 규정한 것으로 하천 관련 사업에 관계된 기술과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사업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도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등에 재투자 하도록 함(내용심사)

☞ 공공사업시행자의 경우에만 개발이익재투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민간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공공의 경우와 동일하게 개발이익재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피규제자 수가 제한적이며,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사입법례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8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4)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 1, 내용심사 2, 강화 1)

■ 심사내용

○ 고시에 규정된 내화구조 성능기준, 인정절차, 품질관리 기준, 인정취소 등을 법령에 규정(신설)

– 내화구조 인정절차 : 내화구조 인정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내화구조 인정권자의 품질확인 기준 등 마련

– 내화구조 관리기준 : 내화구조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 기준 마련, 내화구조 인정받은 자의 품질관리 기준 등 마련

– 내화구조 관련 제재 : 인정취소(인정받은 자가 인정취소를 요구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 품질시험 결과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등) 및 일시정지(유효기간내에 품질확인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품질관리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등)

☞ 동 규제는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동규칙으로 상향입법한 것으로 규제영향비용이 미미하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1개층으로 하고 불연재료 사용, 조명설비 및 비상통신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내용심사)

☞ 현재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일정 중간층마다 급 · 배수 가압 등을 위한 기계실 등의 설비층이 설치된 점을 고려하여 건축설비가 설치된 층에 피난안전구역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인명보호 및 피난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 경쟁제한적 성격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방화문,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갑종방화문만

설치하도록 강화(강화)

☞ 피난계단 등의 내화벽체는 최소 1시간 이상 내화성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방화문은 내화성능이 1시간(갑종방화문) 또는 30분(을종방화문)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화재시 피난안전 및 인명피해 예방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벽체와 방화문의 내화성능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규제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오피스텔 거실바닥으로부터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지를 위해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규정(내용심사)

☞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규칙으로 상향입법한 것으로 규제영향비용이 미미하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종전 공익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사업을 위해 수용된 것으로 보고, 개정안의 공포시점을 환매권 행사를 위한 기산시점으로 봄(강화)

☞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원활환 추진을 위한 환매권 제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원안 동의

(6)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중고자동차의 성능확인 및 압류·세금체납 등 확인 기능을 강화하여 매수인 보호 등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에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을 추가함(강화)

☞ 규제의 실효성은 불확실한 반면 규제도입에 따른 직·간접 비용은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회 권고

(7)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강화 1)

■ 심사내용

○ 개략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예외적인 양도·전대 허용사유를 구체화하여 조건을 추가함(강화)

– (질병치료의 경우) 1년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한정

– (퇴거지역) 40km 이상 거리의 다른 시·군·구로 퇴거할 경우로 개선(단,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 임대주택 양도·전대가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인정되며, 소득세법(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등 관련입법례를 참고하여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였고, 거리기준 등에 대해서는 지역사정을 반영하여 조례로 완화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에 관해 임차인에게 설명토록 의무가 신설된 바(법률 제32조의2), 설명사항과 설명방법을 정함(내용심사)

– (설명사항) 보증대상액, 보증기간, 보증수수료분담비율, 임대차해지의 경우 보증수수료 환급 등, 보증기간 만료후 재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2제1항)

– (설명방법) 임대사업자는 설명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고, 임차인이 기명날인하여 확인하여야 함(안 제30조의2제2항)

☞ 보험업법 등 관련법을 참고하여 임대차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설명히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규제자의 이견이 없고 추가적

규제비용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8)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자동차관리법」의 개정('09.12)으로 종래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도로를 운행할 수 없었던 저속전기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기준을 완화하여 도로를 운행하도록 하되(법률 제35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는 운행하지 못하며(법률 제35조의3), 운행구역 외에서 운행하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법률 제84조)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한 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신설)

☞ 원활한 도로교통 확보를 위해 도입된 운행구역지정제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구체적 수준을 정한 것으로 저속전기 자동차에 대한 규제완화(총리실 발표 2010년 100대 규제개혁과제에 포함)와 동시에 추진되는 사안이며, 여타 위반행위와 비교하여 과태료 수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된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9)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축법령에 따른 철거 신고대상 건축물에 포함(내용심사)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건축물 철거 근로자 및 인근주민 등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 등을 고려, 원안 의결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적합한 절차에 따라 석면을 먼저 제거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건축법령에 철거시기를 규정(내용심사)

☞ '先 석면제거, 後 건축물 철거' 라는 건축물과 석면 철거공사 시기의 분리에 대한 명확화로 효과적인 석면 관리가 가능해져 건축물 철거 근로자 및 인근주민 등의 건강보호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점,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일반인이 공개공지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등의 범위와 관련 시설 등을 알기 쉽게 표시한 표지판을 공개공지 등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토록 함(내용심사)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한 것으로 규제영향비용도 매우 미미하므로 원안 의결

(10)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UN산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협의체(WP29)에서 제정한 세계기술규정(GTR) 및 이에 따른 1998년 협정(우리나라는 2001년 가입)의 내용을 수용하여 머리지지대 설치대상 차종을 4.5톤 이하 승합차 및 화물차로 확대함(승합차는 3.5톤에서 4.5톤까지 확대, 화물차는 신설)(강화)

☞ 자동차 안전 증대 및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한 개정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선진국에서는 기 채택하고 있는 기준으로 미국 · 유럽 수출용 차량에는 이미 반영하고 있으므로 제작사의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UN산하 UN/ECE의 국제기준인 1958년 협정(우리나라는 2004년 가입)의 내용을 수용하여 승용차의 경우 중간좌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에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함(강화)

☞ 좌석안전띠 설치기준을 강화를 통한 탑승자보호 강화 및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한 개정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선진국에서는 기채택하고 있는 기준으로 수출용 차량에는 이미 반영하고 있으므로 제작사의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11) 철도보호구지안에서의 행위제한 관한 업무지침 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종래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에서 30m이내 지역)에서 일정행위를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신고인에 대하여 철도차량 안전을 위해 각종 보강대책수립 등 안전조치 및 "기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바(재량행위), 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행해지던 "기타 안전조치"의 내용을 명확하게 고시로 정*하여 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임(내용심사)

* 철도보호지구 관리자는 신고인에게 철도보호지구 관리자가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신고인으로 하여금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게 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7조)

☞ 일반신고인은 철도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안전교육은 명시적 규정없이도 관리자가 당연히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나(현행도 기타 안전조치 내용으로 안전교육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조치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설하게 된 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리자가 배포할 예정인 안전교육 매뉴얼을 활용하게 하여 부담이 적은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철도보호지구 관리자는 신고인이 철도차량의 운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운영자를 입회시키거나 신고인에게 열차감시인 배치를 요구할 수 있음(내용심사)

☞ 철도에 인접하여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 열차 탈선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열차감시인을 배치하는 경우는 연간 60여건으로 추산되어 피규제자의 수가 적고 규제비용이 소액인 점(연간 약 600만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12)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과태료 세부부과기준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상한선인 500만원으로 하고, '임금대장 미비치 등의 경우'에는 50만원을 부과한 후에 2년이내에 2회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상한선인 100만원을 부과(내용심사)

※ 종전에 벌금형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선원법(제146조) 개정('09.12.29)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근로기준법 등 선원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벌금 500만원 → 과태료 500만원이하)
- 선박소유자가 임금대장 미비치 및 임금계산 기초사항 미기재(벌금 500만원 → 과태료 100만원이하)

☞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라 선원법을 개정하여 종전 벌금을 부과하던 사항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 임금대장 미비치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하향 조정한 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는 등 적정한 제재 기준을 설정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내용심사 2)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에게 부당한 특약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도록 함에 따라(법 제38조제2항, '09.12.29 공포)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의 전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 시 하도급대금 미조정, 사회보험료 미지급 등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부당특약 유형 마련(내용심사)

*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때에는 시정명령 등 가능(법 제81조)

☞ 同개정안 마련과정에서 건설현장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반영하였고, 중소건설업체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6개월 범위 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시행령(별표6)에서 위반행위별로 1천만원~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하던 것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9.12.29)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액 상한액을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액을 2천만원~8천만원으로 상향조정(내용심사)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9.12.29)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액 상한이 5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위반행위별 과징금액을 (1천만원~4천만원) → (2천만원~8천만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기존 과징금액은 '84년 건설업 현황에 의거한

것으로 현재의 건설업 매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미약하므로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크고, 법령을 준수하는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는 점, 과징금액도 건설업 매출규모 증가 등에 따른 최소한의 조정이라는 점, 경쟁제한적 성격도 없는 점 및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최대 건설업자 매출액 규모 ('84년) 500억원 → ('06년) 4조원
건설업 수주액 총액 ('84년) 5조원 → ('06년) 107조원
** 감사원 지적('08.4) : 매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액 상향 필요

○ 현행은 사업시행자(발주자)가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부담해야 하는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의 범위는 공공공사는 5억, 민간공사는 공동주택 · 주상복합 · 오피스텔 공사로서 200호 이상이나,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범위를 공공공사는 3억, 민간공사는 공동주택 · 주상복합 · 오피스텔 공사로서 200호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강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현재 퇴직공제 적용근로자는 약47만 명 수준으로 전체 건설일용근로자(103만명)의 45%에 불과하여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혜택에서 제외되어 개선이 필요하고, 공제제도 가입비용은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반영하며, 공공공사의 경우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으나 사회안전망이 확충될 수 있고, 민간공사도 1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므로 발주자에 대한 경영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현재보다 22만 명이 증가한 약 69만 명의 건설일용근로자(전체의 67%)가 혜택 받게 되는 점, 관련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점('09.9)과 중소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고 경쟁제한적 성격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98년부터 시행중으로 법정 퇴직금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해 도입,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현재 1일 4천원)하여 퇴직하는 경우 지급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건설업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법 제20조 제4호),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처분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

하였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설업양도신고를 할 때 건설업양도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양도인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중에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추가함(강화)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9.12.29)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설업 양도신고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업 양도제한 완화에 따라 양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적 조치로 피규제자 수 및 규제영향비용이 미미한 점, 경쟁제한적 성격도 없는 점,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4)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정안(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지역 · 교통수단별로 교통카드 및 관련장비의 적용기술이 달라 호환사용할 수 없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08.3, 개정)」에서 국토부장관이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인증업무를 시행하도록 개정되어 "교통카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로 명시한 동법의 규정내용과 교통카드에 관한 KS규격을 고려하여 인증대상을 교통카드, 지불보안응용모듈(SAM)**, 지불단말기로 한정(내용심사)

* 하나의 교통카드로 모든 지역 및 시내버스 · 도시철도 · 철도 · 고속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가능하게 함
** 칩형태로 단말기에 내장되어 통신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카드 데이터를 인식, 처리하는 장치

☞ 교통카드 사용의 편리성을 증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기술표준원이 제정한 선후불 교통카드에 관한 KS규격('09.12)을 반영한 점, 교통카드호환 국가표준협의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와 협의하여 마련한 점 등을 종합 고려, 비중요 규제로 판단

○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규격인 인증기준은 인증제도의 핵심사항이며, 최근 개정된 교통카드 KS규격을 최대한 수용하되 KS규격을 일부 보완하여 교통카드, 지불보안

응용모듈, 지불단말기에 대한 기술적 세부규격을 인증기준으로 정함(내용심사)

☞ 기술표준원이 제정한 선후불 교통카드에 관한 KS규격('09.12월) 및 R&D사업결과 등을 반영하여 규정하였으며, 교통카드호환 국가표준협의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와 협의하여 마련한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판단

○ 교통카드사업자 등이 인증기준에 따라 개발, 제조한 교통카드 등 관련 장비에 대하여 전국호환성이 확보되었는 지를 확인받기 위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에 따른 시험, 평가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3년의 인증 유효기간을 두어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함(내용심사)

☞ 교통카드 전국호환성 확보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신청, 인증유효기간 설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증수수료는 법률규정과 동일한 내용인 점, 교통카드호환 국가표준협의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와 협의하여 마련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1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강화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전문건설기계정비업에 타워크레인 전문정비업을 신설하고, 응급조치 · 원동기의 탈부착 · 유압장치의 탈부착 등의 이동정비를 구체적인 사업범위로 규정(신설)

☞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서 등록 · 관리되기 시작한 이후('07.7), 타워크레인 정비는 종합 및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가 담당해야 하나, 타워크레인이 주로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고공의 상태(50~60m)에서 정비해야 하고, 구조 · 장치가 일반 건설기계와 상이한 점 등 때문에 종합 및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존에 타워크레인을 정비해 온 사업자들의 경우 건설기계정비업 사업범위 규정의 미비 즉, 타워크레인 정비가 건설기계정비업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제도권 밖에서 무허가로 사업을 영위한 결과를 낳으므로 합법적으로 타워크레인 정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특히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타워크레인 정비업자(150여명)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4조의 규정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형벌의 과태료 전환에 따라 등록번호 새김명령 위반자, 검사 · 질문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처분기준을 별표 3에 추가(내용심사)

☞ 과태료 부과시 부과 · 징수권자인 시 · 도지사에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과태료 처분을 할 필요성이 크며, 더욱이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된 사항을 처분기준에 추가한 것은 규제완화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 규제영향비용이 미미하고 경쟁제한적 성격도 없으며 입법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유사입법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 등)

○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정격하중표지 및 거리표지 확인과 방호장치 등 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기준을 명확화(강화)

☞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서 등록 · 관리('08.1)되면서, 이에 대한 건설기계검사기준도 마련되기는 했으나 일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였고, 특히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성능 및 안전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크며, 타워크레인 작업장치 검사기준을 안전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명확화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입법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그간 타워크레인 정비를 시행하여온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여 타워크레인 전문정비업의 사무실 면적, 정비기계, 시험기기, 이동정비차량 및 정비기술자 등 등록기준* 규정(신설)

* 옥내 작업장 면적 40제곱미터 이상, 이동정비용 트럭 1t 이상,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기술자 1명 이상 등

☞ 전문건설기계정비업에 타워크레인 전문정비업을 신설함(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타워크레인 전문정비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여 원활한 타워크레인 정비가 이루어져 조종사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사전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타워크레인 전문정비업 등록기준은 기존에 타워크레인 정비를 수행했던 사업자들(150여명)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타워크레인의 정비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된 점과 규제영향비용 및 피규제자 수가 미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건설기계사업에는 건설기계대여업 · 건설기계정비업 · 건설기계매매업 · 건설기계폐기업이 있으며 등록제로 운영(同法 제21조)

(1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상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혼잡통행료 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강화)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09.6)」을 제정하여 국토부장관은 온실가스배출, 교통혼잡,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 기준을 고시하고 동 지표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적절수준으로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 혼잡통행료 부과대상지역에 특별대책지역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먼저 특별대책지역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나 특별대책지역 지정요건인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 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입법추진의 선후관계에 반하고, 개정안 통과 이후 특별대책지역 지정요건이 느슨하게 제정되는 경우 혼잡통행료 제도의 남용이 우려되는 점 등을 감안, 철회 권고

(17)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심사분야를 9개로 세분화*하면서 기존 인증기관도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 인증기관 요건을 충족해야 함(강화)

* 토지이용/교통/에너지/재료 및 자원/수자원/환경오염/유지관리/생태환경/실내환경

☞ 同개정안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 수 · 규제영향비용 · 경쟁제한성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심사분야를 9개로 세분화하면서 9개 심사분야 중 6개분야 이상의 전문가 각 1명이상으로 구성하되, 에너지분야 전문가는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함(강화)

☞ 친환경건축물 인증절차 중 인증심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 수 · 규제영향비용 · 경쟁제한성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18)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함(내용심사)

* 환지계획은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중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인해 조성된 대지의 분배에 관한 계획으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한 계획임

☞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환지계획에 대한 관계서류 공람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의 알권리 보호 및 의견제시 기회를 촉진하고 사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同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비용이 미미하고 경쟁제한적 성격도 없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고 타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도시개발법 개정('09.12.29)으로 관할 시장, 군수 등은 "동절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제한하거나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하는 등 점유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음(동법 제38조 제2항)
따라서 동절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를 아래와 같이 규정(내용심사)

–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

– 일출 전과 일몰 후

–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해당지역에 기상특보(건조는 제외)가 발표된 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 그 밖에 허가권자가 점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 개정('09.12.29)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세입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큰 점,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19)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의한 규칙」에 따라 공항 내 자동차는 대기환경 관련 검사가 면제되고 제방빙 폐액의 전량 회수 곤란으로 공항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대기질, 수질, 토양 등 환경 및 온실가스관리가 포함된 공항환경관리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 인원,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토록 함(강화)

☞ 공항운영자는 공항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직, 인원 및 장비 등을 기존에 갖추고 있으며 기존 훈령 등을 통합하여 만든 고시에 따라 연도별 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20)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항공법」 개정('09.12)으로 공항 내 기존 금지행위 외에 추가로 금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항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을 해하는 행위, 공항시설에서 노숙하는 행위,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허락없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기부를 청하는 행위 등을 추가로 금지함(강화)

☞ 기물손괴, 폭언, 고성방가 등의 행위자에 대한 적발 · 처분은 여행객의 편의제공과 공항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판단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 · 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의 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토록 함(내용심사)

* 다른 법률 : 관광진흥법(관광단지 조성계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단지 개발계획),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온천법(온천개발계획),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산업기술단지조성계획),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 법률 개정('09.12.29)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거용도의 경우는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공원 및 녹지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지역 내 1만㎡ 이상의 개발행위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기반시설(공원, 녹지 등)의 설치 등 계획적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동의

○ 위반행위별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규정함과 아울러 위반행위의 동기,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비중요규제

(2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주거 · 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의 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 이상인 사업의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확보(내용심사)

☞ 同개정안은 기존 他개발사업(도시개발법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확보비율을 인구 1인당 12㎡이상으로 규정)과 비교해서도 최소에 해당하는 3㎡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입법과정에서도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동의

* 일본의 경우는 도시지역 내에서 주민 1인당 10㎡를 확보, 다만 시가지내에서는 5㎡ 확보

* WHO 권장 도시공원 확보 면적은 주민 1인당 9㎡

(23)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6, 강화 1)

■ 심사내용

○ 입주자 대표회의는 일반선거원칙(비밀 · 평등 · 보통 · 직접)을 적용하여 선출하고,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이를 위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선출 절차를 투명화하여 비리소지 차단(신설)

☞ 규제로 인한 부담과 편익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법조계, 학계, 연구원, 업계 등으로 구성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위원회(4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쇄도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동의

○ 공동주택 관리방법은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제안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주택관리사업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로 선정하며, 용역 · 공사 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를 투명화하여 비리소지 차단(신설)

☞ 인터넷 기반을 활용하여 입찰을 시행함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이 매우 미미하고, 관련업종 종사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 할 수 있으며, 비리를 차단할 뿐만이 아니라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이 기대되는 바 원안 동의

○ 잡수입 등을 포함하여 증빙서류를 작성토록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이를 보관토록 하며,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제도(통상 자치관리규약에서 정함)를 명시하는 한편 입주자 10분의1 이상의 요구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잡수입을 포함하여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일정기간(5년) 보관하는 것은 회계기장의 기본원칙이며,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대의기구에서 당연히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일정한 요건 충족시 외부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대표회의 등을 불신임할 경우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으므로 원안 동의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난방 · 급탕요금,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리수수료, 임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관리비를 구성하는 항목을 추가로 공개토록 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나 그 선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토록 함(강화)

☞ 주택법 개정('10.4)으로 공개항목이 확대된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없으며, 에너지 분야 공개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권장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 동의

○ 주택법 개정('10.4)으로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를 신설하여 同위원회에서 선발인원과 합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주택의 공급상황과 주택관리사보의 수급현황을 고려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신설)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기준 변경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기득권 보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철회 권고

○ 현행 주택거래신고제는 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신고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집값 상승률기

준은 가격이 이미 상승한 이후에만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시장 상황을 선행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가격지표에 선행하는 거래량* 지표를 추가로 도입(신설)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지역

☞ 주택가격 상승의 선행성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의 선행성이 가격의 선행성에 비해 매우 강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투기지역 지정 등과는 달리 별도의 재산권 제약이 없는 점 등을 감안, 원안 동의

○ 주택관리업 인력기준을 기존의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1인에서 주택관리사 1인으로 강화하고, 사무실을 두도록 함(신설)

☞ 대부분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 추가비용이 들지 않으며 실무훈련을 거치지 않은 주택관리사보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원안 동의

(24)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교통안전법」 개정('09.12)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운행기록계의 장착기준을 마련하고 면제차량의 범위를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함(신설)

☞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는 업종의 경우 연구 · 보완해서 침해소지를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대권고

○ 「교통안전법」 개정('09.12)으로 중대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체험형 교육시행을 의무화하여 이에 대한 적용기준과 교육방법 등을 구체화함(신설)

☞ 중대교통사고의 기준과 체험형 교육시간에 대한 기준을 관련 업종의 종사자와 합의하여 마련한 점을 고려, 원안 동의

(25)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교통안전법」 개정('09.12)으로 여객 ·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이 의무화된 바, 동법 개정 부칙에서는 대통령령으로 2013년 이내에서 교통수단별로 시행하는 날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미 장착시 과태료 부과금액(150만원)을 정함(신설)

* 장착의무화 유예기간 설정
  - 2012년까지 : 버스, 일반택시, 일반화물자동차
  - 2013년까지 : 개인택시, 개별화물자동차
  - 2010년까지 : 신규 등록 차량

☞ 일반화물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1만대당 사망률이 6.5명으로 개인택시(5.4명)와 비슷하고 법인형태의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위 "지입"차량으로 대부분 운영되는 영세한 업종임을 감안하여 2013년까지 유예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2에서 운행기록계 미장착시 과태료가 100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금액을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 개선 권고

(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개정('09.12)으로 임산부에 대하여도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함에 따라 여객시설*에 이를 설치토록 함(강화)

*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광역전철역사

☞ 피규제자가 대부분 공공기관이라는 점과 휴게시설에 대한 최소기준면적을 정하지 않고 있어 추가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 원안 동의

(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재당첨 제한 대상에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당첨된자를 포함(강화)

☞ 임차권 양도후 재당첨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거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점, 규제영향비용이 미미하며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28)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용적률의 50%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고, 그 외의 지역은 증가용적률의 25%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신설)

☞ 증가용적률에 대한 소형주택 공급비율 하한 50%는 임대주택 공급비율 하한과 동일한 수준임을 고려하여 원안 동의

(29)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함(내용심사)

–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함

– 강의실, 교재, 보건위생 설비 등 시설, 장비 및 교육전담 인력의 자격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정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 심사 후 신청인에게 통지 및 공고함

–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초기교육과 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 수료 후 시험을 실시하는 등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의 명단과 평가결과를 보관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 시 해당 자료 제출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심사를 실시함

–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시설, 장비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또는 변경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치 처분기준를 정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1/2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해상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취급자에 대한 안전운송교육을 의무화하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개정안이 채택되어 국내법인 선박안전법령에 개정내용을 수용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관련 사항 변경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보고사항으로 변경하도록 개선 권고하고, 안전운송 교육 강화를 위해 부적합한 교육기관의 업무정지 30일은 3년후에 지정되는 교육기관의 수(5개 이상)를 고려하여 가중 여부를 검토한 후 규개위에 보고하도록 부대권고

* 국제해상위험물규칙 개정안 채택('08.5.16) 및 발효('10.1.1)
- 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협회 등이 위탁사무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정한 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완화하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수수료의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음(강화)

☞ 화물자동차운송협회의 시 · 도협회별, 회원 · 비회원간의 위탁사무수수료 차등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시도협회별 위탁사무 수수료는 동일 수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회원 · 비회원간 상황(회원의 회비 납부 등)을 고려하여 상한선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예정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용달화물운송협회의 대폐차 위탁업무수수료(예시)

구분	승인액	회원	비회원	비고
서울	5,000원	0	5,000원	'08. 1~'09. 6.
인천	2,000원	0	2,000원	〃
강원	미승인	0	50,000원	〃
전북	미승인	0	100,000원	〃

※ 시도협회별 수수료 차이로 민원이 빈발하고 시도지시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09.10. 규제개혁실 주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사항" 검토시 화물운송협회별 회원 · 비회원간에 차등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하여 일괄 혹은 상하한의 기준설정의 필요성 결정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물류단지안의 토지 등을 분양받은 이후 공사 착수 이행의무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함(내용심사)

☞ 물류단지내 토지 등을 분양 받은 이후 물류단지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물류단지 지정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 착수 이행의무기간을 부과하는 규정을 법률에서 마련('10.2.4)하였고, 시행규칙에서 공사에 착수해야 하는 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는 것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서 공사 착수 의무이행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물류시설확충으로 물류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물류시설용지의 효율적 활용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3, 강화 1)

■ 심사내용

○ 공동구 설치 의무화 사업규모를 200만㎡로 정하고, 대상사업 지역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 도청이전신도시를 추가함(내용심사)

☞ 공동구 설치를 통해 도로의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방지 및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통행 공간 유지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 동의
다만, 공동구 설치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의 초기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향후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부대권고

○ 공동구 수용시설을 필수수용시설과 임의수용시설로 분류하고, 임의수용시설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함(내용심사)

* (필수수용시설) 전기, 통신, 상수도, 냉 · 난방, 중수도, 쓰레기수송관로
* (임의수용시설) 가스관, 하수관로 등

☞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하 기반시설을 하나의 공동구내에 설치하여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크고, 국내외 수용시설 설치사례 및 안전 · 기술적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사업시행자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강화)

☞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 상호간 공동구 계획 및 설치비용 분담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동구 설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원안 동의

○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구 설치 위치, 규모,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동구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을 부담하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 설치비용 중 공동구 점용예정자 부담금액 및 보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내용심사)

☞ 공동구 설치비용을 공동구 설치 위치, 규모,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동구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며, 특히 원인자부담 ·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 공동구 점용예정자 및 사업시행자 모두를 고려한 적절한 비용분담 방안이므로 원안 동의

(3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09.1)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바다모래 채취 관련 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한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의 징수근거가 소멸되어 동 부담금을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으로 부과하고자 함(강화)

[개정 전후 비교]

구분	당초	개 정 (안)
징수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징수기준
징수기준	○ 골재채취 – (면적) 25만㎡ 이상 – (채취량) 50만㎥ 이상 ○ 골재채취단지 지정	○ 골재채취 – (면적) 해당없음 – (채취량) 연안 20만㎥ 이상, EEZ 40만㎥ 이상 ○ 골재채취단지 지정
참고 (징수요율)	○ (산출)250원/㎡ × 부과계수 ○ (계수) 항만내 2, 항만외 4 * (항만내) 500원/㎡, (항만밖) 1,000원/㎡	

☞ 모래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점 · 사용료는 부담금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으며 기존에도 높은 점 · 사용료를 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당초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기준으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도록 개선 권고

(3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건설기술연구원 용역('09.3.13~'10.17)을 통해 안전진단 대상시설물 지정을 시설물의 규모와 중요도(위험도)를 고려하고 분류체계를 재조정(강화)

– 2종 → 1종시설물 : 연면적 3만㎡이상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관람장

– 2종시설물에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전시장 추가

– 1종 → 2종시설물 :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7조)에서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2종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관람장이 1종시설물로 지정 될 경우 11년 지난 시설물에 대하여 5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 실시
- 2종시설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안전점검 실시

☞ 다중이 이용하는 관람장을 시설물 안전점검대상인 2종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1종으로 강화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전시장을 안전점검대상인 2종으로 추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1종시설은 5년마다 1회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종시설은 3년마다 1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규제비용이 발생하나,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붕괴로 인한 사회적 · 경제적 피해를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국가 주요시설 사고발생시 경제손실 및 신인도 저하 사례]

구분	인명피해	직접손실액 (건설비 등)	간접손실액 (대체시설이용 등)
성수대교 붕괴('94.10)	사망 32명, 부상 17명	380억원	3,654억원
삼풍백화점 붕괴('95. 6)	사망 501명, 부상 937명	5,828억원	-
해외건설 수주율 격감	'94 : 45.4%, → '95 : 15.3%		

(35) 국토기본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국토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 ·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변경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교육기관의 지정이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거나 교육실시 능력이 부족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며, 국토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등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신설)

☞ 同개정안의 국토교육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은 유사입법례*를 참조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한 것이며, 피규제자 수도 제한적이고 경쟁제한성도 없으며, 국가의 행 · 재정적 지원에 따르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할 수 있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통일교육지원법의 통일교육(제6조의3), 경제교육지원법의 경제교육(제13조)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중 중요성이 큰 조합설립 동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의 임의적 서면통지 대신 조합설립인가 신청 60일 전에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통지를 하도록 함(신설)

☞ 정비사업이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비사업 관련 정보 중 조합설립 동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충분히 인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同개정안은 지자체(대전)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등기우편 통지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同法개정('10.4.5)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인가요건 등을 규정(내용심사)

- 인가요건 : ①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②협회 회원은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일 것, ③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④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취소요건 :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②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⑤법 제74조의5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 또는 조사 ·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同개정안은 타 법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였고, 협회 설립인가 및 취소 요건이 크게 엄격하지도 않으며 피규제자 수도 제한적이고 경쟁제한성도 없는 점, 이견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同法개정('10.4.5)으로 조합원 등에게 정보공개해야 할 대상자료를 직접 명시하고, 그 밖에 공개하여야 할 서류 및 관련자료를 대통령령에 위임(내용심사)

- (규제내용) 공개대상 서류 및 자료 규정
  ① 월별 자금 입 · 출금 세부내역
  ②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③ 월별 정비사업의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④ 설계자 · 시공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⑤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⑦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조합원 중 참석자, 동의자 및 반대자

등에 관한 조합원 수
⑧ 세입자 · 입찰 · 총회와 관련하여 공고되는 사항

☞ 사업주체인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정비사업 관련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이들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규제영향비용도 미미하며 경쟁제한적 성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다음의 자료를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내용심사)

① 상호, 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③ 자본금
④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⑤ 기술인력의 성명 등
⑥ 사업실적
⑦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 同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무엇보다 적절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경영정보나 사업실적 등 신뢰성 있는 업체 정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또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었고, 경쟁제한성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3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최근 발생한 버스 추락사고 등을 분석한 결과 무자격자 운전, 졸음운전 등 사고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버스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 필요성 대두되어 버스운전자격제도 도입(신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분야 자격제 전면시행]

구 분	세부구분	개정안	비고
노선여객 자동차	○ 시내버스	신설	
	○ 농어촌버스	신설	
	○ 마을버스	신설	
	○ 시외버스 (고속 · 직행 · 일반)신설	신설	
구역여객 자동차	○ 전세버스	신설	
	○ 특수자동차 (장의)	신설	
	○ 일반택시	(기시행)	강화*
	○ 개인택시신설	(기시행)	강화*

* 택시업종은 기존에 시행중이나 적성검사를 자격시험의 요건으로 하고 자격교부 전에 교육 이수를 의무화함

☞ 단순히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자격증 교부 전에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개선 권고

○ 유가보조금 부당 수령에 대한 환수제도를 두고 있으나 한계가 있어, 부풀려 청구한 경우, 운송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다른 운송사업자가 사용한 것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한 경우 등에 대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신설)

☞ 유가보조금 지급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 환수제도와 더불어 일정한 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03년) 5,648억원 → ('05년) 1조4,769억원 → ('08년) 2조1,800억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09.5)으로 운송가맹점 이중가입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였으나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이 누락되어 이를 정비(신설)

☞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입법미비사항 정비에 해당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09.5)시 운송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사업의 운송질서 확립을 가맹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면허취소, 사업정지)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가맹사업자가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가맹점,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신설)

☞ 운송가맹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시 운송가맹점(일반택시, 개인택시사업자)과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사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합리적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39) 복합형 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6)

■ 심사내용

○ 최근 교통기술의 발달로 두 가지 이상의 교통로를 운행하는 복합형 교통수단*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나 기존의 법체계는 도로 · 궤도 · 수상 · 항공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등록 · 안전기준 및 검사 등을 이중으로 수행해야 하는 실정인 바

* 바이모달트램(도로 + 궤도), 수륙양용자동차(도로 + 수로) 등

– 복합형 교통수단에 대한 독자적인 제도를 정립하여 중복규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복합형 교통수단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신설6)

〈규제심사 대상(신설6)〉

1.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2. 복합형 교통수단사업의 면허
3. 복합형 교통수단 운송약관 신고
4. 특정복합형 교통수단 사업신고
5. 복합형 교통수단의 안전기준 및 안전검사
6. 복합형 교통수단의 운전 등의 자격 및 교육훈련

☞ 복합교통수단은 개별법에 따라 등록, 면허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일괄하여 처리가 가능토록 한 것이므로 내용상 규제완화에 해당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4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同法 개정으로('10.4.5)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분양주택)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도록 하고,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하여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대상주택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내용심사)

–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서 전체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규정

☞ 同 개정안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여 실수요자인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편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거주여건이 좋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입주라는 편익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무부과라는 점, 규제영향비용이 미미한 점, 유사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사입법례(주택법령) :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7년~10년의

전매제한 기간 설정

○ 同法 개정으로('10.4.5) 입주예정자가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의무 기간내 입주하지 못하거나 계속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가간을 의무기간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사유는 "시행령"에 위임(내용심사)

– (규제내용) 거주의무기간 불산입 사유
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2년의 범위내에서 근무 · 생업 · 취학 또는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때
② 입주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제1의3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기관추천 특별공급시 거주지 제한을 두지않는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등)로서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거주의무기간 중 2년의 범위내에서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때
③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입주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의무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때

☞ 同개정안은 입주 및 거주의무 기간 산정 예외 사유를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유사하게 규정하였고, 규제영향비용도 미미하고 경쟁제한성도 없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사입법례 : (주택법령)주택 전매제한의 예외 규정, (임대주택법령)임차권의 양도 · 전대 제한의 예외 규정

(41)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생계 대책을 사업시행자가 마련(신설)

☞ 항만재개발사업자의 항운노조원 생계지원대책 마련에 대한 입법 공감대가 旣형성되어 있고, 원활한 재개발사업 추진 도모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의결

(4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신설 2)

■ 심사내용

○ 건설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시설물의 하자발생시 건설업체는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고 있으나 공사를 관리한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 부실공사 방지에 한계가 있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부실벌점** 부여(강화)

*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에 하자 발생 시 : 3점, 주요구조부가 아닌 하자 발생시 : 1~2점

☞ 감리업체의 감리업무에 대하여 건설공사중은 물론 준공후에도 부실관련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여 근원적인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것이며, 건설공사의 경우 하자발생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것에 반해 공사관리에 책임이 있는 감리업체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감안, 원안 동의

○ 품질관리자의 업무량 분석결과 품질관리계획서 작성대상 공사(500억원 이상)의 경우 현재 품질관리자 2인으로는 절대 부족하여 이를 개선(신설)

[개정 전후 비교]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별표11)
<table>
<tr><th>대상</th><th>품질관리자</th></tr>
<tr><td>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td><td>1. 특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td></tr>
<tr><td>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td><td>1. 고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td></tr>
</table></td><td>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별표11)
<table>
<tr><th>대상</th><th>품질관리자</th></tr>
<tr><td>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td><td>1. 특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2인 이상</td></tr>
<tr><td>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td><td>1. 고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2인 이상</td></tr>
</table></td></tr>
</table>

☞ 품질관리계획 작성대상인 공사에 한하여 품질관리자를 추가 배치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품질관리자 업무량 분석결과를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현행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으로는 정상적인 품질관리가 곤란하여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원안 동의

○ 건설업자 등이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 · 검사를 의뢰할 경우 건설공사 시료 또는 자재의 생산국을 표시토록 하여 품질시험 · 검사 후 결함 발생 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자재 생산국 관리가 필요한 바, 품질시험 · 검사의뢰서(별지 제48호 서식)에 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 표기란을 추가함 (신설)

☞ 품질시험 · 검사를 품질점사전문기관에 의뢰 시 시료 또는 자재의 생산국을 표시하는 것은 별도의 비용부담을 수반하지 않으며, 생산국 표시에 별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판단

(4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항만시설소유자 등이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사, 여객 및 화주에 대한 경비 · 검색인력 및 보안시설 · 장비 확보 소요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항만시설이용자로부터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대상 및 징수방법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내용심사)

☞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7%가 항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사회의 항만보안 강화 요구에 적기 대응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하되, 항만시설 보안료는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이용자로부터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징수요율 산출기준에 관한 서류 등을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타당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요구를 통해 징수요율을 승인받도록 절차를 마련함(내용심사)

☞ '07.8.3 제정 · 공포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규정 중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시행시기가 도래('10.8.4)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징수요율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시 필요한 구비 서류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4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시험시기 · 빈도 등을 규정한 품질시험계획으로는 품질향상에 한계가 있고 해외 건설시장으로 진출이 불가피한 시점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바 품질관리계획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우선 건설공사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최저가 낙찰공사인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강화)

☞ 정부에서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이며, 품질관리가 안 되는 종합적인 사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 철회 권고

○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감리원이나 인 · 허가 행정기관의 형식적 검토나 전문성 부족으로 후진적인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공공기관의 검토를 받는 절차를 마련 · 시행함으로서 안전관리 품질을 제고하고

– 또한, 시공 중 점검 및 조치결과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발생시 원인규명 등의 자료로 사용코자 건설안전 점검기관의 안전점검결과를 같은 법상 1종 ·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추가로 제출토록 함(강화)

☞ 감리원이나 발주청의 전문성 부족에 대하여는 기존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기관에게 검토를 의뢰하더라도 적정한 대가나 추가 인력 배치없이 업무의 추가부담만을 지울 경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계획의 검토가 형식적으로 수행될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 철회 권고

○ 현행 품질검사 전문기관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위주로 되어 있는 바 기존 등록기준에 추가하여 시험업무처리요령, 인력 · 장비의 관리 · 운영에 관하여 KS Q ISO

170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토록 함(강화)

☞ 기존 인력 · 시설 · 장비 위주의 등록기준 체계에 국제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을 가미하여 품질검사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인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판단

(45)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자동차 결함 등으로 반품된 자동차의 제작증을 재발급하여 신조차로 판매하거나 신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 및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결함 등으로 인해 반품 · 말소된 자동차를 수리 후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일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판단

○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중고자동차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신설)

*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중고자동차 시장의 풍속유지와 탈루재원 예방을 위한 것이며 유사사례를 분석한 결과 호객행위에 대하여 처벌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판단

(46)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공동주택과 이용형태가 유사한 "다중 및 다가구주택"과 피난에 특히 취약한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도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강화)

☞ 고시원, 조산원, 다중 · 다가구주택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될 경우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동의

○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의 거실에도 배연설비를 설치토록 추가(강화)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은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인 것을 말함

☞ 건축물 화재시 고시원 이용자들의 인명 보호 등을 위해 원안에 동의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도 호실(세대) 간 칸막이벽(경계벽)을 내화 및 차음구조로 설치토록 함(강화)

☞ 건축물 화재시 고시원 및 노인복지주택 거주자들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함과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 차단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원안에 동의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에 대해서도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설치하도록 개정(강화)

☞ 건축물 화재시 고시원 이용자들의 인명 보호 등을 위해 원안에 동의함

(47)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신고(강화)

☞ 규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을 3년 이내에 범위에서 주기적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의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의결

○ 등록후 등록기준을 3년마다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휴지신고 후 6개월을 초과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휴업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경우 등을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에 추가(강화)

☞ 주기적인 신고제의 도입(안 제43조제4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하고, '09.8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과태료 · 과징금 합리화 방안" 추진과제로 현행법상 휴 · 폐업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200만원 이하) 규정은 삭제하되, 장기 휴업 등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업체의 존속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 및 계약 불이행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등록 취소 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역량있는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등은 인증 취소하고, 인증 취소 후에도 인증표시를 계속 사용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신설)

☞ 국제물류주선업은 해외(해상 · 항공)운송과 국내(트럭 · 철도)운송을 연계하여 수출입물류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외국 글로벌 물류기업에 비해 규모 · 서비스질 · 국제화 수준에서 매우 미흡하여,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신설)하고, 우수 인증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등은 인증 취소토록 하여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4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4조 개정('10.3)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비행 전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시행토록 함에 따라 항공기 내 · 외부 점검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비인가자의 항공기 접근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함(내용심사)

☞ 국제민간항공협약은 항공보안 관련 부속서(Annex17, Security, 1975. 2 제정) 이행사항을 자국 법률에 반영토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것임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판단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정('10.3)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하며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에 대한 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토록 함(내용심사)

☞ 기존 항공운송사업자가 구축 · 운영 중인 네트워크를 일부 변용하여 사용하면 되므로 추가적인 비용발생이 거의 없고, 환승 · 통과 승객의 원활한 보안검색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10.3)으로 상용화주 제도*가 신설(제17조의2)되어 상용화주의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취소 절차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함(내용심사)

* 화주 또는 화물 대리점이 일정한 검색장비와 인력 등을 갖추고 공항외의 지역에서도 화물에 대한 자체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터미널에서 보안검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제도

☞ 상용화주 지정시 공항터미널에서 보안검색을 면제받을 수 있어 업계에는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미국 · 유럽 등에서 정착되어 시행중인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임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판단

(49)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한 경우(과태료 200만원)와 선박검사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과태료 50만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세부기준 설정(내용심사)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09.12.29)에 따라 시행령에 그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종전에 벌금형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적절히 부과기준이 설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5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분묘의 개발제한구역내 이장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함(강화)

☞ 선진 장묘문화 창달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장을 신규허용('09.8)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고,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분묘이장을 위한 형질변경허가 사례가 최근 5년간 27건에 불과하고 화장 등의 선진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유지의 실효성이 낮고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적 요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51) 항공법 개정안(신설 5, 강화 2)

■ 심사내용

○ 항공기 및 부품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효력정지 또는 취소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항공기 안전 및 증명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증명당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감항증명 등 8종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효력정지나 취소규정 도입(강화)

☞ 증명 또는 형식승인은 행정행위의 하나로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증명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외국 법령체계와 동등한 규율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판단

○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발급에 관한 규정은 명시하고 있으나 효력정지 또는 취소 규정이 없어 법률준수 강제나 안전확보가 곤란한 바 항공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제도 도입(신설)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은 행정행위의 하나로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인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판단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 및 부속서6의 개정(시행 '10.11)에 따라 "항공안전관리프로그램" 운영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 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지정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를 부과(강화)

☞ 국제민간항공조약 개정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공항개발예정지역 지정 · 고시 후 실시계획 수립 시까지 통상 1~3년이 소요되는 바 예정지역내에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사업수행에 애로를 겪게 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제한을 명문화함 (신설)

☞ 예정지역내에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별도로 신고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와 같은 행정환경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당해 조항 삭제, 개선 권고

○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능동적, 적극적 보호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 수립 의무(제119조의2),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따른 자료제출 및 실지 조사시 협력의무(제119조의3),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정보제공을 위한 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제119조의4),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개선명령(제122조 제6호), 사업개선명령 불이행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운송사업자에 한함) 및 과태료(500만원, 공항운영자에 한함) 부과(제182조 제14의2호) 등을 도입(신설)

☞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불이행 시 사업정지 등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금액은 2000만원을 상한으로 함, 개선 권고

○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기*대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 이내 등록을 금지함(신설)

*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 자금력 등의 능력을 가진 자가 항공기를 구매 · 운영하고 소비자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농약살포, 촬영 등 영리목적의 사업형태가 존재함에도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자가 난립하고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등록제를 도입하고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 이내에는 등록을 금지함(신설)

☞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5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강화 1, 신설 1)

■ 심사내용

○ 건축물의 지역 및 부위별 열관류율을 현행 대비 평균 약 20% 강화(강화)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현행대비 열관류율 20% 상향조정에 동의함

○ 건축법 시행령 개정('09.7.16)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6항에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 배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함(신설)

– (규제내용)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을 전력 수전용량(전기사용 예측 용량)에 따라 규정한 바,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자(한국전력 직원)를 선임해야 하는 기준인 75킬로와트 이상으로 하고, 확보면적은 용량에 따른 전기기계 설치 소요면적으로 규정

☞ 외국사례의 경우에도 전기설비 설치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있고 동 개정안도 전기사용량을 감안하여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다른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을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강화)

☞ 지자체 및 일반국민이 인허가 의제처리시 이행보증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하고 있고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는 점, 법적 안정성 및

개발행위 사업자들의 신중한 사업이행 담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법률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도시계획시설을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분근거 마련(강화)

☞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는 것으로, 동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비용이 미미하고, 경쟁제한적 요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행정목적 달성 및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5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공유수면 매립권자가 매립 완료시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취득 할 수 있는 바, 매립면허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총사업비 구성항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강화)

☞ 불합리한 항목을 삭제하고 증빙서류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총사업비 구성 항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5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준설토 해양투기의 공유수면 점 · 사용료 적용기준을 당초 인근 공시지가 기준에서 투기량(㎥당 100원) 기준으로 전환하여 부과(강화)

* 투기량 : 18,176천㎥ (2005~2008.6)
* 사용료 : 1,714,784천원 (2005~2008.6)
* 부과기준 : 인근공시지가의 100분의 0.5
* 평균 징수액(원/㎥) : 94.35원

☞ 해양투기는 성질상 인근지가 적용이 곤란하여 이를 투기량 기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상금액이 미미하며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피규제자인 건설업자(준설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판단

(5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시행자가 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내용심사)

– 준공조서, 지적측량성과도,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등

☞ 준공검사를 위한 신청서류는 유사입법례*에 비추어 과도하다 할 수 없고, 피규제자수가 제한적이고, 기업도시의 준공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서류라고 할 수 있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사입법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2조

(5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해역이용협의 제도 등의 사후적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부장관 또는 처분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강화)

☞ 국토해양부 또는 처분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협의의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 ·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해역이용협의 또는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필수적이며(입법미비 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서도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 ·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 · 사용행위에 대하여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평가** 대상사업으로 함(강화)

* 공유수면 이용행위중 굴착, 토석채취, 식물재배 행위에 대하여 해역이용협의대상으로 추가

** 공유수면 이용행위중 일정규모 이상(영해 20만㎥ 이상, EEZ 40만㎥ 이상)인 토석채취는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으로 추가하고,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면적 10만㎡이상, 준설량 20만㎥이상) 굴착 · 준설은 당초 해역이용협의대상에서 해역이용평가대상으로 전환

☞ 「해양환경관리법」 전면 개정 과정('08.1)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 · 사용 행위 중 일부가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누락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입법미비 사항),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굴착 또는 준설의 경우 당초 해역이용협의 대상에서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합리적 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인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58)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시 일반 · 제한 · 지명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입찰공고 · 현장설명회 개최 · 입찰서 접수 ·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내용심사)

☞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의 목표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인 점, 고시(안) 제정과정에서 이해단체 및 지자체 등과 사전협의하여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경쟁제한성이 없는 점, 3년간 동 조항 운영을 통해 재검토하도록 일몰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에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거나(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3년이 지난 후 취업하려면 다시 신규검사를 받아야 함(강화)

☞ 신규검사후 일정기간(3년)이 경과한 자가 취업이나 퇴직 후 재취업을 할 때 다시

신규검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 고시의 규정을 유사 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과 같이 시행규칙으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으로,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비용 등의 변동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 · 양수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서류로 추가(강화)

☞ 양도 · 양수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사본과 위 · 수탁(지입) 차주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한 것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달자의 시장진입과 지입 차주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양도 · 양수의 목적이 정당할 경우 위 · 수탁(지입) 차주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운송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지입 차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지입차주)의 동의서를 첨부서류로 추가(강화)

☞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휴 · 폐업으로 인한 위 · 수탁(지입) 차주의 권리침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사업을 휴 · 폐업할 경우 지입 차주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규정한 것은 운송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규제로 인한 추가적 비용은 거의 없는 반면 지입 차주 권리보호 등 사회적 편익은 크다는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

(6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해양환경 측정 · 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바, 인증기간(3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정도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토록 함(강화)

* 신뢰성있는 해양환경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기관의 능력평가, 자료검증 등의 관리를 공적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함

☞ 현행 정도관리 인증제도는 인증 후 수시인증, 인증취소, 정도관리 실시결과 공고, 기준미달시 개선명령 등 사후관리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자율)적으로 정도관리계획을 수립 · 이행토록 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이를 강제할 실효성 확보수단이 없는 점 등을 감안, 철회 권고

○ 300㎘ 이상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의 검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하는 바

– 동 계획서에 시설 위치 및 연락처, 사고예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방제조직에 관한 사항, 예상규모별 방제조치 계획 등을 작성 · 비치토록 하여 오염사고 발생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강화)

☞ 최근 중국 다롄항 유출사고('10.7.16, 원유저장시설의 송유관 폭발) 사례와 같이 해상과 육상이 연접한 지역에서 사고 발생시 환경오염뿐만이 아니라 해운물류차질로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유시설 등에서 유류 공 · 수급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인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6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제30조 제4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조성 토지 등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기준을 정하고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복합개발 시행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함(내용심사)

☞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은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복합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시행자에게 공급하는 절차 등을 명시한 것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62) 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 품질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혼화재의 종류 및 사용량은 사용목적에 맞게 선정하되, 1종 보통시멘트에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10~50%, 플라이애시**는 10~25%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애시 이외의 혼화재를 사용하거나 1종 보통시멘트가 아닌 혼합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공자와 제조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에서 사용하는 일반 레미콘의 재료로 산업부산물인 혼화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품질관리 기준 마련(내용심사)

* 고로슬래그 미분말 : 신철 제련시에 발생하는 부산물
** 플라이애시 : 화력발전소의 석탄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재

☞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국가정책조정회의, '09.8.21)의 후속조치로 민간공사의 경우는 레미콘 품질 향상을 위한 혼화재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 공공공사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없어 고로스래그 미분말, 플라이애시 등 폐기물재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위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폐기물 재활용에 따라 보통 시멘트를 혼화재로 치환하는 양에 비례 CO2 배출량 저감이 가능하고, 레미콘 업계에서도 적정한 혼화재 사용 기준의 마련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혼화재 사용량의 범위는 민간공사의 사용 현황, 관련 기술기준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 간담회'에서 결정('09.11.19)
* 이해당사자인 양회협회, 레미콘협회, 시공사, LH공사, 도로공사, 교수 등 참석

(6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내용심사 7)

■ 심사내용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제10조에 따르면 역세권개발구역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이를 구체화함(내용심사)

☞ 개발예정구역내에서 행위제한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을 준용하였으며 항만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개발예정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과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사항은 없으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개발구역 지정 해제 사유를 명시하여 개발계획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제12조에서 민간사업자의 지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를 구체화함(내용심사)

〈 민간사업자 지정기준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아래 사업자에 한하여 지정받을 수 있음
  •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단년도 순이익 발생 여부만을 기준으로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은 불합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조항 삭제, 개선 권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조사 · 측량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재료적치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입시 소유자 등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전고지, 일몰 전후 출입금지, 증표제시 등을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구체화함(내용심사)

〈 과태료 부과기준 〉

- 일몰 전후 점유자 승낙없이 출입 : 100만원
- 증표없이 출입 : 100만원
- 실시계획 승인후 출입 또는 일시 사용 방해 : 200만원
- 실시계획 작성 등을 위한 조사 · 측량 출입방해 : 200만원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한 과태료기준보다 부과기준을 완화하여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제1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 건축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시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토지상환채권 발행 절차 및 내용 등을 시행령에 구체화함(내용심사)

〈 토지상환 채권발행 절차 등 〉

- 모집 또는 매각에 의한 발행방법 등(제20조)
- 발행계획 내용(제21조)
- 이자율 확정방식, 기명식 등(제22조)
-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제24조)
- 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제25조)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및 대항요건(제26조)
-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에 대한 통지(제27조)

☞ 사업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급할 경우 발급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일정한 기준없이 채권을 발행할 경우 소유자의 재산피해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고, 「도시개발법」 시행령(47조부터 제54조)에서도 토지상환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내용심사)

〈 조성토지 공급계획 내용(제30조) 〉

- 사업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제1항)
- 경쟁입찰, 추첨방식 대상 용지(제2항)
- 공급계획 공고(제3항)
- 수의계약에 의한 공급대상 토지 사례(제4항)
- 조성 토지 등의 가격평가(제5항)
- 최고가 낙찰원칙 등(제6항)

☞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할 경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정권자에게 제출토록 한 것은 특혜소지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토지공급계획과 관련하여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동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음(내용심사)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부문인 경우에 한함

☞ 역세권개발사업은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종합적인 도시개발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바 공공부문 사업시행자에 한하여 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을 강제하는 것이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3조에서도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와 금액 등을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

(64) 하천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경작목적의 하천 점용허가(5년)로 발생하는 권리 · 의무는 양도 또는 임대 · 전대* 금지(강화)

* 전대(轉貸) : 타인에게서 부동산을 빌린 사람(임차인)이 그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

☞ 경작을 목적으로 공공용물인 하천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토지점용 허가권을 사유재산으로 인식하여 매매 또는 임 · 전대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고, 현재 시행규칙에서 경작목적 점용허가는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향입법의 성격도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65)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세계기술기준(GTR) 관련 국제협정(일명 "1998협정")에서 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규정을 채택('08.6)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신설)

* 자동차가 주행중 노면에서 미끄러지려고 할 때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자동차 자세를 유지시킴으로서 안정된 주행성능 확보

☞ 미국 등 선진국에서 동 제어장치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협정 가입국으로서의 위치나 자동차 생산국으로서의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생산되고 있는 국내차량의 경우 장착이 증가하고 있어 필수 품목화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

(66)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출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국제항해선박보안료(톤당 3원), 여객보안료(1인당 120원), 화물보안료(톤당 4원) 징수요율 상한선*을 규정하고, 화물의 톤수 계산 등 항만시설소유자의 항만시설보안료 산정시 고려할사항을 규정(내용심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부산대교수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징수요율 기준 마련

☞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요율 기준 및 산정시 고려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려는 항만시설소유자가 많지 않고, 2004년부터 항만시설보안료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 영국, EU 및 일본과 2005년부터 도입중인 중국, 홍콩과 비교할 때 높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67) 해운법 개정안(신설 1, 강화 4)

■ 심사내용

○ 현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객만족도 평가 실시를 하고 있으나, 외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고객만족도 평가 실시(강화)

☞ 외항 여객선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통해 이를 이용하는 내외국인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자 도입하는 것으로 고객만족도 평가를 국토부의 비용으로 실시한다는 점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사업개선 명령 범위에 신고된 운송약관의 변경, 매점 설치 등 여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필요한 사항 추가(강화)

☞ 여객운송약관의 내용에 운항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약이 취소될 경우 운임환불에 관한 사항, 수수료 징수 절차 등의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여객의 권리보호를 위해 운송약관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개선 명령 대상중 매점설치 등 여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사항(법률안 제14조 제12호)은 범위가 광범위하고 현행 해운법(제14조제3호)의 시설의 개선이나 변경으로 사업개선 명령이 가능하므로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사업 승계인이 90일 이내에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해임하여야 하고, 사업을 승계할 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신설)

☞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양수하는 승계인이 결격사유가 없도록 그 승계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 등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면허(승인) 받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한 경우, 조건부 면허 후 1년 이내에 계류시설 및 적정 선박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한정된 면허내용을 벗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한 경우,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및 사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과징금 부과 사유 등에 추가하고, 양수 · 상속 · 합병 등에 의한 사업승계시 그 사업승계자의 면허 결격사유(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 해소기간을 당초 180일에서 90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승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90일 이내에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승계인의 결격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면허(승인)를 받은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추가(강화)

☞ 면허범위 일탈, 약관 미신고, 사업승계 미신고 등은 법상 의무규정 위반 사항으로 법률 개정후 하위법령인 시행령(안)에서 과징금(300~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면허 결격사유(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 해소기간을 당초 180일에서 90일로 변경하는 것은 민법상(제1019조) 상속의 승인 및 포기의 기간 3개월을 준용한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에도 유사 입법례가 있으므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다만 면허받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한 경우(법률안 제19조 제4호)와 한정면허를 벗어나 여객운송사업을 한 경우(법률안 제19조 제6호)는 법문을 합하여 간략히 할 것을 개선 권고

○ 한정면허*의 위반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해운중개업 등록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운업자에 대해 자료제출 또는 보고 요구 추가(강화)

* 한정면허 : 농협 및 수협 조합이 도서지역의 농 · 축 · 수산물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하여 차도선형 여객선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형태, 해당 도서지역에 기항하는 차도선형 여객선이 없어야 함[해운법제4조(사업면허)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한정면허)]

** 등록취소 사유 : 사업계획 변경 및 선박안전운항을 위한 사업개선 명령 위반, 영업보증금 예치명령 위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미이행시[해운법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 한정면허 위반이나 해운중개업* 등록취소사유 발생시 해당사업자로 하여금 관계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객관적인 행정처분을 하려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해운중개업"이란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선박의 대여 · 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

(68)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65조에서 정한 조합의 겸업금지(법 제6조) 등 24개의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횟수 및 과태료 감경대상 등 과태료의 일반기준 설정(내용심사)

☞ '99.2월 제정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 제65조, 제66조)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없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위반횟수 및 경중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선주상호보험 : 선박운항시 발생한 해난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피해(유류오염, 인명사상, 화물손상 등)에 대한 선주의 배상책임을 선주상호간에 담보

(69)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3,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3층이상 가설건축물도 일반건축물과 같이 안전확인절차를 마련하되, 건축위원회에서 구조 · 피난 안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함(강화)

☞ 3층이상 가설건축물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점, 안전과 관련한 일부규정에 한해 최소한으로 규제를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동의

○ 16층이상 또는 5천㎡ 이상 대규모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함(강화)

☞ 다중이용건축물은 다중이 이용하는 16층이상 또는 5천㎡이상 대규모 건축물로서 화재 발생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이 필수적이고,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통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어 원안 동의

○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에서 다중이용업소로 이용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공장(화재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인근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마감재료를 사용토록 함(내용심사)

*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 : 생수 · 얼음 제조업, 제철 · 강업, 석제품 제조업, 강주물 주조업 등 65개업종

☞ 화재 전파가 쉬운 건물 밀집지역인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로 이용되는 건축물 및 화재 위험도가 큰 공장으로부터 6미터 이내(착화 지연시간 3시간 고려)에 있는 건축물은 인명 및 화재피해 방지를 위해 외벽 마감재료를 난연재(難燃材)로 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 동의

○ 공무원의 건축물 유지 · 관리 확인업무 대상항목에 지능형 인증건축물의 유지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강화)

☞ 에너지저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고,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70) 교통기본법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교통산업을 기초로 다른 교통산업간 또는 교통산업과 정보통신 · 문화 등 다른 산업간 융 · 복합화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교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융 · 복합형 교통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신설)

* 재정, 세제, 출연 · 융자, 공공기관 운영 터미널 등 우선입주 등

〈융 · 복합형 교통산업 지정요건 등〉

○ 융 · 복합형 교통산업 지정요건 및 절차(제41조)
– 융 · 복합형 교통산업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에서 교통산업부문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이며,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요건에 부합한 경우(제1항)
– 융 · 복합형 교통산업계획서 제출(제2항)
○ 융 · 복합형 교통산업 지정 취소(제42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제1호)
– 지정 기준 및 요건에 미달할 경우(제2호)
○ 융 · 복합형 교통산업 지정증 대여 금지(제59조)

☞ 융 · 복합 교통산업의 법적개념이 불명확하며 지식경제부에서 추진 중인 "산업융합"의 개념과 차별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 철회 권고

○ 교통사업자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의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검사나 질문을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신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교통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완화된 형태로 규율하는 것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유사입법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71)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해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구조도, 토지굴착도 등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 종류를 확대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안전성 확인절차 마련(강화)

☞ 규제로 인한 추가소요비용이 거의 없는 반면, 구조물의 안전확보, 인명 재산피해

예방의 효과가 크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경쟁제한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함

(72) 도선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도선사* 면허는 5년마다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갱신받도록 하고, 도선사가 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또는 4개월 미만의 업무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도선사 면허를 1등급 강등함(신설)

* 도선구에서 선박에 탑승하여 선박 운항의 지도를 통해 선박을 인도하는 사람(해당 선박의 승무원은 아님) / 2010년 10월 현재 233명

☞ 위 사항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도선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결정하였고, 선박 대형화 · 고속화, 첨단 선박장비 등장, 항만운영 및 도선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에 따른 도선사의 안전도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적기 재교육시스템이 필요하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국제해사기구(IMO)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재교육에 의한 면허 갱신제를 채택 중에 있고, 도선사의 안전의식 고취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 도선법상(제9조) 도선요청 거절 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 면허강등제를 도입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2009.9.29)

○ 접수된 도선이용자의 불만사항을 도선서비스 불만처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도선사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관할관청에 법 제9조에 의한 행정처분 요구하고, 시정권고를 받은 사람은 그 이행계획 또는 이행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신설)

☞ 동 제도 도입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2009.9.29) 결정의 일환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도선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73)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10.8.9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CNG 버스 폭발사고 이후 CNG 등 자동차용 내압(耐壓) 용기의 안전관리체계를 자동차관리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안전기준, 재검사 등의 기준을 정하고 제작 · 판매중지, 위해방지조치 등 안전조치 사항을 정함(신설)

☞ 재검사와 관련하여 모든 자동차의 내압용기를 탈거방식으로 재검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해당조항 삭제, 개선 권고

○ '10.8.9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CNG 버스 폭발사고 이후 CNG 등 자동차용 내압(耐壓) 용기의 안전관리를 자동차관리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신설)

〈내압용기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 수단〉

- 부정사용 금지 등 (제71조 제1항)
- 보고 · 검사 (제72조 제1항 5의2호)
- 과징금의 부과 (제74조 제2항 3호)
- 과태료 부과 (제84조 제1항 13의2호, 13의3호)

☞ 자동차관리법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과태료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며 행정처분과 금전적 제재(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불합리한 중복규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과금액도 지나치게 높게 규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7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도로교통법」에 의한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 (간접)강제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탑승객에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탑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운전자에게는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는 여객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신설)

* 운전자에게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 책임을 지우고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 탑승거절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탑승거절을 고지의무로 변경, 개선 권고

○ 탑승객의 안전띠 의무화에 따라 운수사업자에게 안전띠 상태유지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강화)

☞ 운수사업자가 안전띠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과 종사자에게 여객의 안전벨트 착용과 관련하여 (직장)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점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판단

(7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신규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및 각 동의 출입구에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 · 관리하여야 하며, 폐쇄회로 텔리비전은 설치되는 대상 시설의 전체 또는 주요부분이 조망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등 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관리하여야 함(신설)

☞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폭력 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
다만,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CCTV 관리규정'을 신설할 것을 부대권고

(76)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기존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시설, 지하주차장, 각 동의 출입구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 등의 방범설비를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설치할 수 있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함(신설)

☞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폭력 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동의

(77) 도시철도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민간에도 개방함*에 따라 피면허자 결격사유, 운송개시의 의무,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약관신고, 사업계획 변경신고 등 보통 공익적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부여하는 규율을 도입(신설)

* (당초) 장관(면허) → 시 · 도지사(위탁) → 도시철도공사
* (변경) 시 · 도시자(위탁/면허) → 도시철도공사 + 민간사업자

☞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시 · 도지사가 도시철도공사에 당연 위탁하던 사업을 민간에도 개방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익적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사항을 적용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78)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중감판에 석탄적재시 공기이동방지 규정 추가하는 등 국제협약에 의한 산적 고체화물 등 특수화물선박운송 기준 강화(강화)

☞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MSBC Code*)의 개정안이 발효('11.1.1) 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령에 수용하려는 것으로, 철광석, 석탄 등 산적 고체화물의 선박운송 기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사항으로 전세계 모든 선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우리나라 선사들은 국제기준이 발효되기 이전 이미 자율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므로 규제비용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

(79)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수도권 · 수도권外 산단 모두 전체면적이 100만㎡ 이상일 경우 일부 용지를 중소기업용 임대용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다만 분양전환(제17조 제3,4,5항 신설) 규정을 도입하여 사업시행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용지의 기업입주율 증가를 유도(강화)

☞ 공공기관 등이 20%이상 투자하는 소수의 공공사업자가 피규제자이고, 규제대상이 연간 10여건에 불과한 점,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분양전환 규정을 도입하여 사업시행자의 장기적인 분양수익 감소를 최소화한 점, 경쟁제한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함

(80)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건축사의 손해배상보험(공제)의 가입기간을 건설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가입대상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가입금액은 설계 및 공사감리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계약체결시 건축주에게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함(내용심사)

☞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타 전문자격사도 손해배상보험(공제)제도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81)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큰 도심지(상업지역)의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함(내용심사)

☞ 화재건수의 28.4%(11,001건, 2010.1.1~12.13현재)가 화재현장에 도착하는데 5분이상 걸리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준불연재료 이상 난연성능 재료를 사용할 필요성이 큼. 인근건물로의 화재확산가능성이 높은 상업지역내 다중이용건축물 및 공장인근 건축물로 한정한 점, 추가비용이 크지 아니한 점, 경쟁제한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82) 사도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도로 개설허가 절차 등이 단순 · 간략하게 되어 있어 행정청과 일반국민에게 혼선을 초래한 바 사도의 구조기준 및 준공, 사도 허가의 취소 및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제도를 도입(신설)

☞ 사도(私道)라도 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구조와 안전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구조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와 부적합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과태료 부과의 경우 유사사례와 비교한 결과 과도한 부담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판단

(83)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면허요건으로서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시험방법을 필기시험으로, 시험과목은 항해 · 운용 · 법규 · 영어 · 수면비행선박공학으로,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조종사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비행경력증명서를 추가하고, 등급별 필요 승무경력을 정하며, 면허취득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를 추가하고 면허의 등급에 따른 이론교육, 모의조종훈련 및 실습훈련을 받도록 함(내용심사)

* 수면과 지속적인 접촉없이 날개 및 선체에서 발생하는 표면효과를 이용하여 수면에서 약 5m정도 떠올라 시속 150~300km 속도로 빠르게 날아가는 선박

☞ 수면비행선박의 상용화가 임박함에 따라 선박직원법(제4조)에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를 신설('09.12.29)하였고, 수행비행선박 조종사의 시험제도 및 교육 · 훈련 사항 등을 하위법령에 정하는 것으로, 수면비행선박은 항공기와 선박의 운영형태를 결합한

신개념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이용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면허요건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수면비행선박에는 선장 및 1등 항해사 각 1명 승선을 원칙으로 하며, 크기(소형 또는 중형)*에 따라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승무자격을 일치시킴 (내용심사)

* 소형 : 이수중량(離水重量)톤수(자체중량과 화물 또는 여객의 최대탑재중량을 합한 톤수)가 10톤 미만인 선박 / 중형 : 이수중량 톤수가 10톤 이상 500톤 미만인 선박

– 소형 비행선박은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중형 비행선박은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선박직원법(제4조)에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를 신설('09.12.29)함에 따라 수행비행선박 크기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해상교통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승무기준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8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해기사가 음주운항 및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년 및 3차 위반시 면허취소를 하도록 함(강화)

☞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선원의 음주운항 및 음주측정요청 거부시 행정처분을 요청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을 개정('09.12.29)하였고,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으로, 음주운항 또는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8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강화 3, 일몰연장 1)

■ 심사내용

○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감정평가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를 발급하기 전에 내부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심사를 수행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서에 심사를 거쳤음을 표시하고 서명 및 날인토록 함(강화)

☞ 법인의 책임감 강화 및 심사의 실질화에 따른 감정평가의 공정성 향상이 기대되고, 비용은 미미하나 편익이 큰 점, 유사사례가 있는 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니면 한국감정평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신설)

☞ 동 조항이 없을 경우, 국민들의 오인 또는 혼동으로 인하여 한국감정평가공단의 공신력 저하 및 일반국민의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항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유사입법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감정평가사들이 의무적으로 감정평가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며, 협회는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에게 준수의무를 부과(강화)

☞ 정부는 1999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한행정사회 등 35개 사업자단체의 설립강제와 회원가입 강제를 폐지한 바 있음
복수의 감정평가사 협회 설립을 제한하고 협회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자격사들의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협회의 독점적 지위를 고착화하여 담합을 조장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며, 시장진입을 제한할 우려가 커 철회 권고

○ 감정평가업자에게는 수수료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의뢰인은 감정평가업자에 대해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위반토록 요구해서는 안됨(일몰연장)

☞ 공정한 감정평가 환경을 조성하고 감정평가사와 의뢰인간의 수수료 협상 등을 통한 결탁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수수료 준수의무 부과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의뢰인에 대한 수수료율 준수의무 부과는 선진국 및 우리나라 모두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동 규정은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

○ '감정평가업자가 수수료 기준을 위반한 경우' 및 '공정한 감정평가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도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를 징계사유에 추가하고, 공개대상 징계범위를 업무정지까지 확대하는 한편, '감정평가업자가 수수료 기준을 위반한 경우 및 의뢰인이 감정평가업자에게 수수료 기준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 에 과태료 부과(강화)

☞ '공정한 감정평가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도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삭제하고, 수수료 기준 위반을 요구한 의뢰인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항도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일반주거지역내 창고시설에 대해 종별 면적을 차등 제한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판매시설에 대해 면적을 제한하며, 준주거지역내 운동시설 · 축사와 준공업지역내 축사에 대해 도시계획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생산관리지역내 식품공장의 범위를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수산물 등 1차 생산물을 가공하여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 으로 한정하되, 지자체에서 용도지역 지정목적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건축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방의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함(강화)

☞ 법령에 종별 허용건축물 종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시행령 안 제37조3항)함으로써 법령을 일탈하고, 주민들의 반대 또는 찬성을 이유로 님비(MIMBY)현상 또는 특혜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생산관리지역내 식품공장을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가공으로 제한할 경우 식품공장의 입지가 실질적으로 곤란해지며 용도지역 행위제한 강화와 관련한 주민민원 · 소음 · 교통영향 등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철회 권고

2. 해양경찰청

* 집필자 : 김도엽 사무관(Tel. 2100-2419, freekdy@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해양경비에 관한 법률 제정안 1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4건 등 총 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중 2건은 개선 권고, 나머지 2건은 원안 의결함

[해양경찰정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해양경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421회 행정사회분과 (2010. 06. 03)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신설 4 *중요 3,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신설 4 *중요 3, 비중요 1

나. 2010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해양경비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해상검문검색(신설)

- 국제법 및 국내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사후적 조치를 위해 해양경찰관이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 및 행사방법 등을 규정

☞ 규제대상이 "선박 등"인지 "선박"인지 불분명하므로(모터보트 등 선박 이외의 수상이동기구를 통한 마약범죄 등을 사전 예방) "선박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 권고

* 선박 등 : 선박,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등), 기타 수상이동기구

○ 추적, 나포(신설)

– 제13조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에 대하여 추적,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기타 해당 수역에서 적용되는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 · 비준한 조약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거나 행하려 한다고 확실시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까지 포함하여 대상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함

– 그 권한의 행사는 피규제자의 권리 및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규제자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함

☞ 원안 의결

○ 해상항행 보호조치(신설)

– 해상에서 위험의 발생은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이 보다 중요하다는 현실적 요청과 이와 같은 요청이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제한적인 경우에 특정선박에 대하여 경고, 이동 · 해산 명령을 하는 등 보호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임해 중요시설' 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규제 범위가 모호하므로 임해중요시설의 구체적 기준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 권고

○ 과태료 부과(신설)

–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에 대하여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경찰권 행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및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제 5 절

농림 · 수산 분야

1. 농림수산식품부

* 집필자 : 손은주 사무관(Tel. 2100-2308, ejsohn@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어업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0건, 강화 31건, 내용심사 43건 등 총 94건(중요 12건, 비중요 8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4건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5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88건은 원안대로 의결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0.04.18)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98차 경제분과 (2010.04.22)	원안의결 5	내용심사 5 *중요 3, 비중요 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0.05.23)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6.15)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6.15)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6.20)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정부간 IUU어업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통합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0.06.27)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0.07.13)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비중요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0.07.20)	원안의결 5	내용심사 5 *비중요 5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407차 경제분과 (2010.07.22)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1 *중요 1, 비중요 2
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7.27)	원안의결 4	강화 2, 내용심사 2 *비중요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8.08)	원안의결 5	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3 *비중요 5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8.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농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8.17)	원안의결 3	강화 1, 내용심사 2 *비중요 3
식물방역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8.24)	원안의결 12	신설 7, 강화 5 *비중요 12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411차 경제분과 (2010.09.09)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12차 경제분과 (2010.09.30)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0	신설 1, 강화 8, 내용심사 3 *중요 3, 비중요 9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13)	원안의결 3	강화 1, 내용심사 2 *비중요 3
인삼산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11.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1.03)	원안의결 3	강화 2, 내용심사 1 *비중요 3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11.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동물보호법 개정안	제415차 경제분과 (2010.11.11)	철회권고 1,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2 *중요 1, 비중요 4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416차 경제분과 (2010.11.25)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2 *중요 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06)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0.12.13)	원안의결 7	내용심사 7 *비중요 7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13)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418차 경제분과 (2010.12.23)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27)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계	–	철회권고 1 개선권고 5 원안의결 88	신설 20 강화 31 내용심사 43 *중요 12, 비중요 82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내용심사)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시설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切土) · 성토(盛土) · 정지(整地) · 포장(鋪裝)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토석의 채취 : 흙 · 모래 · 자갈 · 바위 등의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수산동식물의 포획 · 채취 또는 양식 : 「수산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양식과 제2조 제18호에 따른 유어(遊漁)

– 식물재배 등의 행위 :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으로 고시된 구역내에서 타용도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것으로 유사업무(하천법 시행령)에서도 운영중인 것으로서 그 내용이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등에 대해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법률 위임사항으로서 사업목적과 배치되는 건축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법령(하천법 시행령 107조)과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내용심사 5)

■ 심사내용

○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투자실적이 200억원 이상, 변호사, 금융기관 경력자 등 2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모태조합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등 공간과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운용계획서, 융자 · 회계 · 자금관리 업무 수행실적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내용심사)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식품모태펀드의 효율적 관리 · 운용을 위해 투자경험 및 전문성은 필수요건이며,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등 펀드운용사의 투자규모가 수천억원 단위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기준이 과도한 기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안 동의

○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모태조합의 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운용실적을 4월 30일까지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내용심사)

☞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 목적 이외의 자산사용 예방 및 건실한 운용을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자는 출자금 총액이 최소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유한

책임조합원 수, 출자 1좌의 금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개요, 출자금 총액 등을 기재하여 결성계획서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내용심사)

–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시 등록신청서를 조합원총회 개최일 부터 14일 이내에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부실 금융기관이나 비자산운용전문가의 펀드 운용을 방지하여 농식품분야의 민간투자를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유사입법례(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14조)에 비해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안 동의

○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날까지 출자금 중 100분의 60 이상을 농식품 경영체에 의무 투자해야 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은 새로 영입되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시 해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농식품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내용심사)

☞ 농어업분야 의무투자를 규정하여 농산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제고 및 민간출자자의 안전투자를 확보하고, 조합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투명하고 건실한 자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유사입법례(중소기업창원지원법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1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원안 동의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400만원, 결산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 시정명령을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 의무사항에 대한 불이행을 예방하고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사 법령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3)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농업인등의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전제로 시장 ·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농외소득 활동 사업계획 내용 및 신청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내용심사)

–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사업명칭, 사업소재지 · 규모, 사업내용 및 사업 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 성과목표 및 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인 등은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함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업소득 활동 사업계획 내용 및 제출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유사입법례(중소기업창원지원법 시행규칙 제 14조)와 비교시에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4)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외해양식어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및 외해양식 시험어업 추진 결과 및 내용, 내만 가두리 외해이설 계획서,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및 어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내용심사)

☞ 수산업 개정에 따라 외해양식어업 면허가 신설됨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예상되는 피규제자의 수(약 400여명)가 적으며 다른 면허어업의 신청서류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5)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수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해양식어업 면허 우선순위 중 항목별 우선순위가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함(내용심사)

– 법 제13조의2 제1항제1호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① 시험어업 경영을 완료하고 평가 결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
② 시험어업을 경영 중으로 중간평가 결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자

– 법 제13조의2 제1항제2호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①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내만 가두리 양식장의 면적이 큰 자
② 내만 가두리 양식장 어업경영 기간이 오래된 자

– 법 제13조의2 제1항제3호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① 이설하고자 하는 내만양식장의 면적이 큰 자
②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

– 법 제13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른 우선순위

① 지구별 ·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② 어촌계
③ 어업법인
④ 어업인
⑤ 외해양식 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외해양식어업 면허신청의 우선순위가 같은 순위자 중에서 평가 결과 타당성이 검증된 자, 양식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자(어업경영 기간이 오래된 자), 해양오염 부하 저감 효과가 큰 자(내만양식장 면적이 큰 자) 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규정으로, 피규제자의 수(약 400여명)가 적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6)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위반자에 대한 공표내용을 정한 것으로, 처분확정시 영업종류 · 영업명칭 · 영업주소 · 위반수산물 명칭 및 처분내용 · 처분권자 · 처분일 등을 농식품부 및 시 ·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정함(내용심사)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위반자 공표에 대한 공표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영업주 이름 등 개인 정보에 민감한 사항은 공표하지 않고 영업종류 · 명칭 및 위반내용 등 객관적 사실을 공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표대상 및 방법이 유사입법례(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3)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7)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통합고시 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 체결된 한 · 러 IUU어업 방지협정에 의거 한국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선박을 이용하여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 수출신고를 하도록 함(내용심사)

* 한 · 러 IUU어업 방지 협정 : Illegal(불법), Unreported(비보고), Unregulated(비규제) 어업을 억제 및 근절함으로써 수산물 불법 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 · 차단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양국간 적법하게 어획된 수산물 교역발전에 관한 협력을 약속한 조약

☞ 한 · 러 IUU어업 방지협정(조약)에 의거 한국산 수산물을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

양정부간 수출정보를 사전에 교환하여야만 러시아 항만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선박명, 종류, 해양생물자원 내역 등 관련 정보를 러시아에게 제공하도록 사전에 신고하는 것은 수출업체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제로 경쟁제한성이 없고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술 품질인증을 받은 자 등이 감독관청의 품질인증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미보관, 조사의 거부 · 방해,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표시사용정지 처분의 불이행 등의 경우 위반행위별로 위반 횟수에 따라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하여 품질인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규정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유사입법례(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 40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한 사후감독 결과 부적격 인증기관에 대해 위반행위별로 위반 횟수에 따라 최저 '경고' 에서 최고 '지정취소' 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품질인증기관이 허위지정을 받은 경우 등 부적격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을 구체화한 것으로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보호 및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규정으로서 이견이 없으며 유사입법례(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 20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수거 · 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한 경우, 품질인증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인증제품을 계속 생산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 대해 위반행위별로 위반 횟수에 따라 최저 '표시변경명령' 에서 최고 '표시사용정지 9월' 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인증기준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체화하여 품질인증제품의 사후관리를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유사입법례(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와 비교시 타당하며, 법위반시 인증 표시사용정지 처분은 할 수 있되 제품의 판매정지 등 과도한 행정처분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적정한 규제수준이라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9)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내용심사 5)

■ 심사내용

○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의 적정성, 곤충관련 교육시설 및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정성,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의 적정성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함(내용심사)

☞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 및 지정기준을 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경쟁제한성이 없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유사입법례(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 11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유통 및 판매 · 이용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을 정함(내용심사)

– (종류)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 · 약용곤충, 학습 · 애완곤충, 사료용곤충, 기타동물 등 용도별로 유통 · 판매할 수 있는 곤충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외 곤충은 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사육기준)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곤충의 보호와 생육에 책임을 지고 곤충의 소리 · 냄새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곤충을 사육해야 함을 규정

– (규격) 장수풍뎅이의 등급별 규격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곤충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

① 1등급 : 성충 68mm이상, 유충 30g 이상
② 2등급 : 성충 50~68mm미만, 유충 25~30g 미만
③ 3등급 : 성충 50mm미만, 유충 25g 미만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유통 · 판매 및 이용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규격 등을 규정한 것으로, 곤충은 사용 목적에 따라 해충 또는 유용곤충이 될 수 있어 용도별로 곤충을 사육 · 유통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피규제자 수(263농가)가 적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곤충을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내용심사)

☞ 곤충의 대량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환경의 피해예방 및 야생곤충의 무분별한 포획방지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재장치로서 유사입법례(축산법 시행령 제 27조)와 비교시에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곤충의 대량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 평가의 기준 · 대상 · 시기를 규정(내용심사)

– (대상) 사람이나 가축, 농작물이나 산림자원 등에 피해 및 위해를 줄 수 있는 곤충 등

– (기준) 해충화 가능성, 생태계 위해가능성, 인축독성 등

– (방법) 현지사례 조사, 문헌조사 등

– (시기) 사람 · 가축에 대한 위해성 및 농작물 · 산림자원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예상될 때 또는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의뢰할 때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곤충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평가대상 · 기준 · 방법 · 시기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곤충의 대량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의 위해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서 피규제자(263농가)가 제한적이고 유사입법례(식물방역법

제6조)와 비교시에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곤충을 사육 또는 가공 · 유통하려는 자는 사육업 신고서와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사육 · 관리시설의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곤충의 탈출방지용 이중 출입구 장치 및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해야 함(내용심사)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신고 및 예방조치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곤충의 무단 탈출방지로 인한 생태환경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표지 · 탈출방지용 장치 등을 구비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견이 없고, 유사입법례(축산법 제23조) 비교시에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0)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배달을 통해 판매 · 제공하는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추가하고, 영업장면적 100㎡ 미만의 음식점에도 밥류와 배추김치류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강화)

☞ 농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업자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닭고기, 쌀 등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로 인한 규제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원산지표시제로 인한 국내산 농산물 소비진작 효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등 규제로 얻는 편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배달을 통하여 판매 · 제공하는 닭고기와 음식점에서 조리 · 판매하는 오리고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부과, 축산물 판매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구입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 ·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신설(신설)

☞ 과태료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제재로서 원산지표시제의 정착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유사입법례(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3조)와 비교시에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를 구체화(내용심사)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란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으나 포장재 · 푯말 · 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함

– '원산지 위장판매'란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을 말함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피규제자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업무혼동을 방지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경쟁제한성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1) 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법률의 위임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염의 범위 및 검사의 종류를 규정하고 품질검사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내용심사)

– 법률개정으로 품질검사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을 품질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품질검사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또는 정밀검사 및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도록 규정

– 국내에서 생산 · 제조 · 가공한 염에 대해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검사 신청서, 염제조 관련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법률개정으로 염의 품질검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금의 유통거래 질서 확립 및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식품위생

법상 품질검사를 받는 정제염, 재제염, 가공염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사입법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12조 2항)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염의 품질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품질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등에 대한 기준 강화(강화)

– (인력) 현행과 동일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5인 이상 확보해야 함

– (조직) 품질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시설) 검사 및 분석을 위한 10㎡ 이상의 분석실 설치

– (장비) 자동수은분석기, 전기로, 초순수제조기, HPLC, 현미경, 무균작업대 등을 1대 이상 보유해야 함

☞ 품질검사의 종류가 확대되면서 염의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으로 학계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유사입법례(식품위생법 제4조, 24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염의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의 방법 및 검사기준을 구체화(내용심사)

– (관능검사) 염의 맛 · 냄새 · 색깔 · 이물 및 포장상태 등을 종합하여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정밀검사) 천일염, 재제염, 정제염, 부산물염 등 염의 종류에 따라 일반성분 및 유해성분의 규격기준을 구체화함

* 일반성분 – 염화나트륨, 총염소, 수분, 사분 등
유해성분 – 황산이온,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등

☞ 염의 품질검사가 확대됨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염의 규격기준을 구체화하는 정하는

사항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유사입법례(식품공전 '29~12 식염'의 기준 및 규격)와 비교시에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검사 종류에 따른 수수료 구체화 및 수수료 상향조정(강화)

– 천일염 : 840원, 정제염 : 520원, 재제염 : 520원, 부산물염 : 520원, 가공염 : 870원, 함수 : 160원, 수입염 : 120원 (수수료 기준단가(원/톤))

☞ 검사수수료가 '94년 개정이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물가상승분을 일부 반영하여 상향조정하고 품질검사 확대에 따른 세부 수수료 기준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유사입법례(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 22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2)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어촌계 설립시 어촌계의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지구별수협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강화)

* 어촌계란 일정 연안지역에 거주하는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어업인들의 자율조직

☞ 어촌계의 설립권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지도 · 감독권은 지구별수협에 부여되어 있어 어촌계의 실질적인 지도 · 감독 및 통제가 불가능함에 따라 설립인가시 지구별 수협의 동의절차를 거침으로써 수협과 어촌계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수협의 지도 · 감독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 및 경쟁제한성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중앙회 감사위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조합의 감사위원 자격을 일부 강화(내용심사)

– 중앙회 감사위원 자격을 구체화

① 중앙회 ·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은행, 농협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단, 중앙회 · 조합에서 최근 2년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
② 수산업 · 금융 관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 대학에서 전임강사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판사 · 검사 · 군법무관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상장법인에서 법률 · 재무 · 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자
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조합 감사위원 자격 중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하도록 요건을 강화

☞ 법률개정으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로부터 독립됨에 따라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사입법례(금융지주회사법 제 19조의 2)에 근거하여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배제하도록 하여 감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 관리의 세부기준에 대해 정함(내용심사)

–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은 회원에 대한 대출 및 금융기관 · 공공기관에 대한 단기 대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의 매입(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에 한함)등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함

☞ 현행 수협법(제167조)에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국내외 금융시장 확대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시행령에 세부적 운용방법을 위임한 것으로 회원의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에 대한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매입(위험회피를 위한 거래에 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유사입법례(농협법 시행령 15조, 신협법 17조 등)와 비교시에도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 조합의 다른 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및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우선출자를 할 수 없도록 금지(신설)

☞ 조합간 우선출자를 허용시 사실상 회원 조합간 순환 출자구조를 허용하게 되어 조합의 재무구조의 왜곡효과를 유발하게 되므로 조합의 투명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유사입법례(농협법 시행령 제31조의 2)와 비교시에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및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등을 규정(내용심사)

–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공제사업의 종목, 상품 안내자료, 공제모집시 금지행위 등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상품 개발기준, 약관 등 공제상품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성립 및 계약절차 등 공제계약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의 공제 규정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명시

–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 및 환급금을 충당하기 위한 공제료 적립금과 미경과 공제료, 공제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

* 책임준비금이란 공제자가 공제계약에 대해 장래에 지급하는 공제금, 환급금, 배당금 등의 지급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금액

☞ 공제사업의 규모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감독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제계약자의 권리보호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민영 보험사와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법 등의 감독기준을 적용하여 공제사업의 방법 및 관리에 대해 구체화한 규정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유사입법례(농협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 4)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3)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종자보증과 관련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등 법위반자에 대해 3회 이상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시행령의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정함(강화)

☞ 불량 · 불법종자로 인한 농업인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 위반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일부 강화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조정했으나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상향조정을 하지 않고 위반횟수(3회 → 5회)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여 규제강도가 크지 않으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4) 농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법률에 농약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 · 보존하지 않은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세부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농약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고독성 농약정보의 기록 · 관리를 통해 음독사고 예방 등 농약의 안전한 사용 ·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유사입법례(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60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법률 개정으로 기존 농약을 활용해 병해충 방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 자재를 농약활용기자재로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제출서류를 정함(내용심사)

–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을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등록신청서,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및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독성시험성적서,

작물 · 토양 잔류성 시험성적서 등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농약을 활용한 제품이 약재(藥劑)형태가 아닌 기기 · 자재형태의 다양한 제품이 제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고, 현행법에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는 농약등록의 신청서류 및 시험 기준과 동일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법률의 위임이 없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중 '해당품목 등록취소'를 '해당품목 등 제조 · 수입(판매) 정지 1년'으로 개정하고 법집행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일부 내용을 '영업정지 3개월~1년'으로 강화함(강화)

☞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고 불량농약을 유통 ·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농업인 보호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유사입법례(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와 비교시에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5) 식물방역법 개정안(신설 7, 강화 5)

■ 심사내용

○ 국내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활동을 담당하는 식물방제관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물재배지 등에서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함(신설)

☞ 국내 병해충 방제업무는 식물방역관이 아닌 일반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법적근거의 미비로 방제활동에 제약이 존재하여 검사 및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유사입법례(가축전염예방법 제7조, 제30조의 가축방역관)와 비교시에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농식품부 장관 및 시 · 도지사는 방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병해충의 분포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분포조사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기피하지 못하도록 함(신설)

☞ 신속한 병해충 방제를 위해 병해충의 피해지역 및 피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법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농식품부 고시 '외래병해충 공적방제실시 요령'(제8조,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옮겨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방제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어있다고 의심되는 시설이나 장비의 재사용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방제명령의 내용을 강화하고 시 · 도지사가 공동방제에 필요한 장비 · 인력 · 약제 등의 지원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강화)

☞ 농기구 등에 부착된 병원체는 소독처리를 거치더라도 대기중에 노출된 상태로 장기간 생명력을 가지므로 2차감염의 방지를 위해 농기구의 사용기간 제한이 필요하며 병해충 확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 및 신속한 공동방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농협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임의로 규정되어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방제명령 등으로 폐기한 식물 등을 매몰한 토지는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굴취를 금지(신설)

☞ 식물의 병해충은 인축에 전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폐기처분으로 매몰된 식물을 무단 굴취하여 사용 및 판매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 발생함에 따라 병해충의 2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유사입법례(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19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식물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휴대하거나 우편 · 특급탁송의 방법으로 수입시 재식용이나 번식용인 식물인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함(강화)

☞ 우편 · 휴대품은 검역증명서가 없어도 수입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희귀 · 재식용 식물을 수입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외래병해충 유입을 사전차단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성이 없고 유사입법사례(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와 비교시에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농식품부장관은 검역장소의 질서유지와 식품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역 장소에 식물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신설)

☞ 미검역품 및 소독·폐기물품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병해충 부착위험성이 높은 재식용 식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식물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유사입법례(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33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식물검역이 진행중이거나 소독, 폐기처분 대상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관의 허가없이 검역장소 외부로 반출한 경우 검역장소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취소 사유를 추가(강화)

☞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을 불법으로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외래병해충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입법 미비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피규제자 수(578개소)가 적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소독처리마크가 없는 목재포장재에 대해서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여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취소된 물품에 대해 폐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신설)

☞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 따르면 목재포장재도 식물검역대상물품이나 국내 수입시 수입신고의 의무조항이 없어 불법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검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유사입법례(가축전염병예방법 제44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식물검역관은 식물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선박, 컨테이너 등)이라도 수출자 또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경우 수출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 북미국가는 자국으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증명서'(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여 수출지연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등 식물등이 아닌 물품에 대한 수출검역의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견이 없으며 해외 입법례

(일본, 러시아 등)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를 신설(신설)

– (등록)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해야 함

– (등록의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이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음

– (등록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2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 농약관리법에서 신고제로 운영하던 것을 식물방역법으로 이동하여 등록제로 강화하고 등록의 결격·취소사유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수출입식물방제업은 고독성 농약을 취급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있고, 유사 업종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농약제조업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열처리업이나 방제업을 등록한 자가 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소독하는 경우에는 소독처리마크를 등록하고 이를 표시해야하며 등록하지 않고 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강화)

☞ 목재포장재는 국제기준(IPPC,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소독 처리를 하고 등록된 소독처리마크를 사용·표시를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수출상대국에 한국수출품이 불합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고시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제3조, 9조)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옮기는 것으로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규정이며 이견이 없고 피규제자 수(479업체)가 적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식물검역관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열처리업체·방제업체의 시설·장비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업체는 위해방지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함(강화)

–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식물검역관이 열처리업체 및 방제업체의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위반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열처리업 및 방제업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정한 조치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방제업자로 하여금 약제의 구입량 및 사용량 등 약제 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약제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고독성 농약을 취급하는 열처리업과 방제업은 작업 과정에서 위험성이 따르므로 시설·장비 등의 검사를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현재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고시)에 의거 운영하고 있던 사항으로 규제의 정도가 크지 않고 유사입법례(농약관리법 제24조, 25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6)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연근해채낚기어업의 어선에서 집어등(集魚燈)*과 작업등(作業燈)**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 작업등은 근해어선의 경우 4개(6kw), 연안어선의 경우 2개(3kw)로 제한(강화)

* 집어등(集魚燈)이란 어군을 수면 가까이 밀집시켜 포획하는데 사용하는 등으로 현재 어선규모에 따라 약 50~90여개 설치 가능하며 집어등을 많이 켤수록 오징어 집어에 효과적임

** 작업등(作業燈)이란 어선에서 작업할 때 불편이 없도록 쓰이는 등(燈)으로 어선에서 야간작업을 위해 켜는 등

☞ 현행 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집어등의 광력 제한이 있으나 작업등에 대한 기준은 없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대규모 어선이 작업등을 집어등으로 둔갑시켜 수산 동물을 남획하는 불법조업이 발생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어업질서 유지 및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작업등의 개수와 총 광력기준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법해석의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3kw(연안어선), 6kw(근해어선)기준을 적용하되 작업등의 개수는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

(17)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8, 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닭, 오리, 계란 등 축산물의 포장의무 확대(강화)

– (대상) 도축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등 닭·오리 식육의 유통판매 전체단계에 대해 포장을 의무화하고 식용란유통업자는 계란에 일정사항을 표시 및 포장하여 유통하여야 함

– (방법) 닭고기, 오리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소에는 포장된 닭고기, 오리고기를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고, 계란의 경우에는 최소 포장단위에 동일한 생산농장에서 동일한 산란일에 생산된 식용란이 포장되어야 하며, 난각과 최소 포장단위의 포장지에는 산란일·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등 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닭과 오리의 경우에는 닭·오리고기의 오염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체도축 두수의 82.6%('09년)가 이미 포장하여 유통중이이므로 규제의 정도가 크지 않아 그 적정성이 인정되나, 계란의 경우 포장지에 산란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유통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해외 입법도 그 사례가 없으므로 산란일 표시규정은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

○ 닭, 오리의 검사를 담당하는 책임수의사의 검사업무량을 전년도 1일 평균 도축두수에 따라 정하던 것을 1일 검사업무량의 기준으로 변경하여 1일 검사량을 제한하고 책임수의사 1인 추가에 따른 검사량을 4만수에서 2만수로 강화(강화)

☞ 책임수의사의 검사업무량을 1일 검사업무량으로 제한하지 않아 도축검사의 부실이 우려되므로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검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한해 기준업무량의 1.5배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쟁제한성이 미미하며 해외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1일 검사업무량 기준을 2만수로 정한 것은 하루 8시간 근무로 산정할 때 1분당 약 42수를 검사하는 것으로 캐나다 27수, 미국 35수, 일본 35수와 비교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

○ 법률 제1조 및 제24조에 따라 신고해야하는 영업 중 식용란(닭의 알에 한함)을 전문적으로 유통 및 판매하는 식용란유통판매업을 신설(신설)

* 단,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다른 식용란유통판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등록기준 규모이하인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직접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영업장을 갖춘 소매업은 제외

– (시설기준) 식용란을 검란, 선별, 포장, 운반하기 위한 장비 및 식용란의 표면과 포장에 날짜 등을 인쇄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두어야 하며, 영업장에는 방서 · 방충시설 및 환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준수사항) 식용란을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수집 · 처리 · 보관 · 운반 · 판매해야 하며, 부패된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등은 판매하지 못함

☞ 식용란은 살모넬라균의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나 식용란의 유통 및 판매 등이 자유업으로 되어 있어 관리 · 감독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식용란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다른 법률(축산법)에서 규정한 '계란집하업' 의 종사자에 대해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하므로 부칙에 신고의 예외조항 등을 추가하고 2년 내 축산법의 중복규제를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단, 미삭제시 동 신설 규제에 대해 일몰 적용)

○ 법률개정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금액이 1억에서 2억으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의 세부기준을 2배로 상향 조정(강화)

☞ 법률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세부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유사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일관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상의 제재수준과 동일하게 정하였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농식품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법을 위반한 영업자,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 및 위해축산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함(내용심사)

①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위반사실의 공표,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또는 위해축산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② 축산물의 제품명
③ 해당축산물의 제조연월일 · 수입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④ 위반내용 또는 위해요소
⑤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⑥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등

☞ 상위 법률에 법위반자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 위해축산물의 정보 등을 공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공표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 및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며 이견이 없고 유사입법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조 및 58조)와 비교시에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법률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상한기준을 일부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세 그룹(1000, 500, 300만원)으로 나누어 규정(강화)

☞ 법률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유사위반행위에 대한 형평성 확보를 위해 유사입법례(식품위생법 제43조)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법 제38조에 따른 출입 및 조사 등을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검사업무정지(1,2차위반시) 및 지정취소(3차위반시)를 신설하고 검사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검사업무정지 15일에서 최대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일부 강화(강화)

☞ 최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객관성이 저하되고 지정 당시의 검사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위반시 행정제재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7조와 비교시 적정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법률개정으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건이 확대 · 변경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일부 강화(강화)

☞ 동일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법령과 소관기관이 상이함에 따라 행정처분의 여부 및 양형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의 행정처분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성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법률개정으로 매년 축산물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하는 영업자의 범위를 정함(내용심사)

– ① 도축업 영업자 ② 집유업 영업자 ③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④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⑤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 · 식육부산물판매업 · 축산물수입판매업 ·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 · 식용란유통판매업 영업자 ⑥ 법 14조 1항에 따라 축산물 검사를 보조하는 종업원

☞ 유사입법례(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 · 가공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접객업자 등 식품관련 영업자에게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축산물 위생분야에 대한 예방교육의 기능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려하는 것으로 포장된 축산물을 단순 보관 · 운반 · 판매하는 영업은 교육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인터넷 교육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정도가 크지 않고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도축업 · 축산물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일부 강화(강화)

– (도축업자) 도축하려는 가축의 이동을 위해 전기봉을 사용해서는 안 됨

– (축산물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판매업자) ① 조제유류에 관해 음악 · 영상 · 인쇄물 · 간판 · 인터넷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홍보단 · 시음단 등 모집을 통해 사용 후기 등을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됨 ②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해야하며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함(단, 부패 · 변질우려가 있는 경우 2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남은 4개월은 사진으로 보관)

–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자) 분할 · 판매하는 축산물가공품의 포장을 뜯는 경우 해당 축산물가공품에 표시된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에 남아 있어야 하며 분할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 기구 등은 정기적으로 살균 · 소독해야 함

☞ 가축에게 전기봉을 이용하면 근내 출혈 등을 발생시키는 등 식육의 품질에 문제를 발생시키며, WHO 국제협약에 따라 모유수유 촉진을 위해 조제유류의 판촉행위 및 광고를 전면금지하고 있으나 입법미비로 인해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증거품의 보관기간 등을 수정하였고 유사입법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법률의 위임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의 위반사항중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한 경우

① 비소 · 카드뮴 · 중금속 · 메탄올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바륨, 포름알데히드, 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③ 방사능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④ 축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⑤ 곰팡이 독소기준을 초과한 경우
⑥ 패류 독소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 법 제5조에 따른 용기 · 기구 · 포장에 관한 규격에 위반한 경우

–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 등에서 위생상 위해우려를 제기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사용금지한 원료 · 성분이 검출된 경우

– 그 밖에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허용된 첨가물 외의 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② 대장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그 밖에 제품의 안전성에 의심이 될 경우

– 그 밖에 회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섭취함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 법률위임에 따른 별도의 회수기준이 없어 법집행의 혼란이 있어 회수대상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서 유사입법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기준을 정한 것으로 경쟁제한성이 없고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금지되어 있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범위 추가(강화)

– 가축이 먹는 사료 및 물에 첨가한 성분이나 축산물을 가공시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 · 효과를 해당 축산물의 효과로 오인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 각종 감사장 · 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광고(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상장 및 정부인증은 제외)

– 한방 및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등

☞ 특정물질을 미량 첨가한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능 ·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사입법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8)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수입쇠고기를 양도 · 양수 또는 수출하는 경우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자의 대상범위를 정함(내용심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 이상인 업소) 신고를 한 영업장에서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을 운영중인 자

–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육포장처리업자으로 허가받은 자 중에서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을 겸업운영중인 자

– 그 밖에 식육판매업자, 부산물판매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이 부령으로 정한 자

☞ 수입 쇠고기에 대해 관세법상 유통이력신고를 하던 것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상 쇠고기이력추적제의 거래신고로 개정함에 따라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국내산 쇠고기와 형평성에 맞게 거래신고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일정규모 이상 영업소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의 정도가 크지 않고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수입쇠고기의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 및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법위반시 위반횟수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미 시행중인 국내산 쇠고기 취급 영업자의 과태료 처분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정하였고, 과태료 처분액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다르게 정하였으므로 규제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소의 출생 · 폐사 · 양도 · 양수 신고 및 귀표의 부착기한을 단축(강화)

– (신고) 소의 출생, 폐사, 양도, 양수 등의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던 것을 5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하도록 신고 기한 단축

– (귀표부착) 국내에서 사육중인 소(육우에 한함)의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해야 하던 것을 7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도록 강화

* 귀표란 가축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소, 양, 염소 등 중소가축의 귀에 다는 표지(ear mark)

☞ 소의 정확한 사육 · 이동상황을 파악하여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귀표부착관련 출생 후 거래가 많은 육우에 한해서만 귀표부착 기한을 단축하였으며, 농가는 5일 이내 전화로 신고가능하고 축협 등 위탁기관이 농가를 방문하여 12일 내에 귀표를 부착하므로 규제의 정도가 크지 않고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9) 인삼산업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인삼류의 자체검사업체가 검사를 하지 않고 인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검사정지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취소사유를 추가(강화)

☞ 인삼 유통시 인삼의 제조업체가 직접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자체검사업체를 지정하여 제도를 운영중이나 그 중 일부업체는 검사를 하지 않고 인삼을 유통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고 유사입법례(식품위생법 제75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0)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법률 개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일시 및 장소에 대해 공개해야 함에 따라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함(내용심사)

– (공개대상) 종축업(종돈장, 종계장)을 영위하는 농장

– (전염병 종류)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추백리, 가금티푸스 등

– (절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지자체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정보공개 대상 농장에 대해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에게 보고해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은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보공개의 범위를 결정하여 공개해야 함

– (방법) 축산관련 전문지 및 축산관련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종돈장, 종계장 등 종축업을 영위하는 농장에서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알리지 않고 새끼 가축을 판매시 가축전염병이 일반 농장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종축업 농장에 한해 전파력이 강한 전염병이 발생시 정보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공개의 범위를 가축방역협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유사입법례(축산물위생관리법 제37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법률 제20조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살처분 명령을 해야 하는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스크래피를 추가함(강화)

* 광우병, 광견병, 사슴만성소모질병, 스크래피 등 뇌관련 질병 등은 질병의 증상으로 해당 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으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동물이 죽은 뒤 뇌와 인후두림프절을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통해서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므로 전염병 감염시

살처분을 해야만 진단가능

☞ 가축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전염병 의심축이 발생할 경우 전염병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해야 하나 해당 전염병이 살처분 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염병 검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정부에서 시가로 보상하고 있어 농가의 비용부담이 거의 없으며 해당 전염병 발생 수('10년기준, 10여건 내외)가 매우 적고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식용축산물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것으로 검역시행장은 적외선 온도계, 조명등이 있는 이동검사대, 디지털카메라 등을 갖추어야 함(강화)

☞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시설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것으로 냉동 보관된 축산물의 적정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적외선 온도계가 필요하며, 어두운 실내에서도 정확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명등이 있는 이동검사대를 구비해야 하고, 식육에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기록할 수 있도록 디지털카메라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강화하는 시설이 식용축산물 검역시행장에서 대부분 기 비치되어 사용되고 있어 시설기준 강화로 인한 추가비용은 미미하며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1)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축산업의 등록대상 확대 및 시설기준 강화(강화)

– (등록대상) 소사육농가의 축산업 등록대상면적을 300㎡에서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강화하고 사육시설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기타가축(산양, 면양, 사슴,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타조)의 경우도 등록하도록 규정

– (시설기준) 축산업 등록농가의 시설기준을 일부 강화
① 종오리업 · 종계업 : 종란보관실 및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② 종돈업 : 사람, 차량 등의 출입제한을 할 수 있는 담장을 설치할 것, 차단 방역을 위한 상하차가 가능한 시설 및 격리사를 갖출 것 등
③ 부화업 : 종란 훈증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 (과태료 강화) 법 제26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

☞ 구제역 및 AI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가축농장에 전염병 발생시 관리가 어려워 신속한 방역관리 및 대응이 불가능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소사육업 및 기타가축 사육업을 등록함으로써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통풍이 이루어지는 구조이거나 사육시설에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의 정도가 크지 않아 규제강화로 인한 추가 비용이 미미하고, 종계업, 종돈업 등 종축업은 새끼가축을 분양할 때 전염병이 확산될 소지가 큰 영업으로 외부오염원으로부터 2차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격리시설(종란보관실, 격리사, 출입제한을 위한 담장 등) 및 소독시설이 필요함이 인정되며 해외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EU국가(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대만 등의 국가에서는 축산업의 등록 또는 허가제를 실시하고 가축두수제한 및 분뇨배출량제한 등을 규정

*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

* AI는 닭, 칠면조, 오리, 철새, 타조, 꿩 등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 · 약 · 비병원성으로 구분됨

(22) 동물보호법 개정안(신설 3, 강화 2)

■ 심사내용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대상동물(개)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함(단,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강화)

☞ 동물 등록의 필요성 대하여 전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동물(개)을 미등록한 국민을 처벌(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5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시 다수의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을 원하는 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등록을 점차 확대한 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규정을 철회 권고

○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변경 및 폐지시 농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함(신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란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윤리적, 과학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관리와 사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 평가하는 합의제 의결기구

☞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막고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위원회가 형식적인 설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동물실험의 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EU, 미국 등 해외입법사례와 비교시 적정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영국을 비롯한 EU국가는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인증, 개인 허가 및 실험 프로젝트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미국, 대만 등은 실험동물윤리위원회를 설치 및 등록해야 함

○ 동물실험위원회를 등록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의 지도 · 감독을 받아야하며, 농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운영되지 않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음(신설)

☞ 동물실험위원회가 적법하게 설치 ·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미국, 대만 등에서는 정부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지도 · 감독할 수 있으며, 개인 및 프로젝트별 면허로 동물실험을 관리하는 유럽국가(EU의 대부분 국가, 영국 등)에서는 동물실험이 수행되고 있는 장소에 방문하고 점검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신설)

☞ 양수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영업의 연속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이견이 없고 유사입법례(축산법 제24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기준 신설(강화)

–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기준 마련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수의사가 아닌 자가 안락사를 시행한 경우
②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③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④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⑤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⑥ 보고 · 자료제출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 자료제출을 한 경우

– 시 ·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시키고, 동물보호와 관련된 신설의무 준수를 위해 유사입법례의 수준으로 과태료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유사입법례(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소비자 알권리 확보 및 국내산 쌀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곡표시제의 권장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던 '품위' 및 '품질'을 의무 표시하도록 개정(강화)

– (품위) 명칭을 '등급' 으로 변경하고 단계를 세분화 (3단계 → 5단계)

– (품질) '단백질 함량' 을 표시하도록 개정하고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함량별로 '수, 우, 미' 로 표기

☞ 법률상 양곡의 품질표시가 의무표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규칙에서는 품위 · 품질을 권장표시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등급 및 단백질 표시를 할 수 없는 소규모 도정공장의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고 검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규제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해외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대만, 미국은 품목 등 기본정보 외에 쌀의 영영분석표시(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함량 등)를 의무화

(2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어업구조 개선을 위해 직권으로 대상 어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직권지정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신설)

– 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어업구조개선 대상어업의 종류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해당 어업자단체에게 어업구조개선 계획서를 요청해야 함

– 어업구조개선이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근해어업은 시 · 도지사의, 연안 및 구획어업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련 어업자 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해당어업을 어업구조개선 대상 어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어업구조개선이란 수산자원을 조성 ·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 척수의 조정, 어업의 종류통합 또는 변경,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의 조정과 어선의 선진화 등 연근해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함

☞ '94년 이후 현재까지 어선감척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자율 신청에 의해 감척하는 사례가 적어 어업인들이 경쟁적 조업을 하여 수산자원이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어업구조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수산자원은 공유재로서 남획되어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 정부직권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동의

○ 어업구조개선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어업구조개선의 사업대상자를 선정시 선정기준 및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정함(신설)

– 농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구조개선을 위하여 어업구조개선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어업구조개선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함

① 어업구조개선 사업희망 정도
② 어선의 선령
③ 어선의 규모(톤수, 마력)
④ 수산관계 법령의 준수정도

– 어업구조개선 사업대상자 선정시 근해어업은 시 · 도지사, 연안 및 구획어업은 시장 · 군수 ·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어업구조개선 사업대상자 선정을 통보받은 자가 어업구조개선 사업의 절차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의 범위안에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관해 단계별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① 해당어업의 조업일수 제한
②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 융자지원의 제한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2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량 제한

☞ 공유자원은 남획될 소지가 있어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점은 인정되나, 정부가 직권으로 어선 감척시 개별 사업대상자의 생계에 위협을 가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정책지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대상자 선정 후 불이익 처분 관련 조업일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사업대상자가 생계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한을 할 것을 개선 권고

(2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위임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자조금위원회 의장이 자조금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소 400만원(1회 위반시)에서 최대 900만원(3회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

– 가축을 도축하거나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최소 100만원(1회 위반시)에서 최대 300만원(3회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

–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최소 100만원(1회 위반시)에서 최대 300만원(3회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

* 축산자조금이란 개별 생산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산업전체의 힘을 모아 대처하기 위해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자금으로, 임의자조금과 의무 납부해야하는 의무자조금으로 분류되며 당해 사업에 대한 소비, 홍보, 교육, 연구 등에 사용됨

☞ 법률개정에 따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시키기 위해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률에 위임된 과태료 상한에 따라 과태료 처분액을 위반 횟수별로 다르게 정하였으므로 규제의 정도가 크지 않고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6)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내용심사 7)

■ 심사내용

○ 법률개정으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 운영하려는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해야함에 따라 신고내용 및 방법 등 규정(내용심사)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란 동물병원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동물 질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기기로서 X-ray 장치 및 CT 등을 말함

–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중지 후 재사용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함

①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1부
②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
③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양도 · 이전에 한함)
④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 증명서(사용중지 후 재사용에 한함)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양도 · 폐기 · 이전 또는 동물병원 명칭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소속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① 신고증명서 원본
② 양도 · 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
③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신고에 한함)
④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전신고에 한함)
⑤ 방사선 관계종사자 변동신고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사본(종사자 변동시)

☞ 방사선 노출시 암 · 백혈병 · 림프종 등 악성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방사선활용 기기는 관련 부처의 허가 및 신고제로 관리되고 있으나, 동물병원내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관리제도가 없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피규제자(최대 2,300개소)가 적고 이견이 없으며,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신고의무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원자력법(교과부)상 방사선 발생장치는 허가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복지부)에서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를 의무화

○ 법률개정으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을 검사 및 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검사의 방법 및 검사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방사선 발생장치) 동물병원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 이전시, 전원시설을 변경시, 사용중지 신고 후 재사용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전압 발생장치 등을 교체시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 (방어시설) 해당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전에 방어시설에 대해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 방사선 방어시설이란 방사선의 피폭(被曝 :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차폐시설 및 엑스선 방어칸막이, 방어장갑 등을 의미

– (종사관계자의 피폭관리) 동물병원 개설자는 방사선 관계종사자에게 열형광선량계를 사용시 3개월마다, 필름배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월마다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해야 함

* 방사선 피폭선량이란 인체가 받은 방사선의 양을 말하며 피폭시 생물에 지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며, 피폭단위는 렘(rem) 또는 시버트(sv)를 사용

☞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노후 및 변형에 따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방사선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방사선 발생장치 유자에 대해서는 양도 · 폐기시까지 검사를 면제하고 있고,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 중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적은(하루에 2~3회 이하 X-ray사용하는 경우)병원에 대해서는 피폭선량 측정을 제외시키고 있어 규제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검사기준 등은 국제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고, 유사입법례(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와 비교시에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를 위하여 검사기관 및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기관을 지정 및 지정 취소할 수 있음(내용심사)

– 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한 날로부터 4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시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함

– 검역원장은 검사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③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검사, 측정업무를 행하는 경우
④ 별표4에 따른 검사, 측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⑤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측정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및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대한 정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유사입법례(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검사의 신청서류 및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준수의무(내용심사)

– (검사신청)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신청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방사선 관계종사자 피폭선량 측정 신청서를 검사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시정명령) 검사결과가 부적합하거나 선량한도가 초과한 것으로 판정되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방사선 장치에 대한 사용금지 및 수리 · 교정 후 재검사,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동물병원 개설자는 시정명령을 받으면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을 수리 · 교정하고 재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

☞ 방사선발생장치 · 시설의 검사가 부적합하거나 종사자의 피폭선량 한도가 초과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사선 관계종사자를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로서 이견이 없으며 유사입법례(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8조)와 비교시에도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안전관리를 위해 방사선 구역을 설정 및 표시해야 하고 일반인의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내용심사)

* 방사선 구역이란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및 원자력법 등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를 준용하여 외부방사선량이 주당 0.4mSv이상인 곳으로 설정

☞ 동물병원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 운영할 경우 방사선 촬영실 외부에도 방사선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방사선 구역을 표시하고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하루 2~3회 이하 X-ray 사용시 방사선 구역관리를 면제하고 있어 규제의 정도가 크지 않고 이견이 없으며, 유사입법례와 비교시(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제9조)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정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함(내용심사)

–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관계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 해임 · 겸임시키는 경우 해당 동물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의 업무계획 및 점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등을 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역원장이 지정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일반 동물병원의 경우 개설자가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태할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병원 개설자 자신이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고 하루 2~3회 이하 X-ray 사용시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을 면제하고 있어 규제의 정도가 크지 않고 유사 입법례(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제10조, 11조, 15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동물병원 개설자의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 의무를 정함(내용심사)

– 동물병원 개설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그 직을 해임하고 다른 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동물진단용 방사선 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동물병원 개설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건강진단을 받도록 해야 하며,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서류를 비치 및 보존해야 함

☞ 동물병원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 방사선 피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방사선장치 관계 종사자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 암, 백혈병, 림프종 등 악성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방사선장치 검사자료, 건강진단 관련 자료 등을 검사측정기관 및 동물병원에서 보관토록 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한 것으로서 유사입법례(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제12조, 13조, 14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7)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신고하지 아니하고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관리기준에 부적합) 내지 20만원(관리기준에 적합) 부과

–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검사 및 측정, 종사자의 피폭관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내지 50만원 부과

–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 사용 제한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30만원 부과

–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이 시도지사 등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20만원 부과,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30만원 부과

☞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등을 해야 함에 따라 법위반시 신설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안전관리 의무위반자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제재로서 유사법률인 의료법과 비교시 과태료 부과 수준이 적정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8)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혼획 · 좌초 · 표류된 고래류의 신고 및 매각조치 의무(신설)

– 혼획 · 좌초 · 표류된 고래류를 발견한 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며,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해서는 구조 및 회생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신고자는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에서 혼획 등의 고래류를 매각해야 하며 수협에 매각의뢰시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고래류의 유통증명서를 수협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함

☞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고래류 포획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포획 고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고래자원 보호 및 고래류의 투명한 유통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그 규제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한 회생조치 관련 그 의미가 모호하여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구조나 회생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개선 권고

○ 고래류의 위판 및 고래류의 DNA 시료채집 협조의무(신설)

– 수산업협동조합장은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위판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고래류를 매각한 경우 매입자로부터 해체장소와 처분계획을 제출받아 고래류의 유통증명서에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그 사본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통보해야 함

–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위판하는 모든 고래류의 DNA 시료를 채집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공해야하며, 매입자는 시료채집에 협조해야 함

☞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의해 포획된 고래류에 대한 표본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고래류를 습득 · 매입한 자에게 DNA시료를 채취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어업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므로 공적기능을 갖는 수협조합장에게 의무를 부과한 점, DNA시료는 일정 부위의 고래육을 작은 크기(5×5×5㎜)로 채집해야 하는 것으로 비용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고래류의 유통증명서의 지급 및 소지 의무(신설)

– 고래육을 매도하는 자는 고래유통증명서에 매도일시 및 장소, 매도량 및 금액, 매입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매입자에게 사본을 지급해야 함

– 매입자는 매입한 고래육이 판매될 때까지 고래류의 유통증명서 사본을 소지해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 혼획 · 좌초된 고래류와 불법 포획된 고래류를 구분하여 투명한 고래류의 유통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도 우리나라의 혼획 · 좌초 고래 등에 대해 불법포획의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견이 없고 피규제자 수가 적으므로(연간 600여명)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고래류의 해체시기 및 장소 제한(신설)

– 모든 고래류는 업종별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해체장에서만 해체해야 함

– 위판한 고래류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생물학적 조사 등을 실시한 후에 해체해야 함(단,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경우는 제외)

☞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따르면 고래류의 감독 및 통제와 관련하여 육상처리장을 지정 및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수협 위판장을 고래류의 해체장으로 지정하고, 수협위판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나 별도로 해체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농식품부장관이 해체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규제의 정도가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9)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신설 1, 강화 3)

■ 심사내용

○ 축산물을 처리 · 제조 · 가공 · 수입하는 영업자는 용기나 포장에 다른 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됨(강화)

☞ 제품 표시에 대한 오인 · 혼동으로 알레르기 환자, 만성질환자 등 일부 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사용된 용기나 포장을 재사용시 오염 발생 우려가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와 비교시 적정하고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의무 표시 및 표시금지 사항을 추가(강화)

–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를 해야 함

– 축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넣은 선도유지제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해야 함

–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 식품첨가물에 대해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 금지

☞ 페닐알라닌은 대사 장애가 있는 자에게 지능장애, 피부의 색소결핍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아스파탐을 사용한 경우 소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하는 것이며, 축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넣는 방습제 · 제습제는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현하고 먹지 않도록 주의표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쟁제한성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유사입법례(식품등의 표시기준 제6조, 제7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중 축산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표시기준을 강화(강화)

– 제품처리 · 제조 · 가공시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 활자로 표시해야 함

– 영양성분 표시대상 축산물(조제유류, 우유류, 발효유류, 소시지류 등)에 대한 내용량을 표시하는 경우 1회 제공량당 열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

–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에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를 추가

– 카페인을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첨가한 경우 제조 · 가공한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 함유한 경우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를 표시(단,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제외) 하도록 추가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식품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축산물의 표시기준'에도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어린이 · 청소년 비만 등이 급증함에 따라 햄 · 치즈 등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대상을 확대하여 성분표시의 관리 · 감독을 강화하라는 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한 점, 커피 · 녹차 · 코코아 등에 함유된 카페인의 경우 어린이 등 노약자가 과잉섭취시 불안, 신경과민,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닭 · 오리 및 계란 등 축산물의 개별표시방법을 정함(신설)

– (계란) 식용란유통판매업자가 계란포장시 최소포장단위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기타표시사항을 표시하되, 계란의 난각에는 생산자명(또는 생산자코드)을 표시해야 함

– (닭 · 오리) 도축업의 영업자가 닭 · 오리의 식육을 포장하는 때에는 합격표시,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생산연월일, 유통기한, 보존방법, 내용량을 표시해야 함

☞ 법률 위임된 범위내에서 축산물의 세부표시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계란 난각에 생산자명 또는 기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규제의 적성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 산림청

* 집필자 : 옥선경 사무관(Tel. 2100-2296, skjade@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8개의 법령에 대해 규제심사(신설 1건, 강화 1건, 내용심사 10건 등 총 12건)

○ 심사대상 12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11건은 원안대로 의결함

[산림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0.02.05)	원안의결 5	내용심사 5 *비중요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6.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7.27)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1.15)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비중요 3
산지관리법 개정안	제415회 경제분과 (2010.11.11)	철회권고 1	신설 1 *중요 1
계	–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1	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10 *중요 1, 비중요 11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5)

■ 심사내용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 ·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이외에 추가로 설계 · 감리를 할 수 있는 자를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 · 나무병원 법인 ·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로 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 · 감리에 따른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100만제곱미터 이상 면적은 기술특급의 산림경영기술자 1명, 100만제곱미터 미만 면적은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1명으로 함(내용심사)

☞ 연간 피규제자 수 및 규제영향비용이 미미하고 경쟁제한적 성격도 없으며 이해관계자 이견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예찰 · 방제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함(내용심사)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의 벌채 등의 방제조치

– 산림소유자에게 산림병해충 방제조치 명령

☞ 동 규정상의 조치사항은 산림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사료되는 바, 연간 피규제자 수가 제한적인 점, 산림자원 보호에 따른 편익이 크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산불경보가 발령될 때 행정기관 등에서 조치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음(내용심사)

– 산불경계경보 발령시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놓기 허가를 중지

– 산불심각경보 발령시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를 중지

☞ 연간 피규제자 수 및 규제영향비용은 미미한 반면 산불발생 방지에 따른 편익이 큰 점,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산불전문조사반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산불조사 · 연구 · 교육 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함(내용심사)

☞ 연간 피규제자 수 및 규제영향비용이 미미하고 경쟁제한적 요소도 없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산림보호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함(내용심사)

– 국가, 지자체에서 산림보호업무를 1년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산림, 환경분야 단체에서 산불예방, 산림정화 등 1년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

– 「산림조합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 연간 피규제자 수 및 규제영향비용이 미미하고 경쟁제한적 요소도 없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강화 1)

■ 심사내용

○ 규격이나 품질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임산물의 종류에 '목재펠릿'을 추가(내용심사)

* 규격 또는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불량 목재펠릿의 유통을 근절시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목재펠릿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목재펠릿의 보급 활성화로 화석연료 대체 및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할 필요성이 크며, 同개정안에 따른 피규제자 및 규제영향비용이 제한적이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3)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치유의 숲' 시설의 조성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치유의 숲 조성면적 : 50ha(국가 · 지자체외 30ha) 이상

– 산림형질변경 면적 : 전체 면적의 10% 이하

–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 : 전체 면적의 2% 이하

– 건축물 층수 : 2층 이하

* '치유의 숲'이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향기, 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함(同法 제2조제4호)

☞ '치유의 숲' 조성은 산림의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산림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기존 유사 입법례인 '자연휴양림' 보다는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또한 '치유의 숲' 조성기준은 치유의 숲 조성시의 "권장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져 同法상의 '치유의 숲' 조성시 국가 지원(사업비 저리융자 등) 등을 받을 수 있는 점, '치유의 숲'은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의 경우는 연간 1~2건 내외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同法 개정('10.3.7)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내용심사)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기준 : 보전가치가 높은 유형 · 무형산림문화자산 중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정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 해제 절차 : 산림문화자산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 산림문화자산의 해제사유 : 산림문화자산을 해제할 수 있는 공용 · 공공용 시설을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전기, 방송, 통신,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로 정함

☞ 지정시 관계기관장의 의견청취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도록 하여 지정의 객관성을 높인 점, 산림문화자산 지정 · 해제에 따르는 의무가 크지 않는 점, 경쟁제한성도 없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4)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규모와 산지전문기관에 대하여 정함(내용심사)

– 산지전용타당성조사는 30만제곱미터(굴진채굴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산지전용허가 등(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을 받으려는 경우로 함

– 산지전문기관은 ①「산지관리법」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②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 · 단체로 함

☞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규제대상이 전체 산지전용 협의 · 허가건수의 0.9%(연평균 214건)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허가권자가 재해방지명령을 하기 위해 산지에 대하여 조사 · 점검 · 검사 등을 하는 때에는 그 관계자에게 관련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조사 · 점검 · 검사를 위탁받은 자 포함)에게 해당 산지에 출입하여 조사 · 점검 ·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자료제출 및 해당 산지에의 출입 등이 재해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활동인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면적을 산지전용 ·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토사채취의 경우 신고한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자의 선정 및 배치기준을 복구비예치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함

☞ 이해관계자 이견이 거의 없고, 비용(67억원)에 비해 부실복구 방지에 따른 추가적인 복구비 절감(155억원)이 큰 점, 재해예방에 따른 2차 피해방지의 편익이 발생하는 점, 유사입법례가 있는 점, 경쟁제한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5) 산지관리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토석채취허가, 채석단지의 지정 및 토석의 매각이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는 2년마다 채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다른 대안 시행 후 시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불가피시 추후 검토키로 하며 철회 권고

제 6 절

방송통신 분야

* 집필자 : 김재환 사무관(Tel. 2100-2325, jhkim@pmo.go.kr)

1. 방송통신위원회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방송법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규정 등 14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0건, 강화 3건, 내용심사 14건 등 총 3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7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8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2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년도 총 신설규제는 20건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107차 예비심사 (2010.02.11)	원안의결 2	내용 2 *비중요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97차 경제분과 (2010.04.08)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내용 2 *중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제126차 예비심사 (2010.04.27)	원안의결 2	내용 2 *비중요 2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개정안	제399차 경제분과 (2010.05.06)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내용 3 *중요 3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제240차 본회의 (2010.08.12)	개선권고 2, 원안의결 3	신설 1, 내용 4 *중요 4, 비중요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241차 본회의 (2010.08.26)	개선권고 2, 원안의결 6	신설 6, 강화 2 *중요 7, 비중요 1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정안	제410차 경제분과 (2010.09.02)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제411차 경제분과 (2010.09.09)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제176차 예비심사 (2010.11.24)	원안의결 1	내용 1 *비중요 1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제176차 예비심사 (2010.11.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 · 절차 ·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정안	제245차 본회의 (2010.10.28)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신설 3 *중요 2, 비중요 1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제183차 예비심사 (2010.12.20)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417차 경제분과 (2010.12.09)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중요 1, 비중요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제418차 경제분과 (2010.12.23)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계	–	철회권고 1 개선권고 8 원안의결 28	신설 20 강화 3 내용심사 14 *중요 21, 비중요 16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정지를 대신하여 부과하는 법 취지에 맞게 과징금을 사업정지 기관과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개정(내용심사)

–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구체화
- 최근 3년간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적용
-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
- 위반행위의 동기와 정도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경감

[위치정보사업자등의 허가취소등의 처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위반회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 변경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법 제13조제1항 제1호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폐지		
2. 휴지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법 제13조제1항 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3개월	허가의 취소 사업폐지	– –
3.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 · 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법 제13조제1항 제3호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4.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조제1항 제4호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5.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한 때	법 제13조제1항 제5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6.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한 때	법 제13조제1항 제6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7.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때	법 제13조제1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 사업정지를 대신하여 부과한다는 법 취지에 맞게 과징금을 사업정지 기간과 매출액에 따라 차등부과

* 과징금 = [(별표3의 처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 일수)× 1일당 과징금의 금액(매출액의 6,000분의 1)]

☞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고 피규제자가 제한적이며 행정처분 기준의 투명성 및 구체성을 높여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을 감한해 볼 때 타당한 내용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 의결

○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최근 3년간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적용,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내용심사)

[과태료 부과기준]

해당규정	법상 과태료 상한액(만원)	시행령상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허가조건 위반자(법 제5조제4항) 등 5개 규정	2,000	600	1,200	2,000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 · 분할의 신고위반자 (법 제10조제1항) 등 12개 규정	1,000	300	600	1,000
통계자료(법 제32조) 미제출자	500	150	300	500

☞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피규제자가 제한적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 의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규정 신설(내용심사)

–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관련매출액의 1000분의 10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규정

–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 정도(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과징금 기준금액을 설정

– 위반행위가 지속된 기간 및 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가중 · 감경(필수)

– 개인정보 보호 노력, 위반행위 조사 협조여부, 위반행위 주도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 가중 · 감경 가능(임의)

☞ 기준금액 산정에서 법 제64조의3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경우 과징금 기준금액 산정시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정액으로 산정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개선 권고

○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의 종전 추상적인 부과기준을 구체화(내용심사)

–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 위반행위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 위반의 정도 및 내용, 위반행위자의 유형 및 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을 고려하여 가중 · 감경

☞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하수도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등 여타 입법례와 비교하여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 의결

(3)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시험에 대한 부정행위 기준과 응시제한 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상 부정행위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내용심사)

*** 관련법령 내용**

제110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기술자격검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그 검정을 정지하며 합격을 무효로 한다.

1.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응시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술자격검정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 법제처, 권익위의 "국민불편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권고('09.6월,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개선 조치로서 무선종사자 자격검정의 법령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정 개정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 의결

○ 무선국 운용정지 또는 운용제한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행정처분 기간과 비례하도록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개선(내용심사)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 관련)**

1.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기간' 1개월과 '무선국의 운용정지기간' 1개월은 각각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 기간'과 '무선국의 운용정지기간'에 제4호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각각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3. 제2호의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기간'과 '무선국의 운용정지기간'은 별표 23과 별표 24에 따라 산정된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118조제2항 · 제3항, 별표 23 및 별표 24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각각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
4.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과 '무선국의 운용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 전기통신사업용무선국 또는 방송국 : 무선국 운용정지 1일(167,000원), 무선국 운용허용시간 ·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 제한 1일(84,000원)
   - 그 밖의 무선국 : 무선국 운용정지 1일(67,000원), 무선국 운용허용시간 ·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 제한(34,000원)

☞ 법제처, 권익위의 "국민불편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권고('09.6월,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개선 조치로서 무선국 운용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간과 과징금 부과금액이 비례 관계가 되도록하여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조치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 의결

(4)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상에 지하도, 터널, 지하상가 및 바닥면적 1,000㎡이상의 지하건축물 외에 일반 건축물을 추가(내용심사)

– 다만, 통신수요가 없을 경우는 설치를 제외

☞ 일반 통신수요 증가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5회선 미만의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도 통신선로 옥외회선을 지하로 인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내용심사)

– 다만, 인입배관이 방통위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인 경우는 통신선로설비의 지하인입 의무 제외함

– 통신사업자가 설치해야 할 인입주까지 지하인입 선로 설치비를 건축주가 부담해야 함

– 사업자는 계약 해지후 이용자에게 가공으로 인입한 선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철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제4조제2항제2호의 분계점과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 · 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지하로 인입하여야 함

☞ 개정안 제18조 제2항은 건축주에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어 5회선 미만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국선 등 옥외회선은 지하인입 의무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수정토록 개선 권고
다만, 개정안 제18조 제4항과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후 사업자는 이용자에 가공으로 인입한 선로를 방통위가 정하는 기간내 철거하는 개정안은 원안 의결

○ 건축물의 층별 구조 등에 층구내 통신실을 동일층에 2개 이상으로 분리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개별 통신실의 최소면적을 5.4㎡이상으로 설정 및 시건장치 의무를 규정(내용심사)

– 현행 6층이상 연면적 5천㎡이상인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10.2㎡이상 1개소 이상 등의 집중구내 통신실 및 층구내통신실 설치 의무를 규정
* 건축물 구내 전기통신선로설비 설치 및 구내통신실 면적확보 의무 근거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는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전기통신기본법」제30조의3 제1항)

– 공동주택의 집중구내통신실에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 추가 확보해야 하는 최소면적(2㎡) 설정 및 시건장치 의무

☞ 건축물 구내의 통신실 분리 설치에 대한 개정안은 건축주에 대한 편의를 고려하는 규제완화의 성격이므로 원안 의결

(5)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내용심사 4)

■ 심사내용

○ 시청점유율 30% 제한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추가적인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금지, 새로운 방송사업 설립에의 참여금지,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조치, 방송광고시간의 제한 등의 조치를 명함(신설)

☞ 상위법인 방송법의 시정점유율 30% 제한에 대해 위반한 사업자에게 제재하는 방식을 그대로 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

○ 시청점유율 1% 초과 당 매월 하루 씩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가장 높은 채널에서 방송광고를 금지(내용심사)

– 방송광고가 제한되면 방송편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 방송광고 시간에 공익광고는 허용

☞ 초과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방송광고시간 제한의 계산방식은 초과비율이 올라갈수록 누진적 성격으로 과다한 규제일 수 있으므로 향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

○ 시청점유율 30%에서 1% 초과 당 방송사업자의 주 채널에서 주 시청시간 방송시간의 1/30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양도(내용심사)

– 방송시간 양도 조치 기간은 제3자 방송사업의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6~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정함

– 방송시간을 양도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하며, 시청점유율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방송시간을 양도 받을 수 없도록 함

☞ 초과사업자에 부과하는 제3방송사업자에 방송시간 양도의 계산방식은 초과비율이 올라갈수록 누진적 성격으로 과다한 규제일 수 있으므로 향후 보완할 것을 부대권고

○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시 업무 정지 6개월 또는 허가 · 승인 유효기간 6개월 단축을 규정(내용심사)

☞ 시청점유율 위반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단순히 반복 기술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구분하여 원안 의결

○ 시청점유율 초과사업자에 대해 추가적인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금지, 새로운 방송사업 설립에의 참여금지,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조치, 당해 방송사업자의 자산 매각 조치를 명할 수 있음(내용심사)

–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조치나 당해 방송사업자의 자산 매각 조치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이행을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행 기간을 6개월 연장 가능

☞ 시장점유율 규제를 초과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소유제한 조치의 유형을 구체화한 것으로 동 시행령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식, 자산매각 방식은 소유지분 등을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을 단순 설명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 의결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6, 강화 2)

■ 심사내용

○ 연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별정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의무 분담하는 면제 사업자에서 제외(강화)

* 보편적 역무 :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역무(시내공중 도서 등 유선전화, 선박무선 · 특수번호 등 긴급통화, 장애인 · 저소득층 요금감면전화서비스 등)

** 보편적 역무의 손실보전이란 정부에 의해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주로 KT가 담당)가 역무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관련 통신업계에서 공동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해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도매가격으로 설비이용이 가능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그간 기간통신사업자만 부담하고 있던 보편적 역무 손실분담금을 별정통신사업자에게도 확대하는 것은 분담의 형평 차원에서 타당하고, 또한 동 규제의 적용을 새로이 받게 되는 별정통신사업자(7개사로 예상)가 부담하는 손실분담금의 예상규모는 전체 손실금(897억원) 중 1.2%에 상당하는 10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경제적 부담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

○ 기간통신사업자의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대상이 법률(제18조제1항제5호)에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신설)

–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①지주회사 인수, ②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주식취득, ③경영권 위임계약, ④주주들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를 규정

* 기존의 인가대상 : ①사업양수, ②법인합병, ③주요설비매각, ④주식 15%이상 소유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 동 규제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경영권을 실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 취득 및 협정 체결"하는 사례를 예시한 것으로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

○ 기간통신사업 휴 · 폐지시 필요한 제출서류에 "휴지 또는 폐지 사실의 통지 및 가입자 보호조치 계획"을 추가(신설)

* 법률에서는 휴 ·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고, 승인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현행 사업 휴폐지시 제출서류 목록(시행령 제24조) : 휴 · 폐지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 도면, 사업에 관한 주요전기통신설비 내역 허가서, 사유서

☞ 기간통신사업의 휴 · 폐지 승인신청 시 가입자 보호조치 등 사업자의 사후조치를 추가하여 제출서류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유사법령 사례가 있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 의결

○ 선불통화권을 발행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는 발행총액의 50% 이상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정하는 액수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신설)

– 종전에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만 선불통화권 발행시 발행총액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

– 선불통화권 발행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정시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의무 부과

– 제출 자료는
① 선불통화권 발행시 보증보험증서 사본, 당해연도 선불통화 발행 예정액, 선불통화권 이용방법 등
② 선불통화권 사업 갱신시 대차대조표, 선불통화권 전년도 매출총액,
③ 선불통화권 발행총액 변경시 가입한도에 따른 보증보험 갱신 후 그 증서사본

☞ 현재 선불통화권을 발행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6개사)는 연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므로 보증보험 가입의무 면제대상이므로 부담은 크지 않으며 선불통화권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행보증보험 가입대상을 기간통신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 의결

○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설비등의 제공현황 파악을 위해 각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 및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받고 있는 설비현황 및 설비 등의 제공에 따른 매출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신설)

☞ 개정안 제39조 중 제3호(설비등의 제공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의 매출액) 및 제4호(기타 설비등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한 자료)는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

○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의무제공한 망서비스를 재판매하기 위한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추가 규정(강화)

– 자본금 30억원 이상, 기술계 자격자 3명 이상 및 기능계 자격자 2명 이상이어야 하고

– 이용자 보호계획은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치, 24시간 고객응대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민원처리 직원 확보, 통신비밀업무 전담기구 설치 · 운영

* 도매제공의무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가 방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매제공 가격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재판매사업자와 개별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관련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법 제38조)해야 하는 사업자

* 법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이하 “재판매”라 한다)할 수 있도록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이하 “도매제공”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에서 지정한다.

* 현행 별정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계획(시행령 별표2) : 전담 1명 이상의 상설 이용자 보호기구 마련,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가 반영된 이용약관 제정

☞ 의무제공으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물량(통신망)이 시장에 공급되면, 다수의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재판매사업자(MVNO)로 등록하여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신시장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유형 추가 및 기준 규정(신설)

–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의 결정 등
• 상호접속등의 이용대가를 상호접속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급비용보다 부당하게 높게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
• 제1호 외에 상호접속등의 이용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해 부당하게 높게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등
•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이하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라 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계약내용과 다르게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비추어 부당하게 낮은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
•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수익배분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함으로써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정하고자 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안 제45조와 관련된 별표 3의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의 결정 등"과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등"의 각호 내용을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 제2호(영업보고서 중요사항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및 제3호(회계정리규정 위반)를 위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한 오류발생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중·감경한 값"의 100분의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신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 제1호(영업보고서 미제출 또는 관련자료 제출명령 불이행) 및 제3호(장부 또는 근거자료 미비치)를 위반하는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 상한을 종전의 1,000만원에서 매출액의 2/100까지로 정한 것은 매우 강한 규제이기는 하나, 부과기준이 전체 매출액이 아닌,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에 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정도와 처벌 수준간에 비례성이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

[과거 회계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실적]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부과건수	35	36	84	132	274	340
부과금액 (획일)	각1천만원	각1천만원	각1천만원	각1천만원	각1천만원	각1천만원

(7)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전기통신사업자가 청구하는 요금고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고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신설)

– 이용자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

–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①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별 통화량 비중, 지정번호 할인 요금제의 전체 지정번호의 총통화량 비중 또는 통화유형별 통화량 비중 등에 관한 정보(단, 이는 해당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에 한하여 제공)
② 그 밖에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 관련 정보 중 요금제 설명 등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 요금고지서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요금고지서에 필수고지사항을 서비스 유형별로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단, 필수고지사항 중 이용자가 고지받기를 원하지 않는 등 기재하는 것이 오히려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는 제외)
•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필수고지사항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요금고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중 다음의 경우는 적용 제외(안 제4조)
① 필수고지사항 중 특정항목의 분량이 방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상 제공하는 요금고지서 지면에 전부 기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상품광고 등 필수고지사항과 관계없는 정보로 인해 필수고지사항을 충분하게 기재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② 과금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요금고지서 발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③ 결합상품 할인 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상세할인내역을 전부 기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필수고지사항을 요금고지서에 기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동 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요금고지서에 고지내용을 보다 상세히 알려주도록 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서비스 편의를 도모코자 한 것이며 또한,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에 따라 규정하고 사업자의 규제비용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 의결

(8)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방송사업자가 분담금을 기한내 납부치 않을 시 3/10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경과 매 1월마다 체납분담금의 1/100의 가산금을 더하여 부과(신설)

– 다만, 중가산금을 포함한 총 가산금은 법정 한도인 5/100 이내

* 국내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으로 방송사업자에 분담금을 징수(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3호)

☞ 동 제정안은 사업자의 분담금 체납에 대해 가산금 부과와 별도로 중가산금을 재차 부과하는 규정이 법률의 위임범위에 속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최근 3년간 체납분담금 기준 가산금 부과대상이 6개 사업자, 부과총액도 6천만원 이내로 미미한 점* 등을 감안시 중가산금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규제라고 판단되므로 철회 권고

* 방송발전기금 방송사업자 분담금 규모(억원) : ('07)1,533 → ('08)1,470 → ('09)1,423

○ 방송통신설비를 직접 설치 · 보유하고 방송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도록 규정(신설)

☞ 상위 법률의 위임범위에 따라 관리규정을 정해야 하는 사업자를 규정하는 조치로 불특정 다수에 대해 제공되는 방송통신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비를 갖춘 사업자로 하여금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 의결

(9)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철도, 지하철, 소방, 산림, 홍수 예 · 경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무선국의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내용심사)

– 재난, 긴급 상황 발생시 인명 및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기검사를 수시 실시하여 무선국의 상시운용 상태를 유지할 필요

– 현행 인명안전 관련 무선국인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무선국 정기검사 유효기간
  ① 필수고지사항 의무선박국, 의무항공기국, 실험국, 실용화시험국 ⇒ 1년
  ② 40톤미만 의무선박국, 평수구역내 운항 선박의 의무선박국, 회전익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의무 항공기국 ⇒ 2년
  ③ 방송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 3년
  ④ 일반무선국 ⇒ 5년

** 인명안전 및 재해예방 관련 무선국의 정기검사 불합격은 전체 19,049건 중 691건으로 3.6% ('10.6월말 기준)

☞ 재해 관련 무선국 정기검사 대상은 일반이 아닌 산림청,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의무 선박 · 항공국 등 일반무선국과 달리 특수한 경우 정기검사 주기를 1~2년으로 규정하므로 인명구조 및 재해 등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연재해 및 비상시 재난 예경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 의결

(10)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산정시 오류발생금액은 수익 · 비용오류와 자산오류의 3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신설)

– 회계분리의 복잡성 및 오류발생건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계수로 나누어 산정

* 과징금 기준금액(오류발생금액 × 부과기준율(0.25~0.5%))

① 오류발생금액 = 오류금액 ÷ 조정계수

[회계분리 복잡성 및 오류발생건수를 반영한 조정계수]

해당규정	해당규정	시행령상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10	11~20	21~30	31~40	41~50	51 이상
회계분리복잡성 (제공서비스수)	1~5	2.00	1.95	1.90	1.85	1.80	1.75
	6~10	2.05	2.00	1.95	1.90	1.85	1.80
	11~15	2.10	2.05	2.00	1.95	1.90	1.85
	16~20	2.15	2.10	2.05	2.00	1.95	1.90
	21~25	2.20	2.15	2.10	2.05	2.00	1.95
	26 이상	2.25	2.20	2.15	2.10	2.05	2.00

② 부과기준율

부과기준(오류발생금액)	부과기준율
500억원 이하	0.50%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0.45%
1,000억원 초과~2,000억원 이하	0.40%
2,000억원 초과~4,000억원 이하	0.35%
4,000억원 초과~8,000억원 이하	0.30%
8,000억원 초과	0.25%

☞ 동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기준내에서 기술한 것으로 사업자 측면에서 회계분리의 복잡과 오류발생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경감하는 등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규정하였으며 회계위반 사업자에 따른 조정계수 및 위반액 규모를 반영하여 조정율을 규정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 의결

(11)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 · 절차 ·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상을 통해 도매제공을 해야 하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신설)

–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SK텔레콤(주)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중 셀룰러(2G), 아이엠티이천(3G)으로 지정

☞ 상위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서 정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의무사업자의 지정 및 도매제공의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동 규제에 적용받는 SKT측과 재판매사업자(MVNO)간의 수차례에 걸친 이해 조정을 거쳐 양측이 동의한 합의안이 마련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 의결

○ 공정하고 신속한 협상을 위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도매대가, 창구단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마련하고 공개(신설)

– 도매제공 대상이 되는 설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양한 사업자의 MVNO 진입과 공정한 도매제공을 위한 절차 마련

* 이용약관에 포함될 주요 내용
①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및 도매제공대상 전기통신설비 현황
② 도매제공 이용대가
③ 전기통신망 구성 및 설비접속방식
④ 호 및 신호 흐름
⑤ 유지보수
⑥ 비상대책
⑦ 단일 협상창구 및 연락처(담당자 및 담당부서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

☞ MVNO사업자는 도매제공대상 및 통신설비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1대 다수로 체결하게 되는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면 도매대가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이용약관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타당하므로 원안 의결

○ MVNO 활성화와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가산정시 비다량구매,

계약기간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절감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

* KT, LG U+도 도매대가 산정시 구매용량에 따라 6%를 추가로 할인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계약기간 등에 따라 최대 10%까지 추가 할인하고 있음

☞ 도매대가 산정시 다량구매할인 규정은 추가할인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판매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경쟁촉진 효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및 재판매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다량구매 할인율을 대가산정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로 개선 권고

(12)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선불통화서비스의 건전한 유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시책을 마련하고 방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불통화서비스 발행 총액 및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선불통화사업자의 의무를 규정(신설)

☞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의 원활한 보증보험 운용을 위한 조치로 선불통화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규모파악 등 이용자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한 적정한 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 의결

○ 시행령 개정('10.10.1)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당초 발행총액에 대해 적용하였으나,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신설)

보험가입금 산정조건		당해연도 보험가입금액
전년도 순자산규모	선불통화권발행예정액/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상	10% 미만	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50%이상
	10%~30%	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70%이상
	30% 초과	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100%
30억원 미만	10% 미만	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70%이상
	10%~30%	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80%이상
	30% 초과	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100%

☞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사업자규모, 발행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가입 규모를 고려하여 가입토록 규정, 종전에 선불통화권 발행액의 100%를 가입토록 규제하였으나, 50~100%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 의결

○ 선불통화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업무처리기준 및 이용자 보호 등에 제출 자료, 갱신시 제출 자료 및 가입 면제조건 충족시 증빙자료의 제출기한을 30일까지 제출토록 하는 의무를 규정(신설)

① 선불통화서비스의 요금잔액 확인방법 등 이용방법, 과금단위, 유효기간, 장애 발생시 연락처

② 전년도 대차대조표, 서비스관련 전년 매출액, 해당연도 선불통화발행 총액, 보증보험 증서 사본, ①의 변경사항 관련자료

☞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상위 법령에서 정하여 위임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자가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적정하게 규정하고 추가 제출 자료도 적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 의결

(1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시 · 도지사에 공사업을 등록하고 그 후 매 3년마다 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신설)

– 공사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시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1차 위반시 1개월 영업정지, 2차 위반시 3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시 공사업 등록 취소

☞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영업신고 미이행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고도 이를 조치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규제 장치가 없어 시 · 도의 행정처분 실효성에 미흡한 문제점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정보통신공사업의 변경 · 폐업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150만원 부과,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규정(강화)

– 시 · 도지사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이 건설, 전기 등 타 법령과 유사하게 조정

* 타법 사례 : 건설공사업(150만원), 전기공사업(300만원)

☞ 동 개정안은 거짓 폐업신고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신설과 조사 · 검사 기피, 거부, 거짓 자료 제출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 범위내에 속하고 법률간 형평성 등을 고려시 적정한 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구분하여 원안 의결

(14)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일반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신설)

– 고의 · 중과실 여부에 따라 '일반 위반행위'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우선 구분

위반행위의 구분	판단기준	추가 감경기준
고의 ·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일반 위반행위	해당없음
고의 · 중과실이 있는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감경사유 3개 중 모두 해당없는 경우 그대로 적용
		감경사유 3개 중 1~2개인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
		감경사유 3개 중 모두 해당되면 「일반 위반행위」로 감경

* 고의 · 중과실 여부는 영리 목적의 유무,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된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결과가 다음 3가지 사항중 모두 해당하면 '일반 위반행위'로, 1~2개 해당하면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

① 직접적인 이득을 획득하지 않은 경우

② 피해규모가 보유 중인 전체 개인정보의 1/10 이내인 경우

③ 개인정보가 공중에 누출되지 않은 경우

*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 (시행령 별표 8)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9/1,000
중대한 위반행위	7/1,000
일반 위반행위	5/1,000

☞ 동 규정의 중대성 판단기준은 상위 법령의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경감사유 중 '피해규모가 전체 개인정보의 1/10 이내'인 경우는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고객 이용자의 측면을 고려하여 경감사유를 "피해규모가 전체 개인정보의 5/100 이내"로 할 것을 개선 권고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의 위반기간 및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 · 감경하는 세부기준 규정(신설)

– 위반기간에 따라 단기 · 중기 · 장기로 구분하여 차등 가중

위반기간	1년 이내(단기)	1~2년(중기)	2년 초과(장기)
가중기준	가중 없음	25/100 가산	50/100 가산

– 위반 횟수에 따라 3년간 위반사례가 없는 최초 위반 행위자에 대한 경우에만 50/100 감경

☞ 상위 법령에서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과징금의 가중 · 감경 기준은 상위 시행령의 위임범위내에 해당하므로 비중요규제로 구분하여 원안 의결

제 7 절

노동 · 환경 분야

1. 고용노동부

* 집필자 : 이종성 사무관(Tel. 2100-2320, ljss1@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15개의 법령에 대해 9개 법령은 예비심사, 6개 법령은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신설 23건, 강화 8건 등 총 3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1건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3건은 개선 권고, 2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10.01.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예비심사 (2010.03.12)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23차 행정사회분과 (2010.07.01)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	제426차 행정사회분과 (2009.08.19)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428차 행정사회분과 (2009.09.09)	개선권고 2	신설 2 *중요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13)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0.09.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직업안정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1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1.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	제430차 행정사회분과 (2010.10.14)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30차 행정사회분과 (2010.10.1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중요 1, 비중요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제431차 행정사회분과 (2010.10.28)	원안의결 3 철회권고 1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1.08)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1.03)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기능장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1.08)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계	–	철회권고 1 개선권고 3 원안의결 27	신설 23 강화 8 *중요 7, 비중요 24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교섭창구 단일화(신설)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교섭요구 · 참여방법 등 구체적인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마련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노조를 확정하고, 법에서 정한 교섭대표노조 결정절차(자율적 단일화 → 과반수노조 → 공동교섭대표단)에 세부적인 기간 등을 정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유 추가(강화)

〈현행규제〉
–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고용 제한
–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법 제20조)
– 외국인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법 제20조)
–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법 제20조)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시행령 제25조)

〈강화규제〉
–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외국인 취업교육(입국 직후 20시간 이상)을 이수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 등으로 인하여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추가)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전 내국인 구인 노력 의무(강화)

〈현행규제〉
–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7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고, 신문 및 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 3일로 단축
– 그 외의 경우 1개월 이상 구인노력을 하여야 함

〈강화규제〉
–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14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고, 신문 및 방송 등을 통해 구인 노력을 한 경우 7일로 단축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보수총액 등의 신고(신설)

–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는 월별 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고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보수총액 등 사업주의 신고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휴직 · 전보의 경우 및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 등에 사업주가 신고해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사업주가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부령으로 서식을 마련함
  • 매년 2월말까지 신고사항 :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고용일, 퇴직일, 전보일, 개인별 전년도 보수총액, 기타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영)안 제19조의5 제1항, (규칙)안 제16조의5(별지 제22호의4)]
  • 보험관계 소멸시 신고사항 :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고용일, 퇴직일, 개인별 보수총액[(영)안 제19조의5 제2항, (규칙)안 제16조의5(별지 제22호의4)]
  • 근로자 고용시 신고사항 :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용일, 지급예정 월평균 보수액[(영)안 제19조의5 제4항, (규칙)안 제16조의6(별지 제22호의5)]
  • 근로자 퇴직시 신고사항 :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퇴직일, 보수총액[(영)안 제19조의5제5항, (규칙)안 제16조의6(별지 제22호의6)]
  • 근로자 휴직 · 전보 · 정보변경시 신고사항 :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정지기간, 사유, 전근사업장 및 관리번호, 인적사항 변경 내역[(영)안 제19조의5제7항, (규칙)안 제16조의7(별지 제22호의7~9)]

☞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통합징수를 위해 보험료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일원화의 일환으로써 법률의 위임사항으로 원안 의결

○ 사업주의 신고의무 위반 및 금융기관의 금융정보제공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신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10.1.27)으로 사업주가 보험료의 산정을 위해 필요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같은 법률 개정('09.12.30)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 대통령령으로 사업주의 신고의무 위반내용과 횟수, 금융기관의 정보 제공 거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함(별표2)

*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6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신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 1회 위반(100만원), 2회 위반(200만원), 3회 위반(300만원)

* 법 제16조의10 제3항부터 5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회 위반(근로자 1인당 5만원, 100만원 한도), 2회 위반(근로자 1인당 8만원, 200만원 한도), 3회 위반(근로자 1인당 10만원, 300만원 한도)

* 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금융 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 1회 위반(100만원), 2회 위반(200만원), 3회 위반(300만원)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4)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근로자의 준수사항(신설)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등에서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의무와 석면해체 작업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장소 등 출입금지 장소에서 근로자의 출입금지 준수의무, 흡연 및 음식물 섭취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

– 그 밖에 허가 · 금지대상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분진작업, 밀폐공간 작업, 병원체, 방사선 취급 작업 등에서도 필요한 동일한 의무를 명시

☞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

○ 보건상의 조치(석면함유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 의무)(신설)

– 사업주는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석면분진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제거,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또는 보호막을 씌우는 등의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신설/강화)

– (현행)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과태료 부과 79종 중, 23종은 즉시 부과, 56종은 시정지시(경고) 후 부과

* 감사원 지적(2008. 8)사항
- 법상 위반사항에 대해 시행령(별표13)에 의거 과태료를 즉시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고용노동부 내부 훈령인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법에 미근거한 1차 '시정지시, 경고' 등 후 과태료 부과는 잘못

– (개정) '시정지시, 경고' 없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되, 2년간 위반횟수에 비례한 부과액을 1, 2, 3차로 안분

* 현행, 시행령(별표13)에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 과태료 부과

☞ '개별기준'에 '해당 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차 부과금액을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방"에 필요한 법령상 의무라는 문구로 인해 지나치게 확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동 문구를 '해당 재해 발생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령상 위반에 대해서는 3차 부과금액을 부과한다' 로 개선 권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확인제도 개선(강화)

–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1년)기준
(현행)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률이 업종 평균 이하인 업체
(개정) 직전 연도 산업재해발생률이 낮은 우수업체 중 상위 20%

– 동시 3명이상 사망재해 발생업체는 즉시 제외
1년간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면제, 자체확인

–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행)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
(개정)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

–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공단의 확인 · 승인주기
(현행) 대상별 1회/3개월, 6개월, 1년, 2년 다원화
(개정) 1회/6개월 일원화

–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현행) 자체심사 · 확인 종결
(개정) 자체확인 결과서 작성 및 사업장 비치

☞ 3개월, 6개월, 1년, 2년에 1회를 6개월에 1회로 일원화 하되, 6개월에 1회 이상이 아닌 6개월 이내에 1회로 개선 권고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진폐요양 의료기관 지정기준 강화 및 등급화(신설)

– 시설기준 구체화(치료에 필요한 시설 → 진료실, 방사선촬영실, 임상병리검사실) 및 장비기준 강화(심장제세동기 추가), 심전도기 등 6개 장비도 추가되었으나, 모든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음

– 진폐요양 의료기관 등급화
(현행 : 미구분, 개정안 : 일반의료기관과 전문의료기관으로 구분)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고용보험료 산정시 보수로 보는 금품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신설)

〈현행 시행법〉
-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하여 임금으로 간주

* 제2조(용어정의) 3호(임금)의 단서
노조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중 노조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은 휴업수당,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등) 기간 중 사업주 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 이 경우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되, 사업주가 신고 · 납부하고 근로자는 보험료 해당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

〈'11. 1. 1 시행 예정법〉
- 보수로 간주하는 단서조항 삭제
- 단서 삭제에 따라 노조전임자가 노조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보수에서 제외되었으나 (보험료 미부과 및 보험 미적용), 임금 → 보수로 기준이 바뀜에 따라 휴업수당과 보호휴가 중 지급받은 금품은 보수에 계속 포함됨(사업자와 근로자 각각 보험료 50%씩 분담)

〈개정안〉
- '11. 1. 1 시행 예정법의 관련 내용을 현행 시행법 내용대로 환원
- 노조전임자가 노조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품을 보수로 간주
- 노조전임자가 노조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 휴업수당, 보호휴가 중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해 근로자가 보험료 전액 부담
- 근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며, 근로자는 해당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8) 직업안정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의 허가 규정(신설)

-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파견사업, 지정직업훈련시설운영 중 둘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의 허가요건, 허가기간(3년) 및 결격사유 설정

〈허가기간〉 : 3년, 연장기간 : 3년씩(기존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기간과 동일)

〈허가결격사유〉 : 유료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지정직업훈련시설운영의 공통사항
-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신설)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요금을 받을 수 없으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소개요금(고시-3개월 급여의 최고33%)을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됨

* 직업소개요금(고시)

	〈현행〉	〈개정안〉
• 구인자 :	(3개월 급여의) 20%까지	→ 자 율 화
• 구직자 :	〃 4%까지	→ 징수금지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체불생계비 융자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보완(신설)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대상자 선정시 일정한 소득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함

(현행) 생계비의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개정) 생계비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신청근로자의 소득(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근로자로 함

*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근로자 : 3개월 이상 재직근로자로서 월 평균 급여 179만원 이하인 근로자임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0)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건축물 내부 등에서 화기작업시 안전조치(강화)

– (통풍 등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 등)사업주는 건축물 또는 설비 내부에서 용접 · 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 시 화재예방을 위해 아래사항 준수

1. 작업준비 · 절차 수립
2. 작업장내 위험물의 사용 · 보관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잔류하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 입법의도를 반영하여 규제범위를 한정하는 문구로 수정 고용노동부, 총리실, 법제처 협의 결정(개선 권고)

(1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신설 1)

■ 심사내용

○ 진폐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강화)

– 제1, 제2차로 나누어진 진폐건강진단기관을 통합

– 행정처분의 적용 대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건강진단기관의 인력 · 시설기준을 변경 및 강화

〈현행〉
(인력) 산업의학과 또는 예방 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임상병리사 1명 이상
(시설) 현미경, 항온수조, 심폐기능검사기, 결핵균 검사에 필요한 장비(배양기 포함)

〈개정〉
(인력) 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임상병리사 2명 이상
(시설) 컴퓨터단층촬영기, 폐기능 검사실, 광학현미경, 심폐기능 검사기(폐용적 및 일산화탄소 확산능 검사 가능한 것), 항산균 검사(도말, 배양 및 동정 포함–외부검사 의뢰 가능), 장초음파(심에코) 검사기–외부검사 의뢰 가능)

☞ 진폐의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합리적으로 원안 의결

○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변경 및 취소(신설)

– 신고사항 :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

– 지정취소 : 진폐전문기관이 지정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진폐 관련 연구 실적이 연평균 5건 미만인 경우에는 지정 취소

☞ 원안 의결

(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과징금 부과금액의 합리적 조정(신설)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에 갈음** 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액을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 사업장에서 유자격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 가능

** 업무정지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하지 못하고 유격자를 선임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므로 '06년도에 과징금 제도 도입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선박건조 안전보건보고서 제출 의무(신설)

– 선박 및 보트건조업의 재해예방을 위해 선박 건조시 사전에 안전보건보고서*를 작성,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는 의무를 부여

* 동 제도는 '96년 화학공장에 도입된 제도로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사전에 계획서 형태로 작성, 이행토록 하여 작업별로 수시로 안전보건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이해 관계자의 이견이 많고 효율성에 우려가 있으며, 합리적인 대안이 없어 철회 권고

○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 기구등 및 석면조사결과 기록 · 보존의무(신설)

– 안전인증을 받은 자도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제품명 · 모델 · 제조수량 및 판매

수량 ·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 · 보존(3년)*하도록 의무 부과

* 산재발생 기록,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등은 기 보존의무, 근로자의 안전 ·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 기구 등의 제조 · 수입 ·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음

– 건축물 등 제거 · 해체자 외에 석면조사기관도 석면조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3년간 기록 · 보존 (다만 50㎡ 미만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 해체 또는 제거작업 종료시까지 보존)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과태료 부과 기준(신설)

– 안전인증을 받은 사람은 안전인증 제품의 제품명 · 제조수량 · 판매수량 ·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 · 보존하지 않은 경우와 건축물 등 철거 · 해체자와 석면조사기관이 석면함유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선박건조 안전보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역학조사에 대한 비협조 유형을 거부 · 기피 · 방해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신설 2)

■ 심사내용

○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중 비관련학과 졸업응시자(강화)

– 비관련 학과 대졸 응시자의 응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학력요건에 의한 응시자격상 우대사항을 폐지

* 비관련 학과 대졸 응시자는 순수경력자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외국자격취득자 검정과목 면제에 상호주의 적용(강화)

– (현행) 미국, 일본 자격 취득자에 대해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 (개정)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시험 면제규정 삭제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면제기간 및 민간기능경기대회 인정 유효기간 설정(신설)

– (현행)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시험 면제 유효기간 및 자격시험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기능경기대회' 인정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음(즉 무한기간)

– (개정)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시험 면제 기간은 입상한 날로부터 3년간 면제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의 유효기간을 인정한 날부터 5년으로 규정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조사의 거부, 방해, 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신설)

–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되, 해당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하지 못함

* 불법대여조사의 거부, 방해, 기피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300, 200, 100만원) 부과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4)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신설 1)

■ 심사내용

○ 공인노무사의 휴업신고(강화)

– (현행) 공인노무사는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개정) 공인노무사는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거나 휴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지정교육기관 기준(신설)

–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시설, 인력 및 교육실적기준에 모두 해당하고 사업계획 등이 적합한 단체나 기관 또는 대학을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설 · 인력 · 교육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지정교육기관 사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시설) 50인 이상의 수용 강의실 1개소 이상

– (인력) 3명 이상(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노동문제 관련 학문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 재직한 사람, 판사 · 검사 · 군법무관 ·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노동관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5급 또는 5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노동문제 관련 하여 교육기관에서 강의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 (교육실적) 공인노무사 또는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령에 따른 교육과정을 최근 2년간 실시한 단체나 기관 또는 노동관계 전문교육과정을 최근 2년간 운영한 대학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개업노무사의 책무 및 과태료(강화)

〈 위반행위 〉

(단위 : 만원)

-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100), 2차(150), 3차(200)
- 보증보험 미가입 1차(100), 2차(150), 3차(200)
- 폐업미신고(20) → (20~100)
-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않은 경우 1차(50), 2차(100), 3차(150)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5) 기능장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상금 등의 지급제한 규정(신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 장려금 또는 지원금), 부정한 행위에 의한 기능경기대회 입상 상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자에게 해당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비용을 지원받거나 받으려고 신청한 자에 대해 5년간 지원 제한

–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대한민국명장* 또는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신설)

* 대한민국명장 : 해당 분야 15년 이상 종사하고 최고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며,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서, 숙련기술을 통해 해당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자

– 300만원 :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200만원 : 그 밖의 경우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선수 선발기준 규정(신설)

– (현행) 전국기능경기대회 해당 직종 1위부터 3위까지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 중 (6명-2년)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2년 마다 개최) 대표 선수 1명 선발

– (개정) 전국기능경기대회 해당 직종 1위부터 2위까지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 중 (4명-2년)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표 선수 1명 선발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내 개최시 입장료 징수 규정(신설)

–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국내개최 시 대회장 입장료 징수 및 징수대상의 범위를 한국위원회 회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징수한 입장료는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재원으로 처리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 환경부

* 집필자 : 이종성 사무관(Tel. 2100-2320, ljss1@pmo.go.kr)
최정진 사무관(Tel. 2100-2318, oktto100@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하수도법, 석면안전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 상수도관리규칙 등 36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51건, 강화 48건 등 총 9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9건 중 2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12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8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환경부의 2010년도 총 신설규제는 22건임

[환경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제415차 행정분과위 (2010.03.18)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신설 2 강화 4 *중요 2, 비중요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제417차 행정분과위 (2010.04.15)	개선권고 2	신설 1 강화 1 *중요 2
소음 · 진동규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제417차 행정분과위 (2010.04.15)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신설 1, 강화 2 *중요 2, 비중요 1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0.06.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6.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야생 동 · 식물보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6.27)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석면안전관리법	제237차 본위원회 (2010.07.01)	원안의결 9 철회권고 1	신설 10 *중요 4, 비중요 6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7.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수질 및 수질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7.1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제425차 행정분과위 (2010.07.2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중요 2
하수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8.15)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	제427차 행정분과위 (2010.08.26)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1 *중요 2, 비중요 1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9.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428차 행정분과위 (2010.09.09)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신설 5 *중요 1, 비중요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9.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10.10.07)	원안의결 7	신설 6 강화 1 *비중요 7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431차 행정분과위 (2010.10.2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중요 1, 비중요 1
환경보건법 개정안	제431차 행정분과위 (2010.10.28)	개선권고 2	신설 1 강화 1 *중요 2
숙박시설 입지 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0.11.0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환경분야 시험 · 검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32차 행정분과위 (2010.11.11)	원안의결 3 철회권고 1	신설 2 강화 2 *중요 1, 비중요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32차 행정분과위 (2010.11.11)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32차 행정분과위 (2010.11.11)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신설 3 강화 2 *중요 1, 비중요 4
악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1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11.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0.11.24)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1.24)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34차 행정분과위 (2010.12.09)	원안의결 8 개선권고 1	강화 9 *중요 1, 비중요 8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예비심사 (2010.12.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30)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먹는물 수질수준 및 검사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철회권고 2 개선권고 12 원안의결 85	신설 51 강화 48 *중요 22, 비중요 77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신설 2, 강화 4)

■ 심사내용

○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강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 출연기관 및 SOC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함
(현행) 도로, 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택지개발 조성사업 등 7개 건설공사
(개정)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주차장(부설주차장 제외) 추가
* 사용용도 및 사용량 : 도로보조기층용, 골재소요량의 15% 이상

☞ 자원절약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순환골재 등의 사용 활성화를 공공기관 등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사용 대상 공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
사용률 제고를 위해 품질과 가격, 홍보 등 경쟁력을 높이는 다른 차원의 노력도 병행할 것을 부대권고

○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등(강화)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적정처리 유도와 순환골재 품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추가
(현행)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용역의 위탁거부 금지 등 7가지
(개정) 3가지 추가, 과징금, 과태료 명시
- 상시 허가기준 유지할 것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 금지, 취소된 품질인증 사용금지
-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준수(폐기물관리법에 준하는 준수사항 규정)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강화)

– 시 · 도지사가 붙일 수 있는 허가조건
(현행)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개정) "그밖에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항목 추가

☞ 지역사회 갈등예방을 위해 허가조건 추가가 필요하나,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규제가 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을 개선 권고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인정기준(신설)

– 시행령에 위임된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기준을 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우수재활용(GR) 제조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혼합건설폐기물 배출방법(강화)

(현행) 건설폐기물 발생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 발생되어 분리배출이 곤란한 경우 처리방법별로 혼합량을 고려하지 않고 배출허용
(개정) 처리방법별로 혼합배출 허용비율을 설정

– 불연성(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기타 혼합 허용비율 5%(중량기준) 이하

– 기타(폐보드류, 폐판넬)에 가연성 혼합 허용비율 5%(중량기준) 이하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인력 교육(신설)

– 환경부령에 위임된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세부사항을 규정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3년마다 1일 이내의 교육의무

–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실적 보고의무,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 및 지도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강화)

(현행) 기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고시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사용 제한
(개정)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를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 · 사용전에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받고 이를 해당 건축자재에 표시

* 기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은 현행대로 유지

– 환경부장관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시 보고 · 자료제출 명령, 해당 사업장 등 검사를 할 수 있음

– 표시제도 관련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 모든 제조 · 수입자에게 오염물질 방출량 표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에 한정하여 제한하도록 개선 권고

○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허용기준 등(신설)

– 가구 등에 사용되는 목질판상제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목질판상 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폼알데하이드)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고, 해당 제품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후 제조

– 오염물질 방출시험에 필요한 시설 ·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오염물질 방출시험 기관으로 지정하여 방출시험을 대행할 수 있게 함

– 환경부장관은 목질판상제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시 보고 · 자료 제출명령, 해당 사업장 등 검사를 할 수 있음

– 인증제도 관련 위반자에게 인증취소, 인증신청 제한 및 과태료 부과

☞ 모든 목질판상제품 제조 · 수입자에게 인증 ·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다중이용시설에 한정하여 인증제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준수사항' 위반시 부과되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로 하향토록 개선 권고

(3) 소음 · 진동규제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2)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신설)

– 환경기술인 임명 관련 벌칙조항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되고, 기존의 과태료 한도액이 상향조정(100→200만원)되어 시행령에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조정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공장 소음 · 진동 배출허용기준(강화)

–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8조)

– 〈현행 규제지역〉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개정안(대상추가, 시행령안 제2조)〉 입소규모 100인 이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

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추가된 지역에 대하여는 소음 및 진동 기준 강화(시행규칙안 별표5)

☞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현재 입지제한이 없어, 신규입지에 따른 기존공장과의 분쟁 및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권고

○ 생활소음 · 진동규제기준 준수의무(강화)

– 옥외확성기의 지속시간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콜라텍을 동일건물내 생활소음규제 대상 사업장으로 추가

– 주거개발진흥지역, 입소규모 100인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 보육시설 인근지역의 규제기준 상향조정
* 조치명령을 이행했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 '그 밖의 지역'에 입지한 기존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영유아보육시설이 소음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민원건수: 9건) 보다 신규입지에 따른 기존사업자들과의 분쟁발생 가능성이 더 크므로, 생활소음 · 진동 규제기준에서 100인 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 보육시설은 제외하도록 개선 권고

(4)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 · 출연기관 및 SOC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사용용도 및 사용량을 정함(강화)

〈순환골재〉
– (현행) 도로, 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택지개발 조성사업 등 7개 건설공사의 도로보조기층용,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으로 골재 소요량의 15%이상으로 정함

– (개정)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도로보조기층용), 주차장(표토용 또는 노반용)을 의무사용 대상으로 추가하고 사용량은 골재 소요량의 15% 이상으로 정함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 순환골재 의무사용대상과 동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제품 소요량의 15% 이상으로 정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5)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먹는물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신청(강화)

– (현행) '브롬산염'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기준은 먹는 샘물 및 먹는 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할로아세틱에시드' (0.1mg/L를 넘지 아니할것)는 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와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함

– (개정) 오존으로 살균 · 소독 처리하여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에도 '브롬산염' 기준을 적용, '할로아세틱에시드' 에 '드브로모아세틱에시드' 를 추가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6) 야생 동·식물보호법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서식지외 보전기관 등 지정의 취소(신설)

– 서식지외 보전기관, 야생동물 질병연구 구조 치료기관 및 수렵 강습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에 규정(현행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유해 야생동물 포획 등 허가의 취소(신설)

– 농작물, 분묘 등에 피해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피해가 있는 것처럼 기만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 허가지역 및 수량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등 허가 취소요건 규정

– 학술 연구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의 수입 반입을 허가 받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등 허가 취소요건 규정

– 허가가 취소된 자는 허가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및 권한위탁의 취소(신설)

–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을 거짓으로 반출승인 받거나 승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등 승인 취소요건 규정

– 승인이 취소된 자는 승인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거짓으로 위탁 받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등 권한위탁 취소요건 규정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과태료 부과(신설)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가 축사 주변(100m)에서 총기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비하므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수칙 위반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7)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신설 10)

○ 석면함유 제품의 조사 · 보고(신설)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조 · 수입 · 유통업자로 하여금 해당제품의 석면함유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음(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관리(신설)

– 지정 · 고시된 석면함유 가능물질(천연광물질)을 원석 또는 분말형태로 수입 ·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 조경석, 골재, 파우더 등의 원료물질로 변형 · 제조 · 유통시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시 작업 중지 명령, 회수 또는 유통금지

– 유통자는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개발사업 관리(신설)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방지계획서를 사업 승인권자에게 제출

* 지질작용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석면

** 관리지역은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및 국토부장관 협의를 통해 환경부장관이 지정 · 고시

– 사업승인 후 개발사업자는 비산방지계획서에 따라 비산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미이행시 개선명령, 사업중지, 사용중지 또는 제한명령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건축물 석면조사 및 관리(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결과 기록 · 보존 의무화

– 기준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관계인에게 고지

– 소유자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석면 탈락 등 위해가 우려되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해체 · 제거, 비산방지조치, 사용중지 명령 가능

* 동 법에 의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체 · 제거시 석면조사로 갈음

☞ 중요규제이나 원안 의결

○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신설)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또는 관리자 등 1인 이상을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으로 지정,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신고(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관리교육 이수(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하고 제반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석면관리

☞ 중요규제이나 원안 의결

○ 석면안전건축물 인증갱신 등(신설)

– 신청에 의한 석면안전건축물인증*을 도입하여 3년마다 갱신하게 하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갱신대상에서 제외하며 관련 문서를 비치 · 보존케 함

* 석면안전건축물 인증 :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노출의 우려가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신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석면조사나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등을 면제)

– 석면안전건축물 인증기관이 위법 · 부당행위 시 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하게 함

– 위법 · 부당 행위로 인증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케 함

☞ 인증갱신 제도는 실효성은 크지 않으면서 정부의 관리비용과 민간의 준수비용만 발생시킬 우려가 높으므로 철회 권고

○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신설)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을 철거 · 증축 · 개축 · 대수선하거나 설비를 해체하려는 자는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함

☞ 중요규제이나 원안 의결

○ 석면해체 작업의 중지(신설)

– 해체 작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작업의 중지를 명하도록 하며, 해체 작업자는 배출허용기준 달성을 위한 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 받을 경우 작업 재개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설)

– 석면해체작업 발주자는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

* 감리인의 자격, 기준 등은 국토부장관이 환경부 및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석면 해체작업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신설)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농어촌 지역 슬레이트 등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의 토지 · 건축물 또는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8)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신설 1)

■ 심사내용

○ 과태료 부과(신설)

– 동일명칭 사용자 : (1차) 3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

– 유사명칭 사용자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지정(강화)

– (현행) 구리와 그 화합물 등 24종

– (개정) 아크릴아미드를 추가하여 25종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배출허용기준(강화)

– (현행) 35개 항목 ⇒ (개정) 42개 항목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0)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 신고 등(강화)

–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는 굴뚝에서의 배출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 관리

– (개정) 굴뚝 이외의 공정 · 설비 등에서 비산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위해 시설 관리기준 준수의무 도입

☞ 중요규제이나 원안 의결

○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등(신설)

– (현행)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수도권 대기관리권지역에 보급되는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해서는 '05년부터 함유기준을 설정하여 관리('07, '10년 기준 강화)

– (개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수도권지역에 공급 · 판매되는 환경친화형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 적용기준을 전국으로 확대

☞ 중요규제이나 원안 의결

(11) 하수도법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기술진단대행업 등록(신설)

– 기술진단업무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진단대행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의 결격사유와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명시함

– 직접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대행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과태료 부과(강화)

– 벌금대상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벌금 200만원 이하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 · 관리하지 않고 분뇨를 재활용한 자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사고대비물질 관리(신설)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와 판매하는 자)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환경부령)을 준수토록 함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게 보고 · 검사(연간실적보고 등) 및 서류의 기록 · 보존 의무 부여

☞ 대학연구소 같은 곳에서 소량 사용하는 것이 규제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제대상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소'는 제외하도록 단서조항 추가할 것을 개선 권고

○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자체방제계획 수립(강화)

– (현행) 포름알데하이드 등 56종이 사고대비물질로 지정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자체방제계획 수립 · 제출토록 함

– (개정) 산화질소 등 13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지정하고 자체방제계획 수립의무의 기준이 되는 지정수량 설정

☞ 중요규제나 원안 의결

○ 과태료 부과(신설)

– (현행) 취급제한 · 금지물질 수입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개정) '사업장의 명칭 · 소재지, 대표자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로 완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 법에 규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함(기존에 예규로 운용)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3)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과태료 부과(신설)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측정범위나 측정주기 또는 측정횟수를 위반한 자와 주변지역 영향

조사 방법이나 범위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를 허위로 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5)

■ 심사내용

○ 석면피해구제 특별분담금 부과(신설)

–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특별분담금률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의 상한선을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일반분담금) 산정액의 5.5%로 정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구제급여 수급권의 변동신고(신설)

–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을 명시함

– 구제급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이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구제급여의 일시중지(신설)

– 법 제45조 제1항3호에 의하여 위임된 구제급여 일시중지 대상을 정함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과태료 부과(신설)

– 법 제54조에 규정된 과태료 사항에 대하여 위반회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함

– 석면피해의료수첩 · 석면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1회 250만원, 2회 350만원, 3회 500만원 부과

– 요양기관 등이 미보고, 허위보고 등 경우 : 1회 250만원, 2회 350만원, 3회 500만원 부과

– 수급권 변동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부과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조사연구원 자격(신설)

– 석면질병 판정, 특별유족인정, 산업의학, 영상의학, 석면관리 등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 연구를 위한 조사연구원의 자격을 정함

1. 「약사법」에 따른 약사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의학 · 산업안전 · 산업보건 · 산업위생 · 산업간호 · 보건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분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환경성질환 관리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6호의 '환경성질환 관리 업무'를 '환경성질환 조사·연구·판정 업무'로 변경할 것을 개선 권고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강화)

– (현행) 윤활유 · 부동액 · 브레이크액 플라스틱 용기, 수산물양식용 부자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이나 '08년부터 제품 출고량의 일정비율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발적 협약 실시중(EPR과 동일한 체계로 운영, 협약기간 3년)

– (개정) 윤활유 · 부동액 · 브레이크액 플라스틱 용기, 수산물양식용 부자를 EPR 대상 품목으로 전환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6)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6, 강화 1)

■ 심사내용

○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신설)

– 외국인이 직접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계약 · 위임에 의하여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야생동 · 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접근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국외반출 승인 및 취소(신설)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 승인된 생물

자원을 반환하게 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
2.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외래생물종의 수입 · 반입 승인(신설)

–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종으로써 환경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외래생물종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외래생물종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 심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생태계위해 외래종 관리(강화)

– 학술 연구 등의 목적외에는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종의 수입 · 반입 · 사육 · 방사 · 이식 · 양도 · 양수 또는 유통 금지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보고 및 검사(법률 제30조 / 신설)

– (현행)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에 대한 수입 등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 사무실 출입하여 관련서류 · 시설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음

– (개정) 외래생물종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은 자(추가)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과태료(신설)

– 외국인 등이 생물자원에 접근할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의 출입 · 검사 · 질문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몰수(신설)

– 외래생물종의 수입 · 반입 승인규정(법안 제22조)을 위반하여 수입 · 반입된 외래 생물종 또는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종의 관리규정(법안 제24조)을 위반하여 수입 · 반입 · 사육 · 방사 · 이식 · 양도 · 양수 또는 유통된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종은 몰수 가능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7)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강화)

– 환경부장관 승인대상 추가(397종)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8)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총량초과부과금의 조정신청(신설)

– 총량사업자의 총량초과부과금 조정신청 기한을 '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제한

– 2010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1종사업장(116개소), 2종사업장(209개소)에 총량

관리제 시행

☞ 중요규제이나 원안 의결

○ 특정경유자동차 관리(강화)

– 특정 경유자동차(2.5t 및 7년이상)에 부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의 성능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 · 점검 규정 마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9) 환경보건법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시험 · 검사기관 지정 및 취소 등(신설)

– 시험 · 검사기관에 지정될 수 없는 결격사유 규정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임원 및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나 기관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 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환경부장관의 보고 및 자료 제출명령, 관계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권한 규정

☞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여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적 장치인 '시험 · 검사기관 지정'의 적정한 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되, 결격사유 등의 문구는 법제처와 협의하여 비영리법인 등이 지정대상임을 명확히 할 것을 부대권고

○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강화)

– (현행)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은 환경보건법 시행('09. 3.22) 이후 새로 설치되는 시설에 적용

– (개정) 기존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함
• 규제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보육시설의 보육실,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의 교실

☞ 기존시설에 대하여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년 유예하도록 개선 권고

(20) 숙박시설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고시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평가서류 제출(신설)

– 사업자는 공원계획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원계획변경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해당 공원계획변경권자에게 제출
1. 해안선 · 공원자연보존지구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및 진입도로 노선이 표기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사업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해안선이, 500미터 이내에 공원자연보존지구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와 진입도로 개설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한다)
2. 산림조사서(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기준 및 평가내용(신설)

– 시설규모에 관하여 5개 항목, 입지환경에 관하여 7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규정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1) 환경분야 시험 · 검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2, 강화 2)

■ 심사내용

○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 수입신고 등(강화)

–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측정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10년마다 형식승인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다시 받도록 유효기간 설정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측정대행업 등록 등(강화)

– (현행) 측정대행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정) 측정대행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 · 분석능력의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법상 기술능력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시행령에 자세히 정의키로하고 철회 권고

○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신설)

–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도관리 평가기준에 미달된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그 등록, 지정, 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과태료(신설)

– 예비형식승인 제품의 유통 · 판매시 구매자에게 새로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할 제품임을 알려주어야 하나, 이를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추가(강화)

– (현행)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이행,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비 공사금액에 계상

– (개정)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재활용용도에 맞게 사용하며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방치폐기물의 발생예방조치 등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 갱신(강화)

– (현행) 가입기간 종료일전 30일,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갱신(시행령 제21조)

– (개정) 보험가입이 종료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함
  • 계약갱신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계약갱신명령
  • 계약갱신 명령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허가취소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도입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

○ 배출자 미신고 처벌규정 신설(신설)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3)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강화 2)

■ 심사내용

○ 공장설립제한지역 범위 설정(신설)

– (현행)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이내인 지역
-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인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이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 이내인 지역
-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개정)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부칙 제3조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시설설계용량 1일20만㎥ 이상: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km 이내인 지역
  시설설계용량 1일20만㎥ 미만: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인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 취수지점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인 지역
- 지하수를 상수원수로 취수하는 경우 :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반경 1km 이내인 지역

☞ 취수장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원안에 동의하되, 통합지침 제7조 제1항 8호 규정에 의거하여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산업단지에 대한 예외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다음과

같은 특례 규정을 신설할 것을 개선 권고

*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범위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추진 중인 산업단지의 경우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수도용자재의 위생안전기준 시행규칙 별표4(강화)

– (현행)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 납 : 0.005 mg/L 이하, 비소 : 0.005 mg/L 이하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VOCs"란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1,1,1-트리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피클로로히드린, 아세트산비닐, 스티렌,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을 말한다.

– (개정)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 납 : 0.001 mg/L 이하, 비소 : 0.001 mg/L 이하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 VOCs에 사염화 탄소 추가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강화)

– (현행) 시행령 제30조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7.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 (개정) 시행령 제24조의2
"4.「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을 삭제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과태료 부과(신설)

– (현행) 과태료 부과 ·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차위반 30, 2차위반 50, 3차위반 100만원
• 법에 규정된 과태료 상한선 범위내에서 위반차수 별로 과태료 금액을 정함(19개 항목)

– (개정) 시행령 제69조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 계산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별기준) – 현행 19개 항목외에 법에 추가된 다음 사항 추가
• 법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입지가 허용된 공장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00:700:1000)
•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 수입 · 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200:250:300)
• 법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50:70:100)
• 법 제16조 제3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50:70:100)
• 법 제16조 제4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0:70:100)
• 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 사업자(200:250:300)
•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200:250:300)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개별공장 준수사항(신설)

– 공장설립 제한지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입지를 승인받은 공장의 준수사항을 정함
1.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하수 유출차단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2. 기타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설립 승인시 부여한 조건을 따를 것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4) 악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강화)

– (현행)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시 · 도지사는 일반적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주민생활환경보전이 어려울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가능
• (법률규정) 악취방지법 개정('11.2.5 시행)으로 시 · 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신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을 다음과 같이 지정
•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시설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이후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5)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검사 의무화(강화)

– (현행)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한 경우 설치검사, 운영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 정기검사,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신고

– (개정)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기 전 검사 의무화
⇒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만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 수리
사후관리 중에도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
⇒ 검사후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합 법률 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강화)

– (현행) 제품 · 포장재의 제조업자 등은 재활용의무이행을 위해 다음의 3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직접 재활용,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

– (개정)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 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 ·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재활용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재활용분담금 부과(강화)

– (현행)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개정) 분담금은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과태료의 부과 징수(강화)

– (현행) 재활용 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 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함

– (개정)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환경보전방안 협의 범위 확대(강화)

– (현행) 환경영향평가협의 후 사업규모가 10%이상 증가할 경우,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협의기관(환경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개정) 환경영향평가협의 후 사업규모가 10% 미만 증가하더라도「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기관(환경부)의 의견을 듣도록 함

(다만, 소규모 연접 개발하는 경우와 현장사무실 설치 등은 제외)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공사착공등의 통보(강화)

– (현행)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관리를 위해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 (개정)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통보하도록 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규정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환경영향평가대행자(변경)등록 등(강화)

– 거짓 · 부실 작성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보완함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현지조사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멸종위기 동 · 식물을 누락한 경우, 문헌조사나 탐문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 동 · 식물을 누락시킨 경우, 현존 식생조사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등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8)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 등(강화)

– (현행) 오염물질 kg당 연도별 부과금 단가
• 2010년 : BOD ; 5300원,
• 2011년 이후의 연도별 부과금단가는 전년도 부과금단가에 1.1을 곱한 값(10원 이하 절사)

〈지역별 부과계수〉 – 목표수질지점의 평균수질 / 목표수질

– (개정) 오염물질 kg당 연도별 부과금 단가
• 2011년 : BOD ; 5,800원, T-P ; 25,000원
• 2012년 이후는 2011년도 부과금단가에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를 곱한 값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 다만 최초 적용 년도의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는 1로 함)
〈지역별 부과계수〉
• 목표수질등급 Ia(BOD 1이하, T-P 0.02이하) : 1.6
• 목표수질등급 Ib(BOD 1초과 2이하, T-P 0.02초과 0.04이하) : 1.5
• 목표수질등급 II(BOD 2초과 3이하, T-P 0.04초과 0.1이하) : 1.4
• 목표수질등급 III(BOD 3초과 5이하, T-P 0.1초과 0.2이하) : 1.3
• 목표수질등급 IV(BOD 5초과 8이하, T-P 0.2초과 0.3이하) : 1.2
• 목표수질등급 V(BOD 8초과 10이하, T-P 0.3초과 0.5이하) : 1.1
• 목표수질등급 VI(BOD 10초과, T-P 0.5초과) : 1.0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 등(강화)

– (현행) 오염물질 kg당 연도별 부과금 단가
• 2010년 : BOD ; 5300원,
• 2011년 이후의 연도별 부과금단가는 전년도 부과금단가에 1.1을 곱한 값(10원 이하 절사)
〈지역별 부과계수〉 목표수질지점의 평균수질 / 목표수질

– (개정) 오염물질 kg당 연도별 부과금 단가
• 2011년 : BOD ; 5,800원, T-P ; 25,000원
• 2012년 이후는 2011년도 부과금단가에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를 곱한 값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 다만 최초 적용년도의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는 1로 함)

〈지역별 부과계수〉

- 목표수질등급 Ia(BOD 1이하, T-P 0.02이하) : 1.6
- 목표수질등급 Ib(BOD 1초과 2이하, T-P 0.02초과 0.04이하) : 1.5
- 목표수질등급 Ⅰ(BOD 2초과 3이하, T-P 0.04초과 0.1이하) : 1.4
- 목표수질등급 Ⅲ(BOD 3초과 5이하, T-P 0.1초과 0.2이하) : 1.3
- 목표수질등급 Ⅳ(BOD 5초과 8이하, T-P 0.2초과 0.3이하) : 1.2
- 목표수질등급 Ⅴ(BOD 8초과 10이하, T-P 0.3초과 0.5이하) : 1.1
- 목표수질등급 Ⅵ(BOD 10초과, T-P 0.5초과) : 1.0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3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 등(강화)

– (현행) 오염물질 kg당 연도별 부과금 단가
- 2010년 : BOD ; 5300원,
- 2011년 이후의 연도별 부과금단가는 전년도 부과금단가에 1.1을 곱한 값(10원 이하 절사)

〈지역별 부과계수〉 목표수질지점의 평균수질 / 목표수질

– (개정) 오염물질 kg당 연도별 부과금 단가
- 2011년 : BOD ; 5,800원, T-P ; 25,000원
- 2012년 이후는 2011년도 부과금단가에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를 곱한 값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 다만 최초 적용년도의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는 1로 함)

〈지역별 부과계수〉

- 목표수질등급 Ia(BOD 1이하, T-P 0.02이하) : 1.6

- 목표수질등급 Ib(BOD 1초과 2이하, T-P 0.02초과 0.04이하) : 1.5
- 목표수질등급 Ⅰ(BOD 2초과 3이하, T-P 0.04초과 0.1이하) : 1.4
- 목표수질등급 Ⅲ(BOD 3초과 5이하, T-P 0.1초과 0.2이하) : 1.3
- 목표수질등급 Ⅳ(BOD 5초과 8이하, T-P 0.2초과 0.3이하) : 1.2
- 목표수질등급 Ⅴ(BOD 8초과 10이하, T-P 0.3초과 0.5이하) : 1.1
- 목표수질등급 Ⅵ(BOD 10초과, T-P 0.5초과) : 1.0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3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9)

■ 심사내용

○ 매립시설 토지이용 제한기간 연장(강화)

– (현행) 환경부장관이 토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20년 이내로 함

– (개정) 매립시설의 토지이용제한기간을 30년이내로 변경

☞ 원칙적으로 토이지용제한기간을 30년 이내로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토지사용제한 기간 이내에라도 '사후관리 종료 신청' 이 받아들여 질 경우, 남아있는 토지사용제한기간을 동시에 해제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

○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 항목 조정(강화)

– (현행) 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 ①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 · 관리에 드는 비용, ②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처리에 드는 비용, ③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실 방지에 드는 비용을 제외

– (변경) 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 ②와 ③을 포함매립시설 토지이용 제한기간 연장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대상 폐기물 종류 합리적 조정(강화)

– (현행) 배출자신고 대상 :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중 종류별로 일정량 이상 배출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대상 : 지정폐기물, 공사 또는 작업폐기물 5톤 이상, 오니, 광재,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등

– (개정)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신고 대상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대상을 일치시킴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 처리시설 검사 의무화(시행규칙 제41조 / 강화)

– (현행) 설치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멸균분쇄시설,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개정) 4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폐석면 수집 운반 보관 단계별 포장기준 일원화 (강화)

– (현행) 수집 · 운반의 경우 :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이중 포대에 담아 수집 · 운반

– (개정) 수집 · 운반의 경우 :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이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수집 · 운반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폐석면 매립기준 강화 (강화)

– (현행) 폐석면 비산방지를 위하여 물뿌림 또는 수시복토 실시

– (개정) 폐석면 비산방지를 위한 물뿌림 및 수시복토 실시,
다짐 · 압축 작업은 복토 후에 실시, 다짐 · 압축 과정에서 폐석면의 복토층 표면 노출 금지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재생 연료유 품질기준 강화(강화)

– (현행) 수은 및 그 화합물 : 킬로그램당 1.5밀리그램 이하

– (개정) 수은 및 그 화합물 : 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하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강화(강화)

– (현행)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는 행위 금지 등 6가지(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정) 허가받은 처리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처리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리를 종료하여서는 아니 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폐기물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차등적용(강화)

– (현행) 시설 · 장비 · 기술능력의 전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1차)경고 ⇒ (2차)영업정지 1개월 ⇒ (3차)영업정지 3개월 ⇒ (4차)영업정지 6개월

– (개정)
• 시설 · 장비의 기준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1차)영업정지 6개월 ⇒ (2차) 허가취소

• 시설 · 장비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1차)영업정지 1개월 ⇒ (2차)영업정지 3개월 ⇒ (3차)영업정지 6개월 ⇒ (4차)허가취소
• 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1차)경고 ⇒ (2차)영업정지 1개월 ⇒ (3차)영업정지 3개월 ⇒ (4차)영업정지 6개월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32)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신설)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등과 관련하여 법의 취지에 따라 유권해석으로 운영하던 것을 명확히 규정
• 농가주택의 신축(농지는 동일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함) [유권해석의 명문화]
• 보호구역내 배출시설 → 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배출시설[규제의 명확화]
•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지 →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비된 보호구역의 일정지역[규제의 명확화]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33)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강화)

– (현행) 공공하수처리장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총 질소와 총 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60mg/L이하와 8mg/L이하를 각각 적용

– (개정) 2012.1.1부터 겨울철 총 질소 및 총 인의 방류수 수질기준 삭제, 다만 500㎥/일 미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015.1.1부터 적용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34)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신설 1)

■ 심사내용

○ 농약사용량 조사(신설)

– 골프장의 설치 · 관리자는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의 종류 및 사용량을 "골프장 농약사용대장"에 작성하고 3년간 보관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35)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설치기준(강화)

–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이 생산한 것

– (개정) 삭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품질경영체제인증(ISO 9001인증)"의 경우 제품의 품질기준을 명시하지 않음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36)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샘물 등의 개발 가허가 변경신고 대상(신설)

– (현행) 샘물 등의 개발 가허가를 받은 자가 가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신고

–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규정
1. 법인명 또는 기관명, 2. 대표자, 3. 소재지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먹는샘물 등의 회수, 폐기 처분대상(신설)

– (현행) 법 제47조제4항>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 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련영업자에게 회수 · 폐기 등을 명하여야 함

–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 규정 신설
1. 먹는샘물 등 : 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 중 먹는샘물 등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먹는샘물 등의 용기 :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용기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검사기관의 과징금 산정기준(신설)

– 매출금액 년 100백만원 이하 : 일 90,000원

– 매출금액 년 100백만원초과~120백만원이하 : 일 110,000원

– 매출금액 년 120백만원초과~140백만원이하 : 일 130,000원

– 매출금액 년 5,000백만원초과 : 일 550,000원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과태료 부과기준(신설)

– (현행) 환경부 예규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면서 일부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부과비율 1차 : 1, 2차 : 1.5, 3차 : 2)

– (개정)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샘물등의 개발 가허가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냉온수기 설치금지장소 및 관리방법 위반 :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 1차 80만원, 2차 90만원, 3차 100만원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의 검사 미이수 :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37) 먹는물 수질수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먹는물 수질기준(강화)

– (현행) 먹는물(수돗물, 샘물, 먹는 샘물, 먹는해양 심층수,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기준 설정되어 있음
먹는 해양심층수 수질기준 중 브롬산염 및 스트론튬 항목의 효력기한을 시행일('08.2.4)부터 3년으로 함

– (개정) 염지하수 개발허용 및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신설에 따라 염지하수 48개 항목, 먹는염지하수 54개 항목의 수질기준을 정함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중 브롬산염 및 스트론튬 항목의 존속기한을 폐지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제8절

교육 · 과학 및 문화 분야

1. 교육과학기술부

* 집필자 : 박창석 사무관(Tel. 2100-2321, pc1346@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초 · 중등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국립 초 · 중등학교 회계규칙 등 11개의 법령(신설 18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8건중 3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 2건, 철회 권고 1건, 1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교육과학기술부의 총 규제는 570건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제412회 행정사회분과 (2010.01.28)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2 * 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4.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4.18) 본위원회 (2010.05.06)	원안의결 3 철회권고 1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4.27) 제420회 행정사회분과 (2010.05.20)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 2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2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국립 초 · 중등학교회계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1.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0.11.1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고등교육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06) 제434회 행정사회분과 (2010.12.23) 본위원회 (2011.01.06)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대학설립 · 운영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0.11.29) 제435, 436회 행정사회분과 (2010.12. 9, 12.23)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 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철회권고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5	신설 18 *중요 7, 비중요 11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초 · 중등학교의 정보공시 항목 10개항목 추가(신설)
- 수업공개 계획
- 교과별(학년별) 교육과정운영계획
- 학교계약에 관한 사항
-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 교원의 재직경력 현황
-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에 관한 사항
- 학생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
-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학교 투명성 확보 등 법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학교에서 기 생산하여 보유 · 관리하는 항목들을 선별하였으므로 규제의 정도는 적정하나, 교원의 재직경력 현황,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선 권고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 6개항목 추가(신설)
- 등록금 산정근거
-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 신입생 출신고교의 유형별 현황
- 대입전형료 수입 · 지출 현황
-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 시간강사 강의료

☞ 외부에서 학교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학교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원안 의결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하는 기업과 학교법인이 협약시 협약서 명시

- 자율형 사립고 운영법인에 기업이 출연 ·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사전동의 절차 신설

- 협약서에는 협약기간, 기업 지원금액, 지원시기, 금액의 활용방안, 해당학교 교육과정,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및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을 기재

☞ 교육감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학사운영, 입학전형 등은 시 · 도 교육감의 권한내 사항으로 피규제자의 수도 과다하지 않고, 협약에 필요한 기본사항의 명시로 자율형 사립고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므로 원안 동의

(3)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특성화중학교 지정신청시 신청서 제출(신설)

○ 특수목적 고등학교 지정 신청시 신청서 제출(신설)

○ 자율학교 지정신청시 신청서 제출(신설)

- 특성화중학교(특수목적고,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⑴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⑵교육과정 운영 및 설치학과에 관한 계획, ⑶입학전형에 관한 계획, ⑷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⑸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

☞ 교육감이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신규지정 받으려는 학교와의 사전협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므로 원안 동의

○ 외국어고, 국제고 적정 학급수 및 학생수로 운영(신설)

– 외국어고 · 국제고의 교육내실화를 위해 학급규모 적정화(학년당 학급수 10학급,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조정, 2015. 3. 1까지 단계적으로 실시)

☞ 외국어고 수요공급 불균형 상태에서 외고에 대한 수요관리를 하지 않고 외고의 공급 측면만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외고 학생수 및 학급수 대해 규제를 하더라도 법령에 규정하기보다 시 · 도 교육감에 위임하는 것이 더 타당하므로 철회 권고

(4)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교과용 도서의 합격취소(신설)

– 교과용 도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합격 및 인정 승인이 되거나, 교과용 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등으로 학생 및 교사 등 그 사용자의 학습활동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교과용도서의 검정 합격 및 인정을 취소 또는 1년 범위 안에서 발행정지 처분근거 마련

☞ 교과용 도서 선정과정에서 발행사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발생하는 불법 ·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중요 위반사항에 대한 임의적 취소 · 발행정지를 필요적 처벌조항으로 개선토록 요청한 사례이므로 원안 의결

(5)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평가인정 학습과정과 기관에 대한 관리근거 및 평가인정의 유효기간(신설)

–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내용 변경시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학습과정 폐 · 휴지시 교과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함

–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 학교의 부속시설로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학교가 관리 ·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칙 또는 관련규정 제출

☞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을 위해 평가인정 학습과정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교육내용 변경시 승인의무의 경우 현재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등에 관한 규정(고시)' 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상향입법하였고, 유효기간의 경우,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규제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므로 원안 의결

(6)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학습과정 운영결과보고서 제출(신설)

– 평생교육기관이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운영을 종료한 경우에는 운영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3주 이내에 학습과정 운영결과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을 종료한 후 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평가인정 받은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현행제도하에서도 완료된 학습과정에 대한 학습과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기관에 새로이 부과되는 의무가 없는 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

(7) 국립 초 · 중등학교 회계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학교 청렴계약제 실시(신설)

– 청렴계약 실시 근거 마련

•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정

– 청렴계약 위반시 제재
• 청렴계약 위반시 해당 입찰 · 낙찰 등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 해지 가능

– 청렴계약 위반업자 정보공개

☞ 청렴계약제는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업체가 공무원에게 뇌물 · 향응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를 받겠다"고 규정한 사항으로 청렴계약제 실효성 확보와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09. 12)하여 전부처에서 동일하게 도입중인 제도이므로 원안 의결

(8) 물리적 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고시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물리적 방호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신설)

– 물리적 방호 교육, 교육기관 지정
• 교육대상자 지정(원자력시설 종사자, 방호업무 종사자), 교육명단 제출
• 물리적 방호대상자 교육기관 지정, 교육계획 수립 · 보고(교육일시, 대상, 내용, 교육방법 등)

○ 물리적 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자 훈련(신설)

– 방호종사자 방호훈련 년 1회 실시

– 훈련결과 교과부장관 보고

☞ 현행 원자력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기준이 없어 자체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고, 원자력시설 종사자에 대한 기수행하고 있던 교육훈련을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며, 피규제자에 대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물리적 방호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

(9) 대학설립 · 운영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의과대학 부속병원 시설기준(신설)

– 의과대학 부속병원 시설기준 명문화(별표 2 교사시설의 구분)
• 의학계열 부속병원 : 300병상 이상
• 한의학 계열 : 70병상 이상
• 치의학 계열 : 치과용 진료의자 80대

☞ 의과대학 설립에 따른 부속병원 시설기준은 동 개정안에 병상수를 직접 규정하는 것 보다는 의료법령의 의사 등 수련병원 지정기준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1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선 권고

(10) 고등교육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강사의 임용 최소기간(신설)

–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강사의 최소 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비정규직 교수노조와 각 대학 등 이해관계자간의 다양한 입장을 조정한 결과이며, 사회통합위원회가 사회적 갈등해소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만약 대학에서 불가피하게 1년 미만의 강사채용이 필요할 경우 초빙교원이나 겸임교원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어 대학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원안 의결

* 당초 비정규 교수노조는 계약기간 2년 이상을 요구하였으나, 학사운영의 자율성 침해를 최소화하고 강사의 고용안정성 보호 등을 고려하여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결정

(1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따른 승인신청(신설)(안 제3조 제3항)

–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개교예정일 12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교과부장관은 개교 6개월 전까지 신청자에게 심사결과 통보

☞ 외국교육기관 설립신청 규정 불비사항을 보완하여, 법적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원활한 학생모집을 위해 국내학교 설립기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중인 학교는 7개교이며 이해관계자인 경제자유구역청, 외국교육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므로 원안 의결

2. 문화체육관광부

* 집필자 : 고지숙 사무관(Tel. 2100-2312, jiko12@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국어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10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7건, 강화 5건 등 총 1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2건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2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13차 행정사회분과 (2010.02.18)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33차 본위원회 (2010.05.20)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34차 본위원회 (2010.06.03)	철회 권고 1	강화 1 *중요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6.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0.06.20)	원안의결 4	강화 1, 신설 3 *비중요 4
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10.07.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431차 행정사회분과 (2010. 10.28)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제433차 행정사회분과 (2010.11.25)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계	–	철회권고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9	신설 7 강화 5 *중요 5, 비중요 7

나. 2009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관광종사원의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시험 급수와 관련하여 일본어 시험인 JLPT의 쉬운 난이도로 인한 타 일본어 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등급을 강화(2급 → 1급)하고, 중국어 시험인 HSK가 개편(11단계 → 6단계, 회화시험 추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등급을 조정(관광통역안내사 8급 → 5급, 호텔서비스사 5급 → 4급)(강화)

☞ 관광종사원의 넓은 문호개방을 위해 외국어 시험 종류를 확대 하였는데('09.12.3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확대된 시험중에 일부 외국어 시험 등급에 대한 문제점 보완 및 일부 외국어 시험제도 개편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시험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간행물에 대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규제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도입하여, 「간행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강화)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시행규칙에 규정

– 정가의 10% 범위내 할인 + 판매가의 10%까지 경품제공
  •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정가의 10% 범위내 할인
  • 경품규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판매가의 10%까지 경품제공

☞ 동 규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관련 고시중 '10. 7. 1일부터 폐지되는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규제 내용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규제 근거만 변경될 뿐 현행 도서할인 범위와 동일하여 원안 의결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카지노사업자((주)강원랜드)는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영업장 질서 유지와 고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입장가능 인원을 정하는 등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강화)

☞ 화재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영업자가 비상탈출구, 방화시설 확충 등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영업자의 포괄적 의무사항 신설규제는 철회 권고

(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정액제로 운영하던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의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변경(강화)

☞ 보증보험 금액기준이 현행과 같이 개정된 이후 국외여행객과 여행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실정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매출액이 높은 여행사에 대해 가입금액 등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규제 비용이 685백만원(보험료 인상분)으로서 100억원 미만이라는 점, 피규제자는 8,556여개 여행업체인데, 매출 1억원미만 3,759개 업체(44%) 보증보험료는 인상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5)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강화 1, 신설 3)

■ 심사내용

○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하는 외국 국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 6급에 합격하여야 함(강화)

*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 재외동포가 응시하는 한국어시험

☞ 한국어교원 2급 또는 3급을 취득하려는 외국 국적자에게 학위취득외에 한국어능력을 입증하는 공인성적(한국어능력시험 TOPIK6급)을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한국어교원 자격증은(취업 등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해당교원의 자질을 인증하는 척도에 불과한 점, 피규제자는 한국어교원자격 취득 희망자 중에 외국 국적자 400명 이내로 소수라는 점,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의 요건 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진입제한, 경쟁능력제한 등 관련시장의 경쟁제한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대학, 대학원 등 교육기관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이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 · 공개하고, 요건을 준수토록 지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신설)

* 대학이 고등교육법 등에 의해 설립 · 운영되는 것과 달리 단기양성기관은 개별 법령상의 규정이 없고 설립에 거의 제한이 없어서 난립 또는 부실 운영되는 사례가 많음

☞ 규제 강화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거의 없는 반면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내실화 및 민원 해소 등 편익 효과는 크다는 점, 피규제자는 200여 기관(대학, 단기양성기관)의 학습자로 제한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신설)

☞ 부정행위 예방 및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정행위자를 엄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재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규제 비용이 미미한 점, 피규제자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대상자 3,600여명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과목(시간) 심사기준, 한국어교육 전공 및 학점인정기준 등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기준 및 승급심사 관련 한국어교육 경력기관 인정범위 및 경력산정 기준 마련(신설)

☞ 현행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재량으로 운영

되던 기준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 ·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한 점, 피규제자는 한국어 교원양성 교육기관으로 200여개 기관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6) 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국립미술관이 아닌 자는 국립미술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국립미술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함(신설)

☞ 국립미술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공공예술기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입법 사례(학교교육학술정보원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를 비추어 볼때 규제의 정도가 적정하며, 규제비용은 거의 없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7)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경품게임물 설치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20%를 초과하는 청소년게임장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부칙으로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설정)하는 동 규제를 영구 적용(부칙 존속기한 삭제)(신설)

☞ 현재 청소년게임장의 불법사행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들이 국회 입법과정에 있으므로 관련법이 시행될 때까지 청소년게임장 영업시간 제한의 존속기한을 2년으로 설정할 것을 개선 권고

(8)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지정 취소된 거래사실 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인증서 등을 다른 인증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가입자의 인증서 등을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신설)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이 지정 취소 후 이용자 및 콘텐츠 사업자의 피해예방 및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지정취소된 인증기관에 대해 가입자 인증서 등을 다른 인증기관에 인계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콘텐츠거래사실 인증기관은 (주)한국정보인증 한 개인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

○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품질인증사업 운영(신설)

–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요건*을 갖추고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함

* 관리인력(2인 이상) 및 조직,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품질인증사업 운영과 관련한 내부규정 등

–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은 콘텐츠제공 서비스 기술 · 기반, 고객관리 등을 대상으로 하며,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전년도 평가(인증)실적, 평가수수료 산정, 홍보계획 등을 차년도 말까지 문화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증업무와 관련한 문서를 인증심사 완료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함

☞ 품질인증기관의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품질인증 실적에 한하여 보고하도록 할 것을 개선 권고

3. 문화재청

* 집필자 : 고지숙 사무관(Tel. 2100-2312, jiko12@pmo.go.kr)

가. 2009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6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2건, 강화 1건, 내용심사 10건 등 총 3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3건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5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2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문화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7.11)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비중요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424회 행정사회분과 (2010.07.15)	원안의결 3 철회권고 1	신설 2, 내용심사 2 *중요 1, 비중요 3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0.08.31)	원안의결 7	신설 4, 내용심사 3 *비중요 7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424회 행정사회분과 (2010.09.09)	원안의결 6 개선권고 1	신설 4, 강화 1 내용심사 2 *중요 1, 비중요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434회 행정사회분과 (2010.12.09)	원안의결 8 개선권고 4	신설 12 *중요 6, 비중요 6
계	–	철회권고 1 개선권고 5 원안의결 27	신설 22 강화 1, 내용심사 10 *중요 8, 비중요 25

나. 2009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매년 전수교육 계획서 및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내용심사)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보유단체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전수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 국가는 매월 전승지원금 지급 및 관련 국 · 공유 시설을 무상 제공하고 있으나 보유자 ·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 계획 및 실적에 대해 관련규정 미비 등으로 체계적 관리가 곤란한 실정인 점, 규제비용이 거의 없고 이해관계자 이견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예정일 3개월 전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함(내용심사)

☞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외전시계획, 보험가입 상황, 문화재 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 검토가 필요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2개월마다 개최)를 거쳐야 하는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국외반출허가 처리 기간이 현행규정상 너무 짧아, 반출허가 심사의 부실화 등의 문제가 있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일반동산문화재를 10년 이내 반입하는 조건으로 국외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재반출상태 보고서를 2년마다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내용심사)

☞ 장기간(10년 이내)의 문화재반출 허가기간 동안에는 문화재의 훼손 등 보존상태를 파악할 수 없고, 문화재 불법유출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문화재 반출상태보고서를 2년마다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거의 없고 이해관계자 이견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2,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내용심사)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 ·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다만 보유단체에 보유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유단체 기 · 예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적으로 실현하고 보유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1인 이내에 한하여 인정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내 보유자 인정은 현행 문화재보호법령의 인정기준 및 그 취지에 따라 분리하여 운용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철회 권고

* 이와 관련, 보유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자 중에서 전수교육 조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해제규정을 준용하여 전수교육 조교도 보유자에 준해 해제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전수장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최소 경과규정이 있으나, 무형문화재 보존 · 전승에 중요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수교육 조교 선정과 관련하여 유사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며, 보유자(보유단체)와 전수교육 조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무형문화재 보존 ·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같이 수행하고 있으나, 보유자에 대한 해제조항(법 제31조)만 규정되어 있고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해제조항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에 대한 정기조사를 보유자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보유자 인정심사 및 전수교육 조교 해제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국가지원 등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는 전수교육조교 301명에 불과한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문화재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함(신설)

☞ 해당 규정은 법 제103조에 규정된 최고 금액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부담이나 절차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 점, 동 규정 신설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3)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4, 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수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수리, 설계, 감리),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가 수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정함(내용심사)

–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관련 법규 · 기준 준수, 문화재 훼손 우려시 또는 수리 관련 주요사항 변경시 발주자에게 보고, 안전대책 수립 등

☞ 피규제자가 문화재수리기술자 1,230명, 문화재수리업체 343개(감리업체 6개, 실측설계업체 45개 포함)로 예상된다는 점, 공사관련 법령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유사입법례 등과 비교시 규제수준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문화재수리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 최소한의 등록요건(기술능력, 자본금, 시설)과 필요서류를 갖추어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게 하고, 등록 사항의 중요사항(상호, 대표자 등) 변경시 시 · 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토록 함(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문화재수리업체 343개로 예상된다는 점, 동 사안은 문화재

수리업 등의 등록요건 변경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기본절차를 확인하는 사항인 점,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 이견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문화재수리업 등의 양도 · 합병 · 상속 신고(신설)

–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 양도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도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

– 법인합병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인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병 전 · 후의 각 법인대표자가 공동으로 법인합병신고서 및 필요서류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

–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경우 상속신고서 및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제출

☞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 합병 · 상속에 따른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동 사안은 문화재수리업 등의 양도 · 합병 · 상속신고 따른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는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인 점, 공사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문화재수리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방법 및 지급 절차를 규정함(신설)

–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경우
① 하수급인 → 발주자 : 직접지급 요청
② 발주자 → 수급인 : 하도급대금 지급 권고
③ 수급인이 5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수급인에게는 직접지급 금액을 공제하고 수리대금 지급)

– 수급인의 지급정지 ·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① 발주자 → 하수급인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가능 통보
② 하수급인 → 발주자 : 직접지급 청구
③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

☞ 법률에서 위임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문화재수리업체 343개로 예상되는 점, 공사관련 법령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유사입법례 등과 비교시 규제수준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감리를 하는 경우에 문화재감리원은 분기별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 완료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신설)

* 중간보고서 : 감리일지, 주요공정별 시공현황,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수리공사 설계변경 현황 등을 분기별로 작성 · 제출
** 최종보고서 : 공사추진내용 실적,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안전관리실적 종합 등을 감리 만료일부터 14일 이내 작성 · 제출

☞ 의무감리제를 도입함에 따라 감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감리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문화재감리업체 6개 업체로 한정되는 점, 감리보고서 작성은 공사관련 법령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문화재수리 업무 수행 중 법령 및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내용심사)

☞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문화재수리기술자 1,230명, 문화재수리기능자 5,282명으로 한정된다는 점, 위임범위 내에서 처분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문화재 실측설계업자가 문화재수리업무 수행 중 법령 및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함(내용심사)

☞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재수리업자의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문화재수리업체 343개(감리업체 6개, 실측설계업체 45개 포함)로 예상된다는 점, 위임범위 내에서 처분기준을 구체화하여 유사입법례 비교시 규제수준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4)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신설 4, 강화 1,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건축면적이 661㎡ 이상의 특수구조 문화물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만이 수리 가능하도록 함(신설)

☞ 법률 위임사항으로 종합건설업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 한해 문화재수리가 가능한 시설물의 범위를 설정 하였으며, 피규제자는 종합건설업 등록이 요구되는 문화재수리업체(보수단청업체)로 한정되고, 일반 건설관련 기술이 필요한 특수구조 문화재 수리시 예외적으로 종합건설업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학력 및 경력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을 두었음(강화)

☞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을 학력 및 경력에 따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자로 연간 약 2,000명으로 예상되는 점,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자의 최소한의 응시자격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법 등 타법령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문화재수리업 등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 · 도에

등록 함(내용심사)

☞ 문화재수리업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수리업 등록의 자본금 기준을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경우 법인 2억 이상, 개인 4억 이상, 전문문화재수리업의 경우 법인 · 개인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개선 권고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 및 확인(신설)

–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 승인시 1인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최대 6개의 현장에 배치할 수 있음

– 문화재감리업자는 그에게 소속된 문화재감리원을 배치기준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 승인시 1인의 문화재감리원이 최대 10개 현장을 감리할 수 있음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때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함

☞ 법률 위임사항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의무감리제 도입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업체로 한정된다는 점, 발주자 승인시 중복 배치가 가능한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문화재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따라 10년 이내 범위의 하자담보기간을 정함(내용심사)

☞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재수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기존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비해 일부 완화되었으며, 관계부처 협의 결과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문화재수리업자 · 문화재실측설계업자 ·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최초 업무 수행기간 3년이 되기 전에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고, 이후 5년이 지날 때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함(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보수교육을 받아야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감리원의 범위와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업체(실측설계업체, 감리업체 포함)로 한정된다는 점,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도 적정한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250만원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신설)

☞ 문화재 수리 등에 대한 규제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위임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적절히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12)

■ 심사내용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부터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고, 문화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표조사보고서 공개 가능(신설)

☞ 지표조사 보고서의 포함내용은 현행 규정을 세분화한 것이며,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해 보고서의 일반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

○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사전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지하굴착이 수반되는 사업, 기타 매장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사업 등이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사업지역의 조정 · 변경, 사업계획 또는 방식의 조정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음(신설)

☞ “기타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를 “개발사업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수정·변경할 것을 개선 권고

○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은 원형보존, 이전복원, 건설공사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표본조사, 발굴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신설)

– 문화재 보존조치를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기타 당해 지역의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중한 공사 및 매장문화재 발견시 신고”로 수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것을 개선 권고

○ 사업시행자가 ①허가조건 위반, ②지시사항의 미이행, ③문화재 훼손, ④조사기관·조사원에 대해 회유·협박·폭력 행사를 할 경우 청문을 거쳐 발굴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신설)

– 또한, ①학술적으로 중요한 유구·유물이 출토되어 심층연구가 필요한 경우, ②조사단의 구성인력이 발굴조사 진행 도중 문화재청장의 승인없이 변경·축소되어 발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로 정상적인 발굴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굴을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음

☞ 법률에서 위임한 발굴허가의 취소, 정지 또는 중지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발굴허가 신청서의 제출 및 허가 제한(신설)

– 사업시행자는 발굴허가 신청시 발굴조사 계획서, 건설공사 계획서(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등) 등의 신청서류를 해당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함

– ①발굴조사 계획서상 조사기관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②조사기관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조사단장·책임조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발굴허가 제한 가능

☞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발굴허가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와 발굴허가 제한이 가능한 사유와 그에 따른 허가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발굴허가 제한사유가 된 문화재 조사기관을 교체할 경우 발굴허가 재신청이 가능한 점, 동 사안은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 및 제출절차를 확인하는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인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현장발굴이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발굴완료 신고서를 약식 보고서, 출토유물현황 등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단행본 및 전자적 파일로 제출해야 함(신설)

☞ 발굴이 완료 후 유물·유구의 출토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진행여부 등의 판단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발굴완료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발굴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매장문화재 발굴완료 신고서의 첨부서류 및 발굴조사 보고서 포함내용·제출형태를 확인하는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인 점, 외국사례 비교시 발굴조사 보고서의 세부항목별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고 유구의 원형이 잘 남아있어 활용 가치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사업시행자)에게 원형보존, 이전복원을 지시할 수 있음(신설)

– 보존조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보존조치를 완료한 경우 해당지역 관할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함

☞ 보존조치 이행에 드는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 문구를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문화재에 대하여 국가귀속 신고를 하며, 보관 · 관리청(국립중앙박물관)은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국가 귀속 문화재를 인수해야 하고, 유물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관 · 관리청에서 부담함(신설)

– 조사기관이 지표조사 보고서, 발굴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할 때 조사결과 보고서에 수록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귀속 문화재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해당지역의 지자체장에게 제출함

☞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귀속 문화재의 귀속절차, 보관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국가귀속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를 간소화한 점,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

○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 · 관리청, 위탁기관, 조사기관은 유물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보관 · 관리청, 위탁기관, 조사기관에 대하여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 ·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보관 · 관리 · 활용 실태의 시정 및 국가귀속 문화재의 위탁 · 대여를 지시할 수 있음(신설)

☞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 · 관리와 관련하여 출토유물의 임시보관기관인 조사기관과 유물의 독점적 관리청인 국립박물관에 대해 유물관리규정을 마련하게 하고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한 것으로, 피규제자는 문화재조사기관으로 한정되는 점, 일본 · 프랑스 등 표준화된 유물관리규정을 마련 · 운영하고 있는 외국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조사기관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기간과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신설)

☞ 법률에서 조사기관의 업무정지 사유를 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과 등록취소된 조사기관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적발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및 재등록 제한 기간을 달리하고 있는 등 규제의 수준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건설공사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를 명할 때 관련 전문가 자격*을 정하고, 건설공사시 관련 전문가 입회조사 및 표본조사를 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조사기관은 조사가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함(신설)

* 고고학 등 매장문화재 조사 · 연구에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조사기관의 조사원 이상, 대학에서의 전임강사 이상, 국공립기관의 학예연구사 3년 이상 경력자 등

☞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가 출토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입회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회조사 전문가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입회조사 및 표본조사 결과 보고의무를 정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입회조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충분한 전문가 풀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입법기간 중 이해관계자 이견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문화재 조사기관을 지표(육상, 수중)조사기관, 발굴(육상, 수중)조사기관으로 구분하고, 인력 · 시설 ·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점검함(신설)

☞ 조사기관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조사인력의 자격기준에 대해 효력상실형 일몰(3년)을 설정, 조사인력의 전문성 검증을 위한 별도의 대책(자격시험제도 등)을 마련할 것을 개선 권고

제9절

보건복지 · 여성 분야

1. 보건복지부

* 집필자 : 원영호 사무관(Tel. 2100-2317,key71315@pmo.go.kr)
박권종 사무관(Tel. 2100-2303,kjpark@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관한 개정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48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50건, 강화 52건, 내용심사 16건 등 총 11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9건 중 12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19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8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보건복지부의 2010년도 총 신설규제는 50건임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0.01.06)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1.06)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12.09) 제22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0.01.14)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 1 * 중요1, 비중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관한 개정안	예비심사 (2009.12.09) 제22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0.01.14)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 3 * 중요2, 비중요 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12.30) 제411차 행정사회분과위 (2010.01.14)	부대권고 1	강화 1 * 중요 1
의료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12.30) 제411차 행정사회분과위 (2010.01.14)	철회권고 1 원안의결 7 개선권고 2	신설 4, 강화 6 * 중요7, 비중요 3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01.13) 제22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0.01.14)	철회권고 1 원안의결 2 개선권고 3	내용심사 2, 강화 4 * 중요5, 비중요 1
화장품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12.30) 제411차 행정사회분과위 (2010.01.28)	부대권고 1	신설 1 * 중요 1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10.01.27) 제413차 행정사회분과위 (2010.02.18)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 2 * 중요1, 비중요 1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0.02.29)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 비중요 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10.02.2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 비중요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11.25) 제227차 규제개혁위원회 (2010.02.25)	철회권고 2 원안의결 1	내용심사 3 * 중요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2.17) 제227차 규제개혁위원회 (2010.02.25)	부대권고 1	강화 1 * 중요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3.30)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 1
노인복지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2.19) 제230차 규제개혁위원회 (2010.04.08)	철회권고 3 원안의결 1	신설 3, 강화 1 * 중요3, 비중요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4.07) 제230차 규제개혁위원회 (2010.04.08)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신설 1, 내용심사 1 강화 2 * 중요2, 비중요2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3.31) 제413차 행정사회분과위 (2010.04.22)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중요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5.04)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 1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0.05.04)	원안의결 3	신설 3 * 비중요 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0.04.07) 제419차 행정사회분과위 (2010.05.06)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2 * 중요1, 비중요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0.05.11) 제420차 행정사회분과위 (2010.05.20)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0.05.11) 제230차 규제개혁위원회 (2010.06.03)	철회권고 2 원안의결 2	신설 2, 강화 2 * 중요3, 비중요 1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6.27)	원안의결 1	신설 1 * 비중요 1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6.09) 제420차 행정사회분과위 (2010.07.01)	철회권고 1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강화 7 * 중요4, 비중요 3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 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7.04)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 1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예비심사 (2010.07.18)	원안의결 1	신설 1 * 비중요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0.08.08)	원안의결 4	신설 4 * 비중요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0.08.08)	원안의결 7	신설 6, 강화 1 * 비중요 7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0.08.16) 제427차 행정사회분과위 (2010.08.26)	부대권고 1 원안의결 3	신설 4 * 중요3, 비중요 1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0.09.19)	원안의결 1	신설 1 * 비중요1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9.23)	원안의결 3	신설 1, 내용심사 1, 강화 1 * 비중요3
검역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9.23)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9.30)	원안의결 1	신설 1 * 비중요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07)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1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 비중요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10.10.12) 제430차 행정사회분과위 (2010.10.14)	개선권고 1 원안의결 8	신설 9 * 중요2, 비중요 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14) 제430차 행정사회분과위 (2010.10.28)	개선권고 1	강화 1 * 중요1
국민연금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29) 제430차 행정사회분과위 (2010.11.1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2 * 중요1, 비중요 1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0.11.09) 제246차 규제개혁위원회 (2010.11.11)	개선권고 1	신설 1 * 중요1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0.11.22)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1.12) 제247차 규제개혁위원회 (2010.11.25)	개선권고 1	신설 1 * 중요1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1.12) 제247차 규제개혁위원회 (2010.11.25)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강화 1 * 중요1, 비중요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1.12) 제247차 규제개혁위원회 (2010.11.25)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1, 강화 1 * 중요1, 비중요 1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02)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 비중요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0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 비중요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08)	원안의결 1	신설 1 *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10.12.07) 제430차 행정사회분과위 (2010.12.09)	원안의결 2	신설 2 * 중요1, 비중요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예비심사 (2010.11.23) 제435차 행정사회분과위 (2010.12.23)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 중요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27)	원안의결 2	강화 2 * 비중요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27)	원안의결 1	신설 1 * 비중요 1
계	-	철회권고 12 개선권고 19 원안의결 88 부대권고 4	신설 50 강화 52 내용심사 16 * 중요 50, 비중요 69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같은 월에 2개 이상의 제품이 등재 신청된 경우 등재 신청 제품이 각각 월을 달리하여 신청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일괄 적용하되,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의 80%수준을 보장함(강화)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프로그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방송시간 제한을 확대하고자 함(강화)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3)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재가(在家)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 인력기준 강화(강화)

☞ 방문요양제공시설의 경우, 신규로 설치되는 기관에 한해 적용하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20→15명, 상근비율 30→20%로 완화(재검토형 일몰제 2년 적용)
관리직 신설 및 시설기준 강화는 기관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갖추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유지(철회 권고)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 노인여가복지 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 소재지 · 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강화)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관한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등(강화)

☞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신규로 설치되는 기관에 한해 적용하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20→15명, 상근비율 30→20%로 완화(재검토형 일몰제 2년 적용)
관리직신설 및 시설기준 강화는 기관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갖추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유지(철회 권고)

○ 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대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가능(강화)

– 요양기관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 경고 없이 지정취소, 시설폐쇄 조치를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원리에 맞지 않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어 경고조치를 선행하도록 함(개선 권고)
• 장기요양기관 : (1차)경고→(2차) 지정취소
• 재가장기요양기관 : (1차)경고→(2차)폐쇄명령

○ 단기보호 급여기간 월 15일 이내로 설정,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 연간 2회 연장 가능(강화)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5)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해당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 마련(강화)

☞ 영상의학과, 진단검사학과의 경우 한방병원내 단독개설을 제한하고 다른 양방진료과목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만 허용 단,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련 연구용역 계획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1년후 재심사 받도록 함(부대권고)

(6) 의료법 개정안(신설 4, 강화 6)

■ 심사내용

○ 등록취소 요건에 사업실적을 보고한 결과 3년간 실적이 없거나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추가(신설)

–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2호(‘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외의 자를 유치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 2년간 재등록 금지 의무 부과

☞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 등록취소 요건(개선 권고)
- 최근 3년간 실적 : 철회권고
- “중대한 시장교란행위” : 원안 의결
- 2년간 재등록 금지규정 : 원안 의결

○ 원격의료가 가능한 환자에 대한 기준설정, 원격의료를 행하려는 원격지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고의무 부과, 원격의료 관련 개인정보를 탐지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의 금지의무 부과, 원격의료 대상자 외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행한자, 장비를 갖추지 않은 자, 신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신설)

☞ 원격의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격의료서비스 접근성의 한계를 인정해 대상환자를 법령에 예시한 범위에서 한정할 필요를 인정,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개인정보 보호의무, 과태료 부과는 적정 제재수단을 인정 원안 의결

○ 임직원 · 종업원 · 가족 등 법률에서 정한 부속의료기관 이용자 외의 환자에 대한 진료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강화)

☞ 법률 위임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기존 규제 이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관련 과태료 부과 확대(안전관리 책임자 선 · 해임 신고 및 교육, 방사선 관계종사자 건강진단 · 안전교육 및 변동사항 신고)(강화)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시 준수사항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특수의료장비 기준에 준하여 원안 의결
- 종사자의 안전교육의무 부과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이미 기술이 되어 있고, 교육의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아 철회 권고

○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 운영(감염관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범위)(강화)

–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 · 운영토록 함

☞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 운영
- 설치 대상을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해 시행규칙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감염예방관리 차원에서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

○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신고(의료법인 부대사업 운영시 준수사항 등)(강화)

–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 이상을 재투자토록 하며, 미이행시 시 · 도지사의 시정 명령

– 부대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당해 법인의 의료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지사가 부대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신고(철회 권고)
-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 이상을 재투자, 미이행시 시정명령은 각 부대사업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하고있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며, 자본이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영리법인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재투자 비율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철회 권고
- 부대사업이 법인의 의료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정지명령하는 것은 막연한 위험을 근거로 한 사전적 규제로 철회 권고

○ 의료법인의 합병 허가 등(신설)

– 의료법인간 합병시 이사 정수의 2/3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관할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의료법인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토록 함

– 합병에 대한 이의제기, 합병으로 인한 채무인수 승인 등 그 밖의 합병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의료기관 회계기준(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등)(강화)

–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토록 함

– 회계 결산서 제출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 확대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하는것은 의료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의결
(다만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행규칙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요)
- 회계결산서 제출시 감사인의 회계감사 의무화는 원안 의결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행정처분 강화 등)(강화)

– 한방의료기관의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사항을 법률에 명시

–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현행 의료기관 개설자 · 관리자의 준수사항 위반 보다 강화된 처벌 ·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

– 특수의료장비를 미등록 하거나 품질관리 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원안 의결)

– 한방의료기관의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화 및 위반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보호 및 한약시장질서 개선 차원에서 원안 의결

– 특수의료장비 미등록 및 검사미실시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규정에 준하여 원안 의결

○ 수수료(신설)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등록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는 수수료를 내도록 함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7)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2, 강화 4)

■ 심사내용

○ 진료기록 열람 등의 요건(내용심사)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 외의 자에게 진료기록 열람시 요건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강화)

– 약사법 시행규칙 · 제62조 제13호에 따라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 · 고시된 한약 조제시 조제량 · 양수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 2년간 보존토록 함

–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못함

☞ 처방기록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시, 불필요한 이중규제에 해당하여 철회 권고

○ 의료인 등의 정원(강화)

– 불명확한 현행 약사 정원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병원 내 약무업무량 증가 등을 감안, 약사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 병원내 약사 인력 기준을 아래와 같이 조정
- 상급종합병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30명으로 나눈 수) +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

• 종합병원

① 500병상 이상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50명으로 나눈 수) +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

②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80명으로 나눈 수) +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

③ 300병상 미만 : 1명 이상의 약사

• 병원 : 1명 이상의 약사(단, 100병상 이하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의 약사)

• 한방병원 : 1명 이상의 한약사(단, 100병상 이하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의 한약사)

• 치과병원(30병상 이상인 경우에 한함) : 1명 이상의 약사(단, 100병상 이하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의 약사)

• 요양병원 : 1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단, 200병상 이하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강화)

☞ 요양병원의 경우, 인력기준은 원안대로 하되, 시설기준규격은 규제를 강화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병원 자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행유지(철회 권고)
병원장례식장의 경우, 면적기준과 면적비율을 함께 규정하는 것은 중복소지가 있으므로, 면적기준은 삭제, 새로 설치되는 장례식장과의 형평성을 감안, 기 설치된 장례식장에도 개정기준을 적용하되, 일정 유예기간 부여(적정 유예기간은 법제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의료기관 명칭 · 진료과목 · 전문과목 표시 제한(강화)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내용심사)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및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토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 ·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접수창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토록 함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내 비치 · 게시하는 방법 이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함

☞ 비급여진료비용 고지시 매체를 책자로 한정하지 말고 리플렛, 모니터 등으로 다양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게시의 경우 반드시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개선 권고)

(8) 화장품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표시 · 광고 내용의 실증(신설)

– 과장 광고 및 허위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에게 표시 · 광고의 사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표시 · 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과의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

* 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 규제 관련 식약청 · 공정위간 MOU 체결 또는 화장품법에 중복자료 제출 방지 규정 추가

(9)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강화)

– 국내생산량이 많고 품질이 우수한 14개 한약재를 수급조절 한약재로 지정하여 수입량 조절
* 수급조절대상한약재(14종) : 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생 · 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구성 중 유통 · 소비자측 5개 단체를 제외하고, 한약재 수급 관련 전문가 2인을 추가하여 총 14인으로 구성

☞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구성위원 중 "한의약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한약재 수급 관련 전문가 2인"으로 변경토록 개선 권고

○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강화)

– 수입 한약재 중 제조업소 제조품목수를 현행 365품목에서 88품목을 추가하여 453품목으로 확대 지정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10)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기준(내용심사)

– 건강보험 등재 치료재료에 대해 주기적으로 품목 재분류 및 상한금액 적정성 평가 등 실시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기 등재품목 상한금액 조정(내용심사)

– 새로운 제품이 최고가로 결정된 경우 기등재된 품목 중 등재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된 최고가 제품은 청구실적, 가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고가의 10% 이내에서 감산하여 조정 가능
* 재평가 완료(12.12.31)까지 필요한 한시적 조항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재평가 품목군에 속하는 신청제품 상한금액 조정(내용심사)

– 신청제품이 기 등재된 품목에 비하여 비용 효과 또는 기능 등이 저하되는 경우 기준금액의 10%를 감산하여 산정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11)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강화 1, 신설 1)

■ 심사내용

○ 간호조무사 자격인정(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강화)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기준에 응시원서에 이수시간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를 추가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학원등 운영자의 준수사항(신설)

–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학원 운영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 · 설비 · 교구를 명확히 정함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1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교육이수 (내용심사)

– 등록, 변경 및 부적합판정 후 3월 이내 전문기관 교육이수

☞ 교육신설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다른 대체수단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철회 권고

○ 공동활용병상 미인정 의료기관 특수의료장비 설치 제한 (내용심사)

–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은 자체병상을 확보하여도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없음

☞ 공동병상활용미인정 의료기관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설치 제한은 종래에도 유권해석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원안 의결

*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추후 복지부에서 개선방안 마련시 재검토

○ 품질관리검사업무 위탁기준 강화 (내용심사)

– 품질관리검사의 각 항목을 시행할 수 있는 분야별 20인 이상의 상근 또는 비상근 전문검사위원을 둘 것

– 영상의학과 전문의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로서 소정의 품질관리 검사 시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검사인력기준 신설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고,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전환한 후에 검토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철회 권고

(1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 심사내용

○ 요양급여대상여부 직권결정 및 조정(직권조정 근거사유 변경)(강화)

–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약제와 동일성분 · 제형의 약제가 제10조의 2에 따라 결정신청 된 경우 최초 등재제품의 상한금액을 80%로 직권조정

☞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이 성분, 형태만 같으면 함량이 달라도 효능에 큰 차이가 없어 원안 동의 하되, 함량에 따라 효능(적응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성분, 형태, 함량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해 약가를 조정토록 부대권고

(14)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강화)

■ 심사내용

○ 국민건강증진기금 부과(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금 부과)(강화)

–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니코틴 용액 1ml 당 221원의 부담금 부과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15) 노인복지법 개정안(강화 1, 신설 3)

■ 심사내용

○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강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 업무, 고용 등으로 사실상 노인 등을 보호, 감독하는 자

☞ 불법 부당한 보호시설 이용의 근절방안으로 선량한 의료인 등 일반인에게 까지 의무부과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함(철회 권고)

○ 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신설)

–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노인의 신상정보를 실종노인 찾기를 위한 목적 외 이용 금지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기준 등(신설)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운영할 이행기준 설정 및 교육기관 평가, 공표

☞ 부처 자진철회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신설)

– 요양보호사에게 정기적인 보수교육 실시

☞ 부처 자진철회

(1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신설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요양보호사 응시자격 (강화)

– 총 교육시간 현행유지, 교과목 및 내용(커리큘럼) 일부 보완 · 강화, 자격취득절차 변경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자격시험 과목, 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내용심사)

– 요양보호사 시험과목, 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규정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및 자격증 반납(신설)

– 자격신청 구비서류 추가 : 의사진단서
• (용도)정신질환자,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 자격증 반납사유 규정
•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분실한 자격증 찾은 경우

☞ 요양보호사 자격신청시 의사진단서 제출의무 신설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강화)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 도입에 따른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마련

☞ (시설기준) : 시설면적 하한(80㎡) 설정(원안 의결), * 사무실 규정은 삭제
(인력기준) : 교육기관의 장은 두되, 자격기준 폐지(개선 권고)
교육기관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강화(원안 의결)

(17)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시정명령 등의 위반시 과태료부과(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내용심사)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타고 있지 않은 차를 주차한 자' 에게도 적용할 과태료 부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추가 규정(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여 주차한 위반행위자"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원안 의결)

(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피부양자인정기준(강화)

–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친생부모"에게 동거하고 있는 결혼한 딸이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 불인정

–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직장가입자의 조부모 이상"에게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직계비속에게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며느리 등 여자이더라도 그 며느리 등에게 직계비속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불인정

– 현행 부양요건 외에 다음의 "부양요건 추가"

• 직장가입자와 동거 또는 비동거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형제 · 자매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 건축물 및 주택의 지방세법 제187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합이 3억원을 넘는 경우 그 형제 · 자매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불인정(단, 형제 · 자매로서 20세 미만, 대학원 이하 재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19)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장애인연금의 신청(신설)

–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급신청서에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장애진단서 등 장애상태에 관한 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수급권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부동산등기부등본를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

– 대리인 신청시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고, 관계 공무원에 의한 직권신청시에는 지급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의제공동의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장애진단서 등 장애상태에 관한 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장애인연금의 대리 수령 신청(신설)

– 수급자가 한정치산, 금치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본인이 아닌 타인의 금융회사 계좌 명의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 신청서, 신분증, 대리수령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미지급연금의 지급청구 절차 및 순위(신설)

– 사망한 수급자에 대해 미지급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청구서에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족의 지급순위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청구자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2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우수동물실험시설 관련 허위 표시, 홍보 금지(신설)

– 우수동물실험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우수동물실험시설 표시 및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실험동물 시설 또는 공급자 지정 등의 취소(동물실험시설 등 지정 취소사유 추가)(강화)

– 실험동물공급자가 실험동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위반시 공급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동물실험시설 등록 등의 위반시 과태료(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추가)(강화)

– 동물실험시설에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또는 그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내용 추가

– 동물실험시설등록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정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대하여 3년형 재검토 일몰 설정

☞ 무분별한 동물사용 억제 및 과학적 동물실험 관리 · 감독을 위한 실험동물운영위 미설치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 필요성은 인정하나, 부과 적정수준은 유사입법례에 준하여 동등한 수준인 50만원 이하가 적정(개선 권고)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장애인보장구 업소 및 품목의 등록기준(내용심사)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 급여대상으로 함

– (신설) 업소 · 품목이 거짓 등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보험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업소 · 품목의 등록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등록 및 등록취소 사유 또한 업소 편의 및 제재 적정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수준에 해당됨(원안 의결)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2, 강화 2)

■ 심사내용

○ 사망정보의 연계체계 등 장사업무의 전자적 처리(신설)

–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포함)를 발급하거나 장사시설에서 장례의식이나 매장, 화장 등을 행할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 의료인과 장사시설 운영자 등에게 입력의무를 지우는 것은 중복규제로 판단되므로 철회 권고

○ 장례식장의 영업(강화)

– 장례식장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장례식장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신고사항 변경하는 경우 포함)

– 장례식장영업자는 보건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시체의 안치, 염습을 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장례식장 설치신고 등 위반시 행정처분 등

☞ 신고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적고, 자유업에 대해서도 행정명령 등의 제재가 가능하기에 철회 권고

○ 장례식장에 화장로 설치 허가 등(신설)

–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 장례식장에 화장로 설치허가 위반시 행정처분 등

☞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에 대해서는 원안적으로 동의하므로 원안 의결

○ 무연고 시체의 처리 및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등(강화)

–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개장할 경우 그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추가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23)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 공표(신설)

–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24)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7)

■ 심사내용

○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임상시험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에 위반되는 경우와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 회수 ·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강화)

– 회수계획서 제출기한 : 5일이내(등급 무관)

– 회수종료기한 : 15일이내

– 회수율평가제 도입

☞ 추가로 기한을 단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미약한 바, 회수계획서 제출기한은 등급과 무관하게 5일 이내로 하고, 회수 종료기한은 1등급의 경우 15일 이내로 하되, 2 · 3등급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30일로 함(개선 권고)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 · 식물의 국제교역 등(강화)

– 고가 위 · 변조 우려 CITES 품목에 대하여 판매 시마다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에 대한 인증증지(이하 "멸종위기종 인증증지"라 한다)"를 발급받아 부착하고, 제조(수입) 판매내역을 분기마다 보고하여야 함

– "멸종위기종 인증증지"가 부착되지 않은 고가 위 · 변조 우려 CITES 품목의 판매 및 판매 목적의 저장 · 진열 금지

☞ 규제법정주의에 적합하도록 추후 법령 입안후 상정(철회 권고)

○ 의약품등 유통체계 판매질서 준수(한약재 유통 관리)(강화)

– 부당한 의약품 공급 등 유통질서 위반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하고, 약국개설자 · 의약품 제조업자 · 수입자 및 의약품판매업자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기록보존의무는 내부 처방기록과 연계가 가능한 점, 여타 한약관리기관과의 형평성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임(개선 권고)

○ 안전용기 · 포장 등(강화)

– 안전용기 · 포장 대상에 개별포장당 66밀리그램을 초과한 디펜히드라민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추가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의약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강화)

–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평가 및 결과 보관 포함)을 실시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 및 반입 · 반출에 관한 기록을 작성 · 보관하고, 자연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조 및 품질관리 의무를 신설함

☞ LMO법률 시행 이후 후속 조치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및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 심사규정',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지침' 등의 개정 작업 후, 합리적인 위해성 평가를 위해 LMO법과 약사법 시행규칙 간 중복내용에 대해 정리를 하며, 약사법 시행규칙에 LMO에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내의 규제로 판단됨(원안 의결)

○ 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행정처분 기준 강화)(강화)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매 관련 금품 등 수수로 행정처분 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신약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뿐 아니라 자료를 허위로 보고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 생산 · 수입실적 미보고시 뿐 아니라 자료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25)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 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의약품 작업소(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시설기준(강화)

– 작업소 분리 대상에 미량으로 과민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세팔로스포린제제의 작업소 및 세포독성항암제제 작업소를 추가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26)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기관 지정 취소(신설)

– 2년간 연속하여 수련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 수련기관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지도나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수련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 그 밖에 수련기관으로서의 요건을 미비하여 수련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2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의무(신설)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시 지역 주민의 참여,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 운영 및 회계 공개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의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위해 예방과 감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공공보건의료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 보고(신설)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공공보건의료 사업 위탁 수행기관은 공공보건의료 사업 추진 시 계획(시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지정취소(신설)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공공보건의료 사업 위탁 수행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함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조사 또는 검사 거부 ·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 · 감독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관한 조사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 ·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함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2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1, 신설 6)

■ 심사내용

○ 배아연구기관 · 유전자은행 등에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강화)

– 기관위원회의 기능에 연구 진행과정에 대한 조사 · 감독, 연구자 교육 등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제반활동 추가

– 설치한 기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장관에 등록 의무화

– 기관장의 기관위원회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및 교육기회 제공의 의무화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및 피험자 보호(신설)

– 인간대상 연구계획서의 기관위원회 사전심의 의무화

– 인간 피험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에 의한 동의 및 동의면제 · 유보 사유 규정

– 불완전 동의능력자 및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피험자 안전에 대한 연구자의 의무와 정보 누설금지, 기록유지의 의무화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인체유래물 연구의 심의 및 동의(신설)

– 인체유래물 연구계획서의 기관위원회 사전심의 의무화

– 인체유래물 등을 인체유래물 은행 및 타 연구자 제공시 기관위원회 심의 의무화

– 인체유래물 처리이관 규정, 인체유래물 제공 동의 규정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인간복제의 금지와 일정요건 하의 단성생식배아 연구 허용(신설)

– 단성생식배아의 착상, 착상 유지 또는 출산 금지

– 희귀 ·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에 한하여 단성생식 행위 허용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신설)

– 배아생성에 있어 배아 뿐만 아니라 배아생성에 사용되는 난자, 잔여난자 등에 관한 사항도 서면동의 의무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의 변경 · 폐업 신고(신설)

–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 연구기관의 변경 및 휴 · 폐업 신고 의무화

– 휴 · 폐업시 배아의 이관 등의 절차 및 방법 규정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보고와 조사 위반 피감독기관 또는 그 종사자에 대한 과태료(신설)

– 보고와 조사 위반 피감독 기관 또는 그 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29)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영양사 보수교육 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신설)

–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6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수정 제정안으로 제시한 영양사 보수교육의 시기 및 시간(1년에 6시간 이상 · 2년에 6시간 이상)과 과태료 금액(50만원 · 20만원)을 하향시킨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

○ 영양사 보수교육계획 보고 및 관련 서류 보존 의무(신설)

– 영양사협회의 장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영양사협회의 장은 보수교육대상자 명단, 보수교육면제자 명단,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자격시험(신설)

– 임상영양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영양사로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충족한 사람이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을 받아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부대권고)

○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과정(신설)

–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영양학 · 식품영양학 ·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일반대학원 · 특수대학원 · 전문대학원 또는 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학생당 교수요원 조건(전공전임교수는 학생 10명당 1명 이상, 실습지도 겸임교수는 학생 5명당 1명 이상)과 실습협약기관 요건(임상영양사 1인이상 배치, 실습훈련 프로그램 구비)을 갖추어야 함

– 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확정 및 변경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은 이론 16학점, 실습 8학점으로 구성함

☞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조건 및 승인절차가 필요하고, 유사자격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준하여 적정하여 원안 의결

(30)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신설)

–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상한금액을 인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상한금액 인하율의 100/100을 가중하여 인하

* 동 고시 제정 전 고시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등록되어 있던 규제로 일부 강화하는 것임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31)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내용심사 1, 강화 1)

■ 심사내용

○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신청 및 신고(강화)

–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에 따른 허가 신청과 인수 및 분리 · 이동에 따른 신고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요건(내용심사)

☞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 해부시설 및 방법(신설)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의심 사망자의 해부 시설 기준을 정함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32) 검역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강화)

– 검역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지정(신설)

– 새롭게 의료용으로 도입되는 마약과 마약류 대용 약물로 그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을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34)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건강보험 심사청구프로그램에 의약품 처방 · 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설치(강화)

– 기존 점검 기능 외에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사전 점검 기능 추가 및 처방 · 조제시 사유기재 기능 제공

– 처방전 간 점검을 위해 모든 처방 · 조제 내역이 심평원에 실시간 전송될 수 있도록 보완
* 퇴원약을 제외한 입원 투약의 경우 실시간 전송기능 생략 가능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3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원료 등의 인정 및 재평가(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미 고시되거나 인정된 건강기능식품 · 원료 · 성분에 대해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준 등 필요사항을 정함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의 생산실적 보고(강화)

– 생산실적보고 기한 단축(익년도 3개월 이내 → 1개월 이내)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36)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9)

■ 심사내용

○ 금융정보 등의 제공(신설)

– 금융회사 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또는 수급자) 등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함

– 금융회사의 장은 금융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정보 등의 제공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함

–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자 등은 위의 과정에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동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됨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신설)

– 수급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장기간 해외 체류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그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않음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및 신고 등(신설)

– 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

– 또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함

– 서비스제공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제공기관 등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됨

–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서비스제공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신고제와 비교하여 제공업체에 대한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으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운영을 신고제로 시행해온 결과, 방문요양기관이 난립하게 되고, 본인부담금 면제 등 수급자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 급여비 허위청구 등 수급질서 혼란을 초래함
또한 장애인(지적 · 정신 · 자폐증)은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어 서비스기관의 난립에 피해를 보기 쉬운 취약 계층인 바, 적정 수준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 감독하는 지정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

○ 서비스제공기관의 의무(신설)

– 서비스제공기관은 수급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서 정한 제공 기준 ·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급여를 제공한 자료를 기록 · 관리해야 함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활동지원급여의 관리 평가(신설)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활동보조인의 요건 및 교육기관의 지정(신설)

– 서비스제공인력(활동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서비스제공인력(활동보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지정받아야 함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이 취소됨**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서비스제공인력의 결격사유 및 활동 제한(신설)

– 정신질환자 · 성폭행범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등의 경우에 서비스제공인력이 될 수 없으며, 활동보조인은 본인의 가족 등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고 급여 비용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서비스제공인력의 활동 제한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를 '가족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개선 권고)

○ 자료의 제출 등(신설)

– 신청인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소득 · 재산 및 장애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에 이를 제출해야 함

– 신청인 및 수급자,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으로부터 활동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질문 및 검사 등을 요구 받은 경우에 이에 응해야 함

–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수급권의 보호(신설)

–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3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일반병상 확보(강화)

– 신규로 개설하는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확대한 병상에 대해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함

☞ 신규로 개설하는 종합병원은 '11년 6월 30일, 기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확대하는 병상은 '10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중인 병원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도록함(개선 권고)

(3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부당이득금 환수 강화(신설)

– 사망 등 수급권 소멸사항에 대한 미신고 및 지연신고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환수이자 가산

– 환수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금 부과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신설)

– 공단이 의료법 상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나치게 일반적인 경우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므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할 것을 개선 권고

(39)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전문병원의 지정기준(신설)

–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기준을 마련

☞ 사망률 기준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자는 일부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처에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며,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지 못한 병원에 대해 소명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것(개선 권고)

(40)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의약품 등 유통체계 판매질서 준수(한약재 유통관리)(강화)

– 한약판매업자는 한약재를 단순 가공 ·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 진열할 수 없음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4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신설)

–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재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득 중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득의 범위를 규정

☞ 수수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 개선 권고

* 법률에서 예외사례로 예시된 6개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가다듬는 범위내에서 인정
  • 법률상 예외사항 :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⑥시판 후 조사, 다만 법률에서 예시되지 않았으나, 복지부가 “ ~ 등”을 확대 해석하여 시행규칙에서 추가하고자 했던 경조사비 등 6개항은 ‘신용카드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불인정

  • 시행규칙상 추가 예외사항 : ①의약전문서적 등 물품, ②경조사비, ③명절선물, ④강연료, ⑤자문료, ⑥신용카드 포인트

(42)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강화 1)

■ 심사내용

○ 의약품 등 유통체계 판매질서 준수(내용심사)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재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범위에서 제약사 등이 제공 가능하고 약사 · 한약사 등이 수수가능한 경제적 이득의 범위를 규정

– 약사 · 한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외) 취득시 자격정지 처분 강화(’10.5.27 약사법 개정에 따름)

– 약국 개설자 · 제약사 · 수입자 · 도매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도매상 ·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와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 · 수입자 ·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의 개설자와의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함

☞ 수수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 개선 권고

* 법률에서 예외사례로 예시된 6개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가다듬는 범위내에서 인정
  • 법률상 예외사항 :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⑥시판 후 조사, 다만 법률에서 예시되지 않았으나, 복지부가 “ ~ 등”을 확대해석하여 시행규칙에서 추가하고자 했던 경조사비 등 6개항은 ‘신용카드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불인정
  • 시행규칙상 추가 예외사항 : ①의약전문서적 등 물품, ②경조사비, ③명절선물, ④강연료, ⑤자문료, ⑥신용카드 포인트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시 행정처분 : 원안 동의

의약품의 부당한 거래제한 행위금지 : 원안 동의

○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강화)

– 약국 등에서 위생복 및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자에 약학을 전공하는 실무실습 교육 중인 학생을 추가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4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및 위반시 행정처분(신설)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재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범위에서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이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규정

–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외) 제공 시 업무정지 처분 세부기준을 정함

☞ 수수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 개선 권고

* 법률에서 예외사례로 예시된 6개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가다듬는 범위내에서 인정
- 법률상 예외사항 :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⑥시판 후 조사, 다만 법률에서 예시되지 않았으나, 복지부가 " ~ 등"을 확대해석하여 시행규칙에서 추가하고자 했던 경조사비 등 6개항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불인정
- 시행규칙상 추가 예외사항 : ①의약전문서적 등 물품, ②경조사비, ③명절선물, ④강연료, ⑤자문료, ⑥신용카드 포인트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시 행정처분 : 원안 동의

○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의료기기 제조 · 수입 및 품질관리기준)(강화)

– 의료기기 제조 · 수입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함을 인정받거나 또는 준수사항에 대한 정기갱신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함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44)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결핵환자 입원 방법 및 절차(신설)

– 전염성 결핵환자가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입원명령을 받아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결핵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모금사업 결산공개(신설)

– 기존에는 씰모금사업 완료시 사업결산보고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씰모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금액의 총액 및 사용명세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공개범위를 구체화하고 추가하였음

☞ 씰모금액 공개는 타당하므로 원안 의결

○ 결핵환자의 업무종사 제한(강화)

– 전염성 결핵환자의 업무종사 제한 범위를 결핵전파위험이 큰 직군으로 재조정하고자 함

*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보육시설종사자, 유치원종사자 및 학교 교직원 등,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승선 승무업무 및 항공기 객실승무원 중 8시간 이상 탑승업무, 그 밖에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직접 공중과의 접촉이 빈번하거나,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과의 대면빈도가 높아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임시마약류의 지정 등(신설)

– 마약류가 아닌 물질(제제 포함)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마약 구입서, 판매서 등의 기록 정비(강화)

–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자와 동일하게 마약류의 사용 기록 및 보존을 의무화하도록 함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4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지정(신설)

– 새롭게 의료용으로 도입되는 마약과 마약류 대용 약물로 그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을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47)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신설)

– 자녀학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신청인과 그 세대원은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및 제도의 건전성(부적정 수급방지) 확보 필요성과 동일한 내용에 대한 심사 이력(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및 유사입법례 존재 등을 감안할 때 본 규제 내용은 적정하므로 원안 의결

○ 금융기관 등의 장의 금융정보 제공의무 등(신설)

– 금융기관 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 하는 신청인과 그 세대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취득한 금융정보 등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함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4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어린이기호식품 중 총지방,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의 영양성분 함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적 · 황 · 녹색으로 표시(일명 신호등 표시, 법률에 규정)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내용심사)

– 총지방,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 표시식품 : 제①항

– 당(糖)만 표시하는 식품 : 제②항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영양성분 색상 모양표시 대상식품) 2항에 "어린이기호식품" 구문을 추가하고, 신설제도인 만큼 2년정도의 제도 시행 후에 식품의 신호등 표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선 권고

(4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수 있는 특정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 광고" 허위표시 · 과대광고에 포함(강화)

* 위반시 처분 신설 :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자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 과학적 · 객관적으로 기능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일반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금지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상 여타 허위표시 ·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처분수준과의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우수업소 · 모범업소 중 2년간 출입 · 검사 면제 제외 대상 신설(강화)

☞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우수 · 모범업소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우수 · 모범업소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5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에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신설)

☞ 행정처분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기관에 따라 처분기간이 상이함을 방지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명확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2. 식품의약품안전청

* 집필자 : 이금희 주무관(Tel. 2100-2313, khee0226@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항생물질의약품기준 개정안, 대한약전외의약품 등 기준 개정안, 대한약전 개정안,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개정안, 원료의약품 신고지침 개정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등 3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1건, 강화 40건 등 총 5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1건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2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4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10년도 총 신설규제는 11건임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항생물질의약품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0.01.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0.01.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대한약전 개정안	예비심사 (2010.01.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0.02.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0.02.0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3.09)	원안의결 1	신설 *비중요 1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3.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0.03.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원료의약품 신고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0.03.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0.03.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0.03.09) 제416회 행정사회분과 (2010.04.08)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3.09) 제416회 행정사회분과 (2010.04.08)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농약잔류허용기준 등 마련)	예비심사 (2010.04.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대한약전 개정안	예비심사 (2010.04.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4.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4.13) 제418회 행정사회분과 (2010.04.22)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0.03.24) 제418회 행정사회분과 (2010.04.22)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0.04.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의약품 · 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5.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5.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0.05.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5.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5.04) 제420회 행정사회분과 (2010.05.20)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5.13) 제421회 행정사회분과 (2010.06.03)	철회권고 1	강화 1 *중요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훈제어육제품류 벤조피렌 기준 신설 등)	예비심사 (2010.05.26) 제421회 행정사회분과 (2010.06.03)	부대권고 1	신설 1 *중요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0.06.01) 제422회 행정사회분과 (2010.06.17)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예비심사 (2010.06.01) 제423회 행정사회분과 (2010.07.01)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0.07.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09.12.31) 제426회 행정사회분과 (2010.08.19)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의약외품 품목허가 · 신고 · 심사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0.08.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0.08.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광고 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예비심사 (2010.07.20) 제241회 규제개혁위원회 (2010.08.26)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수입건강기능식품 신고 및 검사세부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9.0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대한약전외 의약품 등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0.09.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0.09.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 지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05) 제244회 규제개혁위원회 (2010.10.14)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수입식품 등 검사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05) 제431회 행정사회분과 (2010.10.28)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전자의료기기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0.11.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대한약전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철회권고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48	신설 11 강화 40 *중요 13, 비중요 38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항생물질의약품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네오마이신 B 황산염' 등 35품목의 항생물질 의약품 기준규격(강화)

☞ 항생물질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중금속, 불순물 기준 등을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 대한약전외의약품 등 기준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메실산프리디놀' 등 3개 품목 기준 규격(강화)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일반의약품 중 니코틴산 1-(4-메칠페닐)-에칠 등 22개 품목과 의약품 첨가물 중 흑색산화철의 순도시험 · 생약(한약)제제 중 우황청심원 등 5개 품목의 성분 함량기준 등(강화)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3) 대한약전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메로페넴수화물' 등 의약품 56개 품목 기준규격(강화)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건조갑상선 등 의약품 101개 품목의 기준 · 규격(강화)

☞ 의약품 기준 · 규격을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크지않고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디베카신황산염 등 63품목 기준규격 및 그라미시딘 등 102품목 기준규격(강화)

☞ 의약품 기준 · 규격을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크지않고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4)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용도별 기준규격 및 재질 · 용출규격(강화)

☞ 식품 용기 · 포장의 불순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국제수준(EU, 일본 등)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합성수지제 및 고무제 · 셀로판 · 종이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신설)

☞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안전관리를 통한 소비자 안전보호를 위해 기준 마련 필요성이 있고, 신설되는 기준은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설정하였으며 업계에 부담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

(5)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및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강화)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존속기한 연장(강화)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국가간 동등성 인정 등 세부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의 효력을 연장시켜 통상마찰과 업계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6)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홍역 생바이러스 백신 등 5개 백신에 대하여 '이상독성부정시험' 추가 등(신설)

☞ 피규제자는 해당 백신 제조업체 10개사(제조품목 21개)로서,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생물학적제제별 자가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 완료에 따라 자가기준이 반영된 기준 및 시험방법(강화)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7)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16종 추가지정(강화)

☞ 독성이 있어 섭취시 인체부작용이 우려되는 원료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8)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 규격 인정기준(강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09.8)으로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대상에 '식품원료'가 추가됨에 따라, 인정신청시 필요한 제출자료 범위, 서식 등을 동 고시에 정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9) 원료의약품 신고지침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에 18개 성분을 추가지정하고, 지정된 성분의 "염류 및 수화물"도 신고대상에 포함(강화)

☞ 원료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차원에서 '02년부터 연차적으로 신고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0)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및 스모크향 사용기준(신설)

☞ 외국 기준을 참고하고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있는 114종 성분 중 '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등 11종' 삭제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일반사용기준 추가(강화)

☞ 외국 기준을 참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식용 타르 색소 중 '적색102호' 및 '녹색3호'를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강화)

☞ 안전성 관련자료를 보완하여 식용타르색소 1종(적색102호)에 대한 사용제한으로 수정하고,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와의 추가협의를 거쳐 적색102호에 한해서만 사용제한을 추진토록 하여 통상마찰 소지를 줄였기에 원안 의결

(11)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신설)

☞ 중복평가문제를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HACCP기준'에 의해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생수준안전평가'가 면제되도록 하였기에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

(12)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정밀검사대상 수입한약재에 120품목 추가(강화)

☞ 법률상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사항으로, 이해관계자 반대가 없고 현재 제기된 통상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

○ 검사면제가 제외되는 대상품목에 '사향' 추가(강화)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신설 3, 강화 3)

■ 심사내용

○ '당근 · 마늘 · 부추' 중금속 기준, 옥수수 50%이상 함유한 가공식품에 대한 푸모니신 기준, 메주 · 고춧가루 중 오크라톡신A 기준, 소고기 · 돼지고기 · 가금류 중금속 기준, 신종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농약잔류허용기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신설)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생선 부산물(냉동식용생선머리, 냉동식용생선내장) 기준규격(강화)

☞ 생선부산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별도 기준 마련 필요성이 있고, 신설되는 기준은 일반기준 및 현행 대구머리기준과 유사하여 업계에 부담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

○ 밀가루의 총아플라톡신 기준, 포도주스 등의 오크라톡신A 기준,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 추가 및 기준, 훈제어육제품류 및 수산물 중 벤조피렌 기준, 식품자동판매기 다류 · 커피 · 음료류에 대한 미생물 기준(밀봉제품 제외),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신설)

☞ 식품공전 규제 중 사전예방 규제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 타당성 등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조건으로 원안 의결

○ 식품 중의 중금속(납, 카드뮴) 기준, 식품 중의 곰팡이독소 기준,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 추가 및 기준, 식품 중 벤조피렌 기준(신설)

☞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별도 기준 마련 필요성이 있고, 신설되는 기준은 실태조사 및 국제기준 등을 참고하여 설정하였으며 업계에 부담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

○ 신규등록된 농약 1종(이소티아닐)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쌀 0.1ppm) 및 사용가능 농작물 범위가 확대된 20종의 농약에 대하여 해당 작물에 대한 기준(강화)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확대, 식 · 약 공용 원재료(한약재)의 중금속 기준,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규격, 과일 · 채소류 음료 중 장출혈성 대장균 규격, 방어의 일산화탄소 기준, 식품접객 업소의 세척제에 대한 사용기준, 이민옥타딘 등 4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강화)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4)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벤조피렌 기준 적용범위 확대('광물성 생약을 제외한 모든 생약'으로 확대)(강화)

☞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넓게 인정하여 업계부담이 과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5)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 지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생동성시험자료 및 비교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 범위 확대(강화)

☞ 기존 품목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기득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 개정후 신규로 허가받는 품목부터 적용됨을 명시토록 개선 권고

(16)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치과용합금' 등 31개 품목의 기준규격 및 '골시멘트' 기준 규격(강화)

☞ 외국 기준을 참고하고 업계 및 시험검사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1~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17) 의약품 · 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황색4호(타르트라진) 등 39개의 타르색소 및 레이크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수은, 아연, 철 등 순도시험 항목 설정(강화)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8)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규정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안전성 · 유효성에 문제가 있어 의약품 품목허가 · 신고가 제한되는 의약품제제(294개) 중 '산화납 및 납화합물 함유제제'에서 '초산납 함유 염모제'를 제외하던 것을 포함하고 '세포라니드 함유 단일 주사제 중 항생물질제제' 등 5개 추가(강화)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위탁생동 금지 및 공동생동 품목 수 제한 규제의 존속기한을 2013.11.25까지 3년 연장(강화)

☞ 관련제도 개선방안들의 정착을 위해 1년동안만 규제 존속기한을 연장(효력 상실형 일몰제)한 후 폐지하는 것으로 개선 권고

○ 보존제를 함유하는 의약품 중 내용액제에 대한 보존제의 시험 기준(표시량에 대하여 80~120% → 표시량 이하), 내용액제류 : 내용고형제에 대한 '안식향산류' 및 '파라옥시안식향산류' 보존제의 허용 범위(각 0.1% 이하 → 벤조산류 0.06%이하, 파라옥시벤조산류 0.01% 이하), 파라옥시벤조산이소프로필 · 파라옥시벤조산이소부틸 · 디히드로초산 · 디히드로초산나트륨을 의약품용 보존제에서 삭제, 파라옥시벤조산에틸을 안과용제에

사용하는 보존제에서 삭제, 파라옥시벤조산 부틸을 안과용제 · 주사제류에 사용하는 보존제에서 삭제, 서로 다른 종류(군)의 보존제 배합시 그 총량은 각 단일성분의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보존제 허용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내용액제 대상 확대(1회 복용량 50ml 이상인 자양강장변질제, 건위 소화제 → 자양강장변질제, 건위소화제, 기타의 순환계용약으로 확대)(강화)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9)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화장품 배합한도 원료 1개, 배합금지원료 58개 성분군 추가(강화)

☞ 화장품 배합한도 · 배합금지원료 확대는 외국 성분규제 기준과 유사한 수준 이기에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

○ 화장품 배합한도 및 배합금지원료 확대, 인체 세포 · 조직 및 그 배양액을 화장품 배합금지원료로 추가하고, 인체 세포 · 조직 배양액 안전기준 마련(강화)

☞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안전성 시험과 관련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업계부담을 최소화하였기에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0)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생약으로부터 유래한 원료를 함유한 생리처리용 위생대에 대한 미생물한도시험 기준설정(대장균, 녹농균, 포도상구균 불검출)(강화)

☞ 동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타당성 여부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업계에 미치는 영향, 규제의 적정성, 타당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한 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철회 권고

(21)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판매 등 금지대상 정서저해식품(돈 · 화투 · 담배 모양의 도안을 용기 · 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특정주류업체의 상표 또는 제품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술병의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 · 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등)(신설)

☞ '09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동 고시에서 정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고시내용이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수준이므로 원안 의결

(22) 의약외품 품목허가 · 신고 · 심사규정 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방역용마스크 기준규격 · 독성시험자료 제출 의무화 품목 확대 · 사용기간 설정시 요구되는 시험자료 요건 변경 · 전염병 예방용 살균 · 살충제 중 분량을 기재하여야 하는 첨가제 성분 확대(강화)

☞ 외국 기준을 참고하고 규제비용이 크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3)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최종제품의 요건 중 '섭취 시 주의사항' 설정 품목 확대 · 레시틴 등 5개품목의 납 규격(강화)

☞ 외국 기준을 참고하고 규제비용이 크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4)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 · 저영양 식품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은 「고열량 · 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식약청 고시)에 따른 고열량 · 저영양 식품으로 하며, 광고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식품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신설)

☞ 식품목록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와 관련,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내에서 업체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 하였기에 적정한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

(25) 수입건강기능식품 신고 및 검사세부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유통관리대상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2호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추가(강화)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6)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정기준 및 심사원 자격기준 · 기술문서 심사기관 유효기간 및 지정갱신(신설)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7) 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 지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화장품 안전정보관련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 · 표시 대상(12개제품) 및 대상별 주의사항 내용(강화)

☞ 외국 기준을 참고하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 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8)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감초 등 생약 10개품목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 · 잔류이산화황 기준 및 시험방법 적용대상에 곡아 등 43개 품목 추가(강화)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9) 수입식품 등 검사지침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유통관리대상식품에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추가 · 수출반송품 및 외화 획득용 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반송사유서(강화)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30) 전자의료기기 기준 및 규격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59개 품목의 전자의료기기 중 '진료용X선 방어앞치마' 등 31개 품목의 품목명 및 적용범위 변경, 안정성 및 성능시험 기준과 방법 개정(강화)

☞ 외국 기준을 참고하고 규제비용이 크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31)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일반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전문용어와 함께 기재하는 쉬운 용어 66개 추가(강화)

☞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32)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규제(식품 이물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영업자가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이물의 범위, 소비자로부터 이물 신고를 받은 영업자가 이물 등 증거물을 확인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 시 · 군 · 구청장에게 보고) 재검토 기한을 1년 연장(강화)

☞ 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동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33)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츄어블정 및 트로키제에 대한 모양 제한 및 용법 강화 등(강화)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3. 여성가족부

* 집필자 : 원영호 사무관(Tel. 2100-2317, key71315@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6개의 법령 10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0건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 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여성가족부의 2010년도 신설규제는 2건임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6.27) 제424차 행정사회분과 (2010.07.15)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7.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11) 제24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0.10.14)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2 *중요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예비심사 (2010.11.2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12.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1 원안의결 9	신설 10 *중요 3, 비중요 7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종사자 보수교육의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실시 기준을 정함(신설)

☞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실시기준을 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정함(신설)

☞ 시설 평가기준은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의 효율화 및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사회복지사업 기관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적용한 적정 수준의 규제로 원안 의결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수탁거부시 과태료 부과(신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한부모가족 시설 수탁보호 거부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자 형사처벌 조항을 규제완화 및 비범죄화를 위하여 동 사항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위반횟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의 효율화 및 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 "평가기준"을 정한 것임(신설)

* 종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시설평가 실시

☞ 가정폭력관련 시설의 운영관리 효율화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지원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맞선 전에 제공하도록 함(신설)

☞ 신상정보제공 절차 및 기준 등의 시행령안의 규제존속기간을 3년 일몰제 적용, 용어 정비, 신상정보제공 시기 수정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등 규제개혁실과 협의 · 마련토록 개선 권고

○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통역 · 번역 서비스의 제공방법은 이용자에게는 국어로, 상대방에게는 소속국가 언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신설)

☞ 국제결혼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하게 통역 · 번역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신설 3)

■ 심사내용

○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신설)

〈시행령안〉

–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는 학교, 비영리법인.단체 등 에서 개설한 상담원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 상담원 교육기관 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함

〈시행규칙안〉
–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학력 경력 등 자격기준 및 교육과정을 정함

☞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일정 수준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있는 점과 유사입법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종사자 보수교육의 기간 · 내용 및 방법 등 실시기준을 정함(신설)

– 보수교육의 기간 · 방법 : 2일 이상의 집합교육 원칙, 인터넷 강의 활용 가능

– 보수교육실시기관 강사의 자격기준 : 관련분야 3년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등

– 보수교육의 내용 : 상담사례 연구, 피해자 프로그램, 행위자 프로그램, 상담 전문가 과정, 상담실무자 과정

☞ 상담소, 보호시설의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교육내용 ·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시설평가의 기준과 방법(신설)

– 시설의 환경, 종사자의 전문성, 입소정원이 적정성, 이용자 및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및 그 밖의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 평가는 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

☞ 시설 평가를 실시하여 장기적으로는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화 도모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 및 피해자 지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있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6)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교육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 · 운영하는데 따른 시설규모, 종사자 수 및 자격기준 등을 정함(신설)

☞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은 성교육, 성체험관 운영 등 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과 시설기준으로 유사입법사례*와 유사한 수준이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별표1의2 상담소설치 · 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및 별표3의 긴급전화센터 · 상담소 ·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10절

통일 · 외교 및 국방 분야

1. 통일부

* 집필자 : 김태현 사무관(Tel. 2100-2279, ki555@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반출반입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고시 개정안, 6.25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신설 2건, 강화 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하였고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통일부 소관 법령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반출반입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135회 예비심사 (2010.06.01~06.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25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46회 예비심사 (2010.07.13~07.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240차 본회의 (2010.08.12)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계	-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중요 1, 비중요 2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반출반입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남북간 교역시 통일부장관의 승인대상 –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의 금지, 허가, 승인, 추천, 확인, 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품목 – 농림수산물(193개 품목) 및 도서, 소프트웨어, 미술품, 도예, 공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 사진, 필름, 컴퓨터(반출의 경우) 등 – 기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09.6.12)에 따른 군용물자 및 별도 공고한 사치품 등 – 품목 승인과 별도로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에 대한 승인 필요(강화)

☞ 규제비용증가가 미미하고 자체심사결과 및 관련 부처,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2) 6.25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6 ·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납북피해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납북피해 신고서에 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함(신설)

☞ 규제비용증가가 미미하고 자체심사결과 및 관련 부처,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국내 입국한 보호신청자의 보호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는 18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기간을 명시(신설)

☞ 최근, 탈북자간첩 사건, 신분위장 등과 같이 위장탈북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선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 다만, 금번 시행령(안) 조문은 모든 탈북자를 대상으로 최장 180일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추후 국정원장이 별도의 내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로 원안 의결

2. 외교통상부

* 집필자 : 김태현 사무관(Tel. 2100-2279, ki555@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여권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신설 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하였고 1건은 철회 권고, 1건은 원안의결 하였음

[외교통상부 소관 법령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여권법 개정안	제230차 본회의 (2010.04.08) 제231차 본회의 (2010.04.22)	철회권고 1	신설 1 *중요 1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제425차 분과위 (2010.07.22) 제426차 분과위 (2010.08.12)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계	-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2 *중요 2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여권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외국에서 현지법 위반을 이유로 출국하고, 유사한 위법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 1~3년 간 여권의 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 해당국가에서의 여권 사용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여권의 사용 등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해당 국가 방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신설)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철회 권고

(2)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해외체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 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5년 이내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신설)

☞ 국가안보 확립차원에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여권발급 혹은 재발급의 거부가 아닌 완화된 제재(여권유효기간 단축)인 점에서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되고, 국외거주 국가안보침해 우려자에 대한 제재 근거의 마련 필요 측면에서 규제신설의 타당성도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3. 국가보훈처

* 집필자 : 이종성 사무관(Tel. 2100-2320, ljss1@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개의 법령에 대해 총 10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한 바, 모두 원안대로 의결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0.01.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0.01.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0.01.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0.01.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0.01.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0.01.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국가유공자등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0.01.26.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0.01.26.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10	신설 8, 강화 2 *비중요 10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신설 1)

■ 심사내용

○ 정보제공동의서 및 금융기관등의 자료제공의무(신설)

– 교육지원 등을 신청할 때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들의 금융정보와 신용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자료제공 의무 신설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정보제공동의서 및 금융기관등의 자료제공의무(신설)

– 취업지원 등을 신청할 때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들의 금융정보와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자료제공 의무 신설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3)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정보제공동의서 및 금융기관등의 자료제공의무(신설)

– 교육지원 등을 신청할 때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들의 금융정보와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자료제공 의무 신설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및 금융기관 등의 자료제공 의무(신설)

– 교육지원 등을 신청할 때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들의 금융정보와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자료제공 의무 신설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및 금융기관 등의 자료제공 의무(신설)

– 생활조정수당 등을 신청할 때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들의 금융정보와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자료제공 의무 신설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및 금융기관 등의 자료제공 의무(신설)

– 요양지원을 신청할 때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들의 금융정보와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자료제공 의무 신설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7)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수익금 사용계획 심의 및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신설)

– (수익금 사용)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함

– (회계감사)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국가유공자 단체의 법위반 행위 및 결의에 대한 시정조치(강화)

– (현행)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지시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한 때에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음

– (개정) 위 조항 외에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가 그 사업을 불법 ·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수익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각 단체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가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1, 신설 1)

■ 심사내용

○ 수익금 사용 및 회계감사(강화)

–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승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위원회의 구성, 수익금의 사용, 회계감사, 사업승인의 취소 및 청문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

– (수익금 사용)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함

– (회계감사)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고엽제전우회 법위반 행위 및 결의에 대한 시정 조치(신설)

– (현행)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전우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 (개정) 위 조항 외에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가 그 사업을 불법 ·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수익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각 단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4. 국방부

* 집필자 : 김태현 사무관(Tel. 2100-2279, ki555@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방 정보화기반 조성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신설 2건의 규제심사를 하였고 2건 모두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하였음

[국방부 소관 법령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49회 예비심사 (2010.07.20~07.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국방 정보화기반 조성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149회 예비심사 (2010.11.09~11.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귀환포로에게 지원한 주택에 대해 2년간 양도 · 저당권 설정을 제한(신설)

☞ 규제비용증가가 미미하고 자체심사결과 및 관련 부처,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 국방 정보화기반 조성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연구개발을 위한 민간에 대한 군 시설장비 이용허가 절차를 마련함(신설)

☞ 규제비용증가가 미미하고 내용상 규제완화에 가까우며, 자체심사결과 및 관련 부처,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제11절

일반행정 분야

1. 행정안전부

* 집필자 : 이정연 사무관(Tel. 2100-2316, koreaeco@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전자서명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등 신설 10건, 강화 13건 등 총2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2건중 2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5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1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총 신설 · 강화규제는 22건임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107회 예비심사 (2010. 02. 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회 예비심사 (2010. 03. 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국가공무원법	제130회 예비심사 (2010. 05. 12)	원안의결 1	신설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접경지역지원법	제130회 예비심사 (2010. 05. 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0회 행정사회분과위 (2010. 5. 20)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 2
지방공무원법	제132회 예비심사 (2010. 5. 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온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139회 예비심사 (2010. 6. 1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153회 예비심사 (2010. 8. 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전자서명법	제430회 행정사회분과위 (2010. 10. 14)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 2
국새규정	제172회 예비심사 (2010. 11. 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4회 예비심사 (2010. 12. 2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434회 행정사회분과위 (2010. 12. 9)	개선권고 3 철회권고 2 원안의결 1	강화 4 신설 2 *비중요 1
계	–	철회권고 2 개선권고 5 원안의결 15	강화 11 신설 11 *중요 9, 비중요 13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강화 1)

■ 심사내용

○ 계약의 임의적 · 의무적 해지사유를 정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정함(강화)

☞ 정당한 계약질서의 확립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낙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점, 최근 국가계약법령 심사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점, 개정안의 대부분이 계약관련 행정규칙에 이미 규정된 내용임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강화 1)

■ 심사내용

○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도로법상 휴게시설 · 도시철도의 역사 및 공항의 공중화장실 등으로 정함(강화)

☞ '10.5.5이후 신설되는 공중화장실로서, 도로법상 휴게시설, 철도 및 도시철도의 역, 공항의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정하여 피규제자수 및 규제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3) 국가공무원법(신설 1)

■ 심사내용

○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직분야에 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제한(신설)

☞ 피규제자 수가 적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직무상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한해 임용을 제한하였음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4) 접경지역지원법(신설 1)

■ 심사내용

○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권 부여(신설)

☞ 토지의 수용 · 사용이 동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타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개별법령상 토지의 수용 · 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강화 2)

■ 심사내용

○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노상 · 민영 노외주차장은 '총면적의 5%'로 정하고, 부설 주차장은 '주차대수의 20%'로 함(강화)

☞ 노상 ·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원안동의. 그러나, 부설주차장의 경우 열악한 자전거 사용환경을 고려할 때 20% 기준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10%로 완화하되 자전거 주차장의 필요성이 큰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20%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 권고

* 개정안 별표(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의 자전거설치기준)의 2(문화 및 집회시설 등), 3(1,2종 근린생활시설 등), 5(공동주택 등), 9(공동주택 등)

○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절차를 간소화(강화)

☞ 피규제자가 적고, 24일간 자전거를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대부분의 자전거 원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6) 지방공무원법(신설 1)

■ 심사내용

○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직분야에 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제한

☞ 피규제자 수가 적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직무상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한해 임용을 제한하였음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7) 온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강화 2)

■ 심사내용

○ 온천굴착허가 신청시에 원상회복이행보증금을 굴착허가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예치(강화)

☞ '09년 기준 온천굴착허가 신청건수가 23건임을 고려할 때 피 규제자수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규제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온천이용시설 내 게시사항에 적응증 및 입욕프로그램 등 온천이용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강화)

☞ 법률에서 온천이용시설 내 게시가 필요한 사항을 위임함(의원입법)에 따라 추가하는 것으로, 게시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8)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설 1)

■ 심사내용

○ 50억원 이상의 기부금품 보집자에 대해서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관계서류 · 장부 ·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모집청이 모금장소 등을 방문하여 장부를 검사(신설)

☞ 지난 3년간, 모집목표액을 50억원 이상으로 하는 기부금품 모집기관은 대한적십자사 등 5개에 불과하고, 규제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9) 전자서명법(강화 2)

■ 심사내용

○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 운영 하는 공인인증서 이용자는 공인인증서의 정지 · 폐지 여부를 공인인증기관으로 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하여야 함(강화)

☞ 공인인증서의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도 무리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따라서,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임을 규정하여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

○ 공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지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강화)

☞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사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고, 피규제 대상이 6개 인증기관으로 한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0) 국새규정(신설 1)

■ 심사내용

○ 국새의 명칭과 디자인은 행안부장관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신설)

☞ 최근 민홍규 사건과 같이 국새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새디자인을 이용한 상품이 시장에 판매된 사례가 거의 없고, 실질적인 피규제자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신설 3)

■ 심사내용

○ 지자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청렴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고 위반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여야 함(신설)

☞ 청렴계약제도를 타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자치단체 등에서는 이미 시행중이어서 제도 도입에 따른 피규제자의 새로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중앙관서의 장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계약금액의 10% 또는 30%의 과징금을 부과(다만, 의사에 반하여 부과할 수 없음)(신설)

☞ 기존의 획일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외에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여 제재수단을 다양화 하는 것으로, 제417차 경제분과위원회('10.12.9)를 거쳐 확정된 국가계약법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계약사무 처리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키지 못한 경우 즉시 취소하여야 함(신설)

☞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격요건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점, 국가계약법령의 경우 계약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관련기관의 요건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강화 4, 신설 2)

■ 심사내용

○ 승강기 제조업자 등이 승강기 또는 부품을 판매 또는 양도하기 위해 미리 확보해야 하는 수단을 확대하고 2일이내에 제공하도록 의무화(강화)

☞ 승강기보수시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규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장애확인수단' 에 대한 개념을 하위규정에 담고, '제공하여야 한다' 가 아니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도록 개선 권고

○ 보수업무의 일괄하도급을 전면금지하고, 보수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원보수업자와 수급보수업자가 동시에 지도록 함(강화)

☞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규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괄하도급' 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 권고

○ 고층승강기에 대해 설계검사를 의무화 함(신설)

☞ 이미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시스템 인증 등 검사 및 인증제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고, MRL에 대해서는 설계검사 항목을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계검사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철회 권고

○ 관리주체 및 보수업자는 승강기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 현장보존조치를 하도록 의무화(강화)

☞ 현장보존조치 최대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고조사반이 현장에 즉시출동하도록 하는 의무도 동시에 규정하도록 개선 권고

○ 승강기 관리자는 사고조사판정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또는 계획을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함(강화)

☞ 규제의 실효성이 없고, 정기검사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수단이 충분하므로 철회 권고

○ 장애인용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탑승안내 및 운전 등의 안전수단을 제공하여야 하고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확보(신설)

☞ 장애인용 승강기는 공공시설 등에 한정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피규제자 수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해관계자의 별도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 소방방재청

* 집필자 : 최정진 사무관(Tel. 2100-2318, oktto100@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재해구호법, 자연재해대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및 각종 소방기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 수준 등 9개의 법령 및 고시에 대해 신설 24건, 강화 8건 등 총 3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2중 3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4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2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소방방재청의 2010년도 총 신설 · 강화규제는 32건임

[소방방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재해구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2.1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0.02.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0.02.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0.02.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옥내소화전방수구 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0.02.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0.02.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제417차 행정사회분과 (2010.04.1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제417차 행정사회분과 (2010.04.15)	철회권고 1	신설 1 *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제417차 행정사회분과 (2010.04.15)	철회권고 1	신설 1 *중요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420차 행정사회분과 (2010.05.20)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제421차 행정사회분과 (2010.06.03)	개선권고 2	신설 2 *중요 2
소방시설 공사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0.07.1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25차 행정사회분과 (2010.07.22)	원안의결 6	신설 5 강화 1 * 중요 1, 비중요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425차 행정사회분과 (2010.07.22)	철회권고 1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1 * 중요 2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0.08.15)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 1
자동확산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0.08.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9.19)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제429차 행정사회분과 (2010.09.30)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0.10.2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계	-	철회권고 3 개선권고 4 원안의결 25	신설 24 강화 8 *중요 10, 비중요 22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재해구호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상시 의연금품 접수 제한(신설)

– 상시접수자가 의연금의 출연을 강요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의 접수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2항)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의연금품의 모집 · 접수장부 등 보관(신설)

– (현행)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모집기간 동안 의연금품의 모집상황 및 내역의 장부, 서류 등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함

– (개정) 장부,서류 등의 작성 및 비치의무에 부가하여 보관의무 신설

(2) 수동식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수동식소화기 해당 부품의 원산지 표시(신설)

– 수동식소화기의 보기 쉬운 부위에 해당 부품 원산지 표시품목 신설(용기, 밸브, 호스, 소화약제 주원료)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3)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소화약제의 용기(포장)에 소화약제 주원료의 원산지 표시(신설)

– 소화약제 용기의 보기 쉬운 부위에 “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4) 자동식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자동식 소화기 해당 부품의 원산지 표시(신설)

– 자동식 소화기의 보기 쉬운 부위에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표시(용기, 밸브, 소화약제 주원료)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5) 옥내 소화전방수구 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옥외소화전 본체의 원산지 표시(신설)

– 옥외소화전 본체의 원산지를 보기 쉬운 부위에 “옥외소화전 본체의 원산지”를 표시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6) 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경종의 부품 중 모터의 원산지 표시(신설)

– 경종의 보기 쉬운 부위에 부품 중 “모터의 원산지” 표시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7)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계단통로 유도등의 표시면 설치기준(신설)

– “계단통로 유도등은 표시면*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

*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로 하며, 이 때 식별이 용이하도록 비상문 · 비상탈출구 · EXIT · FIRE EXIT 또는 화살표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음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유도등의 소비전력 설계값 표시(신설)

– 유도등의 상용전원 소비전력 설계값을 확인하고 표시하게 함

☞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한 정보제공이라는 점에서 원안 의결

(8)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방재성능 인증 · 활용 및 방재사업자의 신고(신설)

– 다른 방재제품(기기, 자재, 설비, 서비스 포함)에 비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경감하거나 예방 · 대비 · 복구에 필요한 우수한 방재제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성능인증을 할 수 있게 함

– 인증된 방재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게 함

– 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신고토록 함

☞ 규제의 내용이 되는 방재기술 등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차별화된 영역 필요성 검토가 선행된 후에 규제신설을 추진함이 타당하여 철회 권고

(9)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완강기 제품의 표시기준(신설)

– 완강기 제품의 최대 사용횟수를 20회로 제한하고, 초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작동기능점검 후 사용하도록 함

☞ 사고시 완강기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많은 건축물에 설치된 완강기에 대한 일률적인 사용횟수 규제는 과도한 것으로 철회 권고

(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강화)

– (현행)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게임 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등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 (개정) 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추가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토록 함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경우와 권총사격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안마시술소와 유사한 업태를 행하는 업소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하며, 기존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주 변경의 경우는 제외하고 내부구조 또는 실내장식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 권고

(1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기업재난관리자 교육(신설)

– 기업재난관리자의 능력을 유지 ·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3년마다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기업재난관리자 직무교육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 직무교육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규제심사를 통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10조의2 제2항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를 "소방방재청장의 고시로 정한다"로 변경할 것을 개선 권고

○ 우수기업 인증 및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신설)

– 법률에 규정된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시행령 제8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2)

– 법률에 규정된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시행령 제9조의2 관련 별표 1의3)

☞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기간 2년은 타 행정처분기준과 비교하여 과도한 것으로 1년으로 축소하고 중복규제하고 있는 별표1의3 개별기준 나항3호(전문인력의 자격이 미달된 경우)는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

(12)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소방시설업의 폐업 신고(신설)

–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폐업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신고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소방시설공사의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신설)

–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3)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5, 강화 1)

■ 심사내용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신설)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내진 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 지진으로 건축물에 고정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배관 등이 파손되는 것을 예방하여 2차적 화재피해로부터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

○ 방염처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결격사유(강화)

– (현행)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금지함

– (개정) 임원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등록을 금지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방화관리사의 보수요구 및 건축주의 시정의무(신설)

– 방화관리사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 중 위법사항 적발시 이에 대한 보수(補修)를 요구하여야 함

– 보수요구를 받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른 것에 우선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방화관리사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소방시설 점검 실명제(신설)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표지에 기록하여 부착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유통 소방용품의 회수, 교환, 폐기 및 형식승인 취소(신설)

– 유통중인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 · 교환 · 폐기를 명하고 그 사실의 공표 및 형식승인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전문검사 지정기관의 제품검사 실시 현황 보고(신설)

– 전문검사 지정기관은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실내장식물 변경 신고(신설)

– 벽이나 천정에 고정되어 부착되는 실내장식물 변경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성능 확인을 통하여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소방점검을 통하여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함으로 변경신고의 신규도입으로 철회 권고

○ 다중이용업주 및 건축물 소유자 등의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등(강화)

– (현행)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함

– (개정)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인은 건축물 전체에 설치되어 일체로 작동되는 소방시설 중 다중이용업소와 연계된 소방시설을 점검하여야 함

☞ 다중이용업소의 입주사실만으로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인의 소방점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인의 협조를 얻어 다중이용업주가 점검하도록 개선 권고

(15)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자동폐쇄장치의 표시사항(신설)

– 자동폐쇄장치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품 표시면에 본 제품이 설치되는 대상과 개폐저항값 및 작동시간 등을 표시하여야 함

- 설치가능한 문의 종류 및 크기
- 설치가능한 창문의 개폐 저항값 범위
- 최대 열림 고정각도 또는 최대 열림 고정길이
- 최대 열림 고정각도 또는 최대 열림 고정길이로부터 닫히는 시간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6) 자동확산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자동확산 소화용구의 표시사항(신설)

– 자동확산 소화용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품 표시면에 본 제품의 적용화재, 설치장소 및 유효 설치높이를 표시하여야 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7)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유 · 도선 출항 전 승객 안전교육 실시(신설)

– 유선 ·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출항 전 안전한 승 · 하선 방법, 안전난간 · 기관실 등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유사시 대처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영상물 상영 또는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승객에게 실시하여야 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유 · 도선 인명구조장비 비치(강화)

– (현행) 구명동의, 구명부환, 비상구조선, 구명줄, 통신장비, 소화기, 조명시설 등

– (개정) 영업구역이 하천 · 호소인 경우로서 2해리 이상 운항 유선 및 도선과 추진기관이 설치된 2해리 미만 야간운항 유선 및 도선에 위성자동위치측정시스템(GPS)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갖추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18)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미이행 과태료 부과(신설)

* 제설책임의무는 '05년에 도입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특별자치도,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 징수

☞ 신속한 제설 및 제빙을 통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정된 과태료로 원안의결

(19)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피난기구의 적응성 기준(강화)

– (현행) 숙박시설 3층에 있는 객실에는 피난기구로 간이 완강기 또는 피난밧줄을 설치

– (개정) 피난밧줄을 삭제하고, 간이완강기만 설치토록 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0)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기(강화)

– (현행)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상부에 자동확산 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함

– (개정)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부속용도 소화기구 설치대상 능력단위 향상(강화)

– (현행) 화기를 취급하는 주방에 대해서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으로 정함

– (변경) 노유자 시설을 추가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3. 경찰청

* 집필자 : 김도엽 사무관(Tel. 2100-2419, freekdy@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경찰공무원법 등 10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5건, 강화 8건 등 총 1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3건중 1건은 철회 권고, 2건은 개선 권고, 나머지 10건은 원안 의결함

[경찰정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0.05.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34회 본회의 (2010.06.03)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0.06.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36회 본회의 (2010.06.17)	철회권고 1	강화 1 *중요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36회 본회의 (2010.06.17)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27회 행정사회분과 (2010.08.26)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제243회 본회의 (2010.09.30)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43회 본회의 (2010.09.30)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30회 행정사회분과 (2010.10.14)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33회 행정사회분과 (2010.11.25)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신설 3, 강화 1 *중요 2, 비중요 2
계	-	철회권고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0	신설 5 강화 8 *중요 9, 비중요 4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청원경찰의 복제기준(신설)

- 경찰복제와 제식이 같고 청원주가 색상을 결정할 수 있어, 경찰 유사복제 착용으로 인한 경찰 이미지 훼손 및 민원야기 우려

- 청원주가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제복의 '제식, 색상, 재질'은 자율로 하되, 제복의 '색상 및 표지장'을 경찰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규정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위험한 자전거 운전 금지(신설)

- 개정 도로교통법('09.12.29 공포, '10.6.30 시행) 제50조 제7항에서 부령에 위임한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의 범위 규정
  - 통행하고자 하는 도로(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차로)의 폭 보다 넓은 구조가 아닐 것
  -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철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을 것

☞ 도로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위험한 자전거의 범위는 원안 의결하되, 규제대상에 알루미늄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철재 모서리를 금속재 모서리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부대권고

(3)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수시적성검사 대상 추가(강화)

– 보건복지부장관의 통보자료에 "정신장애 또는 간질로 인해 장애인 등록된 사람에 대한 자료" 추가

* 현재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중독으로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중인 사람"의 자료만 통보 받음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운전면허 등(자동자운전자에 대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금지)(강화)

– 자동차 운전면허의 운전가능 범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 하도록 함. 단 개정안 시행 이후 신규면허 취득자에 한함

☞ 운전면허 종류와 원동기 교통사고 발생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어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없어 철회 권고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통행방법(강화)

– 현행 지정차로제

• 교통흐름 안정화 위해 차로별 주행차종을 지정하고 있으나, 차량 특성* 및 제한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승용차와 1.5톤 이하 화물차는 같은 차로 지정되었으나, 가속능력 · 최고속도 차이가 크고 화물차에 의한 시야 방해 문제 발생

** 제한 속도가 다른 버스와 1.5톤 초과 화물차를 같은 차로 지정

– 개정내용(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강화)

• 화물차 1개 차로 하향 지정하여 승용차와 분리

• 차종별 · 제한속도별 지정차로 분리하여 소통과 안전 확보

☞ 화물자동차에 대한 상위차로 통행제한은 원안 의결하되, 동 규제 시행으로 인한 장 · 단점이 있는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통사고 감소, 물류비용 증가 등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후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고 부대권고(1년 재검토형 일몰)

(6)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사격장의 설치허가 등(시설기준 강화 등)(강화)

– 화재 예방 및 진화 · 대피를 위한 시설 기준 강화

* 소방시설 등 설치, 완성검사 신청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첨부

– 사격장 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강화

* 자격기준에 '안전교육 이수' 추가, 직무에 화재예방활동 등 직무 신설

☞ 원안의결

(7)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경찰공무원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강화)

–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를 추가

☞ 복수국적자의 경찰공무원 채용 배제는 원안 의결하되,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결과를 분석한 후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부대권고(3년 재검토형 일몰)

(8)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필요한 조치(강화)

– 현행 규제 : 일반적인 규제(과태료 · 벌점 부과)와 같음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 동법 시행규칙 별표28 제3호 정지처분 개별기준

– 변경 규제
  • 어린이 보행안전과 직결되는 과속 · 신호위반 · 불법 주정차 · 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해당 과태료 · 벌점을 각각 2배로 상향

☞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벌점 2배 상향은 원안 의결하되, 대국민 홍보 및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인지시설을 확충할 것을 부대권고

(9)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소지허가(강화)

– 총포 소지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추가

  •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정신병력 · 치료경력 확인된 사람은 총포 소지 적절 여부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용도 소명 서류(수렵용 총포 : 수렵면허증 또는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 수렵면허증,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증 중 1종)
  • 사진(실제로 소지허가증에 부착할 사진을 제출받고 있으나 규정상 미비되어 추가)

☞ 지방경찰청장 등이 조회하는 총기소지허가 신청인의 정신질환을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 발육지연, 간질'로 한정하도록 개선 권고

(10)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강화 1)

■ 심사내용

○ 과태료 금액(신설)

– 개정 도로교통법('10.7.23 공포)에 따라, 과태료로 전환된 5개 사항의 과태료 금액을 정함
  • 고인물을 튀게하여 타인에게 피해 야기 : 범칙금 2만원 → 과태료 2만원
  • 창유리 암도기준 위반 : 범칙금 2만원 → 과태료 2만원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미비치 : 범칙금 3만원 → 과태료 3만원
  • 고속도로에서 고장차 표지 미휴대 : 범칙금 2만원 → 과태료 2만원
  • 면허 정기 · 수시적성검사 미필 : 범칙금 3 ~ 6만원 → 과태료 3만원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의 범위(신설)

– 개정 도로교통법('10.7.23 공포, '11.1.24 시행)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제12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부령에 위임한 보호구역 지정대상 중 "학원"의 범위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한 학원(함께 지정 건의한 같은 건물의 다른 학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학원에 등록된 어린이 수가 100인 이상인 학원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학원을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통행량 및 교통여건상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으로 수정 하도록 개선 권고

○ 자동차전용도로 안전띠 착용 의무(신설)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에 대해 全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원안 의결

○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등(강화)

– 공동위험행위 운전자(폭주족)의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그 기준과 방법을 부령에 위임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40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정지처분(40일)토록 하고, 구속된 경우 해당 면허 취소

– 공동위험행위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거나, 면허취소 후 재취득시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교육(6시간) 내용에 공동위험행위의 위험성, 운전성향 자가진단 등 추가

☞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4. 법무부

* 집필자 : 이정연 사무관(Tel. 2100-2316, koreaeco@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호사법 등 7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6건, 강화 2건 등 총 8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건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1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무부의 2010년도 총 신설 · 강화규제는 8건임

[법무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4회 예비심사 (2010. 06. 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424회 행정사회분과 (2010. 07. 15)	재심의 1	강화 1 *중요 1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2회 본회의 (2010. 09. 09)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신설 2 *중요 2
변호사법	제165회 예비심사 (2010. 10. 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외국법자문사법	제431회 행정사회분과 (2010. 10. 28)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 2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176회 예비심사 (2010. 11. 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철회권고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5 재심의 1	신설 6 강화 2 *중요 5, 비중요 3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강화 1)

■ 심사내용

○ 외국인 입국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기준을 정함. 입국심사시, 양손 둘째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대체하여 제공할 수 있는 손가락의 지문을 순차적으로 정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및 순서에 대한 절차를 규정(강화)

☞ 피규제자가 약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나, 출입국관리법에 근거가 있고 이에 대한 필요성 및 적정성은 두차례의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 사안임. 법적근거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순서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사안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신설 1)

■ 심사내용

○ 국민의 배우자 등에 대한 거주(F-2)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풍속에 반하는 업소에서 유흥종사자 등으로 취업활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영업)활동 하는 것을 금지(신설)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이미 노래방도우미로의 취업활동을 금지하는 규제가 있는 점, 국민의 배우자 이외의 대상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받도록 할 것(재심의 예정)

(3)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신설 2)

■ 심사내용

○ 질서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재인 과태료의 하한 5천원으로 정함(신설)

☞ 대부분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과태료 부과액수를 명시하고 있어 과태료 최저기준 신설의 필요성이 낮은점, 5천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법령위반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달성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에 대하여 철회 권고

○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의 운행이 금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영치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의 범위(누적금액, 위반횟수 등)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

(4) 변호사법(신설 1)

■ 심사내용

○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손해배상준비금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일정 기간 예치하도록 의무화 함(신설)

☞ 현재에도 법무법인(유한)에 관해서는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법무법인 해산시 청산인이 손해배상준비금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 새로운 금전적부담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5) 외국법자문사법(신설 2)

■ 심사내용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이하 외국로펌)가 국내법률사무소 등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로 공동처리하고 수익을 분배하기 위해서 외국로펌의 대표자는 변협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관련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성명을 변협에 신고하여야 함(신설)

☞ 공동사건 처리를 위한 등록 및 취소사유가 통상협상의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인 점, 규제의 정도가 적정한 점(1회 등록시 업무수행가능), 미국 · EU와의 3단계 추가 개방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축적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동의

(6)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신설 1)

■ 심사내용

○ 국적상실사유 및 해당범죄를 구체화 함(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점, 피규제자수가 후천적 복수국적자 일부로 한정되는 점, 국제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5. 국무총리실

* 집필자 : 김태현 사무관(Tel. 2100-2279, ki555@pmo.go.kr)

가.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0년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신설 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하였고, 2건은 개선 권고, 2건은 원안 의결 되었음

[국무총리실 소관 법령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228회 본회의 (2010. 3. 18) 229회 본회의 (2010. 4. 8)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신설 4 *중요 3,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신설 4 *중요 3, 비중요 1

나. 2010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녹색기술 · 녹색산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녹색인증 취소사유(신설)

☞ 사실상의 확인 제도로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

○ 관리업체 지정 기준 등(신설)

☞ 소규모 직영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관리업체 지정업체 고시때 제외 여지를 열어두는 보완장치로서의 평가절차 마련, 배출량 최소기준에 근접하는 소규모 관리업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리업체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목표관리제의 실질적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하는 등 관리업체 부담 완화방안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

○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등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관리업체의 이행계획 실적 보고서 및 명세서 제출 의무, 명세서의 공개(신설)

☞ 온실가스 감축 조기이행실적 인정범위는 향후 제정될 배출권거래제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시행령(안) 해당 조문(부칙 제3조) 삭제하고 관리업체가 다수 부처로부터 이중으로 규제받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기관을 단일화 할 것, 지속적인 업계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관리업체별 합리적인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

이행계획서 수정명령 기한을 12월말로 할 것, 이행실적보고서와 명세서를 통합한 양식을 개발 · 활용

시행령(안) 제33조 제1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상의 비밀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부분 삭제, 녹색성장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정보공유 필요성이 있는 정부출연기관의 범위를 특정하고, 해당 정부출연기관에 대해 정부에 준하는 정보보안체계 마련을 의무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명세서상의 비공개대상 정보는 제외한 후 공개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영업비밀 항목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지침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선 권고

○ 과태료의 부과(신설)

☞ 규제비용증가가 미미하고 자체심사결과 및 관련 부처,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를

제4장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제1절 규제 일몰제 확대 도입

제2절 미등록 규제 정비

제3절 규제정보화 추진

제4절 행정조사 제도 운영

제5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제6절 규제개혁과제 성과점검

제1절

규제 일몰제 확대 도입

* 집필자 : 오성호 사무관(Tel. 2100-2280, osh9759@pmo.go.kr)

1. 규제 일몰제 개요

일몰제도 또는 일몰법(sunset law or sunset legislation)은 정부의 조직, 법규, 사업, 예산 등에 폐지기한(deadline)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재승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종결되도록 하는 제도로 각국에서 행정개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규제영역에 대한 일몰제 도입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규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여 규제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규제존속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종결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규제실패를 방지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규제의 양적 축소, 규제완화를 통한 정부의 효율성 제고 및 기한도래시 규제에 대한 존속필요성 검토로 규제기관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 및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에 대해서 존속기한을 둘 것을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기존 규제일몰제 운영의 문제점

'97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규제일몰제 도입근거를 마련하여 각 부처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규제일몰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존속기한을 설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의 규제일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몰도래시 규제연장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해당규제가 폐지되도록 하는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를 주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일선부처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일몰제 적용시 법적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 소극적으로 규제일몰제를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

3. 규제 일몰제 도입 확대

이러한 기존 일몰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개혁을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재검토형 일몰제"는 기존의 "효력상실형 일몰제"와 달리 일정 기간도래시 규제의 적정성 및 존속여부 등을 검토하는 일몰제로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기적으로 존속여부를 재검토함으로써 일몰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이다.

[규제일몰제 유형]

구 분	효력상실형 일몰제	재검토형 일몰제
내 용	– 일몰기한 도래시 효력을 상실 – 기한 연장을 위해 별도의 입법조치 필요	– 일몰기한 도래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폐지, 개선 등을 재설계 – 재검토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입법조치 불필요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09.11월 1차적으로 28개 부처 총2,148건의 경제적규제 중 558건(26%)에 대해 일몰을 설정하였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기존의 일몰제인 효력상실형 일몰이 적용된 것은 14건(2.5%)이며 재검토형 일몰이 적용된 것은 544건(97.5%)으로 새로운 일몰방식 도입에 따라 일몰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일몰주기별로는 3년형이 92.5%로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5년형이 5.4%를 차지하였다. 부처별로 보면 평균 20~30% 수준에서 일몰을 설정하였으며, 일몰규제 건수는 국토부와 금융위가 266건으로 전체의 48%에 달하였다.

경제적규제에 대한 1단계 일몰설정에 이어 규제개혁위원회는 '10.6월 2차적으로 28개 부처 총 4,692건의 사회 · 행정적규제 중 1,044건(22%)에 대해 일몰을 설정하였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기존의 일몰제인 효력상실형 일몰이 적용된 것은 66건(6.3%)이며 재검토형 일몰이 적용된 것은 978건(93.7%)으로 새로운 일몰방식도입에 따라 일몰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일몰주기별로는 3년형이 84.8%로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5년형 등이 15.2%를 차지하였다. 부처별로 보면 평균 20~30% 수준에서 일몰을 설정하였다.

'09년~'10년에 걸친 1,2단계 규제일몰 확대를 통해 등록규제 총 6,876건 중 1,602건(23.3%)에 대해 일몰을 설정하였다.

일몰제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일몰제가 적용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가능해져 앞으로 규제의 현실 적합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또한 모든 등록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정비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몰대상 규제는 관보에 고시하여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미등록 규제 정비

*집필자: 이병호 사무관(T. 2100-2276, bhlee@pmo.go.kr)

1. 개요

우리나라 규제개혁이 체계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9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80년대와 '90년대 전반에도 규제개혁이 있었지만 '80년대는 행정개혁의 성격이 크고, '90년대 초반에는 행정쇄신위원회 등 여러개의 조직에 의해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다.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도입되는데, 바로 규제등록제도이다. 규제등록제도는 각 중앙부처가 자신의 부처에서 운영하는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있는 모든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전 중앙부처에 존재하는 규제의 총량과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제를 국민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으로 상당히 획기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제판단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등록규제수를 줄이려는 부처의 소극적 태도, 각 부처의 규제등록 여부를 확인 · 관리하는 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다수 존재하는 등 규제등록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였다.

2. 법령상 미등록규제 정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규제등록제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는 '09년 한해동안 각 부처의 법령상 미등록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진행해 2,276건의 미등록 규제를 발굴해 등록을 완료하였다. 이와 더불어 규정이 다소 모호해 적용상 이견이 생길 수 있는 규제판단기준을 명확히하고 규제등록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 ·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심사제도와 연계한 규제정보화시스템(RIS)을 구축('09.8)하는 등 규제등록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3.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 정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는 '09년 법령상 미등록규제 정비를 마무리한데 이어 '10년에는 각 부처의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상 미등록규제 정비에 나섰다. 규제개혁은 등록규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미등록규제의 상당수는 규제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특히,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발령하는 행정규칙 중에는 그동안 미등록규제가 상당히 많이 존재해왔기 때문에 이를 발굴 · 등록하는게 시급하였다.

이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는 '10년 2월~5월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양태 파악 및 효율적인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해양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청 등 3개 부 · 청의 행정규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6월에는 '행정규칙상 미등록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행정규제 판단기준'도 보완하였으며, 7월부터 연말까지는 여타 31개 부 · 처 · 청 행정규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각 부처의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를 발굴했으며, 부처협의를 통해 등록대상을 확정지었다.

전수조사 결과, 34개 부 · 처 · 청 소관 행정규칙 총수는 7,982건이었으며, 유형별로 보면 고시 3,595건(45%), 훈령 2,974건(37.3%), 예규 1,070건(13.4%), 지침 292건(3.7%), 기타 공고 등이 51건(0.6%)이었다. 7,982건 중 규제가 포함되어 등록대상 행정규칙으로 분류된 것은 총 927건(11.6%)으로 확인되었으며, 유형별로 보면 고시 830건(89.5%), 훈령 46건

(5%), 예규 28건(3%), 지침 18건(1.9%), 공고 5건(0.5%)으로 대부분이 고시였다.

이번에 발굴된 규제는 2011년 1/4분기까지 차질없이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며, 법령상 주규제의 부수규제로 등록하되, 행정규칙 단위로 등록될 것이다. 이번 정비작업으로 등록되는 행정규칙은 규제심사를 반드시 거치게 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향후 행정규칙상 불필요한 규제생산이 상당부분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처별 미등록규제 정비 결과]

부처명 (34개)	소관 행정규칙수						등록대상 (B)	등록비율 (B/A, %)
	합계(A)	고시	훈령	예규	지침	기타		
기획재정부	171	61	58	20	31	1	5	2.9
교육과학기술부	288	161	107	16	4	–	30	10.4
외교통상부	126	9	55	61	1	–	2	1.5
통일부	81	16	56	9	–	–	11	13.6
법무부	337	8	156	157	16	–	3	13.6
국방부	465	1	299	71	94	–	2	0.4
행정안전부	258	75	87	90	5	1	2	0.7
문화체육관광부	202	77	96	19	6	4	9	4.5
농림수산식품부	833	662	150	21	–	–	77	9.2
지식경제부	654	519	91	25	19	–	45	6.9
보건복지부	269	181	46	41	1	–	39	14.5
환경부	422	237	126	59	–	–	66	15.6
고용노동부	329	201	71	57	–	–	8	2.4
여성가족부	73	27	32	14	–	–	–	0
국토해양부	612	347	142	56	55	12	177	28.9
방송통신위원회	178	120	46	1	–	11	73	41
공정거래위원회	151	57	34	28	31	1	41	27.1
금융위원회	83	57	26	–	–	–	26	31.3
국민권익위원회	39	–	26	13	–	–	1	0
국가보훈처	88	5	74	8	1	–	6	6.8
국세청	228	129	99	–	–	–	14	6.1
관세청	284	131	148	5	–	–	22	7.7
통계청	62	5	39	18	–	–	1	1.6
병무청	97	2	88	7	–	–	–	0
경찰청	234	10	147	77	–	–	3	1.3
소방방재청	293	150	94	35	10	4	120	41
문화재청	100	3	68	29	–	–	2	2
농촌진흥청	110	28	74	8	–	–	7	6.4
산림청	136	29	68	21	18	–	7	5.1
중소기업청	163		59	–	–	17	6	3.7
특허청	126	42	78		–	–	3	2.4
식약청	202	127	41	34	–	–	110	54.5
기상청	100	14	85	1	–	–	–	0
해양경찰청	188	17	108	63	–	–	9	4.8
합 계	7,982	3,595	2,974	1,070	292	51	927	11.6

* 식약청의 경우 소관 행정규칙이 누락없이 旣등록 · 관리중임을 확인

4. 결론

2년여에 걸친 법령 및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의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정부규제의 총량 파악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규제 관리의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보다 내실있는 규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가 관리하는 규제와 국민이 느끼는 규제를 일치시킴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등록규제 정비 등 규제등록제도의 내실화 작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총리실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가 병행되어야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제3절

규제정보화 추진

* 집필자 : 이미경 사무관(Tel. 2100-2322, lmgjae@pmo.go.kr)

1. 추진배경 및 경과

이명박정부 들어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고 아젠다로 관리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규제 관련 정보나 이력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필요한 규제 정보에 대한 검색도 어려워, 규제 관련 정보관리와 규제등록관리, 규제심사 등 규제개혁 업무에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08. 3월 규제개혁 차관회의에서 국무총리실내에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규제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08.4)하고, ISP사업 발주 및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08.7~11)

이렇게 수립된 규제정보화 추진전략을 토대로 '09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09년에는 1단계 사업(2~8월)으로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제심사지원시스템 ▲규제등록관리시스템 ▲규제과제관리시스템 등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10년에는 2단계 사업(4~10월)으로 ▲(부처 자체)규제심사지원시스템 구축 ▲규제정보포탈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2. 규제정보화 사업 내용

(1) 규제정보관리 및 검색기능 강화

기존의 규제등록시스템이 단순한 규제등록 정보를 부처별, 법령별로만 제공하고 있어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은 수요자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의 생성 · 변동 · 소멸 과정 등 규제에 관한 정보를 DB화하고, 규제내용, 규제심사결과, 규제성격 등 다양한 검색 항목을 제공하였다.

또한 규제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부수규제관리 기능을 구현하고, 등록이 누락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단계부터 절차별로 규제를 관리하도록 하여 규제등록 변경사항 및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2) 규제개혁 과제 관리시스템 구축

매년 부처에서 규제개혁추진지침에 따라 발굴하여 추진하는 규제개혁과제, 경제5단체 건의과제 등 각종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등 과제의 종류별, 완료시기별 등으로 실적관리, 이행상태 점검, 과제관련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제관리를 규제등록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규제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3) 규제심사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규제심사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부처 자체)규제심사지원시스템과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제심사지원시스템으로 나누어진다.

(부처 자체)규제심사지원시스템은 법령의 신설 · 개정건에 대해 부처 내부에서 안건을 작성하여 심사하는 자체규제심사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부처별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던 양식과 절차를 표준화하고 심사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제심사지원시스템은 (부처 자체)규제심사지원시스템과 연계되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인 안건을 접수받아 예비심사를 거쳐 분과위 · 본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렇듯 규제심사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전산화하여 규제심사 관련 자료와 심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난 심사정보 검색이 용이해졌고 관련 통계자료의 체계적 제공이 가능해져 효율적인 심사업무가 가능해졌다.

(4) 규제정보포털 구축

'10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을 위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규제정보포털로 개편하여 국민에게 좀 더 다양한 규제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부부처의 각종 규제보도자료 등 규제동향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한곳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기존에 행정위주로 서비스하던 규제등록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업종별 · 분야별로 카테고리화하여 보여주는 "분야별 규제정보서비스"를 추가하였다.

또한 국민이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제뉴스레터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11년에는 규제정보화 3단계 구축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3월에 시스템 구축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9월까지 구축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축내용은 ▲규제정보포털의 기능 고도화(규제정보포털의 분야별 규제정보서비스 확대, 국민생활불편 개선과제 추진상황 공개 등) ▲규제정보화시스템 기능 고도화(국민생활불편 개선과제 관리시스템 구축, 규제개혁평가 지원 기능 추가 등) ▲지자체를 포함한 규제등록정보 통합체계 구축방안 수립을 골자로 한다.

'1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도화로 규제개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규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제 4 절

행정조사 제도 운영

* 집필자 : 김태현 사무관(Tel. 2100-2279, ki555@pmo.go.kr)

1. 행정조사 운영계획 수립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2010년도 행정조사 운영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운영계획에는 조사종류, 조사근거 및 목적,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주체 및 대상, 조사기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비계획에는 정비구분, 정비내용,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전년에 비해 행정조사를 좀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였다.

또한, 행정조사 운영계획 수립시 조사권 남용 금지, 중복조사 방지 등의 기본원칙 등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 및 기업의 행정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했다.

'10년도에는 22개 부처에서 총 397건의 행정조사를 운영하였고 그 중 농림수산식품부가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통계청 43건, 식약청 40건, 환경부 33건, 문화체육관광부 32건의 순이었다.

2. 행정조사 정비 추진

가. 추진배경

국민의 권익침해방지 및 기업의 실질적인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정조사 정비를 추진 · 점검

나. 행정조사 정비 기준

(1)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폐지

○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조사만 존치시키고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행정조사 폐지

(2) 행정조사기준 완화

○ 행정조사 대상 업종별 성수기 등을 피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거나 행정조사의 횟수, 주기 등을 완화 · 조정

○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

○ 기술발전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 현장조사 및 서면에 의한 조사 등을 on-line 등에 의한 조사로 전환하는 등 조사방법 개선

(3) 공동조사 대상발굴 및 실시

○ 기업 및 사업자 단체 · 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동조사 대상이 되는 행정조사 자체 발굴

○ 동일 · 유사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간 공동조사 실시

(4) 자율관리체제로의 전환

○ 행정조사 사항을 조사대상자가 자체적으로 조사 · 신고하면, 이를 행정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기업의 행정조사 자율준수 program의 도입을 확대 · 활성화

(5) 행정조사 근거법령의 정비

○ 행정조사의 근거가 원칙적으로 법령에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법령상의 명확한 위임 없이 자의적 · 편의적인 지침 · 계획 등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금지

○ 개별 행정조사의 근거규정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

3. 행정조사 정비내용('10년도 정비사례)

전체 397건의 행정조사 중 43건(11%)의 행정조사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중 34건(79%)을 정비완료하고, 아울러 다수의 관련 개별규정들을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다.

가.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폐지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소 출입검사를 폐지(식약청)하는 등 1건 정비

나. 행정조사기준 완화

○ 종돈장 방역관리 실태 점검주기를 반기별 1회에서 연 1회로(농림부) 완화, 취급제한 · 금지물질 영업자 관리감독 주기를 연 2~4회에서 1~3회로 완화(환경부) 하는 등 15건 정비

다. 공동조사 실시

○ 전국 사업체 조사, 건설업 · 도소매업 · 서비스업 등의 공동조사 등(통계청) 11건 정비

* 조사시기가 유사한 각종 행정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여 조사대상 부담완화 도모

라. 자율관리체제로의 전환

○ 국제 출원비용 지원사업 결과보고, 특허기술 상설 장터 운영 결과보고(특허청) 등 5건 정비

마. 행정조사 근거법령 정비

○ 보세운송업자 정기점검, 특별통관업체 정기점검 등의 근거 고시 개정 등 2건 정비

제5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 집필자 : 전예진 사무관(Tel. 2100-2307, yjchun@pmo.go.kr)

1. 개관

규제개혁 국제협력의 가장 큰 부분은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를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제도 · 정책 · 수단의 현황과 추진성과를 정확히 알리고 선진국의 규제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그 외에 규제개혁과 관련된 기타 국제회의 참석과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경험전수 등의 대외협력 업무가 있다.

OECD 회의와 관련하여 규제정책위원회('10.4월, 10월) 및 OECD 규제 인지도조사 워크숍('10.6월)에 참석하였으며, 그 외에 APEC 경제위원회('10.9월)에도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를 적극 소개하였다.

또한 규제개혁 관련 대외협력도 강화하여, KOICA · KDI 등과 연계하여 12개국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경험을 전수하였다.

2. OECD 국제회의 참석

가.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10.4.14~16, 프랑스 파리)

'10.4.14~16 개최된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는 전자입법과 열린 정부, 행정간소화 전략, 규제개혁 국제협력 확대, 규제 인지도조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 전자입법과 열린 정부

○ OECD 사무국은 정부 투명성 제고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Web 2.0 기술 등을 활용한 전자입법과 열린 정부 관련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동 연구를 지지하고,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규제건의 및 각 부처의 전자 입법예고 등의 사례를 홍보했다.
- 회원국들은 연구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행정간소화 전략

○ OECD 사무국은 EU국가의 행정부담 감축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부담의 선측정 · 후감축, 전자정부의 적극적 활용 등의 정책 제안을 담은 행정간소화 보고서 최종(안)을 발표했다.

- 우리나라는 보다 다양한 국가의 사례 포함 필요성을 제기하고, 일몰제 확대 및 IT 기술을 활용한 행정부담 감축 등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 사무국은 국가별 추가 사례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9월에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 국제협력 확대

○ OECD 사무국은 비회원국 및 여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05년 작성된 APEC-OECD 규제개혁 체크리스트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회원국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사무국은 '05년 이후 각국의 규제개혁 발전정도 반영 및 APEC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동 개정작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4) 규제 인지도조사(Perception Survey)

○ OECD 사무국은 터키 정부와 협력하여 규제 인지도조사 워크숍을 '10.6.21~22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무국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만족도조사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동 워크숍 참석 및 사례발표를 요청하였다.

나. OECD 규제 인지도조사 워크숍(OECD Workshop on Measuring Progress in Regulatory Reform, '10.6.21~22, 터키 이스탄불)

'10.6.21~22 개최된 OECD 규제 인지도조사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개혁 만족도조사 사례를 발표하고 OECD 회원국의 규제개혁 성과평가 동향을 파악했다.

(1)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만족도조사 사례 발표

○ 최근 우리정부가 규제의 품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였던 규제개혁 만족도조사 모델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 방안을 중점 소개하였다.

- 규제만족도 측정항목 세분화, 조사대상 확대 등 개선된 Survey Design의 주요 내용과 이를 적용한 2008년 규제개혁 만족도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 규제개혁 평가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을 부각하였다.
- 특히 우리나라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과 시민의 만족도 측정 결과, 규제의 양 감축

보다는 정부와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간의 커뮤니케이션 수준에 따라 만족도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발견되므로, 규제개혁 성과 평가에 있어 규제개혁 과정의 투명성 제고, 협력채널 마련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한편, 각국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만족도조사 개선 사례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조사방식의 타당성, 측정결과의 신뢰성, 활용방식의 유용성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2) OECD 국가의 규제개혁 성과평가 정책 동향 파악

○ OECD 사무국은 규제개혁 만족도조사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고, 향후 규제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유용한 지표(Indicator)이나, 측정의 신뢰성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또한 만족도조사 이외에 행정비용 감축 노력, 시민들에 의한 규제개혁 평가 등 규제개혁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각국별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상호 벤치마킹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 캐나다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만족도조사 이외에 성과관리기법을 규제개혁분야에 적용하여 규제 분석 및 영향평가를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 CDSR(Cabinet Directive on Streamlining Regulation)이 규제영향분석을 담당하고 있고, 중요한 규제(high-risk impact regulatory programs)에 대해서는 규제 성과 측정 및 목표달성 여부 모니터링, 성과 미달성시 규제프로그램 조정, 대국민 공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0개 규제 프로그램에 대해 성과관리 기법을 적용중이다.

○ 영국은 고객이 안전, 건강 규제와 기업 활동 규제에 대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므로 규제개혁 성과와 만족도간에 괴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 이를 줄이기 위해 만족도 측정시 심층적 면접방식 등을 채택하여 규제개혁의 이익에 대한 설명 등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으며, 규제 특성에 따라 측정지표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비해 기업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기업이 체감하는 행정부담이 크게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므로, 만족도 조사와 행정부담 감축(Reducing Red Tape)을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다. OECD 규제정책위원회 및 국제 규제 컨퍼런스('10.10.27~29, 프랑스 파리)

'10.10.27~29 개최된 OECD 규제정책위원회 및 국제 규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개혁을 홍보하였다.

(1)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의장단 참여

○ 규제정책위원회 의장단의 새로운 멤버(Bureau Member)로 우리나라 국무총리실 경제규제관리관이 선임되었다.

– OECD 사무국은 의장단의 지역적 구성* 및 경제규제관리관의 OECD 근무 경험 등을 고려시 우리나라의 의장단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지지하였으며,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회원국이 이에 동의하였다.

* 네덜란드(의장), 이탈리아, 미국,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멕시코

(2) 국제 규제 컨퍼런스 참석 및 영문브로셔 배포

○ 「갈림길에 선 규제정책: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향하여(Regulatory Policy at the Crossroads: Towards a New Policy Agenda)」를 주제로 국제 규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회원국 및 비회원국, 국제기구 등 약 300여명 참석).

– 회복과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 규제의 사회적 영향 측정, 녹색성장을 위한 더 좋은 규제, 규제분야 국제협력 강화 등의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 우리나라는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를 소개하는 영문브로셔를 배포 · 홍보하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과 규제개혁에 대한 사례발표를 했다.

-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은 규제개혁이 많은 도전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동 컨퍼런스가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이론과 현실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3. APEC 국제회의 참석

가. APEC 경제위원회(APEC Economic Committee, '10.9.19~20, 일본 센다이)

'10.9.19~20 개최된 APEC 경제위원회에서는 구조개혁 정상의제 진전평가 보고서 초안 승인 및 관련분야 재편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1) 구조개혁 정상의제(LAISR)* 진전평가 보고서 초안 승인

○ 경제위원회(EC; Economic Committee) 의장은 회원국들의 구조개혁 성과 및 성공요인, 향후 발전방향 등으로 구성된 LAISR 보고서 초안을 소개하였다.

- 우리나라는 최근의 규제개혁 성과로 한시적 규제유예 등을 소개하고, 성공요인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실 등 효율적 체계와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한 정부의 리더십을 강조하였다.

* LAISR(Leaders' Agenda to Implement Structural Reform, '04~'10) : '04년 APEC 정상회의는 구조개혁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역내 무역 투자 자유화를 위한 제도적 역량 배양에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아래 구조개혁 5개 분야를 선정 ①규제개혁 ②경쟁정책 ③공공부문개혁 ④기업지배구조 ⑤경제적 · 법적 인프라 강화

(2) 구조개혁 정상의제(LAISR) 분야 재편

○ '10년 말 종료 예정인 LAISR에 대한 EC의 향후 활동방향 재편 관련, 일부 회원국들이 분야별 의장소그룹협의체(FotC: Friends of the Chair) 조정국으로 자원하여 EC의 승인을 받았다.

- ①규제개혁(일본), ②경쟁정책(호주), ③공공부문개혁(대만), ④기업환경평가(EoDB: Ease of Doing Business-미국), ⑤기업지배구조 · 법(미정)

○ 규제개혁 FotC 조정국을 맡은 일본은 회원국의 규제개혁 경험 공유, APEC-OECD 규제개혁 체크리스트* 개정 등을 향후 활동계획으로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는 규제개혁이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속적인 경험 공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최근의 규제개혁 발전 현황 반영 및 OECD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체크리스트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지하였다.

- 호주(기존 규제개혁 FotC 조정국)는 기존 규제에 대한 검토, 일몰제, 공공협의 과정 등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제안하였다.

* APEC과 OECD가 규제품질 제고를 위하여 '05년 개발한 자가진단 도구(분야: ①규제개혁 공통기준 ②규제정책 ③경쟁정책 ④시장개방)

4. 규제개혁 경험전수 : 개도국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교육

KOICA · KDI 등과 연계하여 9차례에 걸쳐 12개국(인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공무원 214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의 필요성, 규제개혁 추진체계, 규제개혁 전략, 주요 사례, 성공요인 등 우리나라 규제개혁 경험을 전수하였다.

시 기	국 가
'10.1월	부탄
'10.5월	튀니지
'10.6월	튀니지, 우즈베키스탄
'10.7월	이라크, 인도,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10.8월	아프가니스탄
'10.12월	베트남

* 인도, 파키스탄, 네팔,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제 6 절

규제개혁과제 성과점검

* 집필자 : 양지연 사무관(Tel. 2100-2275, yang2105@pmo.go.kr)

1. 추진배경 및 개요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규제개혁을 국정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기업환경개선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정비하였으나, 국민의 인지도 및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께서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정비완료된 규제개혁과제의 성과점검할 지시함에 따라 총리실은 각 부처별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였다.

〈성과점검 개요〉

■ 점검대상과제

○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현장의 집행실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확대 등 구체적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

①산업단지 등 입지관련 규제 개선 ②외국인투자확대 및 고급인력 유치 ③국토·농지이용 규제개선 ④관광개발·체육시설 규제완화 및 관광레저산업 규제개혁 ⑤창업절차 개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활동 개선 ⑥환경규제 선진화 ⑦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해소 및 영업활동 개선 ⑧주거, 복지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 ⑨콘텐츠산업 규제개혁 금융산업 규제완화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 규제개혁 각종 민원업무처리절차 간소화 ⑩각급 학교 자율성 강화

■ 주요 점검사항

○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실태

- 업무 미숙 또는 법령이 소극적 해석 등에 따른 폐지·개선된 규제의 관례적 운영 여부
- 고시·훈령·지침 등 하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실태

○ 제도개선이후 성과 및 개선필요사항, 집행실태 파악 및 문제점 분석
* 기업들의 투자실적, 고용창출규모, 민원처리 단축기간 등 구체적인 성과, 부진과제에 대한 원인분석(추진체계, 의견수렴, 사후관리 등) 등을 중심으로 점검

○ 기타 추가적 제도 개선 필요사항

2. 성과점검 총평

규제개혁과제가 대체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체감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 전경련 회원사 만족도 조사 결과 : 8.9%('08.2) → 27.1%('09.2) → 39.1%('10.2)

※ IBRD(세계은행)의 2010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0")에서 183개국 중 19위로 평가되어 최초로 10위권 진입(전년대비 4단계 상승)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공무원의 업무 숙지 등은 잘 이루어지고, 공장증설 등 제도개선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하위법령 개정 등 일부 후속조치가 미흡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3. 세부 점검결과

가.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분야

(1) 창업절차 단축 · 투자 촉진

○ 최저 자본금제 · 채권매입의무 폐지, 소규모기업 공증면제

○ 대규모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2) 산업입지 · 토지이용 규제 개선

○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48개월 → 6개월)

○ 상수원보호구역 폐수비배출공장 이격거리 완화(10~20km → 7km)

○ 농어빈흥지역해제시 대체지정제 폐지, 한계농지의 비농업인 소유 완화

(3) 수도권 규제 합리화

○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제한 폐지, 과밀억제권역 증설 허용업종 확대

○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비배출공장 허용, 공장총량제 완화(연면적 200㎡ → 500㎡)

나. 신성장동력 창출

(1) 녹색성장 · 인력 양성

○ 기존발전소 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허가 면제 등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 외국 전문인력의 거주 ·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

(2) 금융 · 서비스산업 활성화

○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4% → 9%), 합병목적의 SPAC 설립 허용

○ 방송산업에 대한 대기업 · 신문 소유규제 완화, SW 분리발주 의무화

○ 외국인 환자 국내병원 유치 · 알선 허용 및 비자제도 개선

(3) 관광 · 여가산업 진흥

○ 관광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경기장 내 수익시설 설치 허용

다. 중소기업 · 서민 지원

(1)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공제율(20% → 40%) · 공제한도(30억원 → 100억원) 상향

○ 재래시장의 신용카드 수수료율(2.0~2.2% → 1.6~1.8%) 인하, 외국인 5년 계속고용 허용

(2) 서민, 취약계층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요건 완화(소득 · 재산기준 완화 등)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제도 도입,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 완화

(3) 농림어업 및 전통주

○ 농산어촌 분야 애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개선안 마련(100개 과제)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법」 제정, 전통주 인터넷 판매 허용 등 전통주 산업 기반 확충

라. 국민생활 편의 증진

(1) 민원업무 간소화

○ 인감증명 요구 209종 중 120종 감축

○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1,199종 → 1,800종)

○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도로주행연습 폐지, 의무교육시간 단축 등)

(2) 국민부담 경감

○ 영업자 ·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폐지 · 완화(교육대상 약 100만명)

○ 군사시설 보호구역 범위 축소, 군 협의기준 마련

(3) 학력 자율성 강화, 학력규제 완화

○ 학교 자율성 강화(358개 학교운영지침 폐지, 대입전형업무의 대학교육협의회 이관)

○ 공공부문 임용, 승진 및 보수 산정상의 학력규제 폐지 · 완화(총 287건)

마. 법질서 확립 및 국격 향상

(1) 법질서 확립, 범죄 예방

○ 국민불편 법령 및 각종 행정규칙 정비

○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위치추적장치 제도 도입

⑵ 과태료 · 과징금, 행정형벌 합리화

○ 과태료 · 과징금의 부과요건 · 금액 합리화, 이중적 제재 개선

○ 행정형벌의 과태료화, 불합리한 형벌규정 폐지

(3) 국격향상

○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 외국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허가 등 국적제도 개선

○ 직진우선 신호체계 개선, 비보호 좌회전 확대 등 교통신호 체계 합리화

4.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강도높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인허가방식의 네거티브 전환, 각종 영업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일선기관에 대한 이행점검 및 규제개혁 내용에 대해 정책수요자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를

제5장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10년 규제개혁 평가

제2절 외부전문가 평가

제3절 2011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제 1 절

2010년 규제개혁 평가

* 집필자 : 양지연 사무관(Tel. 2100-2275, yang2105@pmo.go.kr)

1. 규제개혁평가 개요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31개 중앙행정기관의 1년간 규제개혁 실적과 성과를 부 단위(18개)와 청 단위(13개)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40개 중앙행정기관 중 등록규제, 규제개혁과제나 신설 · 강화규제가 없는 통계청과 농촌진흥청 등 9개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평가항목은 규제개혁과제 발굴, 신설 · 강화 규제의 적절성, 이행실적과 효과, 고객만족도로 크게 나누어 평가를 하였으며, 계획과 집행보다는 규제개혁의 효과와 만족도 등 산출과 결과 측면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2008년부터 규제개혁추진에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단」을 구성 ·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및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연구기관(한국행정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다.

2. 2010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2010년의 규제개혁의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및 미래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관광 · 방송통신 등 서비스산업, 국토 · 환경 관련 규제를 포함, 총 1,375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10.10월말 기준으로 838개 과제를 완료(계획 969개 대비 86.5%)하였다.

또한 전자금융거래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등 중소기업 애로해소(14건, '10.5), 농산어촌 현장애로 개선(100건, '10.6)등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 중점 추진하였으며, 또한 정부 · 공공기관 등의 채용 · 승진상의 학력규제를 287건을 발굴 · 개선('10.7)키로 하는 등 불합리한 진입규제를 정비하였다.

일정주기로 규제내용을 재검토하는 규제일몰제를 확대 도입하여 규제의 타당성 및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였으며, 각 부처 자체규제심사 지원 기능 신설 등 규제정보화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신설 · 강화규제 심사의 투명성 및 편의성 증진시켰다.

* 일몰적용 검토대상 규제 4,692건중 1,044건(22.3%)에 대해 일몰 설정('10.6)

그러나, 일부 부처는 규제개혁과제 발굴, 홍보 및 의견수렴 등이 소극적이고, 자체규제개혁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사후 정책환경변화, 관련기관 협의미흡 등으로 법령 개정이 지연되는 등 규제개혁 과제의 이행이 미진한 경우도 나타났다.

평가지표별로는, 계획단계의 '규제개혁과제 발굴의 적극성' 등의 실적은 양호한 편이나, 집행단계의 '규제개혁과제 홍보의 적극성', 산출 · 결과단계의 '규제개혁의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 단계별 평가결과

■ 계획 단계

각 부처별로 현장 의견수렴, 내부 토론 및 각종 간담회 등 충실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10년에 정비할 1,375개 과제를 발굴하였고, 경제단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과제수가 누적적으로 증가하였다.

상당수의 부처가 규제개혁과제 발굴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규제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보완책을 함께 마련 · 시행하고 있었다.

특히, 각 부처별로 국민생활 불편사항 점검 TF를 구성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규정)를 발굴 · 정비 추진하였다.

■ 집행 단계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형성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신설 · 강화규제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812건의 신설 · 강화 규제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260건의 중요규제 중 110건(42.3%)에 대해 철회 · 개선 권고('10.10말 기준)

■ 주요 심사 사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국토해양부)
- 버스운전자격 부여와 관련, 시험합격 후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해 규제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철회하도록 권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법무부)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영치의 대상이 되는 범위(위반 횟수, 체납 누적금액 등)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개선권고

전 부처별로 대체로 규제개혁위원회 철회 · 개선권고 등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주요 규제개혁 과제 발표 및 법령 입안단계에서부터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사례

○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법아! 놀자' 앱(APP)에 서민관련 규제개혁사례 등 적극 홍보(법무부)
○ 고용지원, 산업안전 등 각 부문별 추진성과에 대해 전광판, 일선기관 내 Digital TV,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고용노동부)
○ 지방청별 '규제개혁단'을 중심으로 수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주 · 임업인, 지역주민 등 수요자 의견수렴 강화(산림청)

다만 홍보 및 의견수렴이 일부 형식적으로 추진되는 사례는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산출 · 결과단계

'10년도 규제개혁 만족도는 '09년 조사결과(64.1점) 대비 2.3점 상승한 66.4점으로 어느 정도 만족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하였으며, 일반국민(1.9점 상승), 전문가(4.2점 상승) 집단의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조상대상별로는 전문가의 만족도가 70.7점으로 일반국민(64.8점), 내부고객(63.9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일반인				전문가				내부고객				종합			
	'08	'09	'10	증감	'08	'09	'10	증감	'08	'09	'10	증감	'08	'09	'10	증감
전체	59.5	62.9	64.8	1.9↑	66.3	66.5	70.7	4.2↑	60.7	63.6	63.9	0.3↑	61.9	64.1	66.4	2.3↑

제2절

2010년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 집필자 : 이종한(한국행정연구원)

1. 서론

2010년은 이명박정부 집권 3년차로 5년 임기 중 새 정부가 제시한 주요 정책들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해당한다. 잘 알려진대로 정권초기에는 친기업을 표방하면서 대기업 위주의 규제개혁 정책은 이명박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당시 전봇대로 요약되는 규제는 기업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규제와 규제담당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었다. 그러나 당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중심의 이러한 친기업 규제개혁 정책은 정권의 정책추진과정의 의사소통의 문제와 과거 회귀풍의 업무추진방식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저항을 불러일으키면서 정권의 전반적인 정책선회와 함께 일정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규제개혁 정책에 있어서도 참여정부와의 정책적 단절은 정책 측면에서는 시장친화적인 규제개혁으로 규제개혁 추진체계 측면에서는 신설강화 규제심사 및 규제등록관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복합적인 규제개혁 과제의 입안과 추진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라는 이원화된 추진체계의 구축으로 나타났다.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아 실업률은 2007년 3.2%에서 2009년 3.6%로 증가하였고 경제성장률은 2007년 5.1%에서 2008년 2.3%, 2009년 0.2%로 하락하였다.

당시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다행히 정책추진 방식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집권초기의 과감한 규제개혁은 우리나라가 OECD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빨리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성장률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집계된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된 2010년 경제성장률은 6.1%로 나타나 최근 기록한 성장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성장률과 규제개혁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검증해보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이 경제성장을 견인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규제개혁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분명히 이명박정부의 규제개혁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추동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등록 행정규칙상의 규제발굴 및 등록, 규제일몰제 확대적용 및 관리, 행정조사 일제정비, 규제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 규제관리시스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규제개혁을 위한 상시적인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2010년 한 해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규제개혁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검토해 보고 이를 전통적인 정책평가모형의 기본 틀에 따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규제개혁 평가방법에 대한 일 고찰

사실 규제개혁에 대한 일관된 평가 틀을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정책평가에서는 정책이 추진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사전, 사후 평가와 평가의 목적에 따라 목표중심, 과정중심, 결과중심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일관된 평가의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규제개혁의 경우에는 다양한 정책분야에 따라 규제의 종류와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개별 과제들의 파급효과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 과제를 정책의 집행단계에 따라 일관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일관된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분류기준은 규제의 성격과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론적 수준에서만 논의하고 있는 OECD(2004)의 규제개혁 평가모형에서는 규제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순응테스트(compliance test), 성과테스트(performance test),

기능테스트(function test) 등의 검사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평가도 정책평가에 많이 사용되는 논리모형(logic model)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며 논리모형은 정책이나 사업의 투입,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간의 논리적 연계를 보여준다. 이 모형은 각 정책집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평가요소들을 지표로 만들어 종합적인 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모형을 본 연구에서 완전히 적용하기는 어렵고 단기의 정책평가에서 초점은 투입, 산출 및 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정책목표에 따른 투입과 산출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규제개혁과 관련한 해외기관들의 평가가 다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기관들의 평가결과도 같이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3. 규제개혁의 투입측면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 중 규제와 관련된 과제들은 대부분 추진완료되거나 몇몇은 장기과제로 아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국정과제에서 설정된 목표나 과제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규제개혁 추진체계도 2008년 이후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알려진대로 현재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두 기관이기 때문에 이들 두 기관의 규제개혁 활동과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는 참여정부까지만 해도 신설강화규제의 심사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역할이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각 부처의 규제개혁 업무를 조정하고 규제개혁과제 집행을 총괄하는 역할로 다소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와 함께 각 부처의 규제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일몰제 확대적용, 한시적 규제유예, 미등록 규제발굴 및 정비 등 중요한 규제개혁과제를 완수하고 2010년에는 규제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인들이 규제에 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대안의 권고,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도입 등 규제품질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규제관리 차원에서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노력 뿐만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는 매년 규제개혁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규제개혁 지침을 발표한다. 이를 통하여 각 부처에서 한 해동안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일정을 관리하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2010년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표 1 : 2010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규제개혁방향	•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 산업체질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경제구조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 위기이후 재도약과 국격향상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 • 상시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중점 추진과제	① 규제개혁방향에 맞는 기존규제 정비 – 개별부처 자체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 –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전략과제 발굴 – 행정조사 정비를 통한 부담경감 ② 규제관리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완비 –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 추진 – 행정규칙상의 미등록규제 정비 – 규제정보화 2단계 사업 추진 ③ 신설 · 강화 규제 품질제고 – 규제영향분석의 질적수준 제고 – 우회적인 규제 신설 · 강화 대응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④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경제단체 및 다양한 통로의 건의 수렴 – 현장중심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 규제개혁 교육 및 홍보 강화

이러한 규제개혁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제시에 따라 각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는 총 1,375개에 달하며 2010년 10월 말 기준으로 838개의 과제가 완료되어 완료율 86.5%(완료대상 과제 969건 대비)를 기록하였다. 보고서 상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규제개혁의 방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에서 기존규제 정비 내용과 각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 추진상황 내용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추진방향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전략과제 여부 등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 정책방향과 추진과제의 연관성이나 전략과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0년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운영방향은 제19차 회의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기업환경 개선, 성장동력 확충, 사회자본 확충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1) 기업환경 개선

○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현장애로의 지속적 개선과 규제피해를 최소화

–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의 현장애로 개선 활동 강화

– 규제피해개별구제제도 도입 및 2~3차 진입규제 개선, 각종 인허가제도 개선 등 추진

(2) 성장동력 확충

○ 승기를 승세로 굳히기 위한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

– DMZ 관광자원화, 관광산업 및 의료산업 선진화

– 실버산업 활성화, 산학협력 증진방안 마련 등

(3) 사회적 자본 확충

○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민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 평생교육제도 선진화, 정부조직 · 인사관리 선진화

– 우편번호 등 주소체계 개편, 장묘문화 개선 등

[표 2 : 2010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과제 내용 및 실적]

회차	안건명	주요 실적
20차 회의 (3.23)	① 규제형평제도 도입방안 ②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방안	규제형평법(가칭)법률안 마련 및 국회 제출(11월), 규제형평심의 근거 마련 대상 개별법령 선정준비 등 통합브랜드개발, 한국DMZ협의회 창설, 민통선 출입조치 개선, 6.25전쟁 60주년 행사연계 등
21차 회의 (4.28)	① 엔지니어링산업 활성화 방안 ②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수출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수수료 인하(5월), 손해배상보험대상확대, R&D전략수립 등 농약수입업 등록요건중 창고면적요건 완화, 건강기능식품영업자 교육기관 추가지정 등 9개과제 완료
22차 회의 (6.23)	① 도로투자 효율화 ② 전시 · 회의 활성화 방안	지선국도 선정기준마련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개정(9월), 경제적 · 친환경적 설계를 위한 설계심의회 설치(6월) 통합MICE카드 개발 · 보급, 계절별 전시회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23차 회의 (10.26)	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② 중소 · 중견기업 생산성 혁신 전략	인허가제도 전환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계획수립, 대상법률파악 등 전후방 협력사 및 동종업체IT협업 네크워 구축지원, 중소제조업체와 SW중소기업과의 협력구축 등

*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제외 : 9차(3.23), 10차(6.23), 11차(10.26)

* 위원회 합동회의 제외 :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보고회의(9.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과제는 규제개혁을 포함한 제도개선 전반에 걸친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비해 그 포괄 범위가 훨씬 넓고 파급효과 또한 클 것으로 판단된다.

4. 규제개혁의 산출 및 결과측면

가. 규제개혁위원회

(1) 규제개혁 방향에 맞는 기존규제 정비

[표 3 : 규제개혁 방향에 맞는 기존규제 정비결과]

주요 과제	조치사항	주요성과
1 투자활성화 및 미래대비		
● 대규모 단일공장 개발행위 허가 제한 완화 (국토해양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0.4)	– 대규모 단일공장 등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없이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민간투자 촉진
● 대기배출허용 특례기준 적용 확대(환경부)	–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10.4)	– 폐수처리수준이 수질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입지 제한 완화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충전시 전기요금 반영 방안 마련(지식경제부)	– 전기공급약관 개정 ('10.8)	– 관련 제도의 선제적 정비로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
2 국민부담 경감		
●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 시행(국토해양부)	–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10.6)	– 자동차 등록업무의 온라인 처리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 경제적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
● 국유림 사용료 조정제도 개선(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7)	– 국유림 사용료 증가에 대한 상한선(9%)를 설정하여 국유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3 서민 ·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한 규정 완화(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업평가운용지침 개정('10.2)	– 재무 · 수익성은 취약하나 기술성 ·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지원 확대 * '10.9월말 기준 기술사업성전용자금을 통해 592개 업체, 1,956억원 지원
●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10.8)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양질의 일자리 확산 및 국민노후소득보장 증진에 기여 * 단시간 근로자 5만여명 가입 확대 효과

이상에서 개별 부처들이 추진한 과제들은 국회심의 지연 등으로 다소 지체된 과제들도 있으나

대다수가 계획대로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규제관리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완비

보다 효율적인 규제관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재검토형 일몰제 확대적용을 통한 주기적 규제관리는 현재의 규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규제 관리체계에 통합시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2010년 6월에 사회 · 행정적 규제에 대한 일몰제 확대적용이 완료됨에 따라 총 4,692건 중 1,044건(22.3%)으로 일몰규제가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공백없는 규제관리를 위하여 행정규칙상의 미등록규제를 정비하여 등록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조사결과 34개 부처 소관 행정규칙은 총 7,982건이며 이들 중 등록대상 행정규칙으로 분류된 것은 총 927건(11.6%)로 나타났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내부적 규칙을 정하는 것임에도 상당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 ·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이제까지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규제를 행정규칙에 규정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피해갈 수 있었으나 행정규칙상의 규제도 모두 등록관리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규제 관리의 공백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표 4 : 부처별 미등록규제 정비결과]

부처명 (34개)	합계(A)	소관 행정규칙수					등록대상 (B)	등록비율 (B/A, %)
		고시	훈령	예규	지침	기타		
기획재정부	171	61	58	20	31	1	5	2.9
교육과학기술부	288	161	107	16	4	–	30	10.4
외교통상부	126	9	55	61	1	–	2	1.5
통일부	81	16	56	9	–	–	11	13.6
법무부	337	8	156	157	16	–	3	13.6
국방부	465	1	299	71	94	–	2	0.4
행정안전부	258	75	87	90	5	1	2	0.7
문화체육관광부	202	77	96	19	6	4	9	4.5
농림수산식품부	833	662	150	21	–	–	77	9.2
지식경제부	654	519	91	25	19	–	45	6.9
보건복지부	269	181	46	41	1	–	39	14.5
환경부	422	237	126	59	–	–	66	15.6
고용노동부	329	201	71	57	–	–	8	2.4
여성가족부	73	27	32	14	–	–	–	0
국토해양부	612	347	142	56	55	12	177	28.9
방송통신위원회	178	120	46	1	–	11	73	41
공정거래위원회	151	57	34	28	31	1	41	27.1
금융위원회	83	57	26	–	–	–	26	31.3
국민권익위원회	39	–	26	13	–	–	1	0
국가보훈처	88	5	74	8	1	–	6	6.8
국세청	228	129	99	–	–	–	14	6.1
관세청	284	131	148	5	–	–	22	7.7
통계청	62	5	39	18	–	–	1	1.6
병무청	97	2	88	7	–	–	–	0
경찰청	234	10	147	77	–	–	3	1.3
소방방재청	293	150	94	35	10	4	120	41
문화재청	100	3	68	29	–	–	2	2
농촌진흥청	110	28	74	8	–	–	7	6.4
산림청	136	29	68	21	18	–	7	5.1
중소기업청	163	87	59	–	–	17	6	3.7
특허청	126	42	78	6	–	–	3	2.4
식약청	202	127	41	34	–	–	110	54.5
기상청	100	14	85	1	–	–	–	0
해양경찰청	188	17	108	63	–	–	9	4.8
합 계	7,982	3,595	2,974	1,070	292	51	927	11.6

(3) 신설 · 강화규제 품질제고

2010년에는 1,062건의 신설 · 강화규제를 심사하였는데 이들 중 326건의 중요규제의 48.5%인 158건에 대하여 철회 · 개선 권고를 하였다. 또한 중요규제에 대한 외부 전문가드의 peer-review제도를 도입하여 규제영향분석서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보다 객관적이고 충실한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도입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의 근거자료로서 규제내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각 부처의 규제영향분석이 부실해지고 신설 · 강화규제에 대한 통제가 다소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2008년 각 부처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평가결과는 평균 61.6이었으나 2009년에는 60.3으로 하락하였다. 2010년 평가결과는 다시 65.4로 향상되어 다소나마 peer-review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영향분석서의 충실도를 높이고 그 활용도를 강화하는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우회적인 신설 · 강화규제에 대한 대응과 부실하게 운영되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대한 개선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규칙상의 규제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우회적인 신설 · 강화 규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보다 중요한 의원입법을 통한 우회적인 규제의 신설 · 강화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행정부에서 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가 관건이 된다. 따라서 하루빨리 국회 차원에서 스스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에 대한 규제심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차원에서 지원과 노력의 경주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이번에는 다수 부처와 관련된 복합규제나 정책성 규제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규제 등에 대한 개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2010년도 주요 활동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된 2010년 주요활동은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 및 사회적 자본확충, 개혁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주요활동실적 홍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활동에서는 먼저 규제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규제형평제 도입, 인허가 규제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병행하여 규제개혁의

적실성 제고로 요약된다.

(1) 규제형평제 도입추진

○ 규제형평제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안」 마련('10. 11월 국회제출)

– 개별법령에 규제형평 심사 근거 마련을 위한 개별법령 선정후 2011년 중 국민권익위에 규제형평위원회 설치

(2) 기업현장 애로 개선

○ 30개 지역현장 방문, 업종간담회 68회 실시 등 현장방문을 통해 발굴된 559건의 부처협의완료 과제 중 456건 개선

* 수도용 밸브 지정심사기관의 KS인증 용출시험 · 검사수수료 인하 등

(3)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

○ 소형 항공산업 · 농약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교체시 규격제한 폐지 등 9개과제 완료

– LPG 용기판매 지역제한 폐지, 경비업 허가요건 완화 등 12개 과제 추진중

(4) 인허가 규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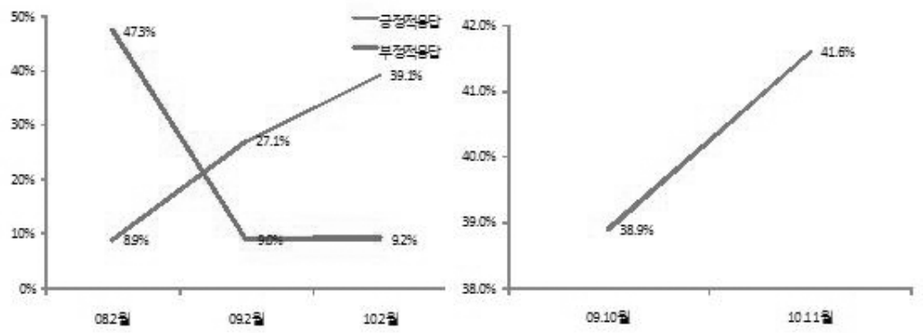
○ 인허가 규제방식을 원칙금지 · 예외허용인 Positive방식에서 원칙허용 · 예외금지인 Negative방식으로 전환

– 인허가 위원회 가이드라인 제정 등 법령정비를 2011년 6월까지 추진하고, 불합리한 인허가 27건 폐지 등 340여개 법령을 2011년말까지 정비계획

이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개혁 활동의 특징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비하여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개혁대상 과제는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보다는 오랫동안의 의사수렴 또는 논의를 통하여 합의안을 도출하고 그 평가 또한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들이다. 이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과제이행율을 보면 2010년 위원회 과제 중 입법조치는 13%, 행정조치 과제는 21% 완료된 것으로 보고된 것을 보아도 유추가능하다.

따라서 단기적 성과위주의 위원회 운영은 그만큼 규제개혁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개혁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이 추진될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개선 활동은 이명박정부가 규제개혁의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기와 함께 침체된 규제개혁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규제개혁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 전경련과 대한상의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강조하는 바대로 규제개혁 만족도는 2009년 38.9%에서 2010년 41.6%로 증가했고 부정적 응답은 감소하고 긍정적 응답은 증가하였다.

다. 해외 기관의 규제개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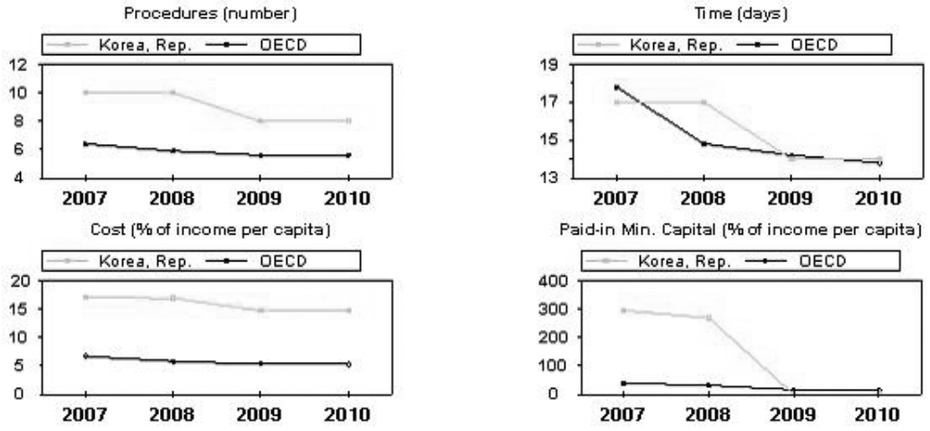
앞에서는 우리나라 내부의 관점에서 규제개혁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미 언급한 대로 규제개혁에 대한 합의된 평가기준이나 평가 틀이 없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평가기준과 시각 등을 고려하고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해외 기관들은 각 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일정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국제비교를 위하여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세계은행의 기업규제환경에 관한 보고서(Doing Business)이고 다음으로 IMD의 세계경쟁력지수(WCI),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지수(GCI), 그리고 OECD의 각 분야별 규제지수와 상품시장규제지수가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은행의 기업규제환경지수와 세계경제포험의 GCI에서 규제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규제에 대한 평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0년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한국의 기업규제환경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의 순위는 2009년의 15위에 비해 한 단계 떨어진 16위로 기록되었다(Doing Business 2011)[1].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09년에 비해 창업이 55위에서 60위로, 건축허가 처리는 22위 그대로, 재산권 등록이 72위에서 74위로, 자금조달이 14위에서 15위로, 투자자보호는 73위에서 74위로, 조세납부는 48위에서 49위로, 국경간 거래와 계약이행은 각각 8위와 5위 그대로, 폐업은 12위에서 13위로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의 순위가 OECD 회원국의 수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창업, 재산권 등록, 투자자보호, 조세납부 분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창업은 소규모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할 때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의 수, 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일)과 비용(일인당 소득의 %), 법적 최소자본금(일인당 소득의 %)를 조사하여 순위를 매긴 것이다. 우리나라는 거쳐야 할 단계가 2008년 10개에서 2009년 8개로 감소한 반면 OECD국가들은 평균 6개를 넘지 않는다. 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우리나라는 2008년 17일에서 2009년 14일로 감소하였다. 이는 OECD국가들의 평균 소요시간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인당 국민소득의 16.9%에서 2009년에 14.7%로 감소했지만 OECD 평균은 5%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두 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창업시 납입해야 하는 최소자본금은 2008년에는 일인당 국민소득의 약 268%에서 2009년에는 0%로 개선되어 OECD 평균 수준과 동일해졌다. 따라서 최근 창업과 관련된 절차와 소요시간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창업관련 절차와 소요 비용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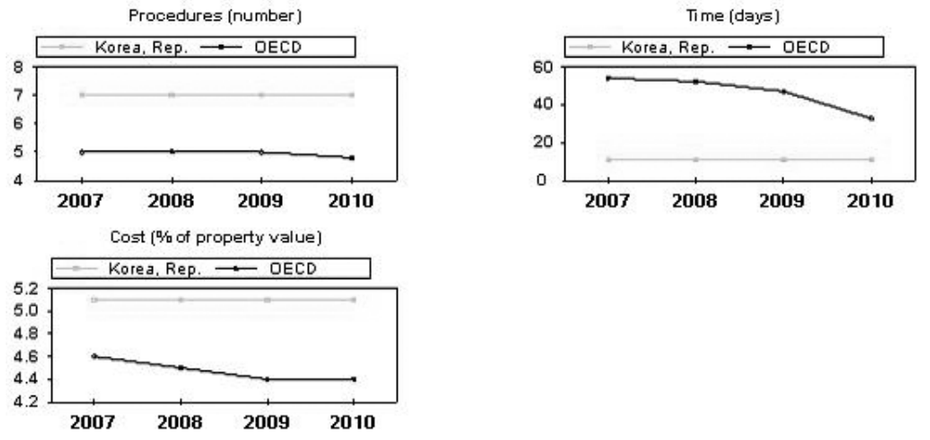
1)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2011년 Doing Business는 2010년 6월 1일 기준으로 한 조사이다.

[그림 2 : 우리나라와 OECD국가 창업관련 규제환경 비교]



다음으로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은 소규모 사업자가 소규모 토지와 부속 건물을 구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와 비용, 그리고 소요 시간을 조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럴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는 7 단계, 소요시간은 11일, 비용은 등록하려는 재산의 5.13%가 필요하다. 그러나 OECD 평균은 5단계를 넘지 않으며 소요비용도 4.4% 수준임을 감안하면 재산등록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감소시킬 개선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림 3 : 우리나라와 OECD국가 재산권 등록관련 규제환경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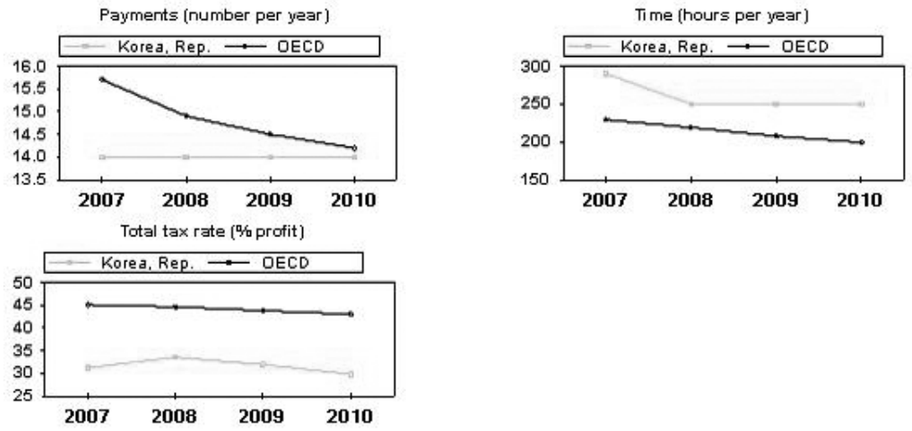


투자자 보호는 상장기업의 CEO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자기거래(self-dealing)를 할 때 소액주주들이 해당 CEO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관련 거래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이사의 책임범위, 주주의 소송 용이성 등을 조사하여 순위를 매긴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투자자 보호정도를 최저 0에서 최대 10의 지표로 환산하여 점수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는 5.3으로 뉴질랜드 9.7, 일본 7.0, 인도 6.0, 호주 5.7 등에 비해 낮은 편이며 브라질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조세납부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세금과 사회보장 성격의 각종 기여금의 수, 3개의 주요 세금납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 총 조세율을 조사해 순위를 매긴 것이다.

[그림 4 : 우리나라와 OECD국가 조세납부 관련 규제환경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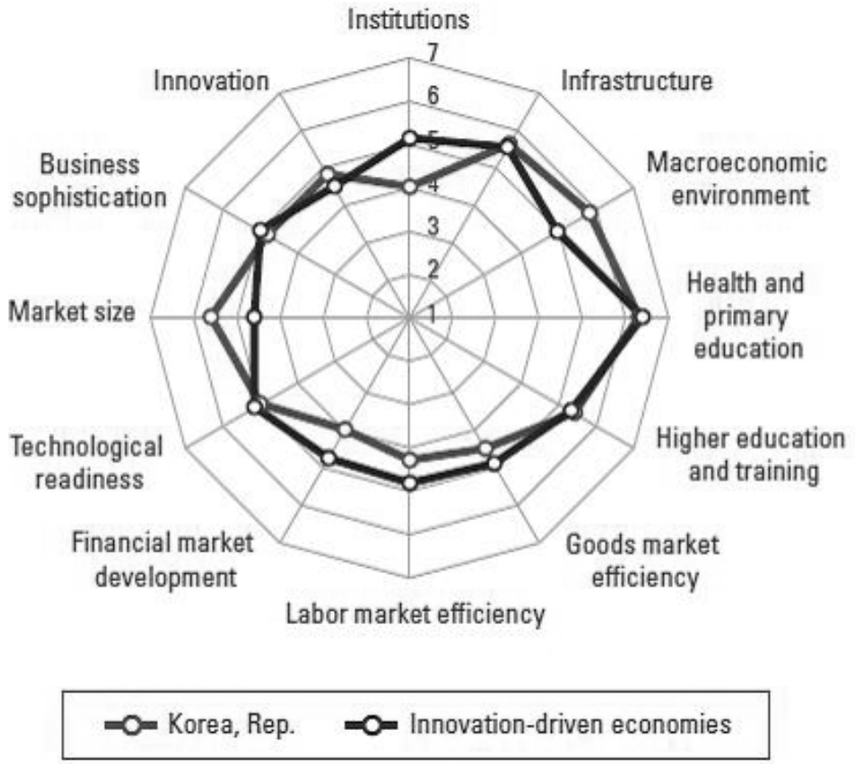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수는 14개, 소요시간은 250시간, 이윤대비 조세율은 29.8%로 나타났다. 세금의 수와 조세율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소요시간은 약 50시간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조세납부 관련 행정간소화가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0~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 지수는 7점 척도로 4.9를 획득해 비교대상

국가들 중 2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8~2009년 보고서에서는 13위, 2009~2010년 보고서에서는 19위를 기록해 매년 순위가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EF는 아래 그림과 같이 12개 분야의 경쟁력 요인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들 중 우리나라의 점수가 낮은 분야는 제도,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발전 등이다. WEF는 비교대상 국가들을 소득수준에 따라 요소주도 발전단계, 효율성 주도 발전단계, 혁신주도 발전단계의 세 가지 발전단계로 나누어 비교하는데 우리나라는 혁신주도 발전단계 국가에 속해 이들 국가들과 비교하게 된다.

[그림 5 : 우리나라와 혁신주도 국가들의 분야별 GCI 지수비교]



GCI에 나타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쟁력 요인들 중에 규제와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분야는 우리나라가 139개 국가 중에서 6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규제와 관련된 요인들 중 '규제로 인한 부담' 이 108위, '소액주주보호' 가 102위, '규제소송과 관련된 법제도 효율성' 이 87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에서는 소액주주보호를 위한 규제강화와 규제 관련 소송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대기업의 CEO들이 규제로 인한 부담감은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강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품시장 효율성은 38위로 노동시장이나 금융시장보다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인들 중에서 특히 순위가 낮은 요인들은 '시장지배력의 정도' 가 112위, '무역장벽의 존재' 가 111위, '외국인소유의 존재' 가 106위로 조사되었다.

시장지배력은 설문응답자가 생각하는 시장에서의 경쟁정도를 의미하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순위가 낮아지고 독점시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품시장은 경쟁보다는 독과점 중심임을 의미한다. '무역장벽의 존재' 는 관세, 비관세 장벽의 수출입 제한정도를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강하고 순위는 낮아진다. '외국인소유의 존재' 는 점수가 낮을수록 드문 경우를 의미하며 순위는 낮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상품시장에서 독과점을 규제하고 시장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고, 관세, 비관세 장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규제개혁이 요구된다.

노동시장 효율성은 78위인데 규제와 관련 요인들 중에서 '고용과 해고' 가 115위, '고용경직성' 이 90위로 나타났는데, '고용과 해고' 는 점수가 낮을수록 고용과 해고에 있어 고용주의 의사보다 규제로 인한 간섭이 강함을 의미하고 순위는 낮아진다. '고용경직성' 은 점수가 높을수록 고용보호규제가 강함을 의미하고 순위는 낮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노동시장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고용과 해고를 어렵게 하는 규제개선이 요구된다.

금융시장 발전은 83위로 관련 요인들 중에 '대출 용이성' 이 118위, '자본이동 제한' 이 94위, '은행 건전성' 99위, '증권거래규제' 가 75위로 조사되었다. '대출 용이성' 은 담보없이 사업계획서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며 점수가 낮을수록 어렵고 순위는 낮아진다. '자본이동 제한' 은 자본이동 규제가 심할수록 점수가 낮고 순위도 낮아진다.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대출 관련 규제를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자본이동

관련규제와 증권거래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은행건전성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5. 시사점

우리나라는 매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업무 평가의 한 부분으로 규제개혁 업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이명박정부 들어와서 규제개혁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도 중요한 규제개혁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규제개혁 작업은 정부업무 평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비해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매년 단기적인 평가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장기적 시각에서 중요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서 주어진 기간동안 추진할 수 있으며 집행과정은 해당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에 위임할 수도 있다. 반면 단점일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평가에서 배제되어있기 때문에 정책입안을 비롯해 집행과정이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지 않고 매우 급하게 무리하게 진행될 소지가 있으며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무리한 정책집행은 결과적으로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정책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과 각종 거시경제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성과를 보면 2010년 규제개혁 또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세부적 내용을 보면 아직 체계적인 규제개혁의 추진이 필요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한 과제들은 이미 과거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추진한 과제들이고 이들 과제에 대한 일정한 평가없이 다시 재추진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효율적이지 못한 정책추진 방식일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 실현가능성과는 별개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존규제 정비계획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이 보다 명시적 방식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장기적 단기적 시계를 구별하고 정책목표상의 우선순위 및 위계를 고려하여 입안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관리시스템 정비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규제관리분야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는 것은 추진과제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관리시스템이 행정기관의 내부적 관리뿐만 아니라 규제수요자들에 대한 보다 강화된 정보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규제정보고도화사업에 따라 새로이 구축된 규제포털은 기존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아직 규제개혁의 성과나 규제개혁 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향후에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이 규제개혁의 성과, 즉 결과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기관이 우리나라 규제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것은 이들 기관의 평가기준은 항상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규제개혁 노력을 기울이면 우리나라의 순위가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있어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간 우리는 창업절차와 관련해 상당한 절차간소화와 규제개선을 이루었지만 아직 OECD국가 평균수준에 못미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제 세계는 동일한 자원과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규제로 인한 부담이 적은 국가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규제경쟁시대이다. 해외기관들의 평가가 물론 절대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참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한 분야들(창업절차, 재산권 등록, 투자자보호, 조세납부, 규제관련 소송절차간소화, 소액주주보호, 독점규제 경쟁강화, 관세,비관세 장벽완화, 외국인투자 활성화, 고용유연성 강화, 대출접근성 강화, 자본이동 제한완화, 증권거래 규제완화, 은행건전성 강화 등)에 대한 규제개혁 관심이 지속적으로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2011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 집필자 : 양지연 사무관(Tel. 2100-2275, yang2105@pmo.go.kr)

1. 규제개혁 추진여건 및 방향

2009년부터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집행과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올해는 경기회복세의 점진적인 둔화와 함께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투자 장애요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민 ·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에 따라 경기회복의 성과가 서민과 중소기업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민체감형 규제개혁 노력을 강화하고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녹색 · 첨단 산업 등의 신기술 개발 촉진과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제도 개선 등 미래대비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2011년 규제개혁은 「투자활성화」「서민생활안정」「공정사회 구현」「미래대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중소상인, 영세민, 일반서민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정을 지속 발굴, 개선하고, 영업장 면적규제, 자본금 요건 등 각종 진입규제에 대한 정비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인적자본 확충,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2.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가. 규제개혁과제의 신속한 추진

1.27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2110년 규제개혁과제 1,156개를 확정하였다. 1,156개 과제중, 기업투자환경개선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120개), 진입규제 정비 등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173개),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74개)가 총 367개이며, 서민생활안정(122개), 국민부담 경감(556개) 등을 위한 과제가 678개(58.7%)로 많은 비중을 차지

[분야별 규제개혁과제 현황]

총과제수	투자 활성화	공정사회 구현	미래성장 기반 구축	서민생활 안정	국민부담 경감 등	기타
개	120개	173개	74개	122개	556개	111개
비중(%)	10.4%	15.0%	6.4%	10.5%	48.1%	9.6%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280개), 식품의약품안전청(103개), 환경부(98개), 보건복지부(74개)의 규제개혁과제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나. 규제개혁과제의 지속적 발굴 및 관리

이번에 발굴한 1,156개 규제개혁과제 외에도 국무총리실이 주도하여 '일자리 창출', '공정사회 구현' 등 핵심국정과제 관련 전략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경제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와 협조하여 경제단체, 주한 외국상의, 개별기업 등의 건의사항을 수렴 ·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개혁과제의 추진상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추진실적과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 평가하여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을 독려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 신설 · 강화규제의 품질제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철회 등 규제심사 결과를 환류하여 부처 자체규제심사시 참고하도록 조치하고 대면심사 실적 등 부처 자체규제심사의 내실화 정도에 대한 규제개혁 평가비중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1년에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법령안 및 국정과제 등 정부 역점시책과 관련된 법령안을 우선적으로 신속히 규제심사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규제심사 사전협의 활성화를 통해 규제 심사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고, 경제위기 극복 법안,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령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적 관리할 계획이며, 신성장산업(녹색기술산업, 융합신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규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의 품질제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규제의 생산을 억제하고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내실있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중요규제는 각 부처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객관성있는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심사과정에서 부처의 규제영향분석을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를

특 별 기 고

제1절 명품 규제론

제2절 미래 규제개혁 방향 : 균형과 시스템 관점

제 1 절

명품 규제론

* 집필자 : 심영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왜 명품 규제여야 하는가?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한 것은 1998년의 일이다. 외환위기의 와중에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규제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만큼 규제개혁정책은 우선순위가 높았다. 그리고 13년이 흐른 지금, 규제개혁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풀가동되고 있다.

한 해에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평균 천 건 정도다. 2008~2010년의 3년간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는 2,992건에 이른다. 그 가운데 728건을 중요규제로 분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는데, 이 중 무려 54%에 해당하는 393건의 규제안에 대해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다.

이러한 통계는 정부의 각 부처가 아직도 규제개혁에 대한 실천의식이 희박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규제개혁을 위한 특단의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전례를 답습하고 말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규제의 품격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취지로 규제의 명품화를 제창하고자 한다. 이 역시 규제에 대한 혁신 마인드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2. 규제의 품질관리와 명품 규제

이미 만들어진 규제를 개혁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 따라서 규제를 신설할 때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규제에 대한 품질관리(QC)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규제의 품질관리에 나서 보자. 피규제자들이 지적하는 '불량규제론'을 귀담아 듣고, 이러한 기준에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 가운데 이른바 '나쁜 규제'로 분류될 만한 것을 일단 걸러내 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경련이 지적하는 불량규제는 대략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즉, 비현실적인 규제, 낮은 품질의 규제, 내용이 모호한 규제, 중복 규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역차별적인 규제, 공공의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규제 등이 그것이다.

생산되는 규제에 대한 품질 관리의 일환으로 규제의 순기능 검토와 함께 역기능의 가능성을 유형별로 점검표(check-off list)를 작성해 보는 일도 긴요하다. 규제의 내용이 비현실적인 것은 아닌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아닌지, 국민생활에 불편만 주는 규제는 아닌지, 정책의 목표나 성과에만 집착하여 규제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아닌지, 시장 또는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하겠다고 나서서 규제를 앞세우는 것은 아닌지, 시장과 기업 활동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가 아닌지 등등 개별 규제마다 따져 보자는 것이다.

규제의 품질을 가릴 수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명품 규제를 구별해 낼 수도 있다. 과연 명품 규제의 조건들은 무엇일까. 이것 역시 유형별로 점검표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규제의 수요자들이 공감하는 간명한 원칙이 있는가, 긴 안목에서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규제인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정부의 부지런함을 입증할 수 있는가,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 경제적 법치주의에 충실한가, 기술과 사회발전을 뒤쫓아 가는 게 아니라 선도하는 규제인가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대부분 충족시킨다면 명품 규제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일찍이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른바

'더 나은 규제' 정책은 규제에 따른 부담을 줄이면서도 규제의 효과를 높이고, 피규제자의 순응(compliance)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더 나은 규제' 정책은 기본 취지에 맞게 여러 장치를 담고 있는데, 이를테면 피규제자와의 긴밀한 협의, 규제시행일의 사전 통보제 도입, 피규제자가 규제내용의 실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신축적 규제 제도, 낮은 단계의 규제가 무력할 때에만 상위 단계의 규제를 허용하는 규제집행 피라미드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명품 규제(high-quality regulation)는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정부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국민을 돋보이게 하는 규제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섬김의 정부론' 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3. 명품 규제를 위한 십계명

규제효과에 대한 기대가 난망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상의 완결성만을 추구하는 규제는 명품규제가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규제를 새로 설정하고자 할 때 과연 어떻게 명품 규제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여기에서는 명품 규제의 설정을 위한 십계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정부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법치주의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게 제1계명이다. 규제를 생산하는 정부가 이러한 이념과 원칙에 기반을 두고 철저한 훈련(discipline)이 필요하다. 불량규제의 대부분은 '원칙 따로 실천 따로'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시장 경제적 법치주의의 실현에 장애로 작용한다. 최근 중국을 비롯하여 체제전환국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 정부당국도 인·허가 과정에서 이를 따라하고 싶은 유혹에 끌린다면 이 또한 경계해야 마땅하다.

법률만능주의와 행정편의주의의 매너리즘에서 과감하게 탈출해야 한다는 게 제2계명이다. 지금도 개발연대 시절의 생각이나 관념으로 만들어지는 법령이 수두룩하다. 민간부문 위에 군림하는 정부와 행정 우위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민간이 할 일에 정부가 나서지 않아야 한다.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 게 제3계명이다.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인 '부의 미래(2006)'에서, 기업은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며 사회 다른 부문의 변혁을 주도하는 반면에 정부와 관료조직, 정책과 법 제도는 30마일도 안 되는 속도로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앨빈 토플러의 지적은, 물론 정부의 정책이나 법 제도의 운용이 기업 활동만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역동적인 기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기업의 활력을 뒷받침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개혁도 이러한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익(公益)의 필요성을 빌미로 과다 규제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제4계명이다. 과도한 규제에 대해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규제 준수비용은 보지 못한 채, 규제를 신설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관부처가 정책적 편의만 고려한 채, 규제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규제에 대한 주기적인 정밀점검(overhaul)이 필요하다는 게 제5계명이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낡은 규제인지 21세기 정보화·융합화 시대에 걸맞은 규제인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이나 근거 없이는 규제를 만들 수 없다는 게 제6계명이다. 때로는 하위 법령의 규정 가운데 모법의 규정이 아닌 타법을 원용하거나 에둘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미래 산업과 미래사회에 걸맞은 규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게 제7계명이다. 융합기술의 발달로 융합 제품 및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법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새롭게 떠오르고 빠르게 발전하는 융합 영역일수록 새로운 법체계와 틀의 마련이 시급하다.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사이버, 모바일, 스마트 시대의 전개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규제 체계를 모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 때문에 디지털화, 사이버화, 모바일화, 스마트화의 파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절한 규제의 디자인을 위한 선제작업은 필요한 일이다.

규제 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8계명이다. 한시적 규제유예, 재검토형 또는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 규제예시제 등 규제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고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개혁의 수단이 다양하게 제시될수록 정부 당국이 그만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규제자 및 이해당사자와의 진지한 대화가 없이는 명품 규제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게 제9계명이다. 규제를 설정하기 전에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닌 실질적인 의견수렴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민보다는 정부가 부지런한 규제가 명품이라는 게 제10계명이다. 이는 곧 정부가 규제를 통한 공권력 행사를 쉽게 동원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시장의 힘을 신뢰하고 시장경제의 창달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력을 우선적으로 발휘할 의지가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면 명품 규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태료 부과 등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를 앞세우는가, 아니면 규제하는 정책의 목적 및 과정을 담은 정보를 취합하여 시장과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가와 같은 문제이다.

명품 규제를 위한 십계명은 다름이 아니다. 정부가 생산하는 규제의 품질이 곧 정부의 품질이고,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는 임기 중에 생산된 규제의 품질이 곧 정권의 품질로 평가된다는 생각하에 규제자인 정부가 규제에 대한 마음가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제 2 절

미래 규제개혁 방향 : 균형과 시스템 관점

* 집필자 : 이태억 (KAIST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규제개혁위원)

초록
규제는 양면성과 복잡성을 갖고 있으므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의 설계, 개발, 평가, 개선 과정을 체계화, 합리화해야 한다. 경제규제, 사회 및 행정규제의 속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시스템관점에서 제안한다.

1. 경제규제의 양면성과 복잡성

인류의 역사는 유사 이래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정부 및 권력의 규제와 이에 대한 대응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규제는 정부 및 권력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지만 손쉽고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항공 산업 혁신가이면서 영화제작업자였던 기인 하워드 휴즈의 일대기를 담은 Aviator라는 영화에서도 미국 항공운송산업 초기인 1940년대에 팬암에게 국제노선을 독점하게 하기 위해 국제노선은 한 개만 허용하자는 규제입법의 추진에 TWA의 하워드 휴즈가 저항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팬암의 로비에 의해 여객 수요가 충분하지도 않은데 막대한 항공기 구입 및 유지비용이 드는 항공 산업에서 복수업체가 경쟁을 하게 되면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물론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경쟁에 의한 기술혁신, 사업혁신 및 원가절감, 이로 인한 수요확대를 통해 항공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었다. 미국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수도, 전기, 통신, 철도, 해상운송 등의 사회간접자본 관련 산업에 많은 진입규제를 만들었다. 주요 논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업투자를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곧 독점의 폐해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해 다시 가격 등의 경제규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다가 관련 시장이 성숙하면서 독과점의 폐해가 커지자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을 철폐하고 시장원리와 경쟁에 의해 관련 산업을 혁신, 효율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였다. 이후 1970년대에 들면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민영화, 글로벌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연안수송의 국적선 이용 의무화, 철도, 선박, 차량 등의 복수 운송수단 겸업 금지 등의 진입 규제, 노선 및 가격규제를 폐지, 완화함으로써 물류산업의 규모의 경제성과 범위의 경제성을 추구하여 국가 물류비용을 줄이고 택배, 유통 등의 관련 산업이 발전하였고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 확산되었다[1].

운송, 항공, 물류 등 이외의 통신, 전기, 에너지 산업 등에도 유사한 규제완화가 추진되어 자유 시장 원리와 자유경쟁이 보편화되고 정부규제는 반독점금지법, 안전과 사회적 이슈에 국한되고 최소화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이후 WTO체제에 의한 자유무역, 시장개방, 투자자유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경제규제 역사의 큰 흐름은 규제완화로 흘러 왔지만 규제완화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한 논란도 커져 왔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전력공급자들이 가장 싼 가격의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력의 판매를 자유화 하는 반면 전력 공급가격은 이전대로 고정하여 결국 90년대 말 OPEC이 석유가격을 올리자 엔론 같은 신생 에너지 회사만 폭리를 취하고 기존 전력회사들은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1].

MIT의 사무엘슨 교수는 간접비용 때문에 생기는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큰 차이 때문에 독점, 과점, 불완전 경쟁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것이 규제완화의 주요 경제학적 논거였으나 현실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며, 불완전한 규제완화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규제와 규제완화 사이의 절묘한 절충점을 찾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제안한 바 있다[2].

유사한 예로 미국 항공 산업에서도 CAB(Civil Aeronautics Board)에 의해 40년간 통제해온 국내 항공 산업에 대해 1978년 노선, 가격 등의 경제 규제를 철폐하였다. 이후 평균 항공요금

인하, 인기 노선 서비스 확대, 승객 수 증대 등이 이루어졌으나 항공사들의 과당 경쟁으로 재무 및 고용 불안정, 전체적인 서비스품질 저하, 비인기 노선의 항공편 감소 및 요금 인상의 문제가 생겼으며 2000~2005년에는 주요 항공사들이 유가인상 등과 겹쳐 파산위기에 몰리게 되었다[3].

1980년대 초반 미국에서 거대통신기업인 AT&T를 독과점방지법에 의해 분할한 바 있다. 25년이 지난 2008년에 AT&T 분할의 영향에 대한 학술토론에서 분할을 통해 지역통신망의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인터넷과 무선통신망이 발전하지 않았을 것, 장거리통신 요금이 한계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하고 경쟁이 기대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수직적 분할에 의한 경쟁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여 제3의 인터넷 또는 무선인터넷 사업자를 키우는 것이 나았다는 점, 통신 산업의 기술혁신 속성상 경쟁의 동인은 사업자 다변화보다 기술혁신에 있었다는 점 등이 주장되었다[4].

그리고 통신 산업의 규제완화로 인한 지나친 미디어소유권의 집중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 산업,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도 유사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각국에서 금융리스크 완화와 금융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규제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카네기멜론대 Meltzer교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각종 금융규제는 결국 은행만 보호했지 국민을 보호한 적이 없다, 즉, 규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5].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의 규제정책의 실효성과 기업 및 경제의 부담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Carbon Trade Watch 등의 환경단체들은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실효성이 없고 기업들의 감축 동기만 저해할 뿐이므로 더 강력한 직접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6].

한편, 경제계에서는 기업의 직접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확실성만 증대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산업 및 기업 규제의 역사가 길고 시장이 큰 미국의 경험을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완화와 강화의 최적 절충점을 찾아내고 최선의 규제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의 설계 및 개발, 시행, 평가, 변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화, 합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규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OECD의 경제규제지표상으로도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 명령 지시형 규제 등은 크게 개선되었다(표 1 참조).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의 개입, 기업의 직접규제, 가격규제 등은 아직 선진국과 비교할 때 크게 높은 수준이며 개선의 여지가 크다.

그리고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표 2 참조). 기업창업 규제에 대한 OECD 통계에 아직 우리나라의 지표가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비교가 필요하다. World Bank 등의 연구에서도 정부규제가 창업에 크게 미친다고 한다[7]. 미국에서 연방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을 추정해보니 20명 이하 소기업에서는 종업원당 10,585불, 499명 이상 기업에서는 7,755불, 즉, 중소기업이 전체 매출에 규제비용을 분산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규제의 피해를 더 많이 입는다고 한다[7]. 특히 중소기업은 신설 규제의 범위와 영향을 평가하기 힘든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와 고용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7].

[표 1. 주요국의 정부규제 비교(Indicators for Product Market Regulation, OECD)]

	State Control : low-level indicatorScope of public enterprise sector														
	Scope of public enterprise sector			Government involvement in infrastructure sector			Direct control over business enterprise			Price controls			Use of command & control regulation		
	1998	2003	2008	1998	2003	2008	1998	2003	2008	1998	2003	2008	1998	2003	2008
Australia	2.75	2.75	3.25	3.08	2.92	2.41	3.83	3.83	3.98	2.40	0.00	0.76	1.37	0.45	1.08
France	5.00	4.50	3.75	5.45	4.97	3.54	3.38	3.23	3.75	1.37	0.20	0.20	4.43	2.90	2.90
Germany	3.50	3.25	3.25	2.62	1.93	1.80	3.30	3.23	3.23	3.10	1.20	1.15	3.34	1.73	1.16
Italy	5.25	4.50	4.25	4.24	3.70	3.33	5.63	3.53	2.63	3.20	2.80	1.20	3.53	1.83	1.33
Japan	2.00	2.00	2.00	2.14	1.45	1.18	3.60	3.60	2.85	3.47	2.50	1.40	3.96	3.16	0.31
Korea	2.25	2.00	1.75	3.87	2.65	2.65	3.38	4.00	3.88	3.25	2.00	1.78	1.00	1.05	0.67
Netherlands	3.00	2.75	2.25	3.69	2.99	2.56	3.75	2.83	2.93	1.24	0.30	0.40	1.63	1.48	1.28
Norway	4.75	4.50	4.25	4.58	3.67	3.18	2.38	2.25	2.13	2.19	0.64	0.40	1.91	1.25	0.65
Spain	4.50	3.50	3.50	3.08	2.13	2.12	3.60	3.30	1.05	2.85	0.85	0.30	4.55	4.41	1.74
Sweden	3.65	3.65	3.91	4.49	3.67	3.32	4.83	4.83	4.96	0.80	0.80	0.60	1.65	2.18	0.79
Switzerland	3.75	3.75	3.75	4.36	4.20	3.79	3.38	2.63	2.63	3.25	1.63	0.60	1.24	1.08	1.06
United Kingdom	0.75	0.75	1.25	0.83	0.83	0.83	2.85	2.85	3.63	1.44	0.32	0.20	1.65	1.84	2.02
United States	2.75	2.50	2.25	1.32	1.24	0.99	0.83	0.75	0.68	1.12	0.48	0.50	1.24	1.30	1.30
Israel			3.27			2.96			3.65			2.29			4.88
Russia			4.64			4.01			4.19			5.00			4.00
Brazil			2.73			2.25			3.82			0.33			4.50
China			6.00			5.48			4.50			4.38			3.50

[표 2. 주요국의 무역 및 투자 규제 지표 비교
(Indicators for Product Market Regulation, OECD)]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low-level indicator											
	Barriers to FDI			Tariffs			Discriminatory procedures			Regulatory barriers		
	1998	2003	2008	1998	2003	2008	1998	2003	2008	1998	2003	2008
Australia	1.79	1.76	1.92	1.00	1.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France	3.10	1.83	1.28	1.00	1.00	1.00	0.50	0.50	0.50	0.00	0.00	0.00
Germany	0.27	1.29	1.27	1.00	1.00	1.00	0.92	0.67	0.00	0.67	0.67	0.67
Italy	3.11	2.75	2.63	1.00	1.00	1.00	0.92	0.67	0.67	0.00	0.00	0.00
Japan	1.32	1.31	0.97	0.00	0.00	0.00	1.38	0.25	2.25	0.00	0.00	0.00
Korea	1.18	1.06	0.94	2.00	2.00	2.00	0.00	0.00	0.00	2.27	1.60	1.60
Netherlands	1.33	1.16	0.97	1.00	1.00	1.00	0.50	0.50	0.00	0.00	0.00	0.00
Norway	2.24	1.98	0.43	0.00	0.00	0.00	0.25	0.25	0.25	0.67	0.67	0.67
Spain	2.01	0.45	0.42	1.00	1.00	1.00	0.25	0.25	0.25	2.00	0.67	0.00
Sweden	1.83	1.69	1.74	1.00	1.00	1.00	2.67	0.67	0.67	0.00	0.00	0.00
Switzerland	1.85	1.78	0.52	1.00	1.00	1.00	1.13	1.13	0.00	2.40	0.00	0.00
United Kingdom	0.24	0.20	0.19	1.00	1.00	1.00	0.25	0.25	0.00	0.00	0.00	0.00
United States	1.27	1.19	1.11	1.00	0.00	0.00	0.25	0.00	0.00	0.00	0.00	0.00
Israel			1.33			1.00			2.25			2.27
Russia			3.50			3.00			1.38			3.60
Brazil			1.49			3.00			2.67			0.00
China			3.22			2.00			2.21			2.27

정부는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수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각 부처별로 규제혁신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있다.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 녹색성장, 기후변화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녹색성장기본법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각종 금융관련 규제안을 만들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총 1062건의 신설, 강화 규제 중에서 326건을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이 중 158건(48.5%)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 및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이렇게 높은 철회 및 개선 권고 비율은 신설, 강화 규제안의 설계 및 개발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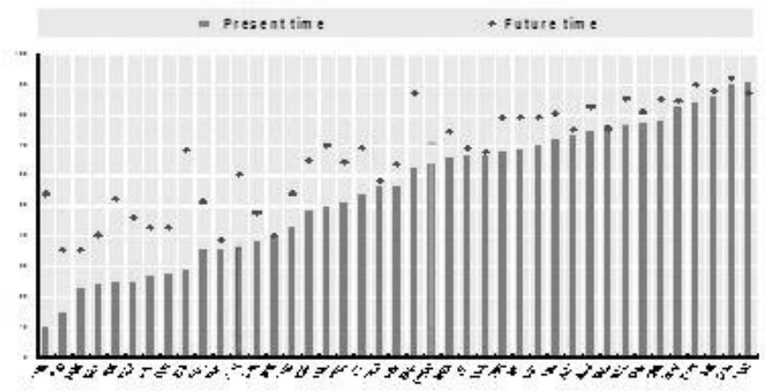
2. 사회 및 행정규제의 중요성과 애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으로 기초 생활이 안정되면서 건강, 삶의 질, 안전, 환경, 경제적,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불평등, 고용, 복지, 사회적 권리, 공정성 등의 이슈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사회 및 행정규제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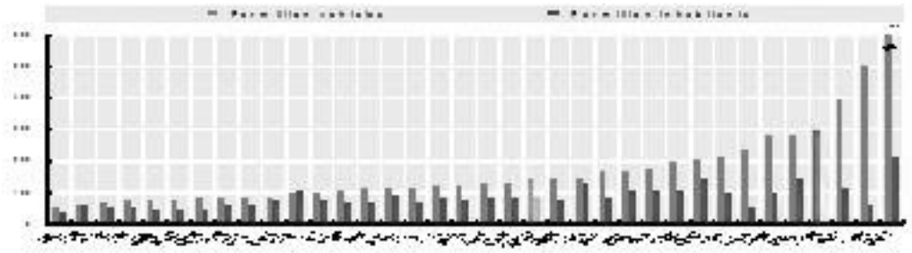
최근 신설 · 강화 규제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건수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안전청, 환경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등의 심사건수 비중이 크다[8]. 정부의 2011년 규제개혁계획에 따르면 총 1,156개의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기업투자환경 개선과제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 120개, 진입규제정비 등 공정사회구현 과제 173개,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 74개 등 경제규제가 총 367개이고 서민생활 안정 122개와 국민부담 경감 556개 과제가 총 678개로 58.7%를 차지하고 있다[9].

그리고 주택, 건설, 식품의약, 환경, 보건복지 분야 과제가 48.0%에 달하고 있다[9]. 한편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아직 상당히 낮다.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긍정 응답 비율은 36%에 불과하고 차량 백만대당 교통사고비율은 293건으로 러시아, 터키 등에 이어 4위 수준이다[10]. 수입 불평등, 빈곤지수 등에서도 개선 여지가 많다. 국민의 삶의 질은 경제규제 뿐 아니라 사회 및 행정규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향후 사회 및 행정규제 개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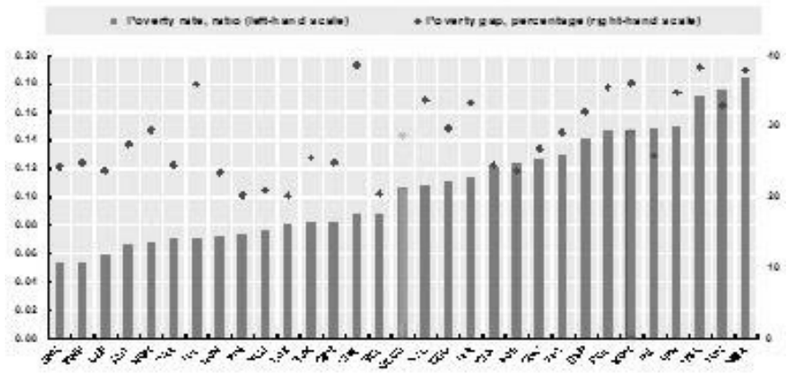
[그림 1. 삶의 질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OECD 통계)]



[그림 2. 각국의 교통사고 비교(OECD 통계)]



[그림 3. 빈곤율(OECD 통계)]



경제규제에 비해 사회 및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나 통계가 부족하나 사회규제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경제규제의 경우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 등의 이해당사자의 체계적 요구 및 견제가 가능하지만 사회 및 행정규제는 기업 뿐 아니라 불특정 국민이 주요 이해당사자가 되므로 규제의 신설, 강화, 폐지, 완화에 체계적,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NGO 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 국민 다수를 대변하여 다양한 이슈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조정 역할을 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규제의 생성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정부와 이해당사자간의 정보 및 지식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국민생활을 제한할 수 있다.

둘째, 사회 및 행정규제 대상 문제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효과와 비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힘들다. 특히 국민의 편익은 계량화하기 대단히 힘들며 윤리적, 도덕적 이슈, 가치체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일치된 공감대를 갖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업, 경제, 산업 이슈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파급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OECD를 중심으로 RIA(Regulation Impact Analysis) 등의 정확한 영향평가를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회 및 행정규제의 편익을 정확하게 계량화하기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하다.

셋째, 사회 및 행정규제는 본래 목표와는 달리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어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OECD보고서는 사회규제가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거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1].

예를 들어 강화된 환경규제의 경우 대개 신공장이나 신제품에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술혁신보다는 기존 기술의 개선, 개량에 머물게 하는 경향이 있다. 프레온가스, 인산계 세제, PCB 등의 예에서 보듯이 오히려 문제제품을 아예 금지한 경우에 대체제품이 개발되어 기술혁신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안전 및 건강규제는 필요성 자체에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규제완화의 문제라기보다 규제의 목적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관련 표준 및 인증은 시장접근, 특히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여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EU기업들이 주도했던 생물기술의 경우 EU의 까다로운 신제품승인절차 때문에 승인이 지연되고 특허기술 보호가 미흡하게 되어 훨씬 간편한 제품승인절차를 가진 미국에 주도권을 뺏기는 계기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노동자의 복지와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도 고용증대와 기술혁신을 위해 적절한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로 ECAA(European Car Assembly Association)는 EU의 근무시간제한, 작업조건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자동차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이 지연되고 시장 대응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이행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의 경우 1985년 수자원오염방지 규제는 연간 180~190억 달러의 이행비용이 들었지만 실제 편익은 123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12].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의 작업자안전규칙 제정 및 시행에 수 억 달러가 들었지만 실제 작업현장사고 감소는 미미하였다[12]. 따라서 사회 및 행정규제의 효과적, 효율적 목표달성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사회 및 행정규제는 종종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적 발상으로 국민을 계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규제를 시행할 주체가 역량 및 의지가 부족하거나 국민 대다수가 지키기 힘들거나 지키지 않게 되어 법의식만 실종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규제의 집행현장을 직접 방문, 체험, 인터뷰해보지 않고 탁상공론적으로 규제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여 언론에서 이슈화가 되는 경우 임기응변적, 면책성으로 사회 및 행정규제를 신설,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치쟁점에 말려 객관성을 잃기도 한다. 민감한 이슈일수록 중장기적인 분석과 계획에 의한 규제안의 준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 및 행정규제는 의료, 법률, 교육 등의 서비스산업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약하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산업은 공공성이 높고 복지정책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고 설계하거나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쉽지 않다.

일곱째, 안전, 건강, 환경에 관련하여 각종 인증제도와 재교육 규제가 신설, 강화되어 대상기업 및 대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이를 담당할 기관 또는 조직의 신설 또는 증설, 유지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표준도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적합한 표준은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호환성을 보장하여 총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표준은 종종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사실상 특정기업의 독점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여덟째, 지나친 관리감독과 감사, 자료요구도 기업, 기관의 효율성, 자율성, 창의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정부기관, 정부 투자 및 출연 기관, 국공립대학 등에 감사 및 자료요구는 신중해야 하고 최소화되어야 한다. 각종 규제안에서 기업에 대한 자료요구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많다. 영국의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12개 규제분야 중에서 기업경영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용(70%), 안전 및 건강 (59%)에 이어 세번째로 보고 및 통계 제공 의무(47%)이었다[13].

미국 등 선진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총부가가치 중 60%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교역수지는 2008년 16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수출(연 평균 성장율 1.2%)에 비해 수입(연 평균 성장율 1.6%)이 더 높게 증가하고 있다(표 3 참조). 한편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OECD 각국에 비해 낮다. 의료, 법률, 금융,

유통, 엔지니어링, 컨설팅, 교육, 관광, 레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의 지식집약서비스산업은 통신, 항공, 운송처럼 대규모 설비투자에 의존하는 '대량생산형' 서비스에 비해 고객과의 접촉이 많고 국민의 생활, 복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며 고용증대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산업은 사회 및 행정규제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사회 및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3.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수지(OECD 통계)]

Exports minus imports of services(Billions of US dollars)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ustralia	0.7	1.2	1.8	0.5	0.5	0.9	0.6	-3.1
France	17.8	17.1	15.8	16.5	16.6	16.8	20.5	21.1
Germany	-54.1	-43.2	-50.7	-51.1	-46.7	-34.1	-37.3	-40.9
Italy	0.0	-2.9	-2.7	1.5	-0.7	-1.6	-9.7	-10.7
Japan	-43.7	-42.0	-35.5	-39.0	-27.9	-20.1	-23.2	-22.0
Korea	-3.9	-8.2	-7.4	-8.0	-13.7	-19.0	-19.8	-16.7
Netherlands	-2.5	-1.0	-0.7	4.3	6.8	9.4	12.1	13.0
Norway	2.6	1.6	1.1	1.0	0.7	1.5	2.1	1.1
Spain	20.6	21.1	26.2	26.9	27.7	27.8	31.3	38.1
Sweden	-0.6	-0.8	2.0	5.8	7.8	10.0	16.3	17.6
Switzerland	17.3	18.0	21.5	24.4	26.9	31.3	37.7	46.0
United Kingdom	24.8	29.1	36.9	52.1	46.9	63.6	89.4	100.9
United States	64.4	61.2	54.0	61.8	75.6	86.9	129.6	144.3

3. 규제개혁의 전략

우리나라는 경쟁, 개방, 창의에 의한 기술혁신과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및 원가개선을 이루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창업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과 복지, 공정사회, 균형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노력 뿐 아니라 다양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지만 규제완화 또는 적절한 규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규제는 기업 및 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양면성, 복잡성을 갖고 있으며 예상하지 않은 다른 부작용 또는 부대효과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계획,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 EU에서는 'Better Regulation'이라는 비젼하에 각국의 규제완화 전략계획수립, 규제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와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개발해오고 있다[14]. 전술한 규제의 역사와 속성, 각국의 규제완화 전략 및 노력과 우리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노력,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규제개혁전략을 정리해본다.

첫째, 규제와 규제완화 간의 최적의 균형을 추구하도록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 경제규제의 경우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경쟁과 혁신을 추구하되 독점과 과당경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 및 행정규제의 경우 국민의 안전, 건강, 복지, 형평성과 공정성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되 자유, 권리, 프라이버시가 저해되지 않고 관련 기업의 활동이 지나치게 제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나 규제 설계 및 개발의 절차와 방법을 합리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가능하다. 먼저 목적과 목표, 이해당사자를 분명히 정의하고 총사회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도록 규제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 산업과 사회의 실정에 맞추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규제의 신설, 강화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당사자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사전 또는 사후에 규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후에 추적, 관리해야 한다. 정부 각 부처의 규제를 총괄 계획하고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독립성,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규제의 설계, 개발부터 시행, 평가, 조정, 폐기까지의 생애주기에 걸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Plan-Do-See-Check의 사이클을 의무화한다. 시행된 규제의 실효성과 영향을 지속적,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도록 현재의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확대, 개선하여 전자정부시스템과 연계한 규제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에도 규제 일몰제나 재검토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사후 영향 분석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규제의 사후평가를 위해서는 EU등에서 개발 중인 RIA(Regulation Impact Analysis)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규제의 제안, 개발, 시행 책임 부서 및 담당자를 추적관리 하여 규제에 대한 책임관리, 성과평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규제실명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각 부처에서 자신이 개발, 제안한 규제안이 통과만 되면 실적으로 인정받는 문화나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이해당사자간의 정보와 지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규제의 설계 및 시행,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이해당사자, 관련 정부부처간의 소통을 개선해야 한다. 경제규제의 경우 해당 산업계, 경제단체, 이해당사자,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 조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및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특히 사회 및 행정규제의 경우 당사자인 국민 다수가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각 부처에서 연간 8,000여건의 규제를 만들고 있으나 이들 Regulations.gov (http://www.regulations.gov)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메일, 트위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새로운 안건, 진행과정 등을 공시하고 있다.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전자정부시스템을 활용하면 더욱 체계적인 방법으로 국민 및 사회단체가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관련 부처와 체계적으로 협력, 조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규제정보화시스템을 대폭 확대, 개선하고 전자정부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넷째, 고객관점에서 기업, 국민과 관련한 핵심적인 행정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재설계, 혁신하고 관련 규제를 이에 맞추어 개선해야 한다. 부처별로 개별 규제를 산발적으로 개선하는 것보다 기업과 국민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규제혁신 방안이다. 프로세스혁신은 이미 민간기업에서도 경영혁신, 업무혁신, 서비스혁신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방법이다. 예를 들면 창업에 관련한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총 소요되는 기간, 문서, 비용 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파레토법칙대로 20%의 규제가 80%의 영향 결정하므로 규제완화의 총건수 보다는 핵심규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다섯째, 규제이외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한다. 각 부처 실무자들은 당장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령, 시행령, 규칙 등을 신설, 강화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사회규제의 경우 금지나 제한보다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기술 혁신과 적용, 관련 프로세스나 방법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성공사례를 개발,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률 만능주의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국민과 기업이 자율적인 동기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실무자들의 성과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규제입안 건수보다 실질적인 정책목표의 달성 수준을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행정부내 규제총괄부서와 입법부간의 소통과 조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물론 정치적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의원입법과정과 행정부처의 입법과정을 상호 조율하여 서로 상충되지 않는 효과적인 규제 또는 완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총괄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의 품질경영 철학 및 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 각 부처의 각종 행정 절차 및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이를 제약하는 규제를 파악, 평가, 개선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고객 중심적 사고, 고객만족을 기반으로 한 '품질' 및 성과의 정의, 프로세스 중심적 사고, 지속적인 혁신 정신, '낭비' 제거, 예외 및 변동 대응과 리스크관리 등의 철학, 현장지향적 문제해결, 관련 방법론 및 도구를 각 행정부처와 규제총괄부처의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들에게 교육하여 실천 의지와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참고문헌

[1] D. Bowersox, D. Closs, and M.B. Cooper, Supply Chain Logistics Management, McGraw-Hill/Irwin, New York, 2002.

[2] P.A. Samuelson, "A Few Theoretical Aspects of Deregulation," Japan and the World Economy, Vol. 15, No. 1, p. 131-133, 2003.

[3] A.R. Goetz, and T.M. Vowles,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30 Years of US Airline Deregulation,"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Vol. 17, No. 4, p. 251-263, 2009.

[4] C. S. Yoo, "The Enduring Lessons of the Breakup of AT&T: A Twenty-Five Year Retrospective,"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Vol. 61. No. 1, p.1-10, 2008.

[5] P. Kurata, "Two Prominent Economists Debate Pros and Cons of Regulation," America.gov (http://www.america.gov), 15 May 2009.

[6] T. Gilberston, and O. Reyes, "Carbon Trading: How It Works and Why It Fails," Critical Currents, Occasional Paper Series No. 7, Dag Hammarskjold Foundation, 2009.

[7] S. Shane, "Small Business's Problem With Government Regulation," Small Business Trend (http://smallbiztrends.com), 31 Jan. 2011.

[8] 2009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2009.

[9]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국무총리실, 2009.

[10] "Statistics on Quality of Life, Society, Subjective Well-Being," OECD Factbook 2010: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2010.

[11] Regulatory Reform and Innovation Organization, OECD.

[12] E. Bardach, and R.A. Kagan, "Introduction," Social Regulation: Strategies For Reform, Institute for Contemporary Studies, California, 1982.

[13] A. Ehmann, "Better Regulation UK: What do Directors Really Think?," A Presentation to the OECD Conference, Regulatory Policy at the Crossroads: Towards a New Policy Agenda, 2010.

[14] European Network for Better Regulation, http://www.enbr.org/.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를

부 록

제1절 규제개혁 관련 법령 등
가. 행정규제기본법
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가. 본위원회
나. 경제분과위원회
다.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제 1 절

규제개혁 관련 법령 등

* 집필자 : 오성호 사무관(Tel. 2100-2280, osh9759@pmo.go.kr)

가. 행정규제기본법

□ 제정 1997.8.22 법률 제5368호
□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 일부개정 2005. 12.29 법률 제7797호
□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일부개정 2009.3.25 법률 제9532호
□ 일부개정 2010.1.25 법률 제9965호

제1장 총칙 〈개정 2010.1.25〉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 ·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 · 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 경제 · 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 ·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 ·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징집 · 소집 · 동원 · 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 · 세율 ·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또는 조례 ·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 ·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5]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 · 인권 ·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 ·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 · 내용 · 근거 · 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 · 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2장 규제의 신설 · 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개정 2010.1.25〉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 · 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 범위 ·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 · 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 · 민간단체 · 이해관계인 · 연구기관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 ·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5]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 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12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 · 강화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 제3항, 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5]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15조(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0.1.25]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개정 2010.1.25〉

제17조(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10.1.25〉
1.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삭제 〈2009.3.25〉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5〉 [제목개정 2010.1.25]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수립 · 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그 기존규제의 정비 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끝낸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22조(조직 정비 등)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개정 2010.1.25〉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전문개정 2010.1.25]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 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 ·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 · 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0.1.25]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2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전문개정 2010.1.25]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 · 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5]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 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5]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 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5]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5]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5]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5장 보칙 〈개정 2010.1.25〉

제34조(규제 개선 점검 · 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 ·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 · 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 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 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5]

제35조(규제개혁 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총리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부칙 〈제5368호, 1997.8.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1年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法律 第4735號 行政規制管理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法 施行당시 旣存規制의 自體整備에 대한 特例)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 施行후 5年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月 31日까지

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旣存規制의 自體整備에 갈음하여 이 法 施行당시 모든 소관 規制에 대한 年次別整備計劃을 수립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次別整備計劃및 그 施行 결과를 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4條 (訓令 · 告示등의 再檢討)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 施行후 1年이내에 이 法 施行당시 施行중인 訓令 · 例規 · 指針 · 告示등에 規定된 規制에 대하여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令 또는 條例 · 規則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再檢討하여야 한다.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檢討 결과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令 또는 條例 · 規則에 근거하지 아니한 訓令 · 例規 · 指針 · 告示등에 規定된 이를 지체없이 廢止하거나 關係法令 또는 條例 · 規則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중 "다른 法令의 規定"을 "다른 法令(行政規制基本法을 제외한다)의 規定"으로 한다.

第42條중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通商産業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로 한다.

第62條第3號중 "制定 또는 改正"을 "改正"으로 하고, 同條第5號중 "行政規制"를 "企業活動에 관한 行政規制"로 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委員會는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調査 · 審査事項중 行政規制에 관한 法令 · 制度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行政規制基本法에 의한 規制改革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하며, 規制改革委員會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規制改革委員會가 審査할 것인지 여부를 決定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委員會는 規制改革委員會가 審査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關聯資料와 함께 規制改革委員會에 移送하여야 한다.

부칙 〈제5529호, 1998.2.28〉(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行政規制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6條중 "總務處長官"을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⑥내지 〈34〉 省略

第6條 및 第7條 省略

부칙 〈제7797호, 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 2008.2.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749〉 까지 생략
〈75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7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532호, 2009.3.25〉(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9965호, 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 일부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 ·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 · 인가 · 특허 · 면허 · 승인 · 지정 · 인정 · 시험 · 검사 · 검정 · 확인 ·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 · 영업정지 · 등록말소 · 시정명령 · 확인 · 조사 · 단속 · 과태료부과 · 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 · 신고의무 · 등록의무 · 보고의무 · 공급의무 · 출자금지 · 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 · 예규 · 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3조 조 삭제 〈2006.3.31〉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제2장 규제의 신설 · 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삭제 〈2006.3.3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1〉

④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1〉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 ·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2조(의견제출의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 모사전송 · 전자우편 · 구술 ·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31〉

1. 의견제출자의 성명 · 주소
2. 규제의 내용 · 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기타 참고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 · 공공단체 · 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6.1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 ·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 · 국무총리실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2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 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 · 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삭제 〈2006.3.31〉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임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 등)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실지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 · 조사요원 · 이해관계인 · 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 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 · 평가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 ·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 · 점검사항
2. 확인 · 점검일정
3. 확인 · 점검자 인적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 ·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부칙 〈제15681호, 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규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고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의 규제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조례 ·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 · 조례 · 규칙 · 훈령 · 예규 · 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법령 · 조례 · 규칙이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 · 예규 · 고시 또는 공고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규제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 당시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정비계획은 1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차별정비계획에 다음 각호의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2. 법 시행일전 5년간 개정되는 아니한 규제
3.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4.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5.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9436호, 2006.3.31〉

이 영은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 2006.6.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2〉생략
〈233〉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34〉내지 〈241〉생략

부칙 〈제20724호, 2008.2.29〉(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⑦ 생략

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 일부개정 2008.1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08.10.2. 개정)
②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1급 상당 고위공무원 이상인 관계공무원으로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2조의2 (분과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08.10.2. 신설)

제3조(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안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의 2 (중요규제 등의 결정)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중요규제 여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긴급성 인정 여부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위임 여부는 위원장이 분과위원장 및 간사위원의 의견을 들어 사전검토 의견을 정한다. ('08.10.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사전검토 의견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08.10.2. 신설)

제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08.10.2. 개정)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 · 운영

제5조(구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2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경제분과위원회
2. (삭제)
3. 행정사회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둘 수 있다.('08.10.2. 개정)

제6조(소관)
① 경제분과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농촌진흥청, 행복도시건설청, 산림청, 해경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② (삭제)
③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④ (삭제) ('08.10.2.)

제7조(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08.10.2. 개정)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국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08.10.2. 개정)

제8조 (삭제) ('08.10.2.)

제9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08.10.2. 개정)

제4장 사무기구

제10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이 수행한다.

제11조(규제개혁실의 직무)
규제개혁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 · 작성 · 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 조정사항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 인사 · 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08.10.2.)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제12조(심의안건 설명)
규제개혁실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제5장 전문위원 · 조사요원 및 전문 연구기관 등

제13조(전문위원 · 조사요원의 구성 등)
① 전문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 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08.10.2. 개정)
③ 조사요원은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08.10.2. 개정)

제14조(공정위에 조사 · 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 · 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일부로 본다. ('08.10.2. 개정)

제15조 (삭제) ('08.10.2.)

제16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 ·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7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 · 조사요원 · 이해관계인 · 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 ·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국무총리실 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08.10.2. 개정)

부칙

이 운영세칙은 200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가. 규제개혁위원회

* 집필자 : 이병호 사무관(Tel. 2100-2276, bhlee@pmo.go.kr)

회 수	부처명	호수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24회 ('10.1.14)	복지부	2009-41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복지부	2009-415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2	0	2
	복지부	2010-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3	1	5
제225회 ('10.2.1)	총리실	2010-20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총리실	2010-19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규제환경 개선	보고				
	법무부	2010-18	국격향상을 위한 외국인관련 규제개선	보고				
	행안부	2010-17	2010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중기청	2010-16	2010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제226회 ('10.2.18)	행안부	2010-9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심사			

회 수	부처명	호수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26회 ('10.2.18)	총리실	2010-37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1	0	0	1
제227회 ('09.2.25)	복지부	2010-3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복지부	2010-4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0	2	3
제228회 ('10.3.18)	총리실	2010-6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재심사			
제229회 ('10.3.25)	총리실	2010-6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2	0	3
제230회 ('10.4.8)	복지부	2010-8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1		4
	복지부	2010-14	노인복지법 개정안	의결	0	0	3	3
제231회 ('10.4.22)	문화부	2010-5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심사			
	법무부	2010-56	여권법 개정안	의결	0	0	1	1
제232회 ('10.5.6)	교육부	2010-9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1
	국토부	2010-10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심사			
제233회 ('10.5.20)	국토부	2010-10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심사			
	경찰청	2010-11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심사			
	금융위	2010-117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의결	0	0	5	5
	문화부	2010-130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제234회 ('10.6.3)	복지부	2010-106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의결	1	0	2	3
	경찰청	2010-11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문화부	2010-125	폐광지역 카지노영업장 운영지침	의결	0	0	1	1

회 수	부처명	호수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35회 ('10.6.10)	총리실	2010-158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 정비방안	보고				
	국토부	2010-143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총리실	2010-155	규제일몰제 확대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금융위	2010-15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의결	5	0	0	5
제236회 ('10.6.17)	국토부	2010-10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4	0	0	4
	경찰청	2010-16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금융위	2010-12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경찰청	2010-11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0	1	1
제237회 ('10.7.1)	기재부	2010-188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의결	1	0	0	1
	금융위	2010-15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1	0	0	1
	금융위	2010-119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재심사			
	환경부	2010-159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	의결	3	0	1	4
	지경부	2010-166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제238회 ('10.7.15)	경찰청	2010-109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심사			
제239회 ('10.7.22)	총리실	2010-234	기업호민관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방통위	2010-217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4	0	0	4
	금융위	2010-119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2	0	0	2
제240회 ('10.8.12)	방통위	2010-217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4	0	0	4

회 수	부처명	호수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40회 ('10.8.12)	통일부	2010-238	북한이탈주민 합동신문기간의 180일 신설	의결	1	0	0	1
	식약청	2010-232	광고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량저영양식품	의결	재심사			
제241회 ('10.8.26)	식약청	2010-232	광고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량저영양식품	의결	1	0	0	1
	방통위	2010-26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5	2	0	7
제242회 ('10.9.9)	식약청	2010-250	식품등의표시기준 개정안	의결	재심사			
	법무부	2010-28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0	1	1	2
	지경부	2010-277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안		0	0	1	1
제243회 ('10.9.30)	경찰청	2010-302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경찰청	2010-303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의결	1	0	0	1
	방통위	2010-369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 · 절차 ·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의결	재심사			
제244회 ('10.10.14)	여성부	2010-327	결혼중개업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0	2
	식약청	2010-325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규정 개정안	의결	0	1	0	1
제245회 ('10.10.28)	방통위	2010-369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 · 절차 ·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의결	1	1	0	2
	지경부	2010-345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0	1	0	1
	복지부	2010-353	전문병원의지정및운영에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재심사			
제246회 ('10.11.11)	복지부	2010-353	전문병원의지정및운영에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0	1	0	1
	국토부	2010-376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회 수	부처명	호수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46회 ('10.11.11)	복지부	2010-389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심사			
	복지부	2010-38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심사			
	복지부	2010-386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심사			
제247회 ('10.11.25)	복지부	2010-389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복지부	2010-38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복지부	2010-386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금감원	2010-410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제248회 ('10.12.8)	총리실	2010-454	신의약분야선진화를위한 규제개혁방안	보고				
	총리실	2010-455	신개발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방안	의결				
	총리실	2010-456	전기자전거등 기술규제 합리화 방안	의결				
제249회 ('10.12.9)	금융위	2010-444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재심사			
	총리실	2010-457	2011년 규제개혁 추진지침	의결				
제250회 ('10.12.23)	총리실	2010-494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 정비결과	보고				
	총리실	2010-444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보고	0	1	0	1
	총리실	2010-45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보고	0	0	1	1

나. 경제분과위원회

* 집필자 : 김재환 사무관(Tel. 2100-2325, jhkim@pmo.go.kr)

회 수	부처명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393회 ('10.02.25)	국토부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	의결			1	1
	방통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심사			
394회 ('10.03.11)	국토부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공정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심사			
395회 ('10.03.18)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1			1
396회 ('10.03.25)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397회 ('10.04.08)	방통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2
	공정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1			1
398회 ('10.04.22)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3			3
	관세청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 고시 제정안	의결	2			2
	지경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심사			
399회 ('10.05.06)	방통위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개정안	의결	2	1	2	3
	지경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400회 ('10.05.20)	지경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재심사

회 수	부처명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400회 ('10.05.20)	지경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의결	1			1
	공정위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	의결	1			1
401회 ('10.05.27)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 시행규칙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3			3
	금융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의결	3			3
	국토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6		1	7
	국토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402회 ('10.06.03)	국토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교통안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국토부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403회 ('10.06.10)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개정안	의결		1		1
404회 ('10.06.17)	국토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405회 ('10.07.01)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항만법 개정안	의결	재심사			
	지경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	의결	재심사			
406회 ('10.07.15)	지경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항만법 개정안	의결	1			1

회 수	부처명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406회 ('10.07.15)	국토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2	2
	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1			1
407회 ('10.07.22)	국토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4			4
	농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1			1
	지경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의결	1			1
408회 ('10.08.12)	공정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2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2			2
409회 ('10.08.26)	지경부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개정안	의결	1			1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1			1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2			2
	금융위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개정안	의결		2		2
	국토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항공법 개정안	의결		2		2
410회 ('10.09.02)	국토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방통위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정안	의결	1			1

회 수	부처명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410회 ('10.09.02)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2	2		4
411회 ('10.09.09)	농식품부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1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1
	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3		5	8
	금감원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의결		2	1	3
412회 ('10.09.30)	국토부	해운법 개정안	의결		2		2
	농식품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2		3
413회 ('10.10.14)	국토부	교통기본법 제정안	의결			1	1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2
414회 ('10.10.28)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		1		1
	금융위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금융위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신설강화 규제심사안	의결	1			1
	지경부	수출입공고 개정안	의결		1		1
415회 ('10.11.11)	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안	의결			1	1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의결			1	1

회 수	부처명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415회 ('10.11.11)	지경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416회 ('10.11.25)	지경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농식품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1	1		2
417회 ('10.12.09)	방통위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1			1
	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1			1
	기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재심사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규정안	의결	재심사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재심사			
418회 ('10.12.23)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규정안	의결		1		1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	1			1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의결		1		1
	국토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2	1	3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2		2
	농식품부	고래자원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1		1
	방통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재심사			

다. 행정사회분과위원회

* 집필자 : 박창석 사무관(Tel. 2100-2321, pc1346@pmo.go.kr)

회 수	부처명	안 건 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411회 ('10.1.14)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의결	4	2	1	7
412회 ('10.1.28)	보건복지부	화장품법 개정안	의결	1	0	0	1
	교과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0	2
413회 ('10.2.18)	보건복지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0	1	0	1
	문화체육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1
415회 ('10.3.18)	환경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의결	3	1	0	4
416회 ('10.4.8)	식약청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	의결	1	0	0	1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의결	1	0	0	1
417회 ('10.4.15)	환경부	소음 · 진동규제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의결	0	2	0	2
	환경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의결	0	2	0	2
	소방방재청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의결	0	0	1	1
	소방방재청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의결	0	0	1	1
	소방방재청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의결	1	0	0	1
418회 ('10.4.22)	식약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의결	1	0	0	1
	보건복지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회 수	부처명	안 건 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418회 ('10.4.22)	식약청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의결	0	1	0	1
419회 ('10.5.6)	보건복지부	실험동물에관한법률에 관한 개정안	의결	0	1	0	1
420회 ('10.5.20)	교과부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1	0	0	1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의결	1	0	0	1
	식약청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의결	1	0	0	1
	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421회 ('10.6.3)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1	2	0	3
	식약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훈제어육제품류 벤조피렌 기준 신설 등)	의결	1	0	0	1
	식약청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의결	0	0	1	1
	소방방재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2	0	2
422회 ('10.6.17)	식약청	식품의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의결	1	0	0	1
423회 ('10.7.1)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2	1	41
	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식약청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의결	1	0	0	1
424회 ('10.7.15)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1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0	0	0

회 수	부처명	안 건 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425회 ('10.7.22)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의결	2	0	0	2
	소방방재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0	0	1
	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0	1	1	2
426회 ('10.8.19)	외교통상부	여권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	의결	1	0	0	1
	식약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의결	1	0	0	1
427회 ('10.8.26)	경찰청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0	2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3	0	0	3
428회 ('10.9. 9)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0	1	0	1
	환경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0	1	0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결	0	2	0	2
429회 ('10.9.30)	보건복지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소방방재청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의결	1	0	0	1
430회 ('10.10.14)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1	1	0	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전부개정안	의결	0	1	0	1
	고용노동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경찰청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회 수	부처명	안 건 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430회 ('10.10.14)	행정안전부	전자서명법 개정안	의결	0	1	0	1
431회 ('10.10.28)	문화체육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식약청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의결	1	0	0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강화 규제심사안	의결	0	0	1	1
	환경부	환경보건법 개정안	의결	1	1	0	2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결	1	0	0	1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의결	2	0	0	2
432회 ('10.11.1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	0	1	0	1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0	0	1
	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0	0	1	1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의결	0	0	0	0
433회 ('10.11.25)	문화체육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의결	0	1	0	1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0	2
434회 ('10.12.9)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2	4	0	6
	행정안전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의결	0	3	2	5
	교육과학부	대학설립 · 운영규정 개정안(의대 부속병원 시설기준)	의결	0	1	0	1

회 수	부처명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434회 ('10.12.9)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의결	1	0	0	1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요청	의결	0	1	0	1
435회 ('10.12.23)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0	2	0	2
	보건복지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0	1	0	1

2010년도

규제개혁백서

발 행 일 : 2011. 3.

발 행 처 : 규제개혁위원회

편집·인쇄 : 조양애드컴(02-739-9957)

발간등록번호
11-B090045-000002-10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ory Reform Committee
www.rrc.go.kr